

북한법제분석 94-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

1994. 7.

한국법제연구원

發 刊 辭

남북한관계는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분야별 부속합의서의 채택과 더불어 급진전 되는 듯 하였으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와 핵사찰거부선언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팽배된 긴장감과 예측 불허의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남북한관계의 교착상태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북한주석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으로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개발 문제로 야기된 남북한 상호간의 공식대화의 중단과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적 제재 움직임 등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중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들을 꾸준히 마련한 점에 비추어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4년 9월8일의 합영법 제정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경제개방정책을 표방하였으며,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외국과의 합영 내지 합작의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투자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 합영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 등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1970년대말에 본격화된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을 상당히 모방하고는 있지만 경제개방정책의 수준·내용 뿐만 아니라 법제정비의 측면에서도 중국과 비교하여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고, 자원·노동력·시장규모·외화보유 수준·국제적 신용도 등 제반 경제적 여건 등이 매우 열악하여 그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북한이 그들의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의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려는 목적이외에 정치·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제정·개정·재정비 등 일련의 조치가 경제현실과 국제환경 및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부합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에 관한 입법경험의 부족, 행정조직과 업무과정 및 관행의 불분명, 그리고 우리와는 달리 법령 상호간의 위계가 불확실한 법체계 등으로 말미암아 이 법제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책없이 대북투자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하에서 우리기업의 대북진출은 단순한 경제적 원리와 이 윤극대화의 추구를 지양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외적 부문에 지나치게 편중하는 태도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기업들은 중국투자·진출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겨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을 갖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이 본격화 되기에 앞서서 대북투자기업인들에게 법 제적 차원의 분석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일차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에 관하여 가급적 상세히 분석하여 그들이 내세우는 경제개방정책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앞으로 전개될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라면서, 끝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바쁜 중에도 최신 자료에 입각하여 충실히 집필하여 주신 법제처의 조정찬 법제관과 저희 연구원 외국법제연구실의 문준조 수석연구원, 그리고 특수법제연구실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994년 7월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張明根

목 차

제1장 총 론	7
I. 입법연혁 및 입법배경	7
II. 외국인투자법제의 현법적 근거	12
III.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체계	13
IV.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투자관련규정	16
V. 북한의 행정조직과 대북투자	18
제2장 유형별 외국인투자법제의 내용	23
I. 외국인투자법	23
II. 합영법	33
III. 합작법	73
IV. 외국인기업법	81
제3장 외국인투자 관련법제의 내용	99
I. 관련법제 보완조치의 의의 및 전망	99
II.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100
III. 외화관리법	129
IV. 외국투자은행법	134
V.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43
VI.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154
VII.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	158
VIII. 자유무역항규정	162
IX. 토지임대법	168
X.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183

제4장 새 외국인투자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211
I. 외국인투자정책의 기본방향	211
II. 외국인투자법제의 비교분석	212
III.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	227
제5장 결 어 - 대북투자진출을 위한 대책	231
〈부록〉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235

제1장 총 론

I. 입법연혁 및 입법배경

북한은 1960대 말까지 사회주의 국가들과 원조·차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관계만을 유지해 왔으며, 그 결과 자본·기술의 부족, 대외무역의 부진과 국제수지의 악화, 산업구조의 불균형, 경영관리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경제침체현상이 심화되었다. 70년대에 들어 북한은 이러한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외국 자본·기술의 도입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한정된 구상무역과 중국·소련의 경제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석유파동과 같은 국제경제환경도 북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비확장을 위해 중공업분야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제3세계 국가에 과도한 경제원조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70년대 중반이후에는 외채의 지불을 연기하게 되었으며, 국제적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차관에 의한 외자도입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상황이 이처럼 어려워지자 북한은 비로소 서방국가의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기술의 도입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때마침 중국이 1979년부터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비롯한 일련의 외자도입 법령을 제정·시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게 되자, 북한도 1984년 9월 8일 「합영법」(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을 시작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통한 대외개방정책 추진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에 있어서 초기의 외국인투자법제는 합영방식의 투자법제와 관련세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회주의체제에 어설프게 자본주의적 요소를 접목시킨 것으로서 다른 개발도상국 등의 외국인투자법제보다 훨씬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사한 법제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더욱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자원·노동력·시장규모 등 제반 경제적 여건이 서방국가의 투자욕구를 자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영유치정책은 미국·일본 등에 거주하는 친북한계 교포들의 몇몇 사례(어떤 의미에서는 강요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포기와 동시에 구상무

역 방식이 아닌 현금결제 방식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북한은 연료 등 원자재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외화 사정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는데 동의하고 남한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남포공단건설사업 등 여러가지 개발프로젝트를 제안해 오는 등 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의 폭과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여 정부당국간의 경제협력보다는 민간차원의 대북투자유치에만 주력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거나 민간기업 상호간의 경쟁을 부추겨 보고자 하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보완 내지 전면 개편작업은 이러한 현실여건과 북한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그동안 북한산 원자재를 중개무역 또는 직교역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하거나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임가공형태를 시험하는 등 초보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직접 투자 등 본격적 경제협력은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과 병행하여 추진될 것이며, 특히 핵사찰문제의 해결이 그 선결조건이 되는 등 경제외적 요인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은 최근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확대·지정하고 자유무역항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특정지역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투자유치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아울러 외국인투자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제개방에 따른 북한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비록 제한개방이기는 하지만 개방정책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정치외교적으로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경제개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군사적 위험을 해소시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인정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배워야 할 것이다.

법제면에서는 계속하여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공표하고 있는데, 그 건수에 비하여 담고 있는 내용은 상호 증복·모순되거나 선언적인 것 또는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 많으며 서구식 법제와 비교할 때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법령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법제의 의의 내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가고 입법기술도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체제변혁이 제도적으로 추진되는데 밀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제정된 주요법령을 연표로 작성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및 관련법제의 입법연표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후)

제정·공포일	법령제명	제정기관 및 법령번호
1972.12.	사회주의재산관리법	정무원결정
1976. 1.10.	민사소송법	상설회의결정 제18호
1977. 4.30.	토지법	최고인민회의법령
1978. 3.11.	재산보험규정	정무원결정 제13호
1978. 3.22.	재산보험규정세칙	중앙은행지시 제11호
1978. 3.29.	기본건설공사에대한시공계약규정	정무원결정 제83호
1978. 4.18.	사회주의노동법	최고인민회의법령
1978. 7.31.	고정재산관리규정	정무원결정 제157호
1978. 8.25.	노동규율규정	중앙인민위원회정령
1978. 9.15.	철도운송에관한규정	정무원결정 제183호
1978. 9.15.	자동차관리규정	정무원결정 제190호
1978.12.27.	상품공급계약에관한규정	정무원결정 제250호
1978.12.17.	기본건설감독에관한규정	정무원결정 제277호
1979.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	
1979.	새기술의심의등록및도입에관한규정	
1979.12.21.	건설기준제정에관한규정	정무원결정 제18호
1979.12.	강하천관리규정	정무원결정
1979.12.	산림자원보호규정	정무원결정
1979.12.	도로관리규정	정무원결정
1980. 1.	주민지구토지관리규정	정무원결정
1980. 1.21.	상품공급규율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석명령
1980. 4.19.	『상품공급규율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정 확히 집행할데 대하여	정무원결정
1980. 8.10.	해운법	상설회의결정
1981. 5.14.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찰하며 공장관리운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철저히 관찰할데 대하여	정무원결정

제정·공포일	법령제명	제정기관 및 법령번호
1982. 1.19. 1982. 5.13.	중재재판규정 행정경제부문의 관리(사업)규범을 승인 함에 대하여	정무원결정
1982.12. 7.	민사규정(잠정)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247호
1983. 3.19. 1983. 4.10.	민사규정잠정시행세칙 산림자원보호규정	중앙재판소지시 제2호 정무원결정
1983. 9.18. 1983.11. 6.	고정재산등록심사및처리에관한규정 산림경영에관한규정	정무원결정 정무원결정
1984. 2. 2. 1984. 3. 2.	산림자원보호단속규정 국가재정규율규정	정무원결정 정무원결정
1984. 8.10. 1984. 9. 8.	국영기업독립채산제에관한규정 합영법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상설회의결정 제10호
1985. 3. 7. 1985. 3. 7.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소득세법	상설회의결정 제11호 상설회의결정 제12호
1985. 3.20. 1985. 5.17.	합영법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정무원결정 제4호 정무원결정 제22호
1985. 5.17. 1985. 6. 9.	외국인소득세법세칙 토지감독에관한규정	정무원결정 제23호 정무원결정
1986. 1.30. 1986. 4. 9.	토지감독에관한규정 민사규정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법령
1986. 7.27. 1986. 9. 4.	환경보호법 자재공급규정	정무원결정 정무원결정
1986.11.17. 1987. 1.30.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 항만법	정무원결정 상설회의결정
1978. 6.19. 1987. 7.19.	과학기술연구성과의심의등록및도입에 관한규정	정무원결정 정무원결정
1987. 7.19. 1987. 9. 3.	도로관리규정 기본건설사업에관한규정	정무원결정 정무원결정
1987. 9. 3. 1987.10.25.	철도운수에관한규정 토지관리및감독에관한규정	정무원결정 정무원결정

제정·공포일	법령제명	제정기관 및 법령번호
1987.11.29	철도법	상설회의결정
1998. 2. 12.	물자소비규율규정	정무원결정
1988. 3. 3.	포장용기관리및이용에관한규정	정무원결정
1988.12. 2.	난방시설관리규정	정무원결정
1989. 1. 1.	품질감독사업에관한규정	정무원결정
1989. 1.18.	과학기술법	최고인민회의법령
1989. 6.20.	설비관리규정	정무원결정
1990. 3.29.	강하천관리규정	정무원결정
1990. 7.22.	도시시설물관리규정	정무원결정
1990. 8. 9.	공공건물관리규정	정무원결정
1990. 9.13.	도로관리규정	정무원결정
1991. 4.12.	민법	최고인민회의법령
1991. 8.20.	국가지하자원보호관리규정	정무원결정
1991. 9. 3.	과학기술성과의심의등록및도입에관한규정	정무원결정
1991.11.28.	상하수도관리규정	정무원결정
1992. 1.11.	물자소비기준제정에관한규정	정무원결정
1992. 3.21.	도시경영법	최고인민회의법령
1992. 5. 8.	사회주의상업법	최고인민회의법령
1992.10. 5.	외국인투자법	상설회의결정
1992.10. 5.	합작법	상설회의결정
1992.10. 5.	외국인기업법	상설회의결정
1992.10.16.	합영법시행세칙	정무원결정 제148호
1993. 1.31.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상설회의결정
1993. 1.31.	외화관리법	상설회의결정
1993. 1.31.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상설회의결정
1993.11.24.	외국투자은행법	상설회의결정 제42호
1993.11.29.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정무원결정 제75호
1993.12.30.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정무원결정 제80호
1993.12.	세관법	
1994. 1.20.	합영법	상설회의결정

제정·공포일	법령제명	제정기관 및 법령번호
1994. 1.21.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 사무소규정	정무원결정
1994. 2.21.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정무원결정 제9호
1994. 3.27.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정무원결정 제13호
1994. 4.28.	자유무역항규정	정무원결정 제20호

* 상설회의결정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을 말한다.

II. 외국인투자법제의 헌법적 근거

북한은 1992. 4. 9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1972. 12. 27 개정된 종전의 사회주의헌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합영법제를 최초로 도입하던 당시의 구헌법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엄격한 형태로 채택하였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원칙을 강력히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영법제와의 상충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경제개방정책과 대내적 산업기술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제16조), 『자주 평화 친선은 ……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 이다. …… 모든 나라들과…… 경제…… 관계를 맺는다』(제17조제1문, 제2문)라는 기본원칙과 더불어 『…… 기관·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협작을 장려한다』(제37조), 『…… 대외무역은 국가가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제36조)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경제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개방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행 헌법이 『……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제19조)를 강조하는 등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엄격히 고수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합영 등의 장려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의 완전한 경제활동이 헌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III. 외국인투자법 제의 입법체계

북한의 법령은 그 종류와 발령기관이 다양하고 상호간의 위계가 불분명하며 민사법·상사법·행정법 등의 법역구분이 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령제정시 기존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신·구법 상호관계 내지 구법의 효력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

외국인투자를 직접 규율대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 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 법률들을 입법순서대로 나열하면 합영법(1984. 9. 8),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외국인소득세법(1985. 3. 7), 외국인투자법·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1992. 10. 5),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외화관리법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 1. 31), 토지임대법(1993. 10. 27), 외국투자은행법(1993. 11. 24), 개정 합영법(1994. 1. 20) 등이 있다. 그 중 합영법·합영회사소득세법·외국인소득세법·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인기업법은 그 하위법령에서 세칙 내지 시행규정을 갖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외국인투자법·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 등에 공통되는 하위법령에 해당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그 하위법령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과 자유무역항규정을 갖고 있는데, 노동규정 및 외국인출입규정 등은 모법의 규율대상중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들 세칙 내지 규정에는 모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아무런 위임근거도 없이 새로 규정한 조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입법체계상의 하위법령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부분도 많다.

이들 법률 상호간의 관계를 체계화시켜 본다면 우선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유형인 합작기업·합영기업·외국인기업의 정의를 내리고(제2조), 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은 개개의 투자유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점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효력 등에 있어서는 우리 법제에서 말하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의 경우와 상이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입법체계와 관련하여 합영법과 그 시행세칙의 입법시기 내지 입법순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법이 합영법에 대하여 일반법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외국인투자법의 입법 당시 그와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합영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물론 한달도 채되지 않아 합영법시행세칙을 손질하였지만 그 것은 정무원결정으로 가능한 것이고 보다 홍보효과가 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의 합영법을 외국인투자법 등의 제정과 함께 손질하지 않은 이유가 문제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①합영법시행세칙이 합영법의 하위법령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에서 합영법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합영법시행세칙을 손질하는 방안을 택하였으리라는 추측과 ②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합영법의 개정작업이 끝나기 전에 합작법 등을 먼저 공표하였고, 외국인투자법은 법체계상 이들 법의 일반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표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국내상황으로 보아 외국인투자가가 북한내에서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투자유형인 합영기업보다는 경영참가가 배제되는 합작기업 및 일부지역에서만 설립되는 외국인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영법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추측은 외국인투자법에서 합작기업 · 합영기업 · 외국인기업으로 순서를 배열하여 합작기업이 맨 앞에 나오도록 한 점과 합영법시행세칙의 개정사실을 상당히 오랫동안 발표하지 않고 있었던 점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며, 그후 1년이 훨씬 지난 94년 1월에 와서 마침내 개정된 합영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합영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의 관할권 명시 등 합영기업은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유치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한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즉, 설립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합영기업은 주로 해외거주 친북한 교포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는 서방기업에게도 합영기업형태의 투자를 개방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법과 상충되는 합영법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개정 합영법은 외국인투자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입법체계상의 혼란을 다소 해소하였으나, 개정된 시행세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일반법 내지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및 개정 합영법에 반복 규정된 부분이 많으며(예컨대 외국인투자법 제5조제2문, 합작법 제5조, 외국인기업법 제6조, 개정 합영법 제2조제1문), 중요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지역적인 또는 실효성 없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관련세법과 외화관계법 및 토지임대법 등은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법 등과 중복규정된 것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종전의 세목 등을 망라한 새로운 조세체계를 규정하고 그 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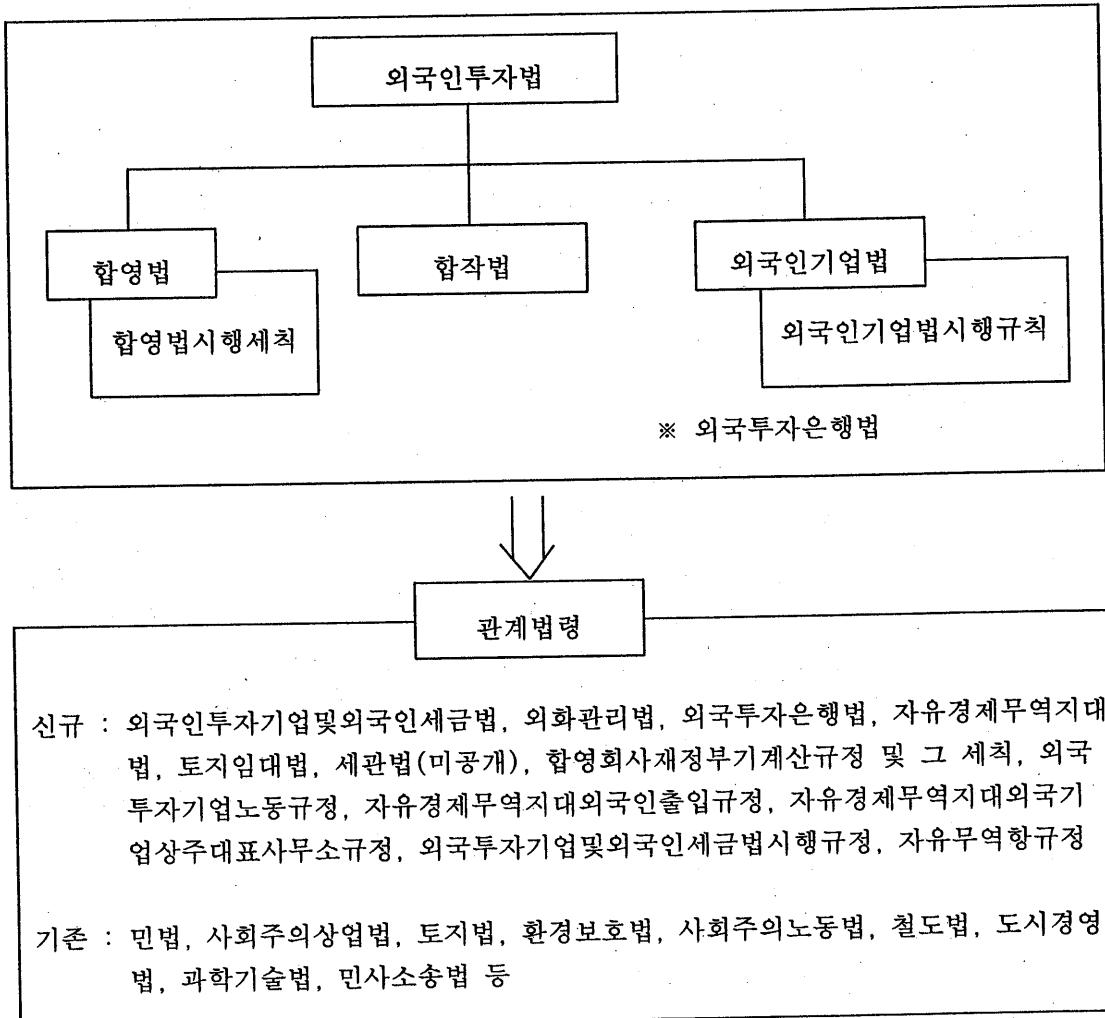
시행규정까지 따로 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종전의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 및 그 세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회계기준으로서 특히 이윤의 계산세액의 산정 등에 준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 법령은 합영회사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다른 유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무원결정의 하위법령인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인 바, 굳이 그 모법을 찾는다면 외국인투자법·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상의 노동관계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일정한 지역을 설정하여 다양한 특혜적 투자관련 사항을 규정한 점에 특징이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적용되는 출입국관리규정이지만, 일반적인 출입국관련법제가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그 밖에도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이라든지 자유무역항규정 등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련된 법령이 계속 제정되고 있는데, 이는 제한적 개방의 성공을 바라는 북한당국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중 은행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법제로 파악할 수도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법제를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그 밖에도 민법, 노동관계법, 환경관계법, 토지관계법, 사회간접자본(infra structure)이용관계법, 산업재산권관련법, 분쟁해결관련법 등을 포함하며 사회주의상업법 등 거래관계법과 도시경영법 등 행정법도 외국인투자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은 흥결이 있거나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예컨대 전력·통신 등의 이용에 관한 법령, 여권관련 법령 등), 제정된 법률들도 내용이 대단히 빈약하고 하위규정들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이 많고, 법령 상호간의 체계도 산만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북한의 이러한 외국인투자법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체제의 엄격한 고수와 극히 부분적인 자본주의적 요소의 접목이라는 특징을 보여주며 이는 상호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점을 많이 담고 있다. 또한, 법제정비의 면에서 또한 대외개방정책의 수준과 관련하여 중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노동력·시장규모 등 제반 경제적 여건 역시 대단히 열악하다.

이하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체계를 도식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체계



IV.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투자관련규정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과 1991년 12월 13일에 총 4장 25조로 구성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 한다)를 채택 (1992. 2. 19 발효)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남북교류 협력)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제15조)라고 천명하고 과학·기술·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주민왕래 및 이산가족 상봉, 교통·통신의 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6조 내지 제21조).

여기에서의 합작투자는 남한의 대북한투자만이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자원의 공동개발 역시 북한의 대륙붕·지하자원·산림자원 등의 개발에 남한의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의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992. 9. 17 채택·발효된 3개 부속합의서의 하나인『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제1장에서 경제교류 협력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즉,『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하여서는 물자교류와 석탄·광물·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농업·건설·금융·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할 것을 합의하고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하며 자원의 공동개발·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결정하기로 하고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회사·기업체 및 경제기관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는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하며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산결제은행의 지정, 결제통화의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물자교류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상호 정보교환에 관하여는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해당 법규를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경제교류와 협

력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쌍방의 합의 결정, 경제교류 협력 참가인원에 대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보장 등을 규정하였다(제1조제1항 내지 제13항). 이어서 과학기술환경분야에서의 교류협력(제2조),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해로항로의 개설(제3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시설의 설치연결 및 비밀보장(제4조), 국제경제무대에서의 협력(제5조)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들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제7조 및 제8조), 1992년 5월 7일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시켰고 여기에서 남과 북이 각각 장관 또는 차관급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제1조)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세부합의서의 채택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는 경제협력 및 물자교류 대상선정, 가격결정 등 세부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될 것이다.

V. 북한의 행정조직과 대북투자

대북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투자절차와 인허가, 감독 및 지원을 담당하는 북한 당국의 해당 기관과 그 업무범위 및 권한에 관한 정확한 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에서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해당 로동기관」, 「재판기관」, 「중재기간」, 「기관·기업소·단체의 해당 상급기관」,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 「재정은행기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건설위원회」, 「합영공업총국」, 「국가가격」, 「무역은행」, 「합영자재상사」, 「무역기관」, 「자재공급기관」, 「상업기간」, 「국가품질감독기관」, 「로동행정기관」, 「거주지의 재정기관」, 「재판소」, 「대외경제위원회」,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 「세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 「외교 및 영사대표부」, 「외교부」, 「외화관리기관」, 「국토관리기관」, 「중앙은행기관」, 「외화관리기관」, 「중앙은행」, 「은행설립등록기관」, 「사회보험기관」, 「노동행정기관」, 「인력알선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외경제위원회」, 「재정부」, 「중앙은행」 등은 부서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고 「대외경제기관」, 「재정기관」, 「중앙은행기관」 등은 담당업무를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행정조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표

시하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담당업무로 해당기관을 나타내는 두번째 방법이 더 일반적인 바, 외국투자가들이 어느 기관을 상대로 절차를 추진시켜 나갈 것인지 망설이게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행정조직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즉 지방분권화가 되어 있는지 중앙집권형으로서 지방조직은 단순히 지역별 업무집행분담조직에 불과한 것인지) 중앙행정기관내에서도 소속기관, 보조기관 등 상하관계가 어떠한지 애매하다는 점과 중앙은행, 합영자재상사, 합영공업총국, 상업기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과 준국가기관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여기에는 이와 관련된 북한의 법제와 업무처리과정 및 관행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지 못한 점도 가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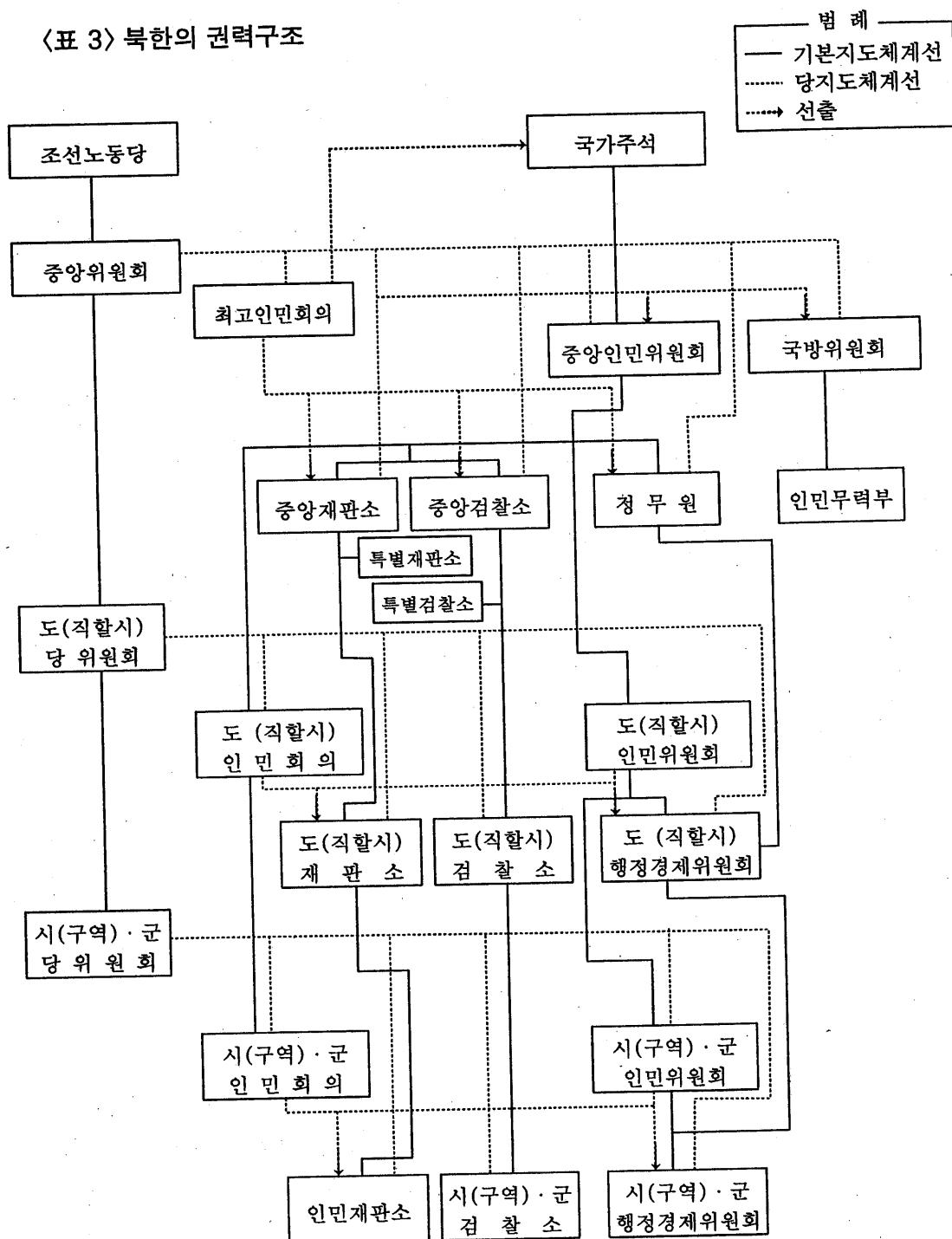
우리법제의 경우, 헌법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여 정부조직법 등 각종 조직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 조직의 종류 및 업무의 대강이 정하여지고 대통령령인 직제와 조례규칙 등에서 과단위까지의 업무분장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내부훈령 등에 의하여 보다 상세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행정권한 및 그 책임의 귀속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또한 각종 민원관계법의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으로 업무담당기관과 업무처리호를도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북한의 법제는 조직법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행정조직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헌법에 나타난 권력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여기에서 나타난 각 기관 상호간의 관계는 법제처간, 『북한법제개요』 p.141이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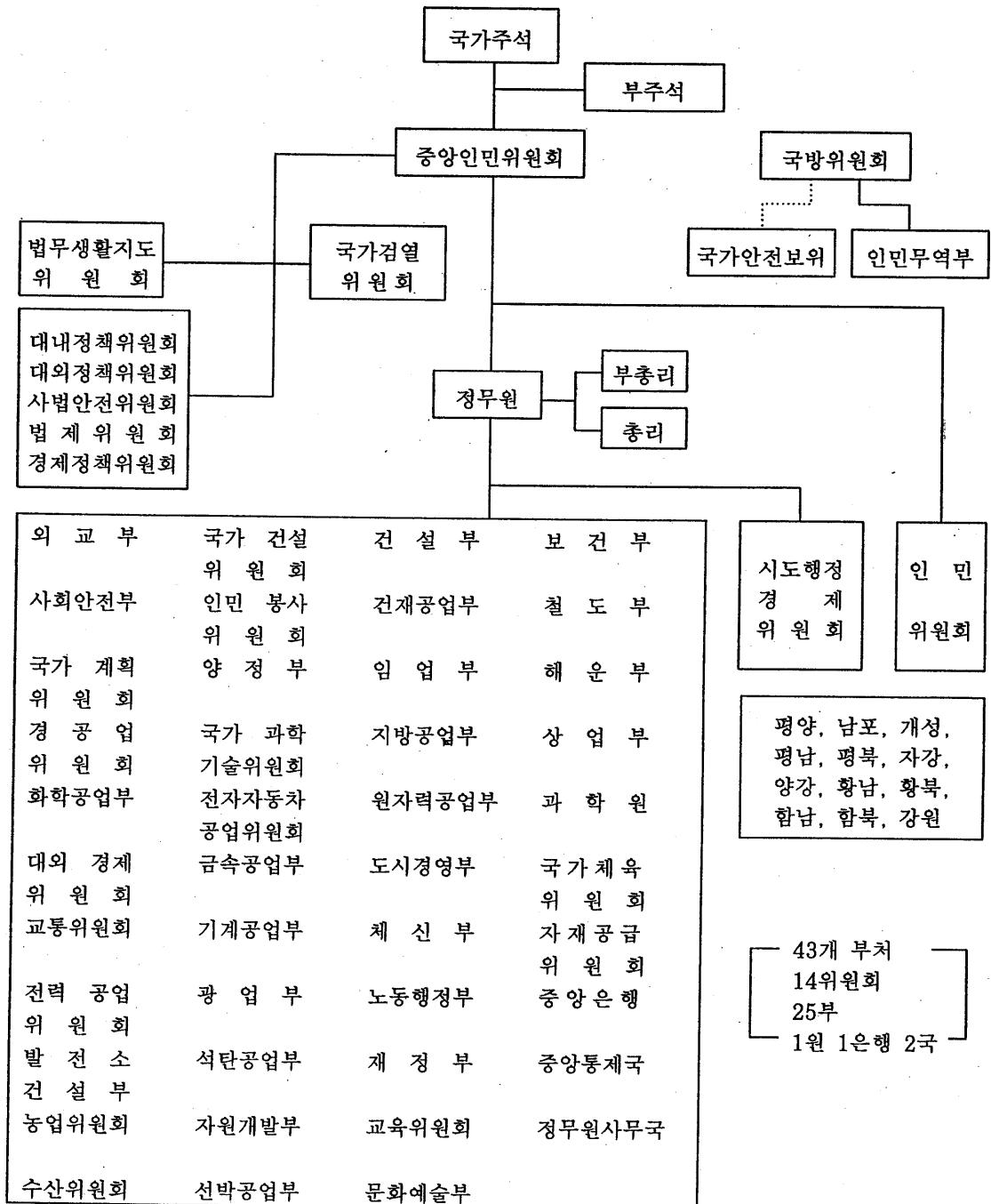
권력구조 가운데 외국투자가에게 관심이 있는 사항은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라 하겠는 바, 그 체계는 <표 4>와 같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라고 하였는데(헌법 제117조), 그 권한을 보면 ①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의 수립 ②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의 지도 ③사법·검찰기관사업의 지도 ④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지도하고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처리 ⑤헌법·법령들의 집행상황을 감독하며 이에 위배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의 정지 및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 ⑥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부의 창설·폐지 ⑦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위원장·부장 등 정무원 구성원의 임명 또는 해임 ⑧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구성원의 임명 또는 해임 ⑨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⑩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 결정 ⑪훈장 등 영예수여 ⑫사면권 행사 ⑬행정구역의 창설·변경으로 되어 있고(제120조), 정령·결정·지시를 발령할 수 있다.

〈표 3〉 북한의 권력구조



〈표 4〉 북한의 행정기관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최고인민회의를 의미한다 : 제87조)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라고 하였으며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다(제124조). 정무원의 구성은 총리·부총리·위원장·부장과 그 밖의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제125조), 그 임무와 권한은 ①각 위원회·부·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사업지도 ②정무원 직속기관의 창설 또는 폐지 ③국가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의 수립 ④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의 수립 ⑤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환경·보호·관광 기타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⑥화폐와 은행제도의 발전대책 수립 ⑦조약체결 및 대외사업 수행 ⑧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 대책수립 ⑨정무원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로 되어 있다(제126조).

그리고 정무원의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라고 규정하였는데(제132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숫자나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정부조직에서의 실·국단위를 각각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행정조직을 보면 지방에 인민회의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지방주권 기관으로서 최고인민회의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인민회의가 휴회중일 때에는 우리의 지방의회와는 그 성격에 차이를 보여주며, 지방인민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제133조·제141조 등 참조).

지방행정집행기관은 도(직할시)·시(구역)·군 행정경제위원회인데(제147조), 이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로 구성되며(제148조) 그 임무와 권한은 ①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의 조직집행 ②해당 인민회의·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위원회·인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지시의 집행 ③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 및 그 실행대책의 수립 ④지방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의 수립 ⑤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 대책의 수립 ⑥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의 지도 ⑦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지시의 폐지로 되어 있고(제149조)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고 상급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제151조).

그 밖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규는 그때그때 헌법규정에 의하여 발령되는 정무원 결정 등으로 되어 있으나 입수되지 아니하였고, 각 개별 법규에서도 위에서 본 것처럼 업무처리기관이 명확하지 못한 바, 위 <표 4>에 나타나 있는 기관과 결부시켜 파악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제2장 유형별 외국인투자법제의 내용

I.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법의 법적 지위

1992년 10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운영에 관한 일반적·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어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음과 아울러 그 투자유형(합작기업·합영기업 및 외국인단독기업)에 따라 각 개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은 동법 제2조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즉, 동조에서는 『이 법은 외국인투자가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라고 하고, 『외국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을 의미하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제명에서 보는 것처럼 양자가 혼용되고 있다. 그 밖에 외국투자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은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합영기업·외국인기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동조는 합작기업·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개념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합영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으로(이는 구 합영법에서 규정한 『합영회사』와 같은 유형이다),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으로,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3종류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모두 북한의 법인이며(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내 현지법인에 해당할 것이다) 북한의 법인이 아닌 기업을 『외국기업』으로 칭하기도 한다(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2조제2문). 이것은 구 합영법만 운영하던 시기와 달리 외국투자가에게 자본참여 형태의 투자라든지 100% 단독투자 등 다양한 투자형태를 제시하여 선택권을 주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경제개방에 따른 체제동요를 우려하여 개방의 경제외적 효과를 극소화시키려는데 보다 큰 목

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합작기업의 경우를 보면 외국측 투자가는 자본은 제 공하되 경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회주의적 기업경영방식을 당해 기업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또한 외국측 투자가의 북한내 상주도 거부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 의 경우를 보면 일부 국한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만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제한하 였으며, 합영기업은 북한의 모든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법제운영 과정에서 친북한계 해외교포를 제외하고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의 기업설립만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모든 투자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일반법으로서 외국인투자법을 검토함과 아울러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 및 합 영기업에 적용될 각 개별법률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인투자법과 개별 법률의 어느 한쪽에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지만 양자의 내용이 상치될 경우 어느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 · 합작법 등 각 개별법률은 앞에서 편의상 상위법과 하위법 내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양자의 내용이 서로 상치될 경우에는 우리 법체계에 서 말하는 상 · 하위법간, 일반법 · 특별법간의 효력관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 로 사안에 따라 융통성있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외 화관리 · 노무관리 · 토지이용관계 · 조세제도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별도의 법률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들 법규가 모든 외국인투 자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의 경우 북한의 사회주의노 동법에 대한 특례적 성격을 갖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2.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을 합영법 · 합작법 · 외국인기업법 내지 외화관리법 등 관 계 법률과 비교하여 항목별로 검토하기로 한다.

(1) 외국인투자의 기본원칙

먼저 외국인투자법의 입법목적을 보면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는데 있다고 하 면서(제1조),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였다(제4조). 합작법에서는 입법목적을 북한과 세계 각국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으로 하고(동법 제1조), 개정된 합영법은 북한과 세계 각국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으로 하며(동법 제1조), 외국인기업법에서는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여(동법 제1조) 표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권리보장에 관하여서는 합작법은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합영법(제6조제2문)에서는 외국인투자법과 같은 규정을 두었으나 외국인기업법(제4조)에서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어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큰 의미는 없다.

(2) 외국인투자 당사자

외국인투자법은 투자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다른 나라의 기관·회사·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제5조). 한편 이 법에서는 『외국투자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 정의로서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이라고 하였는데(제2조제2문), 이들 제2조와 제5조는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란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고쳐 읽어야 할 것으로 본다(『외국인투자가』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개념이 재일·재미교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남한주민도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부인 바, 이는 종전의 합영법 제5조에서 『재일조선상공인을 비롯한 해외거주 조선동포』라고 표현한 것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구 시행세칙 제19조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었으며 개정 시행세칙 제11조에서도 『재일조선상공인을 비롯한』이라는 문구만 삭제하고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합영법 제2조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이라고 하여 외국인투자법의 규정과 일치시켜 놓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내지 개정 합영법상의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의 개념을 규명하여 본다면 북한 헌법 등에서 볼 때 그들이 말하는 『공화국』은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예컨대 헌법 제9조에서 『공화국은 북반부에서 …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라고 하여 『남반부』도 공화국에 포함됨을 암시하고 있다), 이 경우 남한주민은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므로 외국인투자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헌법 제15조에서 구 합영법과 같은 표현인『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외국인투자법상의 표현과 구별하고 있는 점, 헌법 제6조에서『공화국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통치권이 미치는 북한지역 거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영역』에 남한지역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어쨌든 외국인투자법이 남한주민의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중국에서『대만동포투자장려에관한규정』을 따로 제정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이는 북한 당국이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한주민의 투자까지를 구걸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두려워한 것으로 보여진다(북한이 외국인투자법령의 제정사실을 대내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이에 관한 해설기사를 민주조선 등 기관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동안의 남북관계에서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해석이 현실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종전에 북한의 개방을 지휘하던 김달현부총리 등 고위 당국자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하여서는 남한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고 오히려 남한이 앞장서 줄 것을 희망하기도 하였는 바, 최근에는 경제관료들이 대거 교체되고 핵문제 등으로 경제분야도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확대 지정추세 및 적극적인 개발의욕 등에 비추어 북한이 우리측의 대북진출을 거부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다만,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최초 계약당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에 근거한 투자임을 명백히 밝혀 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외국인투자법은 북한측 당사자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고 합영법(제2조제1문)과 합작법(제6조)에서 북한의『기관·기업소·단체』가 합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북한측 당사자가 없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외국인투자대상과 투자제한 및 장려조치

외국인투자대상은『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과학·기술·관광·유통·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종전 합영법체제와 비교하여 열거적·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제6조). 한편 자원개발과 같은 양허사업의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남북부속합의서에서는『자원의 공동개발』도 경제협력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1조제1항) 외국인투자법이나 합영법

에서는 여기에 관한 언급이 없다. 중국에서 『중외합작연안석유자원탐사개발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허사업을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와 같이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투자금지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라고 하였다(제11조). 합작법에서는 투자금지대상을 규정하지 않았고 합영기업에 대하여는 합영법시행세칙(제5조)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의 창설을 금지하였으며, 외국인기업법(제3조제2문)은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의 창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투자금지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개별법률에서는 금지범위가 다소 좁게 규정되어 있는 바, 북한당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규운영을 도모할 것이므로 투자형태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법상의 포괄적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투자장려부문과 장려조치의 내용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도 종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서 투자장려대상은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이며(제7조), 장려조치로서는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과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을 예시하였다(제8조). 조세감면은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제12조와 제15조제2호에서 기업소득세만을 감면하고 있고,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은 토지임대법 제30조·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8조·제39조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장려부문에 대한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등 의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합영법(제3조제2문)에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 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고 하고, 합작법(제4조)에서는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하며, 외국인기업법에서는 여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이나 토지임대법 등에서 장려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한 『장려부문』은 외국인투자법 제7조에 규정된 투자장려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영기업의 경우는 합영법상의, 합작기업의 경우는 합작법상의 장려부문을 각각 의미하고 외국인기업의 경우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할 것으로 추측된다(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에서는 투자대상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도 장려대상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의 보장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②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고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 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으며 소득세율은 다른 기업보다 낮추어 결산이윤의 14%로 하고 ③기업창설 및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한다는 것이다(제9조 및 제10조). 여기에서 관세면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 합영법에서 원자재 수입시 일률적으로 관세면제를 규정한 것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며(구 합영법시행세칙 제37조), 관세에 관한 법규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혜택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제15조·제25조·제42조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6조·제37조·제40조에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절차 간소화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3조·제41조와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에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개정 합영법(제7조)에서는 장려부문외에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및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같은 우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영기업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해외교포의 대북투자에 대한 우대를 규정한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이며,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이라 함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의 합영유도를 의도한 것이라 하겠다(그러나 해외동포 투자장려규정이 남한주민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동포투자장려에관한규정』의 입법례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그 밖에 개정 합영법시행세칙에서는 장려부문으로서 대규모 장기투자사업에 대하여 합영기간연장의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제90조제2문).

(4) 외국인투자의 목적물

외국인투자의 투자목적물은 화폐·현물·산업재산권·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며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제12조).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에서는 투자목적물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개정 합영법(제11조제2문·제3문)에서는 외국인투자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구 합영법상의 규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북한측에서 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방법 및 기준과 외국측에서 투자할 경우 평가방법이 문제되는 산업

재산권·기술비결(노우하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의 보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3자에 의한 평가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합영법체제의 미비점으로 지적되었던 점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지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북한 또는 외국에 지사·대표부·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자회사(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북한 또는 외국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지사·대표부 및 출장소의 설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범위를 지역적으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회사 설립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출자에 의한 별도의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 경우 자회사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적인 설립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기업『연합』은 독특한 규정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 합작기업·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법적 지위는 북한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4조제1문) 북한 민법에는『법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지 않고『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라는 개념속에『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기업소·단체』와『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를 포함시키고(민법 제11조에서『합영회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구 합영법에 따른 것으로서 새 법제에 의한 합작기업·합영기업·외국인기업으로 자구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들에게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민법 제11조 및 제12조) 일용『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북한의 법학사전에는 국가적 법인·협동단체법인·사회단체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합영기업·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이 법인의 지위를 갖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법인의 내부조직이 어떠한지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즉,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법인의 내부기관(사원총회·이사·감사 등)과 그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다만『기관·기업소·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기업소·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기업소·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인데(제14조)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기업이 법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민법상 기관·기업소·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기 때문에 결국 민법 제14조의 규정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개정 합영법에서는 합영기업의 내부조직으로서 이

사회와 책임자·부책임자·재정부기성원 기타 관리성원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은 여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외국인투자 기업의 대내적 의사결정과 대외적 활동에 관한 법률관계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 여기에 관한 북한측 입장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해석상 합영기업에 관하여는 합영법상의 관계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며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에 관하여는 위 민법 제1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 합영법과 합영법시행세칙 및 그후 개정된 합영법시행세칙은 『합영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사』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개정 합영법(제4조)은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유한책임을 규정하였고 개정 합영법시행세칙(제8조제2문)에서는 합영회사가 유한책임회사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우리 법제상 『유한회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에서는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여기에 관한 북한측의 입법의도가 무엇인지도 애매하다. 다만, 북한민법에서 『기관·기업소·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 자신이 민사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제15조)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민법에 관한 전반적 해설은 법체처간 『북한법제개요』 p.263이하 참조).

한편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대표부·출장소는 법인격을 갖지 않도록 하였다(제14조제2문).

(6) 토지사용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사용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장려부문에 대한 유리한 토지사용 조건의 보장(제8조) 외에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 받은 기간 안에 해당기관의 승인 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으며(제15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 임대료인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38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목적물로 규정된 『현물재산』에 토지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토지소유관계는 헌법과 민법 및 토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헌법 제20조 내지 제22조, 민

법 제2편, 토지법 제9조 내지 제12조 등.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간『북한법제개요』p.413이하 참조).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한 토지를 국가 또는 협동단체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며 북한측 당사자가 국가 또는 협동단체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소일 경우에는 투자목적물로 토지를 현물출자하게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법 제15조제2문의 양도 및 상속의 경우에도 토지임차권 내지 사용권의 양도 및 상속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법제상의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일 수 밖에 없다).

한편 별도로 제정된 토지임대법에서 토지임차자의 권리로서 토지이용권을 인정하고 임대기간, 협상·입찰 및 경매 등의 방법에 의한 임대절차,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임대료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7) 노무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은『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으로서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북한주민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채용과 해고는 해당 노동기관과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였다(제16조). 이와 같은 정책은 구 합영법과 비교하여 외국인채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자율적인 채용 및 해고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 두고 있다. 합작법(제11조)과 외국인기업법(제20조) 및 개정 합영법(제26조)에서도 외국인투자법 제16조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채용한 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는 개정 합영법(제32조)과 외국인기업법(제21조)에서 직업동맹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그후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에 우선하여 동 노동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합영법(제44조)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과 이를 위한 사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기도 하였으나 개정 합영법은 여기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개정 합영법 전에 먼저 개정되었던 합영법시행세칙 제6장에서는 별도로 근로조건 관련조문을 두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도 제6장 노력관리라는 별도의 장을 두어 노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직업동맹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8) 납세 및 재투자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기업운영세·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는 바(제7조), 여기에 관하여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및 그 시행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투자가는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제18조).

(9)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외국인투자법은 구 합영법에 비교하여 투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그 보완내용으로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몰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 또는 몰수할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과(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외국투자가와 협의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을 들 수 있으며(제21조), 구 합영법의 규정을 이어받은 것으로서는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외화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제20조).

국유화 등의 제한규정은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투자위험부담의 경감을 위한 제도中最 중요한 것이나 국유화 등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과 보상기준 등이 불명확한 점 등에서 문제점을 남겨 놓고 있으며 경영비밀보장 역시 모든 기업이 국유 또는 협동단체소유인 사회주의국가의 속성에 비추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그러나 송금보장에 관하여서는 기업이 윤외에 청산후 잔여재산까지를 송금대상에 포함시킨 점과 외화관리법의 제정으로 좀더 구체화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구 합영법시행세칙(제52조)에서는 합영회사 종업원노임의 60%까지만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합영법이나 개정 시행세칙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삭제하였다.

(10) 분쟁해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2조), 이는 종전의 제도와 거의 같은 것으로서 민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중재절차는 해당 법규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분쟁해결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합영법을 설명할 때 다루기로 한다).

II. 합영법

1. 개관

북한은 1984년 외국인투자법제의 시초로서 합영법을 제정하였는데, 합영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방식은 어느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국가에 진출하여 그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합영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서 엄격한 사회주의체제를 고집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방법을 먼저 채택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합영회사의 설립·경영은 자본주의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을 파트너로 하여 북한의 영역안에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실험해 보는 것으로서 행정체계나 법제도, 경제사회적 제반여건의 개선이 병행하지 않고서는 성공을 거둘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도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사정은 개방정책에서 유일한 돌파구를 찾아야 할 만큼 절박함을 느끼지 않았으며 입법기술이나 자본주의적 제도에 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고 또 합영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커녕 오히려 사적 소유권의 부정은 물론 세금까지도 자본주의적 요소로 배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나타난 합영법의 미숙성 내지 미흡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북한의 합영법은 서방 선진국가 또는 제3세계 국가의 외국인투자법제는 물론 합영법이 모범으로 삼았던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북한의 구 합영법제는 위의 합영법외에 1985년의 합영법시행세칙과 1985년의 합영회사소득세법·외국인소득세법 및 이들 법규의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서방국가의 투자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에 조총련 등을 주축으로 한 해외교포들의 대북투자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 당국은 그후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경제사정, 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중국·베트남 등 그들의 우방국까지도 속속 경제개방의 대열에 참여하여 열을 올리는 추세를 바라보면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보완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에서 그들이 채택한 전략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 등의 제정과 이를 통한 투자유형의 다양화 및 북한체제에 대하여 경제외적 부담이 적은 투자유형으로의 유인, 그리고 외국인투자관련법제의 대폭적인 보완으로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하여 외국인투자의 중요한 유형인 합영법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992년 10월 16일 정무원결정 제148호로 합영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는데, 모법인 합영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세칙만 손질한데 따른 입법체계상의 무리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들의 입법관에 비추어 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 같다.

그후 1994년 1월 마침내 합영법 자체에 대하여서도 손질을 가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구 합영법이 살아 있을 동안에 개정되었던 합영법시행세칙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을 갖고 있어 합영법시행세칙을 또 한번 개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 합영법의 운영방향을 추측하면 서방측 투자가 특히 남한 기업이나 개인과의 합영의 경우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으로 국한시키려고 할 것이며 조총련계 등 친북한 해외교포와의 합영은 종전대로 지역에 관계없이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영법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구 합영법과 그 시행세칙, 개정 합영법과 개정 시행세칙을 입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첫째, 입법시기적으로 볼 때 구 합영법—구 시행세칙—개정 시행세칙—개정 합영법의 순서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둘째, 북한에서는 모법과 시행세칙 사이의 관계에는 반드시 상·하위법의 관계라든지 시행세칙은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등 우리 법제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구 합영법 시행당시 제정된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 및 그 세칙이 있다.

2. 합영법 및 시행세칙의 주요내용

(1) 합영의 기본원칙

구 합영법(제1조)은 북한 당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세계의 여러나라들과의 경제기술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며, 북한은 『공화국의 영역 안에서』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체·개인 및 경제조직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 한다라고 선언하고, 구 시행세칙(제1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세칙(제1조)에서는 영뚱하게도 『이 세칙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서기가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을 질할 때 대하여 주신 방침과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합영법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선동문서와 혼동한 것 같은 태도를 보여준다(북한의 민주조선 등에 실린 법령해설이나 기사 등을 보면 모든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는 김일성 부자의 교시에 따른 것임을 강변하고 있다. 이 세칙에서 김일성 부자에 대한 현란한 수식어와 경칭을 생략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시행세칙(제2조)에서는『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의한 합영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 합영법(제1조)은 북한과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평등과 호혜의 원칙』이란 합영당사자가 대내·대외적으로 평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상호신뢰에 따른 평등한 부담을 지며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구 합영법(제3조 및 제4조)과 그 시행세칙(제6조 및 제8조)에서는 다른 나라의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북한 당국이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점과 합영당사자들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북한의 법이 규정한 모든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아울러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북한의 법규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세칙(제9조 및 제10조)은 합영회사가 모든 활동에서 북한의 법규법과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먼저 규정하고(특히 국가에서 승인받은 업종 밖의 다른 업무활동이나 무역거래를 하지 말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개정 합영법(제6조제2문)은『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경우 합영법에서 막연한 보호를 약속하는 것보다는 법령의 공포절차를 확립하여 북한내의 현행법령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용법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공백부분이 많으며 상충되는 규정이 많은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만 외국투자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종전 구 시행세칙(제7조)와 개정 시행세칙(제6조)에서는 합영회사는 북한의 합영법과 그 시행세칙,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계약·회사규약·이사회 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합영계약·회사규약·이사회 결정은 법규준수의무에 관한 합영법 및 시행세칙상의 제반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규에서 정한 내용과 상치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안되고 다만 법규에서 흡결된 부분을 보충

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법제의 현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규의 흡결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알려진 내용도 상호간에 체계가 맞지 않으며 낙후된 내용을 그대로 방치한 사례가 많음을 고려한다면 합영계약 등에서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정하여 둘 필요가 있으며 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규를 위반하여서라도 합영계약 등에서 해결해 둘 필요도 있는데, 합영계약 등을 체결하는 북한측 당사자는 사실상 국영기업 내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고 합영계약 등은 북한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북한의 법규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합영당사자

구 합영법은 합영당사자에 관하여 제1조에서 북한측 당사자로 북한의 『회사·기업소』를, 외국측 당사자로서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소·개인』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합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 시행세칙(제2조 및 제9조)에서는 합영법과 같은 내용을 반복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세칙은 제2조에서 북한측 당사자로 북한의 『기관·회사·기업소·협동단체』를, 외국측 당사자로 『일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는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체·개인 및 경제조직들』을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세칙에 따라 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합영법은 제2조에서 북한측 당사자로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를, 외국측 당사자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을 규정하고,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제7조에서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의 합영에 대하여는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제공 등 우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개정 합영법과 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바, 이는 하위법령인 시행세칙이 합영법보다 먼저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북한에서는 법령간에 위계질서가 없고 수시로 변하는 정책을 그때마다 편리한 법령개정방법에 따라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견해에 따른다면 시행세칙을 합영법에 맞도록 다시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견해에 따른다면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시행세칙의 정비는 없을 것이며 당분간 합영법이 적용되겠지만 이는 상위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최근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나타난 몇가지 표현까지를 아울러 검토해 보는 것은 연혁적 관점에서나 합영과 관련된 북한법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먼저 구 합영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회사』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에서는 오래 전에 개인에 의한 기업경영을 자본주의적 잔재로 보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상법상의 회사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구 합영법상의『회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민법 제11조에서 민사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규정하면서『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합영회사』는 구 합영법에 의하여 북한측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가 합작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 합영법이 합영의 북한측 당사자로서 규정한『회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합영법에서『회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면 개정 시행세칙상의『회사』는 정비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북한에서『기관·기업소·단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 합영법상의『기관·기업소·단체』(개정 시행세칙은『기관·기업소·협동단체』로 표현)는 민법상의『기관·기업소·단체』와 같은 것으로 보겠으나 민법에서 기관·기업소·단체의 개념을 따로 정립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북한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개념을 법률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기업소·단체는 북한에 사실상 존재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법적 취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간행한 법학사전에 의하면 북한에서 사실상 존재하는 법인격 있는 단체에는 국가적 법인(여기에는 예산제 국가기관·독립채산제 기업소 등이 포함된다), 협동단체법인, 사회단체법인 등이 있고, 기업소에는 국가기업소, 농기계작업소·관개관리소와 같은 농촌경리부분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량정·도시 경영·중요 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도매상인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 등이 있으며(민법 제44조·제45조제2호·제104조 및 제150조) 기관에는 국가기관, 수매기관, 저금기관, 보험기관, 은행기관, 재판기관, 중재기관 등이 포함된다(민법 제47조·제97조·제125조 내지 제134조, 제109조 내지 제116조, 제200조 내지 제204조·제206조·제225조 내지 제229조, 제267조 및 제268조 참조). 다만, 이들 기관·기업소·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부터 민사상 권리·의무를 지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갖는데(민법 제2조) 이들은 자기의『본신 임무』에 맞는 범위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가지며 자신의 본신 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민법 제3조)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 경우 권리능력의 범위가 등기부와

유사한 공부에 의하여 공시되는지, 또 그 변경등록이 허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합영의 외국측 당사자는 구 합영법체제에서는 『회사·기업소·개인』이라고 하여 북한식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하였다가 개정 시행세칙에서는 『회사·기업체·개인 및 경제조직들』이라고 하여 우리측 용어와 접근시켰으며 개정 합영법은 『법인 또는 개인』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하였는데, 표현방법에 관계없이 외국측 당사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과의 합영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개정 시행세칙에서 『일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북한)의 국가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는』이라는 제한적 요건을 규정하였던 점이 특기할 만한데 우선 이 요건이 그 문장구조상 『다른 나라』를 수식하는지, 『회사·기업체 …』를 수식하는지가 문제되며 이는 또한 특별한 의도를 갖고 규정한 것인지 정치적인 희망사항을 명시해 본 것인지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합영을 하는 것은 사경제주체 상호간의 경제관계로서 국가간의 관계인 정치·외교문제와 구별해야 하며(그렇다면 위 제한요건은 『회사·기업체 …』를 수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합영을 시도하는 이상 경제적 측면에서는 합영주체가 북한의 법제와 북한당국이라는 사실상의 권력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측의 의도는 경제관계에 정치문제를 끌여들여 어떤 이득을 노린 것이라고 보여지나(이 조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대내용일 수도 있다) 개정 합영법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서만 합영문제를 다루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해외교포와의 합영과 관련하여 우리 남한기업 및 개인의 합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바, 여기에 관하여서는 외국인투자법을 검토할 때 이미 살펴보았다. 다만, 개정 시행세칙에서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정 합영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향후 정비여부가 주목된다. 남한기업 및 개인의 대북투자가 허용된다면 당연히 합영법 제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대조치도 받게될 것인 바, 그 내용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제공 등이 될 것이며 이는 당해 합영기업의 투자업종이 장려대상업종이 아니거나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아닌 지역에 투자한 경우라 할지라도 적용을 받게될 것이다.

(3) 합영대상과 장려 및 제한조치

구 합영법에서는 합영대상을 『공업·건설·운수·과학기술·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로 규정하여(제2조)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구 시행세칙은『전자 및 자동화공업·금속공업·채취공업·기계제작공업·화학공업·식료품가공공업·피복가공공업·일용품공업·건설·운수·관광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분야』라고 규정하였는데(제3조) 이는 구 합영법보다 상세한 것으로서 결국 북한 당국의 관심업종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 시행세칙도 이와 같은 방식을 이어받아『전자 및 자동화공업·금속공업·채취공업·기계제작공업·화학공업·건재공업·경공업·농업·수산업·건설·운수·관광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분야』라고 하였다(제3조). 그러나 개정 합영법은『과학기술·공업·건설·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합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제3조제1문) 종전의 시행세칙에서 상세히 열거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한편 구 시행세칙은 북한 영역안에 조직되는 합영회사는(이 문구는 사실상 불필요한 문구이다)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는 추상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었으며(제4조), 개정 시행세칙은 합영회사는 현대적 설비와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원료·자재·동력 등을 최소한 적게 들이면서 세계적 수준의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늘리며 최단기간안에 투자의 효과성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4조) 그들의 목표가 선진기술도입, 수출증대, 투자효과의 조기달성을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더 나아가 북한 영역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을 창설할 수 없다고 하여(제5조) 공해산업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현행 합영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반법인 외국인투자법 제1조의 규정, 즉『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한다는 점은 합영기업에도 적용될 것이고 위 개정 시행세칙도 역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장려부문인 바, 구 합영법 및 그 시행세칙에서는 여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았고, 개정 시행세칙에서는 존속기간이 있어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규모가 크거나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상 등은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90조)외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개정 합영법은『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 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제3조제2문), 이를 장려대상에 대하여는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제공 등 우대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 해외교포가 투자한 합영기업 내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합영기업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제7조). 합영장려대상에 대하여는 그 밖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나 토지

임대법 등에서 정한 장려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한 합영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법 제9조에 규정된『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 즉 ①원칙적인 관세면제 ②이윤발생시부터 3년간의 소득세면제와 그후 2년간의 50%감면, 소득세율의 14%우대 등의 조치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출입국절차상의 편의, 그리고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26조에 의한 최저임금의 우대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제한 및 장려시책은 합영기업을 업종별로 선별함과 아울러 해외교포들을 중심으로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되 합영기업의 창설에 따른 경제외적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제한을 두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4) 합영기업의 법적 지위

구 합영법에서는 합영회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은 출자몫에서만 책임진다.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과(제8조) 『합영회사는 등록된 자금을 출일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제9조)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합영회사는 우리 상법상 유한회사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구 시행세칙 제5조에서 합영회사를 『유한 책임회사』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인식되었다. 아울러 구 시행세칙은 합영회사가 북한의 법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계약, 합영회사 규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고 하여(제7조) 합영회사는 북한의 다른 기업소·기관 등과 달리 독자적 경영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개정 시행세칙에서는 합영회사의 정의를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한 대상에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경영활동결과에서 얻은 순소득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기업형태』라고 규정하고(제8조제1문 : 이는 외국인투자법 제2조제5문에서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합영회사는 경영활동과정에서 생기는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자기의 출자몫 안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이다』라고 하여(제8조제2문) 구 합영법과 그 시행세칙의 규정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합영회사는 북한의 합영법(이는 합영법 개정전이므로 구 합영법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나 합영법의 개정을 전제로 개정 합영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과 합영법시행세칙,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계약, 회사규약, 이사회 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는 종전의 취지를 이어받아(제6조) 북한 당국의 경영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더 나아가 북한 영역안에 조직된 합영회사는 회사재산의 소유권과 기업경영권을 가지는 북한의 법인으로 규정하여(제7조) 자본주의적 방식에 의한 기업운영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개정 합영법은 합영기업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제4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제5조), 『합영기업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제6조제1문)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앞에서 본 종전의 방침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북한의 법인으로 규정된 합영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제개방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례적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영기업에 대한 북한측 투자가는 사적 소유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측 투자지분의 소유권은 국가소유 내지 협동단체소유 등의 형태를 갖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합영기업에 대한 소유권 인정은 합영기업 자신이 대외적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고 소유재산으로 담보를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합영기업의 소유권을 사회주의국가 특유의 사적 경영의 개념을 원용하여 불완전한 의미의 소유권으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측 합영당사자의 소유권과 합영기업의 소유권은 염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전자는 북한법제상 인정될 여지가 없고 후자는 완전한 형태의 소유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합영기업이 반드시 법인이라는 점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법상 독립적 법인격을 갖지 않는 비법인조합형태의 합작경영기업을 인정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5) 합영기업의 설립절차

합영기업의 설립절차는 구 합영법 및 그 시행세칙상의 절차, 개정 시행세칙상의 절차, 개정 합영법상의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이를 연혁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구 합영법 및 시행세칙상의 설립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소·개인과 합영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북한의 회사·기업소는 북한 당국의 대외경제기관인 대외경제사업부와 합의한 다음 대외교섭을 하여야 한다(제10조). 대외경제사업부는 대외교섭의 사전합의, 합영계약의 승인,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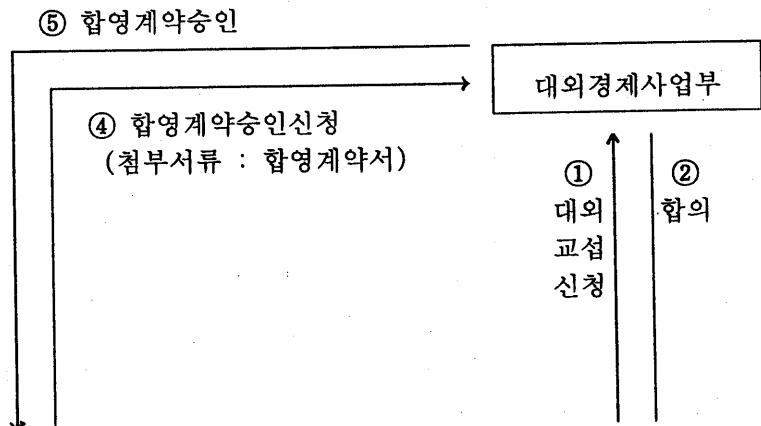
변경의 합의 등 업무를 관장한다(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그 밖에 정부원산하 재정부에서 합영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며(제34조 및 제68조) 대외경제사업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설치된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가 외국과의 과학기술의 교육·협력촉진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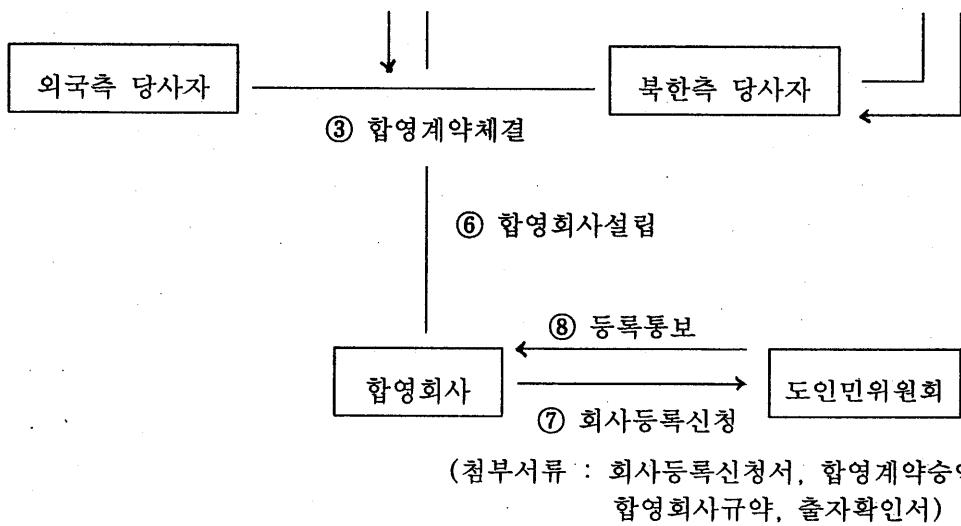
② 대외교섭을 통하여 합영계약이 체결되면 대외경제사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1조). 합영회사조직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등, 회사의 이름, 회사의 존속기간, 회사의 자금총액과 당사자들의 출자몫, 이사회조직, 회사의 종업원수와 로임기간, 생활보장조건 등 합영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하며(제12조), 이러한 합영계약서는 합영회사의 운영과 합영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등 합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문서로서 합영회사설립의 준거가 된다.

③ 이와 같이 하여 합영승인을 얻은 합영회사는 해당 도인민위원회에 회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사를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회사등록신청서와 함께 합영계약을 승인한 문건, 합영회사의 규약, 출자를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제13조). 여기서 합영회사의 규약은 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회사의 사업내용, 회사의 자금총액과 당사자들의 출자몫, 회사의 존속기간 등 회사의 활동원칙과 질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5조).

합영회사의 설립절차는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된 때 종료하고 이때로부터 합영회사는 성립하며 법인으로 된다. 구 합영법제상의 설립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구 합영법제에서의 합영회사 설립절차





이와 같은 구 합영법제상의 설립절차는 처리시한 등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바, 개정 시행세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가. 합영업종의 선정 및 사전합의

합영회사를 조직하고자 하는 북한측 당사자기관은 합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 기관의 성격과 임무·직능에 맞는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고 필요한 문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사전합의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여기에서 각 문서별 소관기관을 보면 예비기술과제는 국가계획위원회, 발명권·기술문현 등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자·이윤·경제타산자료·계약서·합영회사규약초안은 합영공업총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과 사전합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번잡을 초래할 소지가 농후하다. 다만, 각 해당기관은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합의여부 또는 의견을 당사자기관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각 설립절차단계별로 각종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개정 시행세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합영계약의 체결 및 합영회사조직승인

합영에 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면 북한측 당사자와 외국측 당사자는 합영계약을 체결하고 합영규약을 작성한 후 합영회사조직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합영회사조직승인신청은 북한측 당사자기관이 합영공업총국에 대하여 하는데(제15조) 합영사업의 승

인을 조직승인과 영업허가로 구분하고 있는 점과 합영주관기관을 종전의 대외경제사업부에서 합영공업총국으로 변경한 것, 승인신청을 북한측 당사자 단독으로 하게 한 것이 달라졌다. 북한측 당사자의 단독신청으로 외국측 당사자의 부담이 덜어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북한 당국이 합영회사창설과정에서 외국측 당사자의 북한내 출입을 꺼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며(합영회사등록신청도 북한측의 단독신청으로 규정하였다) 회사설립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외국측 당사는 달리 손을 써볼 도리가 없다는 점에서 단독신청이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다.

합영계약의 법적 성격은 i) 준거법·분쟁해결 등을 규정하는 섭외계약적 성격 ii) 합영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적 성격 iii) 이질적인 경제·법률체제에 놓인 합영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동서계약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으며 합영계약에 대한 북한 당국의 승인은 우리 행정법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적 설권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합영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합영계약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바, 합영계약서는 합영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합영회사운영의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또한 합영회사규약에 의하여 보완·구체화된다. 개정 시행세칙은 합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데(제13조), 그것은 i)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ii) 합영당사자의 이름과 법적 주소 iii) 합영회사의 존속기간·등록자금·출자총액·출자비율·출자기간·출자금 양도조건 iv) 이사회의 구성과 합영회사의 관리기구 v) 업종·생산규모·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vi) 합영당사자들의 임무 vii) 재정관리·노력관리, 자재보장질서(자재공급체계) 및 방법 viii) 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법 ix) 결산과 이윤분배 방법 x) 합영회사의 해산 및 청산조건 xi) 법적적용과 분쟁처리방법 xii) 계약효력발생조건 등이다. 종전에 북한 당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영계약서표준양식을 작성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측도 이에 대항하여 합영계약서가 북한의 합영법제가 갖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영회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합영계약서양식을 마련하고 개별 합영계약체결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합영회사의 규약은 우리 상법상 정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여기에는 i)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ii) 합영당사자의 이름과 법적 주소 iii) 합영회사의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출자비율·출자금의 양도조건 iv) 결산과 이윤분배방법 v) 이사회 구성 vi)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무 vii) 이사회 규칙 viii) 회사관리성원들의 임명과 해임 절차 ix) 재정외화관리 절차와 방법 x) 합영회사의 해산과 청산절차 xi) 합영회사규

약의 수정보충절차 등 합영회사의 사업내용과 활동원칙 및 질서를 규정하여야 한다(제14조).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체결한 합영계약과 합영회사규약은 합영회사조직이 승인되어야 효력을 가지며 합영계약과 합영회사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합영공업 , 즉 합영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7조). 합영회사조직승인신청서를 합영주관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국문과 외국어로 된 계약서와 경제타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제15조제2문). 합영주관기관은 합영회사조직신청서를 받으면 1개월안에 심의하고 국가에 승인(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6조, 여기에서 국가는 정무원을 의미하는 것 같다 : 제25조 참조).

다. 출자 및 등록

합영당사자들은 합영회사조직이 비준된 날부터 60일안에 자기 출자몫의 5%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제18조) 북한측 당사자기관은 합영회사 조직이 비준되면 합영회사조직승인통지문건을 첨부한 합영회사등록신청서를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회사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9조). 등록이란 등록의 효과로서 법인격의 취득을 규정한 것(제20조제2문)과 관련하여 우리 상법상 회사등기에 해당하는 절차라고 보여지는데, 양측 당사자가 각각 5%이상을 출자한 후에 비로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제21조에서 영업허가는 동조 각 호의 출자를 이행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지만 조문순서로 보아 등록신청의 선결조건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회사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회사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합영회사는 등록된 날부터 법인으로 된다(제20조). 합영회사 등록신청도 북한측 당사자가 단독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라. 영업허가

개정 시행세칙은 합영회사 등록후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한 점이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합영회사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비율의 출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합영당사자들은 회사조직을 비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음과 같이 출자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제21조). i) 출자총액이 300만달러까지는 70%, ii) 출자총액이 301만달러 ~ 1,000만달러까지는 60%, iii) 출자총액이 1,001만달러 ~ 2,000만달러까지는 50%, iv) 출자총액이 2,000만달러이상은 40%. 합영회사는 이와 같이 출자를 이행한 후에 그에 대한 은행기관의 증빙문

건과 생산시설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해당기관의 확인문건이 첨부된 영업허가신청서를 합영주관기관, 즉 합영공업총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 여기에서 은행기관이란 외화관리법 제5조에 규정된 무역은행 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은행을 말한다고 보면 외국투자은행법에 의한 외국투자은행도 승인을 얻은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생산시설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해당기관이란 국가건설위원회 등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제12조 참조).

합영주관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합영회사에 영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제23조) 합영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에 경영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제24조). 모든 설립절차가 끝난 후에도 경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등 별도의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북한법규를 심하게 위반한 경우 기업을 정지시키거나 국가의 승인을 받아 해산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93조). 그리고 존속기간연장시에는 합영주관기관의 연장승인을 얻어 회사등록기관에 기간연장등록을 하게 된다(제91조).

마. 등록변경 및 영업의 변경허가

개정 시행세칙은 또한 등록변경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합영회사가 회사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합영주관기관에 변경신청문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합영주관기관은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정무원의 비준을 받아 해당 합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합영회사는 7일안에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회사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변경된 내용대로 고치도록 하였다(제25조). 그 밖에 존속기간의 연장 또는 존속기간 전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9장에서 별도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정 시행세칙상의 합영회사설립절차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개정 시행세칙에서의 합영회사 설립절차

※ 사전협의대상 및 기관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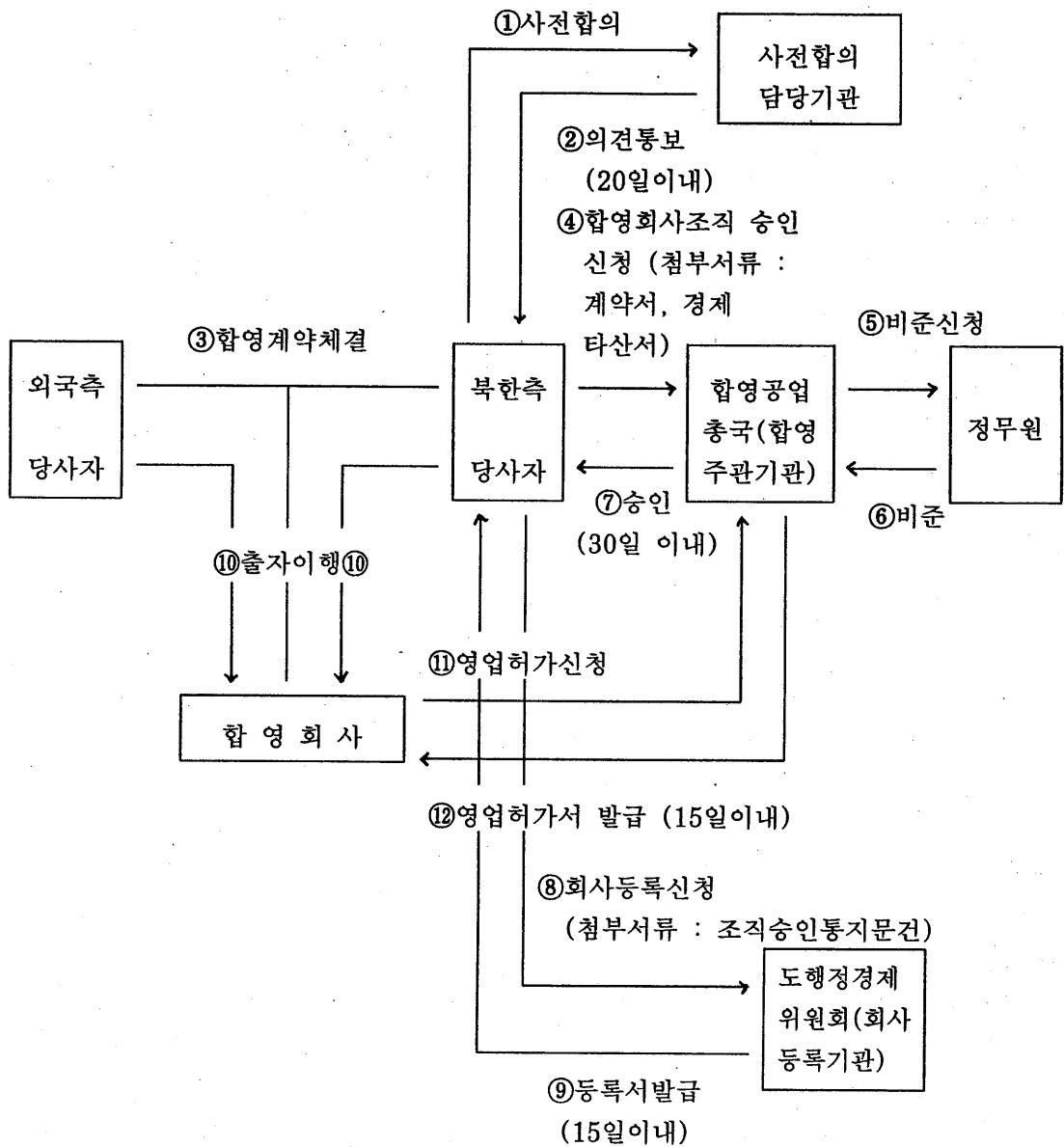
예비기술과제 : 국가계획위원회

발명권·기술문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자·이윤·경제견적서 : 재정부

건물시행설계 : 국가건설위원회

경제타산자료·계약서·합영회사규약초안 : 합영공업총국



한편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합영법에서는 위의 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설립절차와 다소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양 법령의 저촉은 향후 또 다시 시행세칙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개정 합영법상 합영기업설립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계기관과의 사전합의

개정 합영법은 여기에 관하여『합영을 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합의하고』라고 규정하였다(제9조제1문 전단). 개정 시행세칙과 달라진 점은 합의주체에 외국측 당사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며 나머지 부분은 개정 시행세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다.

나. 합영기업창설 신청 및 승인

북한측 및 외국측 당사자는 관계기관과의 사전합의가 끝나면 합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계약서 사본·경제기술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제출하고,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에 기업 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제9조제1문 후단 및 제2문).

개정 시행세칙과 달라진 점은 i) 종전의 합영회사조직승인신청과 영업허가신청을 둘이 합영기업창설신청으로 단일화한 점(그러나 개정 합영법은 제22조에서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허가증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발급하며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조업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개정 시행세칙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ii) 신청주체를 양측 합영당사자 모두로 한 점(종전에는 회사조직승인신청은 북한측 당사자만이 하고 영업허가신청은 합영회사가 하도록 하였다) iii) 처리기관에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추가하고 정무원의 비준절차를 제외시킨 점(이는 가급적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합영기업을 유치하며 체제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영공업총국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제22조에서는『투자규모에 따라』주관기관이 달라지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iv) 처리기간을 종전에 회사조직승인은 30일이내로 하던 것을 50일이내로 하여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한 점(영업허가는 종전에는 15일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합영법 제22조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v) 첨부서류에 합영기업규약을 추가로 명시한 점(첨부서류의 사용언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개정 시행세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 선출자의무이행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점(개정 합영법 제14조에서는『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는 경우『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출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기업창설승인후 개정 합영법 제22조에 의한 영업허

가신청전에 개정 시행세칙상의 출자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개정 시행세칙과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등을 들 수 있다.

합영계약서 및 합영기업규약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본다.

다. 합영기업등록 및 세무등록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에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하도록 하고 기업등록일을 합영기업창설일로 하였다(제10조 제1문 및 제2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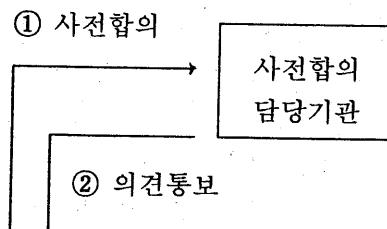
개정 시행세칙과 비교할 때 등록기관에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추가한 점만이 다르며(행정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의 관할구분은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합영기업 소재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처리기간 등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정 시행세칙에 따르며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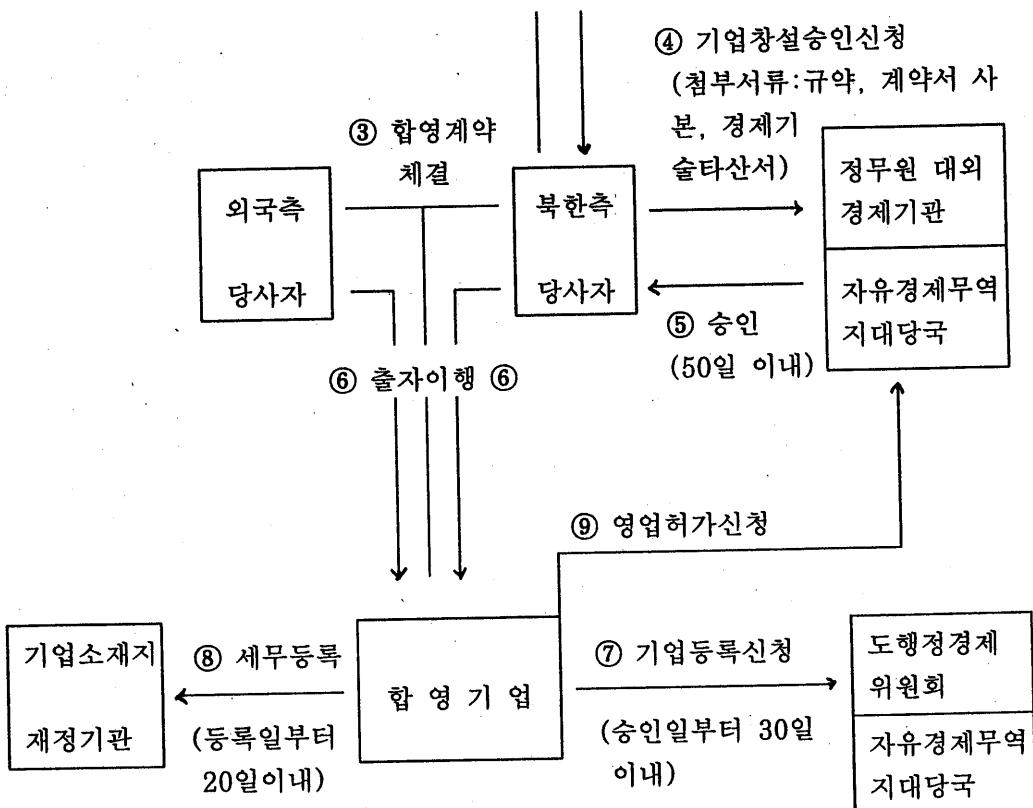
한편 개정 합영법은 종전과 달리 합영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제10조제3문), 여기에서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우리나라로 치면 세무서를 의미한다고 보겠는데, 북한은 명목상 세금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재정문제를 다루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 밖에 개정 합영법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아래 북한 또는 다른 나라에 자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13조) 경영활동은 승인된 업종범위안에서만 가능하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그 관할구분은 투자규모에 따르게 될 것이다)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제22조) 존속 기간연장시 등록변경을 규정하고 있다(제45조).

개정 합영법상 합영기업 설립절차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개정 합영법상 합영기업 설립절차





(6) 합영기업에 대한 출자

합영회사에 대한 출자총액과 양측 당사자의 출자지분은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것은 신·구 합영법제상 차이가 없다(구법 제7조제1문, 구 시행세칙 제16조, 개정 시행세칙 제26조, 개정법 제11조제1문).

구 합영법은 출자목적물로서 화폐재산·현물재산과 발명권·기술문헌 등을 규정하고(제7조제2문) 현물재산·발명권·기술문헌 등의 출자가액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평가한다고 하였으며(제7조제3문) 한쪽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물을 제3자에게 넘겨주고자 할 때에는 상대편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제8조제2문) 합영회사의 등록자금은 줄일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었다(제9조). 구 시행세칙은 출자목적물로서 화폐·건물·원료·기계설비·발명권·기술문헌·토지 등을 규정하고(제17조) 출자화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통화로 하며(제18조) 건물·원료·기계설비·발명권·기술문헌 등으로 출차할 때 그 출자가액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합영당

사자들이 평가하고(제19조), 토지를 출자지분에 넣지 않을 때에는 국가가격재정기관이 정하는 토지사용료를 물도록 하며(제20조) 그 밖에 등록자금을 줄일 수 없다는 점(제21조), 출자지분의 양도시 상대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제23조) 등 구 합영법을 약간 구체화한 조문 또는 중복되는 조문을 두고 있었다.

출자목적물에 관하여 살펴보면 북한측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외화를 비롯한 투자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건물 등으로 출자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외국측 당사자로 하여금 선진기술 및 자본재를 출자하도록 하여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출자의 경우 평가주체가 합영당사자로 되어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될 경우에도 제3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없고 노우하우·산업재산권 등의 경우 출자방법이 명확하지 못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었으며 출자화폐에 대하여 적용하는 환율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다만,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한 북한 원화의 결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환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구 시행세칙 제50조제2문) 등 몇가지 미비점을 보여 주었다.

개정 시행세칙은 이와 같은 미비점을 상당히 보완하고 북한측의 합영추진목표에 부합되는 몇가지 사항을 추가규정하였다. 우선 출자목적물로서 화폐·건물·기계설비·원료·발명권·기술문헌·기술비결·토지사용권 등을 규정하였는데(제27조), 기술비결은 노우하우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토지의 경우 토지의 사유를 금지하고 그 사용권만을 출자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출자화폐의 환산도 북한 무역은행이 공표하는 환율에 따르도록 명시하였는데(제29조) 무역환율은 그들의 이른바 공정환율보다는 공정하지만 비공식환율, 즉 암시장에서의 실제화폐가치를 반영한 환율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그리고 건물·기계설비·원료·발명권·기술문헌·기술비결 등 현물출자시 출자가액 평가는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종전과 달리 합영주관기관(합영공업총국)이 평가한데 따라 합영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여(제30조) 오히려 후퇴된 느낌을 갖게 한다.

북한 당국이나 북한측 당사자가 사실상 동일하거나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 제3기관의 조정·중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외국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설비·기술문헌·발명권·기술비결·물자 등은 합영기업의 창설과 운영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보장(공급)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외국인 선진설비 및 기술도입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제31조), 합영회사는 당사자들이 출자한 건물·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을 합영주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제32조) 특히 외국측 당사자가 기술특허로 출자할 때에는 특히등록

문헌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허권으로 출자할 때에는 특허권이전등록이 끝났을 때에 출자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어 출자방법 내지 출자시점을 명시하고 있다(제34조, 북한의 기술도입 관련제도에 관하여는 법제처간『북한법제개요』p.32이하 참조).

또한 출자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합영당사자들은 계약서에서 정해진 기간안에 자기몫을 전부 출자하도록 하고, 일방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로부터 초래된 손해를 다른 당사자에게 보상하도록 하였으며(제35조),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이 자기 출자몫을 모두 출자하면 이사회에서 이를 확정하고 합영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출자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였다(제36조). 여기에서『계약서에서 정해진 기간』이라 함은 앞서 합영회사설립절차를 살펴볼 때 언급한 개정 시행세칙 제18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바, 영업허가전 출자시점 및 출자이행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진 기간이어야 할 것이다.

기타 개정 시행세칙의 관련규정을 보면 i) 합영회사의 기본건설은 국가건설위원회와 합의시공한 시공설계에 기초하여 북한측 당사자기관이 국가계획에 맞물려 진행하도록 하여(제33조) 북한민법상 계획에 기초한 계약으로서 기본건설시공계약과의 조화를 도모하였고, ii) 합영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을 줄일 수 없다는 규정을 이어받았으며(제37조), iii) 출자몫의 양도시 상대편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상대편 당사자는 출자몫을 양도받음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제38조) 등을 들 수 있다(기본건설시공계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북한 민법 제117조 내지 제124조 및 법제처간『북한법제개요』p.318 등 참조).

개정 합영법에서는 출자와 관련하여 4개 조문을 두고 있다.

먼저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뜻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는 점을 이어받고(제11조제1문), 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기술비결·토지이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한다고 하여 출자목적물의 용어를 우리측에 보다 근접시켰으며(제11조제2문), 출자가액은 해당시기에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정하도록 하여(제11조제3문) 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합영공업총국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그렇다고 하여 개정 시행세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합영당사자의 출자몫 처분에 관하여는 자기의 출자몫을 상속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2조) 상속까지 허용하는 등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촛점을 맞추고 있으나 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우선 양수권을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합영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합영공업총국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

국)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14조), 이 때에는 개정 시행세칙 제18조 및 제21조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 내지 70%이상이어야 하며,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고, 늘이고자 할 경우 기업창설승인기관과 합의한 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5조). 여기에서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의 개념 내지 상호관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며 투자규모의 30% 내지 70%의 관계도 어느 규모에 몇 %가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출자에 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가한 것으로서 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합영계약에 의한 출자는 합영당사자가 일정한 지분율에 따른 출자로 합영기업을 설립하고 기업경영에 참가하여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와 별도로 중국의 합작기업처럼 조합적 형태의 출자 내지 계약적 합작투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과거 동구권 국가들이 많이 활용하였던 산업협력협정에 의한 간접투자방식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남는다.

(7) 합영기업의 조직

합영회사 내지 합영기업은 법인이고 우리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슷하나 그 조직은 다소 특이하다.

구 합영법에서는 합영회사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합영회사 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합영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 등 합영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도록 하였다(제10조제1문 및 제2문·제11조).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규약인데, 합영회사는 규약에 따라 경영활동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10조제3문). 그리고 회사의 집행기관(관리성원이라는 용어사용)으로서 사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정검열원이라는 감사기관을 예정하고 있다. 회사사장은 합영회사조직에 관한 계약, 합영회사 규약 및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을 조직·진행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을 진다(제12조). 재정검열원은 결산문건을 검열하여 이사회의 비준을 받도록 하였다(제20조).

구 시행세칙은 합영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필요한 수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합영당사자들이 파견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합영계약에서 정한다는 점을 규정하고(제25조),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1년에 한번이상 이사장이 소집하되 이사장의 위임으로 부이사장이 소집할 수도

있게 하고 소집날짜와 장소, 토의안건을 이사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으며(제26조),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회사등록자금의 증가, 회사존속기간의 연장, 회사의 해산, 사장과 부사장의 임명 및 해임 등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였고(제27조), 이사회의 의결방식은 회의에 참가한 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제28조) 만장일치제를 채택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 사장외에 부사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제29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회는 우리 상법상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기능까지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합영당사자가 파견하는 이사로 구성한다고만 규정하여 출자지분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또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업법의 원리에 크게 어긋나며 출자지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채권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 밖에 사장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도 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이 없어 합영회사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고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개정 시행세칙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령적용상 논란이 있을 만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약간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있다.

먼저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3명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합영당사자들이 선출(종전에는『파견』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사의 수와 이사장·부이사장은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계약과 회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였고(제39조),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는 5년이고 필요한 경우 합영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기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되 교체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다(제40조).

이사회의 소집에 관하여서는 매년 한번 이상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의 위임으로 부이사장이 소집할 수도 있으며 날짜와 장소·토의안건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종전과 같으나 이사회 참가가 곤란할 때 의결권을 위임하여 대리참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제41조)과 이사회 소집과 관련된 비용(그 액수는 미미할 것이지만)을 재정 예산에 예전하여 보장하도록 한 점(제42조)이 다르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합영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합영회사 존속기간의 연장,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등 합영회사의 운영에서 대두되는 중요한 문제로 하였는데(제43조) 등록자금 등의 양도, 회사기업활동의 중지 등을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보다 관심을 끄는 개정은 의결정족수인 바,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이사장·부이사장·이사·사장·부사장·재정검열원·청산인의 임명

및 해임, 결산과 분배문제 등은 이사회에 참가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그 밖의 문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종전의 만장일치제를 약간 완화하였다(제44조제1문). 그러나 이 역시 서방국가 기업법의 법리로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으며 앞에서 설명한 바, 이사회 구성시 출자지분을 고려하도록 개정한 취지도 전혀 살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출자목적물의 평가도 나중에 출자액을 환수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영권의 소재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서의 의미는 갖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선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사회 의결방식에 관하여는 거수표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 또는 투표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제44조제2문) 별 의미는 없는 규정이다.

합영회사의 관리성원과 사장의 지위·임무에 관하여서는 종전과 달라진 바가 없으나(제45조·제46조) 사장과 부사장은 각각 다른 당사자측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 구성원들은 필요시 사장·부사장 등 관리성원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며 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에서 대두되는 중요한 문제를 당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일꾼(임직원)들과 반드시 협의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제47조). 사장과 부사장을 쌍방이 분담하도록 한 것 자체는 특별한 법적 의미가 없으며 다만 사장의 권한 행사시 필요적 협의를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부사장 등 임직원의 사장에 대한 약간의 견제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책임경영의 요청에는 어긋난다고 하겠다. 이사와 임원의 겸직허용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개정 합영법에서는 합영기업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는 점과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을 규정하며 재정검열원을 두어 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고 이사회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한 것 등 종전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고(제16조·제17조 및 제19조) 다만 합영기업 관리성원의 명칭을 책임자·부책임자·재정부기성원 등으로 표현한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제18조).

따라서 개정 시행세칙의 중요규정은 대부분 당분간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며 용어의 일치를 위한 정비차원의 시행세칙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8) 합영기업의 경영활동과 생산 및 판매

구 합영법은 제14조에서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원료·자료·반제품들을 북한 내에서 샀을 때 그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합영회사가 대외시장에서 물자를 수입할 때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합영회사는 자기의 생산제품을 대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구 합영법상 합영회사 성립후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경영활동에 관한 규정은 이 2개의 조문 뿐이며, 구 시행세칙은 제5장에서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라는 표제 아래 9개의 조문을 두고 있었는데 그후 개정 시행세칙은 제5장을 대폭 보강하여 16개 조문으로 확대 개정하였다.

구 시행세칙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합영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자재·반제품·설비(이하 물자라 한다)를 북한에서 사쓸 수 있으며, 해당기관·기업소는 합영회사가 요구하는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합영회사는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사쓸 수 없는 물자는 다른 나라에서 사쓸 수 있다(제31조). 합영회사는 발명권·기술문헌·기술비결 등 앞선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울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제32조).

한편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제33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제품을 북한에서 사고 파는 것은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고 이때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다만 합영회사의 일부 경영용물자는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사쓸 수도 있도록 하였다(제34조). 또한 합영회사는 수출입업무를 직접할 수도 있고 북한의 무역기관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35조) 합영회사의 수출입에는 별도의 혜가를 받지 않도록 하였고(제36조)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물지 않도록 하였다(제37조). 그 밖에 합영회사는 북한의 실정에 따라 물·전기·난방·전화 등의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제38조)과 합영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북한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점(제39조)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정 시행세칙은 종전의 규정보다 비교적 상세하고 체계있게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합영회사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자재·반제품·설비·경영용물자(이하 물자라 한다)를 북한에서 사쓰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쓴다는 규정(제48조)은 종전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북한 국내에서 조달하는 물자와 외국에서 수입하여 조달하는 물자를 구분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먼저 합영회사가 북한내에서 구입하는 물자는 국가계획의 테두리안에서(이를 『맞물려』라고 표현하였다)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물자·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구입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불가능한 물자는 북한의 무역기관들과 다른 합영·합작회사 및 그 밖에 국가적으로 승인된 자재공급기관 또는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49조) 이는 합영회사에 어느 정도 유통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합영회사가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물자를 사쓰려고 할 때에는 그 소요량을 전 해 3·4분기까지 합영상사에 제기하여 국가계획(합영수출계획)에 맞물린 다음 합영자재 상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때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합영수출계획에 예견된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제50조).

합영회사가 외국에서 물자를 구입하는데 관하여는 우선 물자수입대상을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사쓸 수 없는 물자로 한정하고 이는 합영회사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북한 또는 다른 나라의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51조) 특히 발명권·기술문헌·기술비결 등 앞선 기술은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52조), 이와 같은 규정은 종전과 유사하다(다만 수입과 수출을 구분하여 조문을 둘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보인다). 합영회사가 회사경영용으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승인만 받으며 관세를 물지 않도록 하였는 바(제59조), 이 역시 종전과 유사하나 반입승인을 따로 규정한 점이 다르고 그 밖에 최초 외국측 당사자가 투자지분으로 들여오는 물자에 대하여서도 같이 취급하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제53조) 북한내에서의 판매에 관하여서도 상세한 규정을 둔 점에서 상당히 개선된 면모를 보여준다. 합영회사의 제품수출은 직접할 수도 있고 북한의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도 수출허가는 받지 않고 반출승인만 받도록 한 점에서(제54조) 종전의 규정과 유사하면서도 차이를 보여준다.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북한내에서 판매하려 할 때에는 무역기관 다른 합영·합작회사를 대상으로 실현해야 하며 국가승인을 받아 자재공급기관·상업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기업소에도 넘겨줄 수 있다(제55조). 또한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질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까지는 합영주관기관의 승인밑에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 이때 판매가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외화가격에 기초하여 국가가격체정기관이 정한다(제56조). 합영회사는 제56조에 의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받은 상품대금을 국가의 승인밑에 북한에서 사쓰는 물자값과 종업원들의 로임, 각종 사용료·국가납부금 등을 지출하는데 쓸 수 있다(제57조).

그 밖에 합영회사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넘기려고 할 때는 합영주관기관의 승인(대당 값이 5만달러이상되는 설비와 운전기재는 국가승인)을 받은 다음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제58조).

한편 합영회사의 수출입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즉 합영회사가 국가승인을 받지 않고 생산 및 경영과 관련없는 물자를 수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였을 때는 해당기관이 그 물자를 억류 또는 몰수하거나 관세나 벌금을 물리는 등 해당한 제재를 주도록 하였다(제60조).

개정 시행세칙은 또한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합영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는 합영회사가 스스로 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품질감독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합영회사가 국가품질감독기관에 위탁해 제품검사를 행할 때는 검사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제61조). 그 밖에 합영회사는 정해진데 따라 회사에서 쓰는 물·전기·난방·전화 등의 사용료를 물어야 하며(제62조) 합영회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북한의 보험에 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제63조)은 종전과 같다.

개정 합영법은 합영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몇개의 조항을 할애하고 있다.
먼저 합영기업은 기본규약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는데(제20조) 이는 구 합영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었다(제10조제2문).

이어서 합영기업의 조업개시의무를 규정하였는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안에 조업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업창설승인기관(합영공업총국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신청하여 조업기일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1조). 조업개시일은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받기 전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제22조). 그리고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하며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5조).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에 관하여서는 2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는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내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북한내에서 팔 수 있도록 하되 정해진 기간안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계획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제23조) 아울러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해당 수출입물자에 대하여는 반출입승인만을 받도록 하였다(제24조).

개정 합영법은 그전에 나온 개정 시행세칙과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배려를 하고 있으나 내용이 워낙 간단하여 개정 시행세칙과 상호 보완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①합영기업이 북한내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함에 있어서 그들의 계획경제체제와 조화시켜 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과 ②생산된 제품을 북한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그에 관한 몇가지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 그리고 ③물자 및 제품의 수출입시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비현실적 태도에서 벗어나 반출입승인을 규정한 것(이는 우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북한과의 교역을 수출입으로 보지 않고 반출입으로 규정한 것에서도 영향을 받았는지 모른다) ④제품검사, 수출입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한 것 등은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내에서 구매력이 생기지 않는 한 북한내 내수판매 허용은 별의미가 없으며 북한산 원자재의 조달도 사회주의체제에 의숙하지 못한 서방 기업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예컨대 북한내에서의 생산물자구입 및 제품판매창구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영회사의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근의 사회주의상업법 제9장의 규정에 의하여 일체의 사회주의 상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 및 상업부문에 대한 검열감독과 통제가 행하여 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도관리 및 검열감독 · 통제는 중앙 상업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이 김일성의 교시와 당정책 및 국가의 법령이나 지시 · 결정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영회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엄격한 계획경제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점에 있어서 합영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에 관한 개정 합영법 및 시행세칙상의 여러 조항도 여전히 형식적이며 편면적인 규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물자구입 및 제품판매와 관련되는 북한의 법제 기타 정책, 예컨대 민법상 계획적 계약의 법리 및 관련법규, 인민경제계획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간,『북한의 합영법제』p.46이하 참조).

수출입에 관한 사항도 북한의 일반적 무역제도와의 관계에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보세제도와의 관계도 언급되었어야 할 것이다(북한의 무역제도 · 관세제도에 관하여는 위책 p.66이하 참조).

그 밖에 물 · 전기 · 난방 · 전화 등 사회간접자본의 이용에 관하여 사용료 부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 철도법 · 해운법 · 항만법 · 상하수도관리규정 · 난방관리규정 등 다수의 관계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보장규정이 흡결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사회간접자본의 이용관계에 관하여는 위책 p.78이하 참조).

(9) 노무관리

북한의 구 합영법은 합영회사의 노무관리에 관하여 합영회사가 종업원을 받아들이

고 내보내는 것은 북한의 법령과 합영당사자 쌍방의 계약에 따라 노력을 관리하며 이용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제16조).

노무관리에 관한 북한 법령에는 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 및 노동규율규정이 있으며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간,『북한법제개요』 p.453이하 참조) 최근 외국 투자기업노동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들 노동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합영계약의 내용은 여기에 위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구 시행세칙에서는 『제6장 노력관리』에서 5개 조문을 두어 ①합영회사가 북한의 노동력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북한 노동행정기관을 통하여도록 하고(제40조) ②합영회사 종업원들의 노동시간·휴식·노동보호는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르며(제41조) ③합영회사는 다른 나라 사람을 종업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제42조) ④합영회사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고 필요한 기능공들을 키워야 하며(제43조) ⑤합영회사 종업원들은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입고(제44조제1문) 이와 관련하여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노동보수의 7%, 종업원들은 자기가 받는 노동보수의 1%를 사회보험료로 물도록 하였다(제44조제2문).

개정 시행세칙은 『제6장 노력관리』에서 10개 조문을 두어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먼저 합영회사가 북한주민을 채용·해고하는 것은 노동행정기관을 통하여야 한다는 것은 종전과 같으나 노동행정기관은 합영회사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하였다(제64조). 이러한 규정은 합영회사의 근로자 채용 및 해고는 북한의 노동력관리체계에 따를 것을 선언한 것인 바(여기에 관한 내용은 법제처간,『북한법제개요』 p.474이하 참조), 합영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력·경력·기능 등을 갖춘 자만을 채용하려고 할 것이나 북한의 노동행정기관을 통할 경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고 또한 노동력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경우 합영회사는 임금인상 등 근로자 유인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지만 노동행정기관의 뒷받침이 없으면 우수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개정 시행세칙에서는 우선적 공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일단 채용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극도의 불황으로 인한 기업규모의 축소 등 경영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서방국가에서 처럼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근무태만 기타 기업의 경영질서 교란행위가 있을 때 북한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것과 별도로 당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북한의 노동관련법규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개정 시행세칙에서는 『합영회사 사장은 회사의 로력을 받아들이거나 내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로력관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상대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미

리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제65조)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노동력의 채용·해고에서 겪는 어려움은 합영회사 내부에서의 문제 또는 합영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행정기관과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규정으로서 별 의미가 없으며 여기에서 합영회사 사장으로 하여금 양측 합영당사자와 협의하라고 한 것은 사장이 어느 한쪽 당사자만을 대표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입법자는 아직도 합영기업의 기본적인 구도마저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미숙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하여는 국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점이 종전과 다른 데(제66조) 북한의 출입국 관계법령이나 출입국절차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다(자유경제무역지대에 소재한 합영기업의 경우는 별도의 출입국규정을 제정·공표하였으므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시행세칙은 『해당 제기관은 회사활동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합영회사성원들의 재외출장수속을 제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제72조)라고 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입국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행정기관의 추상적 의무의 형식을 갖고 있어 실제 출입국을 하는 개인 입장에서 볼 때 확실한 보장수단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합영회사 종업원 내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르도록 하고(제68조) 기능습득에 관하여 배려하고 있는 것(제69조)은 종전 시행세칙(제41조·제43조)과 같으나 『해당기관들은 합영사업과 관련없는 일에 합영회사의 종업원들을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제67조)라는 규정을 두어 북한의 각종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각 기업소의 근로자들을 국가사업에 동원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한 점이 눈에 띈다.

합영회사 종업원들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과 사회보험료에 관한 규정(제70조 및 제71조)은 종전 시행세칙(제44조)과 같다.

그 밖에 개정 시행세칙은 합영회사로 하여금 회사내에 조직된 사회단체들의 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하였는데(제73조) 여기에서 사회단체는 개정 합영법 및 외국인기업법에서 직업동맹이라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 직업동맹·여성동맹 등 각종 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서방측 입장에서는 노동조합활동과의 관계가 애매하고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에서 직업동맹의 활동경향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노동운동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체사상의 확산 등 정치적 성향을 떨 것으로 보여 기업활동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합영법은 3개 조문만 두고 있는데, 먼저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북한의 노동력으로 채용하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리성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제26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범위를 한정하고 북한 당국의 승인을 얻게한 점에서 종전과 차이가 있으며(개정 시행세칙은『국가의 승인 밑에』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합영법은『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라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 특이하다), 다음으로 합영기업은 북한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노동력을 관리·이용하도록 하여(제27조) 이미 제정·공표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의 적용근거를 명시한 점에서 종전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외국인투자법 등 투자법제의 하부시행규정의 성격이면서도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 밖에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결성할 수 있고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도록 하였는데(제32조) 직업동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정치적 성향 등 문제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의 내용 및 노동법규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10) 외화 및 재정관리

구 합영법은 재정관리에 관하여서는 주로 외화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하였는 바, 합영회사는 북한은행에 계좌를 설치하고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합영계약서에서 규정하겠다는 것인지, 합영회사운영과정에서 수시로 합영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른 나라 은행(북한에 진출한 외국은행만을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하다)에도 계좌를 둘 수 있으며 합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다른 나라 은행에서도 대부받을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었으며(제13조), 합영회사 결산문건의 겸열에 관하여『제4장 결산과 분배』에서 규정을 두었고(제20조), 외화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으로서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임에 대하여 북한의 외국인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노임의 일부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는 규정(제17조)과 합영회사 자체도 합영회사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외국측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돈(이윤)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는 규정(제21조·제22조) 정도를 두고 있었다.

구 시행세칙은『제7장 외화관리』에서 8개조문을 두고 있었는데 ①합영회사는 북한의 무역은행 또는 무역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외화계좌와 원화계좌를 두도록 하고 합영회사의 모든 외화수입과 지출은 은행에 있는 외화계좌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45조) ②합영회사는 은행계좌에 있는 외화잔고에 대하여 무역은행이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도록 하였고(제46조) ③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 은행에도 계좌를 둘 수 있으며(제47조 : 이는 합영법에도 규정된 사항이다) ④합영회사는 북한내에서 무역기관을 통하여 구입하는 상품대금과 여러가지 사용료는 원화로 지불하도록 하였고(제48조) ⑤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서 부족되는 외화를 북한은행 또는 외국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49조 : 이 역시 합영법과 중복규정이다) ⑥합영회사의 경영계획은 원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외화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화결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화폐환산비율에 따르도록 하였으며(제50조) ⑦합영회사는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의 이익배당금을 그의 요구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송금해 주어야 하고, 이익배당금을 다른 나라에 송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문건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제51조) ⑧합영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임의 60%까지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2조).

구 합영법제에서 외화관리에 많은 조문을 할애한 것은 그 입법배경의 하나가 외환부족의 타개에 있었다는 점과 합영회사의 속성상 대외적 경영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외화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종전에 북한에서의 외환관리는 국가계획위원회·재정부·무역부 등 관계정부기관에 의하여 수립된 외환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재정부의 감독아래 조선중앙은행과 무역은행이 전담하고 금강은행·대성은행이 무역상사 등의 수출입거래에 따른 일부 대외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다. 수입 등 대외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외환은 외환수급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로 무역은행을 통하여 할당 배정되며 대외지급에 대하여서는 무역부·재정부 또는 조선중앙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체처간『북한의 합영법제』p.108 이하 참조).

개정 시행세칙에서는 제7장의 제명을『재정관리』라고 하고 8개 조문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①합영회사는 북한 무역은행 또는 국가가 정한 다른 대외결제은행(종전에는 무역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이라고 규정하였다)에 외화계좌와 원화계좌를 두고, 이사회의 결정(종전에는 합영당사자들의 합의로 규정하였는데 합영회사 설립후에는 합영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에 따라 다른 나라의 은행에 외화계좌를 둘 수 있으며, 합영회사의 모든 외화수입과 수출은 은행에 있는 계좌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74조) ②합영회사는 은행의 예금계좌에 있는 외화잔고에 대하여 이자를 받도록 하였으며(제75조) ③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서 부족한 외화를 북한은행 또는 외국은행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덧붙여 대부금은 합영회사가 정해진 기간안에 상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제76조) ④합영회사는 북한내에서 무역기관과 다른 합영·합작회사를 통하여 사고파는 상품대금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외화로 지불하되, 국가의 승인을 따로 받은 경우 예외를 인정한 점이 종전과 다르며(제77조) ⑤합영회사의 경영계산은 원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이는 합영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외화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화의 환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화폐환산비율(이는 무역환율로서 공정환율보다 유리하지만 암시세보다는 훨씬 불리함을 앞에서 언급하였다)에 따르도록 하였으며(제78조) ⑥외국측 합영당사자는 이익배당금을 비롯하여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문건을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고(제79조) ⑦합영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회사에서 받은 노임액 가운데 필요한 부분(구 시행세칙은 노임의 60%로 제한)을 외국에 송금할 수 있으며(제80조) ⑧합영회사에 대한 재정검열은 이사회가 임명한 재정검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과 달리 필요한 경우 합영주관기관(합영공업총국)이 지정하는 성원들도 재정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제81조). 재정검열에 관한 사항을 이 장에 추가한 것은 장의 제명을『재정관리』로 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개정 합영법은 4개 조문을 할애하여 구 합영법보다는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북한은행에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 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28조) 개정 시행세칙에서 무역은행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은행에 계좌를 두려면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차이를 보여주며, 다음으로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은행 또는 외국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제29조)은 종전과 같으나 북한은행에서 대부는 북한의 외환사정상 기대하기 어렵고 외국은행에서 대부는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외환관리에 관하여서는 외화관리법이 따로 제정되었고 외국투자은행법의 제정으로 합영형태의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여기에 관하여는 뒤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합영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인 바, 여기에 관하여서는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제30조)라고 규정하여 별도의 규범제정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재정부기계산규범이란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 및 그 세칙을 의미하는데 이들 법령은 정식으로 공표하지 않았고 그 세칙은 북한의 합영기업을 통하여 입수되었는 바, 이는 6개장 21개조문(1개 조문이 매우 길게 되어 있어 상당한 분량이다)이며 이 책에서는 구체적 해설을 생략하고 그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북한의 보험에 들도록 하였는데(제

31조) 구 시행세칙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물자구입과 제품판매의 장에 규정하였다(구 시행세칙에서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북한의 보험에 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강제가입을 시사하고 있었던 점이 다르다).

북한은 보험에 관하여 민법에서 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존재여부 내지 보험제도 운영능력 등에 비추어 보험가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제처간,『북한의 합영법제』p.78이하 참조).

(11) 결산과 분배

신·구 합영법은 모두 결산과 분배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경영활동과 거의 비슷한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개정 시행세칙에서는『결산과 분배』 및『재정관리』를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결산과 분배는 회계재정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장별 편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다(앞에서 본 것처럼『재정관리』라는 장의 제명에 맞지 않게 외환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구 합영법의 규정을 보면 우선 합영회사는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경영활동을 결산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제1문).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자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하는데(제18조제2문) 여기에서 예비기금은 합영회사의 결손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조성하여야 하며 그 규모와 매년 조성비율은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제19조). 합영회사의 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과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제20조). 그리고 합영회사의 납세의무를 규정하였는데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합영회사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하되(합영회사종업원의 소득세 납부의무는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장에서 규정하였다) 합영회사는 생산을 시작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순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세의 감면을 청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제21조제1문 내지 제3문). 그런데 같은 조문에서 토지사용에 대한 토지사용료 납부의무를 규정하여 순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제21조제4문).

외국의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22조)은 외화관리를 규정한 장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구 시행세칙은 구 합영법과 중복되는 규정이 많은 바, 이를 제외하고 새로운 내용만 살펴보면 ①결산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제53조제2문) ②재정검열원은 합영회사의 경영활동정형(상황)을 검열할 수 있고 회사의 장부, 계약서를 비롯

한 문건을 열람할 수 있으며(제56조) 검열결과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제55조) ③예비기금의 조성은 등록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매년 순소득에서 5%씩 적립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예비기금을 등록자금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58조제2문·제4문) ④합영회사는 예비기금과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외에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등을 갖되 기금의 종류와 규모, 조성비율은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제59조) ⑤합영당사자들은 분배받은 돈을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제60조제2문) 등 합영법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었다.

합영회사의 결산제도는 외국인투자가의 이윤분배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에도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업회계제도가 미비되어 있어 투자자의 보호가 불안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개정 시행세칙에서 종전과 달라진 점을 보면 ①합영회사의 결산기간에 있어 합영을 시작한 첫해는 회사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합영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해는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제8조제2문) ②합영회사는 결산서를 재정검열원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1월안으로 합영주관기관(합영공업총국)과 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제84조) ③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합영회사소득세법(이는 세법개정전이기 때문이다)에 따라 소득세를 물도록 하였고(제85조) ④합영회사의 이익금분배는 매년 회사가 얻은 순소득에서 소득세와 납부금·각종 기금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합영당사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는 점(제86조제1문)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익금분배는 이사회에서 결산문건을 비준한 다음에 할 수 있고(제86조제2문) 합영회사는 전년도의 손실을 메꾸기 전에 순소득을 분배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전년도에 분배하지 못한 순소득은 당해년도 순소득에 포함시켜 분배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점이 다르며(제89조제1문: 여기에서『순소득』이란 회사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원가)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구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제3조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전년도의 손실』이란 제품판매 등 회사의 총수입이 물자구입 기타 생산원가에 소요된 총지출에 미달한 경우, 즉 결손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결손은 회사의 부채로서 다음년도에 순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쇄시켜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영회사의 결손금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예비기금에서 보충하도록 제87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기금과 다음년도 순소득중 어느 것부터 결손보전에 충당하여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못하다. 또한『전년도에 분배하지 못한 순소득』이란 개념은 제86조에서 배당유보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못하다) ⑤예비기금의

에 합영회사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성하는 각종 기금(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상금기금·문화후생기금 등)의 조성비율은 순소득의 3%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 것(제88조제2문)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개정 합영법은 개정 시행세칙과 다른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조문 수도『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에서 10개조문을 두고 있다.

첫째, 합영기업의 결산연도는 종전과 같으나 연간 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하도록 함으로써(제33조제2문) 개정 시행세칙(제84조)에서 다음 해 1월안으로 결산서를 합영주관기관 및 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변경시켰다.

둘째, 합영기업의 결산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합영기업의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노임을 지칭), 감가상각비,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하고 결산이윤(종전의 순소득을 의미한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다(제34조).

셋째, 예비기금의 적립에 관하여서는 매년 결산이윤의 5%씩 적립하되 등록자금의 25%까지 적립하도록 한 것은 같으나 예비기금의 용도는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는 외에 등록자본을 늘리는 데에도 쓸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상법상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허용하고 있다(제35조).

넷째, 합영기업이 조성해야 할 기금의 종류로서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여기에서 상금이란 상여금을 의미하는 것 같다)·문화후생기금(우리 법제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외에 양성기금(여기에서 양성이란 기술자 및 기능공 양성을 의미하는 것 같다)을 예시하고 있으며 기금의 종류와 규모외에 이용대상과 범위도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하도록 하였다(제36조).

다섯째, 이윤의 분배는 합영기업의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이 검열하고 이사회에서 비준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방법은 결산이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후 출자지분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하였는데(제37조) 이 조문은 종전과 거의 같다.

여섯째, 합영기업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제38조) 구 시행세칙에서 합영회사가 생산을 개시한 해부터 일정기간 감면을 받도록 한 것에 비교하여 크게 유리한 변경이 이루어졌다.

일곱째, 합영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이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하여 4년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제39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손보전은 예비기금으로도 가능하므로(제35조제2문) 전년도에 생긴 결손보전은 당해 연도의 결산이윤과 예비기금중 어떤 것부터 충당할 것인지 불명확하

고 보상기간을 연속하여 4년이상으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의미도 확실하지 않다.

여덟째,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합영공업총국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제40조) 분기단위로 결산을 하라는 것은 계획경제체제인 북한에서 전체적인 계획과의 일치여부를 수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나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이며 제33조에서 결산주기를 1년으로 규정한 취지와도 어긋난다.

아홉째, 외국측 당사자는 분배받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음은 종전과 같으나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본 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제41조)은 외국인투자법 제18조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서 적극적인 투자유인시책에 해당한다.

열째, 다른 나라의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외에 기타 소득(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과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여(제42조) 과실송금외에 투자재원의 환수까지를 보장한 것도 종전과 비교하여 개선된 점이라 할 수 있다.

결산과 분배는 외국측 합영당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종전의 합영법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이 부분의 개선만으로 기업활동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12) 해산 및 청산

구 합영법과 시행세칙에서는 합영회사의 종료, 즉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합영회사의 해산사유는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과 기타 사유로 인한 해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먼저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은 합영회사가 최초 합영계약시 정해 놓은 존속기간이 만료함으로써 해산되는 것으로서(존속기간은 합영계약서 및 회사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구 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5조 · 개정 시행세칙 제13조 및 제14조) 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하려면 존속기간 만료 6개월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외경제사업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합영회사등록기관에 등록(변경등록을 의미하는 것 같다)하여야 한다(구 합영법 제23조제2문 · 구 시행세칙 제61조제2문).

기타 사유로 인한 존속기간 만료전 해산에 있어서 해산사유를 보면 ① 합영회사가 계속하여 5년이상 결손을 냈을 때 ② 한편 합영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여 경영

활동에 엄중한 영향을 미친 때 ③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영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로 규정하였으며 해산여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구 합영법 제24조, 구 시행세칙 제62조).

해산결정이 난 후 그 절차를 보면 이사회는 청산인을 임명하고 사장은 자기의 업무를 청산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청산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등록기관에 청산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청산인의 업무수행은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구 시행세칙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 청산인은 합영회사의 현행업무를 종결시키고 남은 재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에게 분배하여야 하며(구 합영법 제25조, 구 시행세칙 제65조) 청산절차가 끝난 후에는 이사회의 비준을 받은 다음 회사등록기관에 청산절차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구 시행세칙 제67조).

한편 개정 시행세칙은 제9장의 제명을 『합영회사의 존속기간과 해산』으로 바꾸고 몇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먼저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합영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북한 영역안에서 조직하는(이 문구는 사실상 불필요하다)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까지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상 등은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존속기간의 기산일은 합영회사등록일부터로 하였다(제90조).

이어서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존속기간 연장은 기간만기 6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다음 합영회사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합영주관기관(합영공업총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합영주관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안에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존속기간연장승인을 받으면 10일안으로 회사등록기관에 기간연장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화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제91조).

존속기간 만료전 해산사유는 ①5년이상 연속 결손을 냈을 때 ②한편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영활동에 엄중한 후과(영향)를 미치게 하였을 때 ③그 밖의 사정으로 운영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로 하여 종전과 별로 달라진 바가 없으며 이사회의 결정(이는 만장일치를 요한다)을 거치도록 한 것도 같다(제92조).

그러나 합영회사의 강제해산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이 눈에 띠는 바, 합영주관기관은 합영회사가 북한의 법과 규정을 난폭하게(심하게) 위반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동안 기업을 중지시키거나 국가의 승인을 얻어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제93조).

우리 법제에서는 인·허가영업의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규정한 사례가 많고 그 밖에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제도 또는 휴면회사정리제도를 채택한 입

법례도 있으나 종전에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위의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영업정지 내지 해산명령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너무 막연하게 규정되고 북한의 전반적 법제운영실정이 낙후된 점에 비추어 이 제도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일방적 해산명령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북한측 당사자의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외국측 당사자가 합영회사를 해산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이사회의 만장일치결정이 있어야 하며 북한측이 반대할 경우 출자지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불합리한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청산절차도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사회에서 청산인을 임명하는 외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사장은 자기 업무를 청산위원회로 인계하도록 한 점이 크게 달라졌다(제94조). 또한 청산인도 선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북한의 재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들을 선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제95조제1문). 그런데 청산인의 임무나 청산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청산위원회 위주로 청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합영주관기관의 감독권을 강화한 것도 특징인데 합영주관기관은 청산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인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5조제2문).

청산위원회 구성원들이 청산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그들의 노동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합영회사 자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제95조제3문).

청산위원회는 청산업무가 끝나면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합영회사는 이사회에서 청산문건을 비준한 날부터 7일안으로 회사해산에 대한 문건을 합영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합영주관기관은 해당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합영당사자들과 재정부를 비롯한 해당기관들에 합영회사의 해산을 증명하는 문건을 보내도록 하였는데(제96조) 이는 종전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서는 합영주관기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던 것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며 이는 일단 북한지역내로 유인한 외국투자가들의 발목을 붙잡아 두기 위하여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합영회사는 해산이 선포된 날부터 5일안으로 회사등록기관에 신청하여 등록문건에서 제작(말소)하여야 하며, 합영당사자기관(북한측 합영당사자를 의미하는 것 같다)은 합영회사가 해산된 날부터 3년동안 합영회사의 등록과 청산문건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제97조).

개정 합영법에서는 개정 시행세칙과 또 다른 내용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해산사유로서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는데(제43조) 이는 종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산절차에 있어서 존속기간만료전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 합영회사의 임의적인 해산을 배제하려고 한 점에 특색이 있다(제44조제1문). 여기에서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이라 함은 합영공업총국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말하고, 합영회사의 해산에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보기드문 입법례이며, 합영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산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한은 이 두가지 모두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각각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종결짓고 청산을 완료한 다음 10일안에 기업등록취소절차를 받도록 하였다(제44조제2문·제3문). 이와 같은 개정 합영법 제44조의 규정은 개정 시행세칙상의 관련절차에 없는 내용으로서 양자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일부 해석상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합영법이 시행세칙에 우선하는 바, 그것은 상위법 때문이라기 보다는 후법이기 때문이다).

합영기업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전에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합영회사존속기간연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존속기간의 계산은 등록기관인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하도록 한 것은(제45조) 개정 시행세칙(제90조제3문·제91조제2문)과 같다.

(13) 분쟁해결

구 합영법은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1개 조문만을 두고 있었다(제26조).

그러나 구 시행세칙은 『제10장 분쟁해결』에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법에서 『중재기관』이라고 한 것을 『무역중재기관』으로 표시하고(제68조제2문), 중재는 북한의 무역중재사건심의절차에 따라 하되 중재원고와 중재피고는 중재원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69조), 재판은 북한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하고 다른 나라의 합영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 북한의 합영당사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였으며(제70조), 『제3국의 중재기관』도 역시 『제3국의 무역중재기관』으로 표시한 점(제71조) 등이 그것이다.

개정 시행세칙에서는 ①합영당사자들은 제기된 사건을 북한에서 심의해결 받으려 할 때에는 소송문건을 해당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제99조) ②합영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분쟁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들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제103조) ③상대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합영회사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해 줄 데 대하여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점(제104조)을 추가하고 있으나 앞의 두가지 내용은 규정하나마나한 당연한 사항이고 세번째 사항은 신소와 청원의 개념, 제기절차 등이 막연하여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 합영법은 구 합영법과 똑같은 내용의 1개 조문만을 두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은 협의 · 재판 · 중재의 3가지 분쟁해결수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분쟁의 주체 · 객체에 따라 분쟁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며 분쟁해결수단 · 절차도 본질적 차이를 갖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투자와 관련한 분쟁을 분쟁당사자에 따라 분류하면 합영계약 당사자간의 분쟁, 합영회사와 투자자간의 분쟁, 합영회사와 북한내 다른 법인 · 개인과의 분쟁, 투자자 및 합영기업과 북한 당국과의 분쟁 등이 있는 바, 위에서 본 북한의 합영법제에서는 고작 합영당사자간의 섭외적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책 내지 입법기술상 미숙성을 드러내고 있다(여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간, 『북한의 합영법제』 p.241이하 참조).

그리고 합영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합영법상의 규정을 보더라도 북한의 민사소송제도는 민사소송법 등에 나타나 있는 민사소송절차가 지나치게 정치성을 띠고 있으며 검사 등 국가기관의 관여가 상식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사관계에 관하여 조례가 깊은 판사 · 변호사 등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재제도의 경우는 관련법규도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가능성이 거의 없다(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간, 『북한법제개요』 p.380이하 참조).

따라서 가능한 한 제3국의 전통있는 중재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영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I. 합작법

1. 합작투자의 특징 및 법제정 의의

『합작』이라는 유형의 외국인투자는 구 합영법 체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투자유형이다. 이는 1992. 2. 19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에서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측에 처음 알려졌으며 그후 헌법에서도 합영과 합작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합작투자는 경제협력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합영투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남북기본합의서 챕터 당시에는 합작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우리측이 그 의미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종전의 합영투자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다. 그후 부속합의서를 채택할 때 비로소 『합영』과 『합작』을 병기하려는 북한측 의도를 알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의 법적 개념정의는 앞에서 본 외국인투자법 제2조에 나타나 있으며 이는 합작법 제2조에서 되풀이 규정하였다. 합작법에서는 합작기업을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합작기업의 특징은 경영권이 북한측 당사자에게 전속되고 외국측 당사자는 경영문제에 대하여 합작법 제6조에 의한 자문 내지 협의만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을 이룬다. 외국측 당사자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지분을 상환받거나 이윤을 분배받도록 하였는 바, 투자지분의 상환형태는 일종의 차관공여 내지 대부투자의 방식으로서 직접투자로 볼 수 없고 이윤분배형태는 이윤이 없으면 아무런 투자이익을 찾을 수 없는 데다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투자지분상환형태를 채택할 때에는 이자율과 상환시기에 관하여 상세한 약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윤분배의 형태를 채택할 때에는 최소한 경영평가 내지 결산방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급적 경영에 대한 실질적 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으며, 합작기업종료시는 물론 외국측 투자가의 사정에 따라 합작을 철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투자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합작법 제13조에서는 투자지분의 상환 내지 이윤분배를 원칙적으로 합작제품에 의하도록 하였는 바, 합작제품의 품질과 판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태환성 있는 외화에 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투자목적물을 기술 또는 산업재산권·노우하우 등으로 할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이나 비밀보호 등에 관하여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합작투자의 거래유형을 정리하여 보면 ①자본주의 방식의 차관공여 내지 대부투자와 간접투자 ②설비나 원료를 제공하고 제품을 받아내는 임가공방식의 거래 ③기술수출이나 마케팅 노우하우 등을 제공하는 거래(기술공여계약 또는 플랜트수출에 부가되는 투자 등) 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제조업 부문은 물론 자원개발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투자유형은 북한이 새로 고안한 독특한 방식으로서 중국의 합작경영기업과도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한 합작경영기업은 북한의 합영기업에 해당하는 합자경영기업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써, 합자경영기업과 비교하여 ①법인격의 취득이 필수적이 아닌 점 ②지분의 제한이 없고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 ③이사회의 구성이 법정요건이 아니며 그 의결절차 및 방식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할 수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합작경영기업은 기업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특징이 있을 뿐 경영참여의 배제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합작경영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합작기업계약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의 중대문제를 결정하며(동법 제12조),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 또는 상품을 분배하고 손해를 부담한다(동법 제22조).

합작경영기업은 계약에 의하여 중국측 당사자에게 경영권을 전부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하여 북한의 합작기업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합작기업·합영기업의 구분을 중국의 합작경영기업·합자경영기업의 구분과 동일시 하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이 구 합영법의 손질을 뒤로 미룬 채 합작법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법에서 합작투자를 합영투자나 외국인단독투자보다 앞에 내세운 것은(동법 제2조 등) 당분간 합작투자방식을 위주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정책추진배경을 살펴보면 ①합영투자나 외국인투자가 갖는 개방정책수행상 한계를 부

분적으로 극복하고 ②체제개방이 체제붕괴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며 ③과거 성공경험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당면한 외채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존의 합영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가지 미비점을 안고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서방국가의 대북투자를 유도하는 데 실패하였으나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가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하고 또 동구권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체제수호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됨에 따라 합영형태의 투자를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체제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개방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함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고안한 제도가 합작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방제국의 대북진출에 대한 측매제로서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북한과 대립·경쟁관계에 놓인 우리나라의 기업이 북한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측을 의식하여서라도 개방의 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수호와 개방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제한적 개방정책을 선택하였다며 이를 법제화한 것이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단독투자의 허용으로 자본주의적 요소의 침투라는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지역적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개방효과를 제약하는 단점이 되며 현재나진·선봉지역 등 극히 일부지역에만 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나진·선봉지역은 현재로서는 그 입지여건이 투자유치에 불리하기 때문에 당분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작법은 직접투자에 따른 부담을 제거함과 아울러 외채누적으로 인한 추가적 차관도입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북한은 합작법을 제정하여 외국측 당사자가 북한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기업논리가 북한에 침투하여 주체사상의 동요 등 체제유지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외국의 선진기술이나 설비를 도입하는 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의 합영경험이나 무역거래 그리고 최근 우리 기업가와의 접촉을 통하여 현재의 북한정세나 경제발전단계로 보아 합작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기업도 아직 북한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현재로서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임가공방식에 관심을 보이거나 실제 임가공방식에 의한 수출에 착수하고 있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북한은 차제에 임가공방식을 보다 고도화하고 확대하는데 필요한 자본·설비·기술·마케팅 채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작법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임가공방식은 유환 뿐만 아니라 무환방식 내지 제품상환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채난에 심각한 북한 당국이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합작법이 출자지분상환 또는 이윤분배는 제품상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도 무환방식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합영형태라는 전형적인 투자를 제약없이 추진하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두어야 하겠지만 ① 합영에 따르는 각종 난관과 위험부담을 면하고 ②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에서 일본·미국 등 서방국가에 앞서 교두보를 구축한다는데 의미를 두며 ③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결국 통일여건의 조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④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합작방식에 의한 대북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합작법의 주요내용

(1) 합작투자 대상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관광·봉사부문에도 조직할 수 있다(제3조). 이는 합작투자 유치의 목적이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진흥과 심화된 산업기술적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기술도입에 역점을 둔 것이며 관광 및 봉사부문을 명시한 것을 당장 착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또 외화가득울이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합작투자장려부문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규정하여(제4조) 외국인투자법의 규정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2) 합작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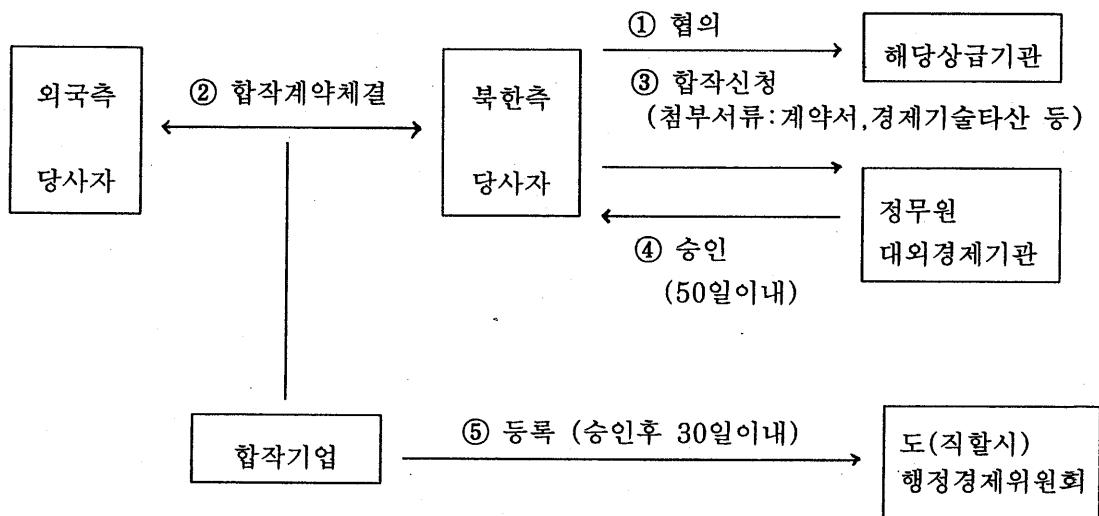
합작당사자에 관하여는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조선동포』만을 명시하고 있는데(제5조) 외국인투자법의 경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조선동포』를 명시한 것은 재일·재미교포(친북한 여부 불문)외에 우리측 기업을 끌어들여 서방국가들의 합자투자를 촉진시켜 보려는 의도라고 여겨진다.

(3) 합작투자절차

합작을 하려는 기관·기업소·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내도록 하였으며 합작승인 후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제6조제1문·제8조제1문) 구 합영법과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합작신청서에는 계약서외에 경제기술탄서를 비롯한 문건을 첨부하도록 하여(제6조제2문) 기술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한편 합작신청에 대한 승인기간을 신청서접수일부터 50일로 규정하고(제7조), 합작기업등록기간을 승인후 30일로 규정한 점(제8조제1문)은 구 합영법보다 개선된 점이라 할 수 있다. 합작기업창설일은 등록일로 하고 있다(제8조제2문). 이와 같은 절차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표 8> 합작기업의 창설절차



합작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에 관하여는 업종변경과 합작당사자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다. 업종변경은 원래 승인기관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9조), 당사자 변경에 관하여는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10조).

(4) 노동력관리

합작기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투자유형보다 폐쇄적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는데 외국인의 채용에 관하여는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가측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제11조) 기술도입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합작기업에도 뒤에서 살펴보게 될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지만 (동규정 제3조) 합작기업은 북한측 당사자가 단독으로 경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주민 출신 근로자에 대하여 제대로 적용될런지 의문이 간다.

(5) 원자재 수입 및 수출 등

합작기업은 국가가 승인한데 따라 생산 및 경여에 사용할 물자를 수입할 수 있고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제12조). 합작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는 그들의 외환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산으로 충당하고자 할 것이나 수출을 위하여 원자재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내수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주민들의 구매능력에 한계가 있고 외화획득이 절실한 사정에 비추어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합작투자에 대한 이윤분배도 합작제품으로 하도록 하였는데 다음에서 보는 문제가 있다.

(6) 투자지분의 상환 및 이윤분배

합작기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국제적 태환성이 있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으며 경우에 따라 원자재의 구상무역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합작법은 합작제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3조). 합작제품에 의한 투자상환 내지 이윤분배방식을 채택할 경우 외국투자가는 판매 등에 의하여 처분할 부담을 지게 되고 북한측의 납기준수, 제품의 품질보증 등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방식은 임가공방식에 의한 합작투자가 아닌 한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다(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로서 합작제품을 제공한다는 것보다는 북

한지역에서 생산한 합작제품의 판매를 외국측 당사자에게 책임지도록 하고 그 판매대금을 외국측 당사자가 투자재원의 상환 및 이윤에 충당한다는 방식으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라고 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임가공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합작법은 또한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일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이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4조) 이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장장치로써 굳이 명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합작기업에서 생산 및 제품판매 등에 관한 결정권이 북한측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이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한편 합작법은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 기타 수입은 북한의 외화관리 관련법규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제15조)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북한내에 거주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윤분배도 합작기업이 계약에 따라 북한밖에 있는 외국투자가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입법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애매하다.

(7) 합작기업의 경영활동

합작기업의 경영활동은 합영법에 의한 합영기업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합작법은 합작기업의 생산 및 경영을 북한측 당사자가 전담하게 하면서 이와 별도로 합작당사자들이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고 공동협의기구에서 새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합작경영상 중요문제들을 협의하도록 하였다(제16조).

공동협의기구의 성격 내지 지위는 단순한 경영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며 협의사항으로 규정된 것도 북한측에서 관심을 갖는 것들에 국한되어 있어 외국투자가의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내부조직에 관하여서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외국인투자법이나 합작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4조에서 『대표자』라는 개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적 규율을 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합작기업은 북한측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투자형태이며 북한의 국영기업, 협동단체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직원리로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공장당위원회(당간부·행정간부·지배인·기사장·기술자·생산책임당원으로 구성)조직이 준용될 것으로 보여진다(대안의 사업체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제처간,

『북한법제개요』 p.483이하 참조).

합작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은 월별·분기별·연도별로 하고 이때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제17조).

합작기업의 경영활동이 북한측에 전속되어 있는 만큼 외국투자가의 투자이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결산에 관하여서는 상세한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기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합작기업내의 결산담당기관 및 절차에 관하여서는 침묵을 지키고 결산방법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외국투자가의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결산에 대한 감독기관이 『해당기관』 내지 『재정은행기관』으로 되어 있어 불명확하고(정무원 산하로 되어 있는 중앙은행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재정은행기관이 감독하도록 한 취지도 분명하지 않다.

앞으로 『규정』이라고 표현된 회계관련법규의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기에 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8) 납세의무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합작기업이 북한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이윤을 얻게 되고 이를 외국투자가에게 분배할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에 의한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일 것으로 추정되나 외국투자가의 과세요건 및 납부절차 등에 명확하지 아니한 점을 보여준다.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에서는 합작기업은 등록일부터 20일이내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도록 하였다(제2조).

(9) 합작기업의 해산 및 합작의 종료

합작법은 합작당사자 일방의 합작계약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합작기업의 해산(제19조)과 합작계약에 정한 합작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합작의 종료(제20조)에 관하여 구분하고 있는데 합작기업의 해산이나 합작의 종료는 그 효과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합작기업의 해산요건은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이며 해산절차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해산의 효과를 보면 합작기업의 해산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지도록 하는 규정(제19조제2문)과 채권·채무의 청산 및 등록취소절차에 관한 규정(제20조제2문)만 두었을 뿐이며 구 합영법(제25조 및 시행세칙 제9장)에 규정되어 있는 합작기업잔여재산의 처분 및 외국투자가의 투자지분상환 등에 관하여서는 침묵하고 있어 이 역시 외국투자가의 보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음을 보여준다.

합작의 종료에 있어서도 채권·채무의 청산 및 등록취소절차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간 종료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종료 6개월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제20조제3문).

(10) 분쟁해결

합작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관하여는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제21조).

합작기업의 분쟁은 합영기업의 경우보다 그 유형이 단순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분쟁 당사자별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국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구 합영법의 태도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

IV. 외국인기업법

1. 외국인기업법의 입법의의

구 합영법은 북한내에 외국인단독투자에 의한 기업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갖는 대외개방정책의 한계라고 하겠으며 중국이 1986년에 외자기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북한은 중국보다 더 경직적인 경제운영체제를 갖고 있으며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모든 기업이 국가 또는 협동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영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측 당사자는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 있는 북한기업

과 합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바, 이러한 제도는 서방국가의 대북투자를 유인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었다.

북한이 1992년 10월에 외국인투자법제를 정비하면서 가장 고심한 문제는 개방폭의 확대범위라고 하겠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정책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측의 단독경영을 골자로 한 합작기업 형태의 고안과 일정지역에 한하여 외국인단독기업 형태의 투자를 허용하는 제한적 개방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외국인기업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극히 한정된 일부지역에만 외국인단독투자를 허용하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외자기업법이 중국 전역에서의 단독투자를 허용한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1993년 1월말에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역법에 의하여 법적 지위 내지 법률적 관계가 구체화되어 있으나 동법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행정당국이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나진·선봉지역 등 일부 지역만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외국인단독기업과 중국의 외자기업이 갖는 차이점으로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최초 10년동안 100%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후 10년동안은 주식 또는 지분의 25% 내지 30%를, 그 다음 10년 동안에는 80% 이상을 중국인이 보유하도록 하는 단계적 양도의무규정을 둘으로써 결국 외국기업의 경영기법 등을 전수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북한의 외국인기업법은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외국인단독기업법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대로 외국인투자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외국인투자법과 외국인기업법이 서로 저촉될 경우 우리 법제에서의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규정된 제반 내용의 주된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관하여는 뒤에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외국인기업법은 장별 구분을 두어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개 조문을 두고 있는데 일부 내용은 외국인투자법과 중복된다.

1994년 3월 제정된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은 총 8장 8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외국인기업법과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구체화 하였다. 이 규정은 다소 애매모호 하지만 외국인기업의 투자대상분야, 투자금지분야, 투자시 구비조건·등록자본 투자 문제·규정위반시 제재문제 등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규

정에는 외국인 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놓고도 엄격한 제한을 그대로 두고 있는 요소들이 눈에 띠고 있어 여전히 북한의 개방에는 한계가 엿보인다. 북한 당국이 외국인기업의 하위시행규정을 비교적 방대한 분량으로 제정한 것은 자유경제무역지대로의 집중적 투자유치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시행규정의 내용은 외국인기업법과 중복되는 내용도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합병법시행세칙의 경우보다 훨씬 상세하게 되어있다.

2. 외국인기업법의 주요내용

(1) 외국인기업에 관한 기본원칙

제1장에서는 입법목적, 외국인기업의 정의, 외국인기업의 투자대상분야, 외국투자가의 범위와 기타 외국투자가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외국인기업을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운영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외국인투자법 제3조 및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제2조제1문에서 같은 취지를 규정) 외국투자가의 범위를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외국인기업의 정의로서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외국인투자법 제2조에서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정의를 둔 것과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에서는 『외국투자가가 자본을 단독으로 투자하여 창설하며 등록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기업』이라고 하였는데(제2조제2문) 이는 『등록활동』에 목적을 둔 것처럼 되어 있어 잘못 정의한 것이라 여겨진다.

제3조에서는 외국인단독투자의 대상분야로서 『전자공업·자동화공업·기계제작공업·식료품가공공업·피복가공공업·일용품공업과 운수·봉사를 비롯한 외국인기업』을 규정하되, 『나라의 안정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의 창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대상분야는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 규정된 투자금지대상은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로서 외국인기업법의 경우보다 넓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만 설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일부러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은 투자대상분야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두었는데 먼저 제7조에서는 투자대상업종을 『①전자공업·자동화공업·기계제작공업·동력공업부문 ②식료가공공업·피부가공공업·일용품공업부문 ③건재공업·제약공업·화학공업부문 ④건설운수 및 봉사부문 ⑤이 밖에 필요한 부문』이라고 규정하여 좀더 상세히 예시하였고, 제8조에서는『외국인기업은 다음의 조건 가운데에서 한가지라도 만족시키는 경우에라야 창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서 『①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되어야 한다 ②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③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열거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투자금지사유로서 『①공화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②국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④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⑤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투자금지업종으로서 『①출판·보도·방송부문 ②체신부문 ③이 밖에 국가가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제7조의 투자대상업종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제10조의 투자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였으나 제10조제3호의 금지범위가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주의를 요하며, 제9조의 투자금지사유 역시 자의적인 제도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 및 제10조는 외국인기업 창설승인기준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일단 창설을 승인한 후에도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여 승인을 취소하려 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제4조에서는『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라고 하여 외국인기업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법 제4조에서『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서 외국인기업이 합작법의 경우와 달리 이를 반복하여 규정한 것은 외국투자가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일 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외국인투자법 제19조의 국유화 등 제한규정과 동법 제21조의 경영비밀보호규정보다 실효성이 적다고 여겨진다.

제5조에서는 외국투자가가 북한법규를 존중하고 준수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역시 추상적인 내용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제6조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외국인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제1조에서 외국투자가의 범위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규정한 것을 보충하고 있는 바(시행규정 제2조제3문에서도 같은 내용 반복 규정), 이 역시 외국인투자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외국인기업의 적극적 유치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외국인기업시행규정에서는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문건과 공화국의 기관·기업소에 내는 문건을 조선어로 써야 하며,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2) 외국인기업의 창설절차

외국인기업의 창설절차는 구 합영법이나 합작법에 비교하여 상세한 점에 특징이 있다.

외국인기업의 창설절차는 ①기업창설 사전교섭 ②기업 창설신청 ③창설승인 ④기업 등록 및 세무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구 합영법에 규정된 북한측 당사자의 사전교섭은 창설신청시 필요한 자금신용확인을 받기 위한 사전교섭으로 대체되어 있고 세무등록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북한측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세무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취지로 보여진다.

창설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제출하되 여기에는 기업의 규약·경제기술타산서·투자가의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비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외국투자가의 이름·주소·직무, 외국인기업의 책임자의 이름·국적·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업종·생산품종 및 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거래은행, 투자방식과 기간, 주요생산 공정자료, 생산제품의 실현대상시장과 실현방식, 기업의 기구, 종업원수 및 노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건설부지면적과 희망하는 위치, 용수·동력 및 원자재 소요량, 연도별 생산계획, 경영기간, 이 밖에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시행규정 제12조) 그 밖에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에 규정된 투자이행기간과 법 제28조에 규정된 존속기간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시행규정에서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기본규약·경제타산서·외국투자가에 대한 국명문건,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과 그에 대한 설명서, 외국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 이 밖에 필요한 문건』을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기본규약에는 『기업의 명칭·주소, 기업의 창설목적

· 경영범위 · 생산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방식과 기간, 기업의 기구 및 그 직능, 이사장 · 사장 · 부기장 · 재정감열원의 임무와 권한, 경영기간, 해산 및 청산, 기본 규약의 수정절차, 이 밖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고(제13조), 기본규약은 기업창설을 심사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제14조).

경제타산서에는『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계획, 생산계획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산공정설비의 기술 및 유익성 분석자료,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 주요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종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원 양성계획,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이 밖에 필요한 자료』를 기재하도록 하고(제15조),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에는『기계설비 및 자재 이름 · 규격 · 단위 · 수량 · 용도 · 단가 · 총액, 생산공장 및 회사명, 이 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계설비와 관련한 상품관리책을 첨부하도록 하며(제16조),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 기술비결의 설명서에는『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같은 것을 밝히고,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공업소유권증서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도록 하였다(제17조).

자금신용확인서는 사전에 발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신청전에 북한 당국에 사전교섭을 벌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발급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명확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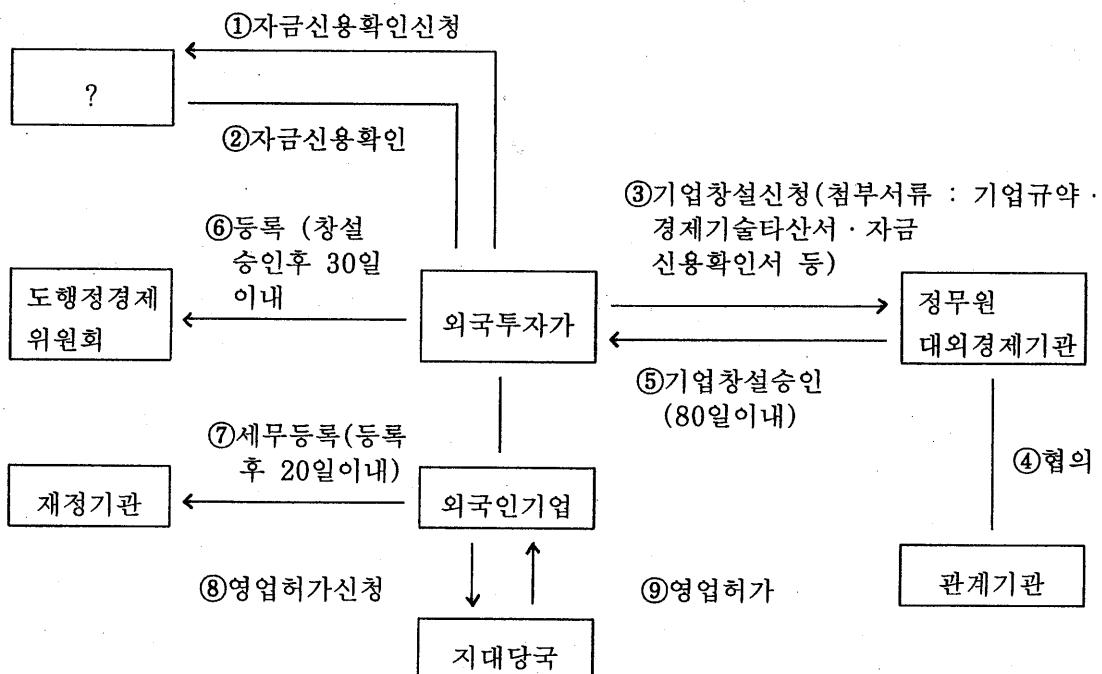
창설신청서는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시행규정 제12조: 여기에서 도행정경제위원회를『지대당국』으로 약칭하도록 하였는데 두기관은 서로 상이한 기관이기 때문에 혼선을 빚게 한다) 그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18조). 여기에서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포함된다라고 하였는데 그 관할 등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 즉 대외경제기관(이는 대외경제위원회를 잘못 표기한 것 같다)은 총투자액 2천만원이상의 하부구조 건설대상과 하부구조 건설대상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천만원이상의 대상을 심사승인하며, 지대당국(이는 도행정경제위원회를 약칭한 것이라고 하나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다)은 총투자액 2천만원까지의 하부구조 건설대상과 하부구조 건설대상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하되, 투자규모가 적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경제기관이 심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하는 대상도 지대당국이 창설신청서를 접수하는 바,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19조).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80일안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제8조, 시행규정 제20조). 승인처

리기간이 합작기업의 50일보다 길게 되어 있는 것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며 관계기관의 범위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장에 규정된 관리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창설이 승인되면 외국투자가는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기업등록신청서에는 『외국투자가의 이름·주소·국적·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주소, 외국인기업 책임자의 이름·국적·직무,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조업날자 이 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제9조제1문, 시행규정 제21조) 기업등록일부터 20일안에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제3문, 시행규정 제22조). 기업창설일은 기업등록일이 되도록 하였다(제9조제2문). 그 밖에 외국인기업법시행 규정에서는 영업허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이와같은 절차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9>와 같다.

<표 9> 외국인기업의 창설절차



외국인기업법은 기업창설승인후 투자이행여부에 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외국투자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2조). 외국투자가가 투자기간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한편 외국인기업법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북한의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1조, 시행규정 제24조), 이 규정은 없어도 무방하나 북한측이 외국인기업의 설립에 따른 건설용역에 참여하려는 적극적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위탁』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 민법 제117조 내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의 건설기관과 기본건설시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외국인기업법에서 건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을 감안하여 민법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기본건설시공계약은 이른바『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으로서 기관·기업소·단체들이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시공계약에 따르도록 하였으며(제117조제1문), 이때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고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넘겨받을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제118조).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들은 건설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일자와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며, 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대상별로 맷도록 하였다(제119조). 그리고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여야 하며, 건설부지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주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120조) 건설부지의 제공문제는 건설주인 외국투자가가 북한 당국과 별도로 토지임대계약을 맺음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외국인기업이 기업창설승인을 얻으면서 기본건설시공계약에 의한 부지제공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일자와 조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하고(제121조), 건설주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제때에 확인해 주어야 한다(제122조).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는 바,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하는 부하 시운전이 진행되었을 때 하도록 하였다(제123조). 시공주

는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로부터 1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줄 의무를 지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허물있는 자가 부담한다(제124조). 이처럼 북한은 건설공사에 관하여 건축법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민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하여 실제 운영상 많은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이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아래 북한 또는 타국에 지사·대표부·대리점·출장소등을 두거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북한 또는 타국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0조, 시행규정 제23조), 자회사설립에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법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위한 절차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밟을수 있다(시행규정 제11조).

(3) 외국인기업의 투자절차와 방법

외국인기업법은 투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창설신청서에 나타난 기간안에 투자할 것과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얻어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에서는 『제3장 투자절차와 방법』에서 10개조문을 두고 있다.

외국인기업의 총투자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등록자본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의 총액을 말하며 등록자본은 총투자액 가운데 지대당국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을 말한다(제26조).

등록자본의 규모는 ①총투자액 6백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이상 ②총투자액 6백만원이상부터 2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45%이상(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9백만원까지는 410만원) ③총투자액 2천만원이상부터 6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이상(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의 2천7백만원까지는 950만원) ④총투자액 6천만원이상은 총투자액의 30%이상 (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의 3천7백만원까지는 2천6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제26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은 정액제로(예컨대, 총투자액 2천만원이상 2천7백만원까지는 950만원), 어떤 부분은 비율로(예컨대, 총투자액 2천7백만원부터 6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를 줄일 수는 없으며 등록자본의 증액 또는 양도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과 지대당국에의 변경등록을 요구하고 있다(제27조, 법 제26조에도 같은 취지를 규정).

투자는 화폐재산·현물재산·기술비결·공업소유권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재산·기술비결·공업소유권의 가격은 외국투자가가 해당 시기에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제28조). 그리고 투자하는 현물재산·공업소유권·기술비결 등은 ①외국투자가가 소유권을 가지며 ②경쟁력이 강한 수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③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평가액이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제29조).

외국인기업은 투자포함으로 들여오는 기계설비를 대외상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검사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외상품검사기관은 검사의뢰서에 따라 기계설비를 검사하고 검사증을 발급해 주도록 하였다(제30조).

외국투자가는 일정한 기간내에 등록자본의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①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하고 ②투자를 여러번에 나누어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년안에 하되, 첫번째 투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등록자본의 15%이상을 투자하며 다음 투자는 첫번째 투자가 끝난 다음 외국인기업창설신청에 지적된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거나 첫번째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와 다음번의 투자기간(창설신청서에 기재된 투자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투자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외국인기업은 지대재정기관의 세무등록취소확인서와 기업등록증을 지대당국에 제출하고 기업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제31조). 외국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할 수 없는 경우 심사승인기관에 제기하여 투자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하부구조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 전액을, 그 밖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해당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재투자한 때로부터 5년안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았던 소득세액을 다시 바쳐야 한다(제33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법 제18조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투자후 5년이상 기업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감면요건과 감면비율은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제16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다).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투자할 때마다 투자검증보고서를 심사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투자검증보고서는 부기검증사무소가 발급한다(제34조).

(4)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외국인기업은 제한된 지역이기는 하나 북한내에서 외국투자가 단독으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의하여 기업활동을 하게 되므로 북한 당국은 외국인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외국인기업법『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에 14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동법 시행규정 제4장 생산과유통(7개조문), 제5장 재정부기(11개조문), 제6장 노력관리(10개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개시시점은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이다(시행규정 제35조제1문). 영업허가증은 지대당국이 발급하는데, 외국인기업은 영업허가신청서를 지대당국에 제출하고 기업등록신청서에 밝힌 조업예전날짜안에 발급받도록 하였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투자를 확인한 부기검증사무소의 투자검증보고서,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과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해당기관의 확인문건, 생산한 시제품의 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지대당국은 영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이를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35조제2문 내지 제5문).

이와 같은 영업허가절차는 외국인기업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업창설 및 등록절차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 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제14조, 시행규정 제36조제1문). 기업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시행규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고 규약은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시행규정 제14조) 경영활동의 기본틀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시행규정에서는 지대당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에 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시행규정 제36조제2문). 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지방기관에서 통제하도록 한 취지는 알 수 없으나 외국인기업에 대한 감독기관이 분산되어 경영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의한 대외경제위원회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도 동법 소정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앞에서 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세무감독을 수행하는 재정기관, 북한 국내에서의 원자재구입과 제품판매를 담당하는 무역기관,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기관 등 여러 행정기관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서 구입하거나 타국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은 수출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제16조, 시행규정 제37조제1문). 다만 외국인기업이 북한의 원료·자재·설비를 구입하거나 제품을 북한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도록 하였으며(제17조, 시행규정 제37조제2문), 북한의 기관·기업소에서 생산한 물자를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시행규정 제37조 제3문. 다만, 사무용품과 경영용비 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외국인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을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39조). 수출입상품의 가격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기술봉사요금을 포함하여 지대안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대밖의 북한 영역안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과 지대안에 판매하는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기업은 탈세를 목적으로 수출입상품의 가격을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40조). 외국인기업은 수입한 물자의 보관 및 이용, 생산한 제품의 수출과 관련된 사항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할 의무가 있다(시행규정 제41조).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북한의 외환사정이나 구매능력에 비추어 내수판매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며, 원자재 등의 국내구입도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계획경제구조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애로가 따를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수출입에 관한 사항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여러 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다.

외국인기업의 외환관리문제는 외화관리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외국인기업법에서도 1개 조문을 두고(시행규정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였는 바, 우선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계산을 북한원으로 하도록 하고, 외화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시기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율로 계산된 북한원을 결수기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시행규정 제43조) 외국인기업은 북한무역은행에 계좌(원화계좌와 외화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외환관리기관의 합의아래 북한의 다른 은행이나 타국은행에도 계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화거래와 결제는 거래은행에 있는 자기 계좌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고, 타국은행에 계좌를 둔 경우에는 분기마다 수불정형과 거래은행의 계산서를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제18조 시행규정 제44조).

그리고 외국인기업의 회계 및 결산은 북한측 당사자가 없으므로 경영성과에 따른 이윤분배와는 관련이 없으나 조세부과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 점에 관하여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으로 하여금 기업 소재지안에 부기장부를 두도록 하고, 경영계산은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계산규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19조, 시행규정 제42조).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은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외국인기업의 결산연도는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이며, 창설 첫해는 기업창설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이고, 외국인기업을 동결하는 해외 결산연도는 그해 1월1일부터 동결하는 날까지로 하였는데(시행규정 제45조) 여기에서 동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나 적어도 국유화조치 등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외국인기업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예비기금과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및 문화후생기금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 중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 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씩을 적립하고 적립된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을 늘 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 데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적립하는 한도는 외국인기업이 자체로 정한다(시행규정 제47조). 이러한 규정은 합영기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을 하도록 하였으며, 분기의 재정부기결산문건은 분기 다음날 15일안으로, 연간 재정부기결산문건은 결산연도가 끝난 다음 날부터 2개월안으로 심사승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결산문건에는 재정상태표·원가계산표·생산 및 판매소득계산표·이윤 및 분배계산표·손익계산표·관리비계산표·고정재산감가상각 등 계산표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간 재정부기결산문건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시행규정 제48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문건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재정부기결산서와 고정재산문건은 기업의 경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51조). 그리고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경우 북한의 재정부기일군 또는 다른 나라 재정부기일군(공인회계사를 지정하는 것 같다)의 도움을 받아 재정부기문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출된 내용은 외국투자가(외국인기업을 잘못 쓴 것 같다)가 부담한다(시행규정 제52조).

그 밖에 외국인기업은 북한의 은행 또는 타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 받을수 있다는 점과(시행규정 제50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정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소득 및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재투자하거나 북한의 외화관리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에 송금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였는데(제22조, 시행규정 제49조) 이는 합영법 내지 외국인투자법과 같은 내용이다.

한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정형을 검열·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외국인기업의 노동력관리에 관하여는 외국인기업법 제20조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노동력의 채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의 노동기관(노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노력채용계약)에 따라 기업운영과 관련된 노동력을 북한 주민으로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하며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공의 기술자·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시행규정 제53조·제54조). 그리고 채용한 북한의 노력을 계약이행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노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계약조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55조). 기업운영의 양대요소가 기술·자본 등 물적요소와 노동력이라는 인적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때 외국인기업이 물적 요소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아래 조달·활용하지만 인적 요소의 조달에는 행정당국의 간섭을 받도록 강제 규정을 둔 것은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였고, 외국인기업의 종업원 노임기준은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56조·제57조).

다음으로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직업동맹조직의 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바, 직업동맹조직은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노동조건보장에 관한 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감독하도록 하면서 외국인기업에 대하여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21조).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은 직업동맹에 관하여 5개조문을 두고 있는데 ①외국인기업의 종업원은 직업동맹조직안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지며(제58조) ②직업동맹조직의 사업으로서 ③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하는 사업 ④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과 과학지식 보급사업, 체육 및 문예활동과 관련된 사업 ⑤외국인기업과 노동조직·노동보수·노동보호에 관련된 단체계약의 체결 및 그 집행의 감독 ⑥외국인기업과 종업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분쟁의 조정 ⑦종업원들의 권리·이익과 관련된 문제토의에 참가하여 돈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제59조) ⑧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직업동맹과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제60조) ⑨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사업조건과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도록 하였고(제61조) ⑩외국인기업은 매월 직업동맹조직에 활동자금으로서 ⑪종업원 500명까지는 전체종업원 월 노임의 2%에 해당하는 자금 ⑫종업원 500명이상 1000명까지는 전체종업원 월 노임의 1.5%에 해당하는 자금 ⑬종업원 1000명이상은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보장해 주도록 하였다(제62조),

외국인기업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례가 아니지만(우리나라는 경제성장초기단계에 외국인투자기업 종사근로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운영하여 노동계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북한의 경우 ①직업동맹이라는 것이 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 결사의 성격을 찾아볼 수 없고 ②북한측이 경영을 전담하는 합작기업과 북한측의 공동경영에 의한 구·합영법상의 합영회사에 대하여는 직업동맹에 관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않으면서 외국인기업에 대하여만 이를 규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③직업동맹조직의 기능중 근로조건보장을 위한 협약체결기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행에 대한 감독기능까지 부여한 것은 국제노동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감독기능은 정부당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행적인 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시행규정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①먼저 북한주민이 아닌 종업원도 직업동맹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의문이고 ②직업동맹의 사업중 종업원에 대한 교양사업은 노동조합의 본질에 어긋나며 노동분쟁의 조정·종업원의 권리에 관한 문제 토의에 참가하여 돈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애매하고 ③외국인기업이 직업동맹에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 원조금지를 규정한 일반적 노동법리에 어긋나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그 밖에 표현상 사소한 문제로서 종업원 500명, 1000명인 기업의 활동자금 부담비율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기업법의 보험가입에 관하여는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북한의 보험에 들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시행규정 제5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

보험계약은 북한의 민법 제205조 내지 제212조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험계약을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즉 순수한 사적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뜻하지 않은 재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놀고 있는 돈을 동원·리용할 수 있게』하는데 있다고 하여(제205조제2문) 유휴자금의 동원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계약에는 생명보험·어린이보험·재해보험 등 인체보험계약과 재산보험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외국인기업법에서 말하는 보험은 주로 재산보험계약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공민과 보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기업은 공민이 아니라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민에 준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보험기관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험에 가입한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해당 공민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

며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에 맺어진다(제206조). 보험에 든 공민이나 보험료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허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내준 보험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과를 고착시켜야 하고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제208조). 재산보험에만 적용되는 조문은 2개가 있는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료를 물어야 하며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는 조항(제211조)과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곧 보험기관에 알리고 손실을 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212조)이 그것이다.

외국인기업에 대한 조세부과에 관하여는 내국세의 경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제24조, 시행규정 제46조) 관세의 경우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시행규정 제38조). 조세부과와 관련한 정부기관의 감독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무원·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에 의한 투자 및 세무정형의 검열·감독을 규정하고 있다(제27조).

그 밖에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의 등록자본증가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승인에 의한 등록자본의 양도 및 존속기간 중 등록자본 감소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시행규정 제27조).

(5)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외국인기업의 소멸사유는 해산과 파산이며(제30조 참조) 해산사유로서는 ①원래 승인받은 존속기간의 만료(제28조제1문), ②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해산명령(제29조 참조)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정에서는 외국인기업의 해산사유로서 ①경영기간(존속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②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을 더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가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④외국인기업 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⑤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 되었을 경우를 들고 있다(제66조).

외국투자가가 존속기간(경영기간) 만료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

영기간이 끝나기 6월전에 심사승인기관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사승인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28조제2문, 시행규정 제64조). 여기에서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등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계산한다(시행규정 제63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기간연장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지대당국에 경영기간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65조).

외국인기업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해산신청서를 지대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대당국은 접수한 기업해산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기가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직접 해산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해산일은 심사승인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날이다(제28조제2문, 시행규정 제67조).

외국인기업은 해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내에 기업해산을 공개(공시)하고 채권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68조). 이와 같은 규정은 회사법의 법리상 당연한 사항으로서 외국인기업법의 입법시 누락된 것을 시행규정에서 보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시행규정에서는 ①심사승인기관은 외국인기업의 장부와 현물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제75조) ②외국인기업 또는 외국인이 ⑦등록질서를 위반한 경우 ④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⑩투자기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⑪수출입법무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손해를 변상시키거나 정도에 따라 외국인기업은 1만 원까지, 외국인에게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는 점(제76조) ③탈세행위를 하였거나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세법에 따라 연체료와 벌금을 물린다는 점(제77조) ④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는 점(제7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법에서는 청산절차에 관하여 단 한 조문만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산 또는 파산된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제30조) 상세한 내용은 시행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기업은 청산사업의 담당주체로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기업해산을 공개한 날부터 15일내에 청산위원회 위원명단을 심사승인기관에 제출하여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합의받은 날부터 1주일내에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제70조). 청산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기업의 책임자, 채권자의 대표, 심사승인기관의 대표,

부기검증원, 변호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사업으로서는 ①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②기업의 재산을 이관받아 관할하며 ③채권채무관계를 확보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하며 ④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⑤청산안을 작성하며 ⑥세금을 납부하고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며 ⑦청산후 남은 재산을 처리하고 ⑧기타 청산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제71조). 청산에 관련된 비용은 해산되는 외국인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제72조). 외국인기업은 청산이 끝나기 전에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며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투자한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73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대로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제출한 다음 지대당국에 기업등록증과 경영허가증을 반납하고 기업 및 채무취소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당 거래은행의 계좌를 폐쇄하여야 한다(제74조).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합영법의 수준보다 구체적이지만 파산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우리 파산법처럼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독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강력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동법을 위반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정상에 따라 기업활동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제29조).

그러나 제재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위반유형에 따른 제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 등 제재규정으로서 적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외국인기업의 분쟁해결에 관하여는 합작법의 경우와 똑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제31조, 시행규정 제79조)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밖에 시행규정에서는 신소청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외국인기업은 북한 당국의 해당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고 신소청원을 받은 기관은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처리하여야 하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받은 날부터 10일안에 해당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제80조) 이는 우리 법제상 행정심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외국인투자관련법제의 내용

I. 관련법제 보완조치의 의의 및 전망

북한이 1993년 1월말에 3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률, 즉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외화관리법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고 이어서 같은 해 10월말에 토지임대법을, 11월말에 외국투자은행법과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을, 12월말에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1994년 2월에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과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을, 같은 해 4월에 자유무역항규정을 각각 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입법정책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1984년 합영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개방정책의 법제화작업은 그후 1985년 2개의 관련세법의 제정과 부속 시행세칙의 제정으로 이어졌는데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 후 1970년대 후반부터 각 분야의 중요 법률들을 정비하여 왔다(1974년 형법·형사소송법, 1976년 재판소구성법·민사소송법, 1977년 토지법, 1978년 노동법, 1979년 어린이보육교양법, 1980년 인민보건법·해운법, 1986년 환경보호법·항만법, 1987년 과학기술법·철도법, 1990년 가족법, 1991년 민법, 1992년 사회주의상업법·도시경영법 등).

이들 법제정비는 개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으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제고 등을 통하여 대북투자여건을 개선한 데 기여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다만, 입법체계가 산만하고 정치선전적 목적의 추상적·선언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법규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이 서방 국가의 시각에서 볼 때 미흡하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북한당국의 법제정비실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활동에 긴요한 다수의 법규들이 흡결되어 있었던 바, 특히 개방정책의 추진 내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는데에 직접적인 입법목적을 둔 법령, 예컨대 외환관리·출입국관리 및 기업회계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소홀한 면을 보여주었다.

1993년 1월말부터 위의 각종 법령을 계속하여 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이 개

방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작업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들 외국인투자관련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중국의 입법선례를 참고한 흔적이 엿보이는 바, 중국은 1978년이후 개방화과정에서 얻어진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외국투자가의 요구를 반영하여 섭외경제계약법·외국인투자관련세법·외국인 투자장려규정·회계관련규정 등 각종 법령을 양산하였으며 이를 계속 정비·보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비교하여 북한의 입법현황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고 기왕에 제정된 법규의 내용도 실제 집행하는 데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북한당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을 계속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대북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법제상 미비점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만 현실성있는 법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II.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 외국투자관련세제 개관

북한은 1972년 헌법에서 세금제도를 낡은 사회의 유물로서 완전히 없앤다고 선언하고(제33조), 1974년『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의 의결로 세계 최초의 세금없는 국가를 이룩하였다고 선전하였으나, 1985년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따른 세법체계를 마련하였으며 1992년 헌법개정시 세금제도 폐지조항을 삭제하고 1993년 1월에는 1985년 세법을 대체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새로 제정하였으며 1994년 2월에는 동법시행규정을 제정·공표하였다.

한편 관세에 대하여는 1972년 헌법에서도『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제도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제34조제3문), 1992년 헌법에서도 이 규정을 존치시켰다(제38조). 관세에 관한 일반적 법규는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장에서는 5개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외국인투자에 따른 조세제도를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주민에 대한 내국세는 여전히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사회주의체제아래에서 국영기업소 등에서 생산한 제품에 부과하는 거래수입금, 경영활동수익금 등으로 국가세입에 충당하는 종

전의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변형된 조세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북한이 일반주민과 외국투자기업 내지 외국인에 대한 조세부과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内外국인 평등대우의 원칙에 어긋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하나의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조세불복 및 처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여러가지 종목의 조세와 그 감면에 관한 사항까지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에 나타난 세목은 크게 나누어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에는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재산세·상속세·거래세가,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등록면허세·자동차이용세가 있다.

이 가운데 기업소득세는 종전의 합영회사소득세로서 법인세에, 개인소득세는 종전의 외국인소득세로서 소득세에 각각 해당하고 이들은 새로 신설된 재산세·상속세와 더불어 직접세의 범주에 든다고 하겠으며, 거래세는 간접세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과세요건에 비추어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개정 세법은 이처럼 새로운 세목을 대거 신설한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으며 세율 및 조세감면체계를 다양화한 점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이러한 개정은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의 조세제도 내지 조세감면을 통한 투자유인정책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중국의 조세체계를 보면 크게 내국세와 관세가 있고 내국세는 다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국세는 중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내세와 외국투자기업 등에 적용되는 대외세가 있다.

대내세에는 직접세로서 소득세법에 규정된 국영기업소득세·국영기업조절세·집체기업소득세·城鄉個體工商業所得稅·사영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개인수입조절세와 간접세로서 유통세법에 규정된 상품세(물품세)·증식세(부가가치세)·영업세·영세·자원세·특별소비세(자동차 등)가 있다. 대외세는 다시 특종세·소득세·유통세로 구분되는데 특종세에는 국영기업 奬金稅·집체기업장금세·사업단위장금세·국영기업工資조절세·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燒油특별세(석유소비세)가, 소득세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외국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1년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기업·합작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과세)가, 유통세에는 工商通일세(외국기업과 합작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한 중간세·영업세 및 산품세(물품세)를 통합하여 과세)·자동차특별소비세가 있다.

지방세는 중국 국민과 외국투자기업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城市維護건설세(도시건설세)·集市交易稅(市場稅)·牧畜交易稅·도살세·城鎮토지사용房產

稅·차선사용허가세·印花稅(인지세)·경지점용세·건물재산세·양여세가 있으며, 관세에는 관세와 수입조절세가 있다.

이와 같은 조세체계는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변동이 많으나 조세의 종목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을 중국보다 낮게 책정하고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세율을 중국의 경제특구에 대한 세율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조세면에서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본적인 조세정책방향은 중국의 경험을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은 총 8개장 57개조문과 6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법률보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면에서도 구 합영회사소득세법 등에 비교하여 보다 충실히 해졌으나 하나의 법률에서 조세총칙에 관한 사항(제1장 및 제8장)외에 5종의 국세(제2장 내지 제6장)와 3종의 지방세(제7장)의 과세요건·세율·납세방법은 물론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법과 비교할 때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8개장 79개조문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납세절차, 납세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중복규정한 것이 태반을 차지하는 등 입법기술상 미숙한 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세무회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합영회사재정부기계 산규정 및 그 세칙이 있으나 합작기업·외국인기업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못하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법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도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일부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과 중복되는 면을 보여준다.

2.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의 주요내용

(1) 총칙규정

법 제1장은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의 기본』이라는 제명아래 총칙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정 제11장은 『일반규정』이란 제명을 사용하고 있다).

가. 입법목적

이 법의 입법목적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

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1조).

나. 적용범위 및 납세의무자

이 법은『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며,『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제6조).

여기에서『공화국 영역 안』이란 휴전선 이북의 북한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도『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범위에 속하며 우리 기업도 이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다른 조문에서는『조선동포』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바,『외국투자기업』속에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재외교포가 투자한 기업도 포함되고『외국인』속에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재외교포까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외국투자기업』이란『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합영기업·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제2조제3문) 외국인투자법에서 합작기업·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을 북한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제14조제1문) 이들 기업은 등록한 순간 북한의 법인으로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외국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북한내에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그 자회사가 합작기업·합영기업 또는 외국인기업에 해당하면 역시 북한의 법인으로서 이 세법의 적용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한편 시행규정에서는『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문, 재외동포에 관한 사항은 법과 같은 표현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여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북한의『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합작기업·합영기업·외국인기업이』 해당하고, 외국기업에는『공화국 영역 안에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화국 영역 안에서 이자·배당금·임대료와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상사 기타 경제조직』이 해당한다고 하였다(제2조제3문).

이와 같은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무제한납세의무자와 제한납세의무자로 구분된다.

무제한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그 나라의 과세고권에 복종하는 자로서 그에게 귀속된 과세물건의 원천이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이 법에서는 북한의 법인인 합작기업·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제2조제2문)과 개인소득세·상속세 및 도시경영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제17조제2문·제31조제2문, 제44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한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여 인적으로는 그 나라의 과세고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나 과세물건의 원천이 국내에 소재하여 물적으로만 그 나라의 과세고권에 복종하는 자로서 이 법에서는 북한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제2조제3문)과 북한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제17조제1문·제31조제1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구분은 뒤에서 살펴 볼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세목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다. 세무등록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도·시·군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에 세무등록을 하되(제2조제1문, 외국인기업법 제9조제2문에서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분리하는 경우 및 등록자본·경영범위·업종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20일내에 세무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기 20일전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수속을 하도록 하였다(제2조제2문, 시행규정 제4조제1문·제3문·제4문). 외국인의 경우 북한영역 안에서 180일이상 체류하는 자에 한하여 체류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한다(시행규정 제4조제2문).

세무등록을 하자 할 경우에는 세무등록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①기업의 명칭과 주소 ②기업등록날자 및 등록번호 ③기업의 경영방식과 업종 ④경영기간 ⑤종업원총수(그중 외국인 수) ⑥부지면적 ⑦거래 은행과 계좌번호 ⑧기업의 책임자와 재정부기책임자의 이름 등을 밝힌 세무등록신청서에 기업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 세무등록신청서에 이름과 국적, 주소, 여권번호, 체류증 발급날자, 체류기간을 밝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무변경 등록을 하거나 세무등록취소수속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세

무등록취소신청서에 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 및 취소근거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정 제5조).

라. 세무회계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북한의 관련 재정부기계산규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제3조제1문) 이는 세무회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무회계는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며 기업의 경영성과평가 내지 이윤분배 등의 근거가 되는 기업회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재정부기계산규범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기계산과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하되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다(제3조제2문 · 제3문).

시행규정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①세무에 이용되는 문서양식은 재정부에서 정하고, ②세무문서는 조선글(한글)로 쓰되, 다른 나라 글로 쓴 경우에는 그 밑에 조선글로 번역하여 써야 하며 ③세무문서에는 기업의 도장과 기업체임자 및 재정부기책임자의 도장을 찍도록 하고, ④세무와 관련되는 문서(전자계산기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테프와 원판)는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편철하여 문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5년(재정부기결산서, 고정재산문서는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안 보존하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시행규정 제6조 및 제7조).

마. 조세납부방법 및 감독기관

조세납부방법에 관하여서는 각 세목별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소득세는 제10조 · 제11조 및 제14조, 개인소득세는 제24조, 재산세는 제30조, 상속세는 제36조, 거래세는 제41조, 도시경영세는 제46조, 등록면허세는 제48조, 자동차 이용세는 제51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하여 납부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시행규정 제8조제1문 · 제9조).

이는 북한 원화에 의한 세액계산과 신고납부제도, 그리고 직접납부와 원천징수납부의 선택 등을 규정한 것이며, 시행규정에서는 북한 원화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해당시기의 외화환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정 제8조제2문). 그러나 원천징수방법을 선택적 내지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또한 신고납부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신고해태시 납부서고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을 일체 두고 있지 않아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시행규정의 내용을 보면 세금은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세금납부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해당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고, 세금을 받은 은행은 신고납부자 또는 공제납부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하는 것 같다)에게 세금납부영수증을, 재정기관에는 세금납부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귀국(임시출국은 제외)하려는 외국인은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시행규정 제10조·제11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과와 징수, 세금납부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는 재정기관이 담당하는 바, 재정기관에는 재정부와 도·시·군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가 포함된다(제5조, 시행규정 제3조제1문·제2문).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 가지고는 업무관할 및 조세행정의 구체적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무정형을 검열하는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제때에 제시할 의무를 진다(시행규정 제3조제3문).

바. 조세관련 국제협약

기업이나 개인이 국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2개이상의 국가에서 유사한 종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제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A국가의 기업이 B국가에 진출하여 그곳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그 기업은 A국가의 기업이므로 소득의 원천지가 어디든 간에 A국가의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지는 동시에(무제한적 납세의무) B국가는 자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여 같은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게 된다(제한적 납세의무).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국제경제협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은 국내법에 조정규정을 두거나 당사국간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바, 국내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더라도 상대방 국가의 국내입법조치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시행규정 제12조에서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으로 표현하면서 외국투자가에는 북한 영역안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제7조)라는 규정을 둔 취지도 이중과세방지조약의 체결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 내지 국민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서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남북한간에 체결된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세부합의서의 형식으로 채택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동 합의서 제1조제12항) 남북기본합의서나 부속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세부합의서도 조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결과가 되어 우리 기업이나 국민의 대북투자진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세부합의서를 채택할 때에는 여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기업소득세

법 및 시행규정 제2장은 각각 『기업소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합영회사 소득세법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우리의 법인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외국투자기업』인데 이는 북한의 법인인 합작기업·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과 북한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을 의미하며 우리 국민을 비롯한 해외교포가 설립한 기업도 포함된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은 ①외국투자기업이 북한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북한내에서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 ②외국투자기업이 북한 영역밖에 지사·출장소·자회사 등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으로 하고 있다(제8조).

법인세의 경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원천에 대하여 과세하며(무제한적 납세의무자)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제한적 납세의무)이 일반적인 바, 북한에서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구별없이 『외국투자기업』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해석상 북한 영역밖에 서 얻은 소득(위의 ②번)에 대한 과세는 북한의 법인인 외국투자기업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이자소득 등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기업소득세는 법인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국제이중과세의 문제가 발

생하며 그 밖에 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부과는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부과(제18조)와 중복되는 이른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북한의 세법은 여기에 관한 조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불합리한 점을 보이고 있다(우리 소득세법은 배당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71조). 또한 기관투자자에 의한 투자주식운용으로 얻어지는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장치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제10호).

시행규정은 과세대상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먼저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생산부문의 생산물판매소득, 건설·탐사·개별부문의 소득, 상업(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매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수·체신·급양·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소득을 규정하고 기타 소득으로서 ①이자소득 ④이익배당소득 ⑤재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 ⑥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⑦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⑧기술고문·상담·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방식을 하여 얻은 소득 ⑨폐설물 및 부산물처리에 의한 소득 ⑩그 밖의 소득을 규정하였으며 북한 영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구체적 설명없이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만을 규정하였다(시행규정 제13조).

나. 과세기간 및 과세표준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등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이윤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제9조).

여기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과세기간 내지 결산기를 나타낸 것으로서 시행규정에서는 영업개시 및 해산으로 인한 영업종료시 그 첫 해와 마지막 해의 납세연도에 관하여 따로 명시하고 있다(시행규정 제14조). 과세표준은 결산이윤으로서 총수입에서 원가 및 기타 지출을 뺀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시행규정에서는 여기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결산이윤은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외에 거래세까지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하였고, 『원가』의 구성항목은 ⑦공업부문에서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동력비, 물자구입경비, 새 제품 생산비, 노임, 고정재산 및 감가상각금, 직장 및 회사관리비, 판매비, 보험료 ⑧상업부문에는 상품비와 유통비(수송비·보관비·포장비·용기소모 및 수리비, 상품지연감모비, 영업용 연료 및 전력비, 노임,

대리판매수속비, 비품비, 난방비, 조명비, 수도사용료, 사무비, 통신비, 연비, 선전비, 대리사업비, 노동보호비, 문화사업비, 대부이자, 보험료, 그 밖의 유통비 ④봉사부문에는 급양 원자재비와 유통비, 교통운수운영비, 체신운영비 등 업종별로 세분하여 규정하였으며, 『기타 지출』에 관하여는 환자시세의 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가공·재포장하는데 드는 내용 등을 예시하였다(시행규정 제15조). 그리고 특히 작업기간이 1년이상 걸리는 건설 및 조립·설치공사, 대형기계설비의 가공·제작 등을 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납세연도마다 그 해에 수행한 작업량이 따라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과하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16조).

과세기간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구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동법 세칙의 경우에 비교하여 『원가』의 구성항목, 『기타 지출』 등의 개념을 시행규정에서 나마 비교적 상세히 풀이하고 있으나 『총수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흡결되어 있고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 세율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25%로 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시행규정에서는 『공학연구』로 표현)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로 하는 등 중국의 경우처럼 적용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제12조). 그리고 외국기업이 북한내에서 배당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특허권 사용료를 비롯한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에 대한 세율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는 20%이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로 하고 있다(제13조, 시행규정 제17조). 이와 같은 다양한 세율구조는 외국인투자법 등에 나타난 정책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율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법인인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이다(제2조에 규정된 『외국투자기업』의 정의, 제8조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구분방식, 제12조 및 제13조의 적용세율의 구분 등은 서로 어긋나게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 해석을 곤란하게 한다).

기업소득세의 세율책정은 중국의 세율구조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일반세율 33%(지방세 3%포함), 경제특구에 대한 우대세율 15%, 장려부문 우대세율 15%로서 북한이 이보다 낮은 세율로 한 것은 UNDP에 의한 두만강유역개발

의 경우를 포함하여 중국과의 투자유치경쟁을 벌이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특구외에 경제기술개발구·연해경제개발구에 대하여 제조업은 15% 또는 24%, 비제조업은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70%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어 단순히 북한의 세율구조가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세액의 납부방법

세액의 납부방법은 종전의 세법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무회계와 관련된 각종 제출서류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그러한 서류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무회계규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실제 제도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연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하는 바, 분기결산이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1/4을 예정납부하도록 하였다(제11조제1문, 시행규정 제19조).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에 하며 연간종합계산은 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납부하도록 하였다(제11조제1문 및 제2문).

이를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기업소득세납부에 앞서 분기 재정부기결산서를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납세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안에 연간 기업소득세납부서와 부기겸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제출한 다음 연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기업소득세납부서에는 거래은행명칭과 계좌번호, 결산이윤, 납세금액 등을 밝혀야 하며, 재정부기결산서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계산표, 이익 및 분배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산표 등이 포함된다(제10조, 시행규정 제20조 내지 제22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끝났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납세담보로 세우고 청산이 끝난 날(정산안이 결정된 날)부터 15일안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이 경우 납세담보금을 기업소득세에 충당할 수 있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분리선포일부터 20일안에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해산·통합·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미납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채무의 이행에 앞서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제11조제3문 및

제4문, 시행규정 제24조).

분기별 예정납부제도를 채택한 것이나 기업해산시 납세담보제도를 채택한 것은 외국투자기업의 철수 등에 대비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분기별 예정납부제도는 제9조에서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한 것과 상충되는 면을 보여준다.

한편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안에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도록 하였으며(제14조), 공제납부자는 수익금을 지불한 날부터 15일안에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에는 거래은행명칭과 계좌번호, 지불항목, 지불금액·세율·납세금액 등을 밝히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23조). 그런데 이러한 공제납부제도는『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의 법인인 외국투자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지 의문이고,『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는 것은 일종의 원천징수제도로 보이는 바, 원천징수를 직접납부와 선택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실제운영상 원천징수를 강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시행규정 제25조에서는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는 것만 규정하였다).

그 밖에 시행규정에서는 ①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본사가 종합하여 납부하고, 외국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지사가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며 ②북한 영역안에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와 지사의 기업소득세율이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하며 계산하도록 하였고 ③북한 영역밖에 지사를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 줄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이 시행규정에서 정한 세율로 계산한 기업소득세액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소득세액만큼 공제하여 주며 초과한 부문에 대한 기업소득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시행규정 제26조).

여기에서 ③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규정으로서 협약의 체결에 앞서 국내법적 대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 조세감면 및 환급

기업소득세의 감면사유 및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즉, ①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북한정부 당국과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북한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시행규정에서는 런던 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이상의 상환기간을 유리한 조건의 예로 들고 있다)으로 대부한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제15조제1호, 시행규정 제27조). ②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의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장려하는 부문에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이 포함된다. 그러나 10년이 못되어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5조제2호, 시행규정 제28조·제34조). ③봉사부문의 외국 투자기업(시행규정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의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규정에서는 금융기업이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 되기 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 이미 감면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15조제3호, 시행규정 제29조·제34조). ④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천만원이상 되는 철도·도로·통신·비행장·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의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제15조제4호, 시행규정 제30조).

여기에서 ①의 경우는 북한의 외환사정악화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차관유치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이자소득을 얻는 자가 외국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은행 등인데 이들에 대한 과세권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이라 하겠다.

②내지 ④의 경우는 외국인투자법 등에 규정된 투자장려시책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종전 세법보다 감면 폭이 늘어난 데 특징이 있다. 예컨대 종전에는 기업운영개시일부터 3년간 면제하던 것을 이윤발생연도부터 1년 내지 4년으로 규정한 것과 추가적 감면의 율을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시행규정에서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에 관한 몇가지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기간은 이윤이 난 해로부터 『연속』계산하도록 하였으며 ②외국인투자기업이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결산이윤에서 메꿀 수 있고 다음 연도에도 메꾸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속하여 해마다 메꿀 수 있으나 4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③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되,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업종, 이윤이 생긴 연도, 총투자액, 거래은행명칭과 계좌번호를 밝히고 해당 기업설립심사승인기관이 증명하는 문건을 첨부하도록 한 것 등이다(시행규정 제31조 내지 제33조).

한편 외국인투자법 제18조에서 외국투자가의 투자이익 재투자를 권장하기 위한 규정을 둔 취지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①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얻은 이윤을 북한내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되 ②특히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다만,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소득세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제16조, 시행규정 제35조). 여기에서 ③의 5년이내 자본철수시 재납부규정은 ②의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대한 재투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투자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신청서와 함께 재투자액과 경영기간을 증명하는 기업설립심사승인기관의 확인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35조 제2문).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내지 재투자장려규정은 북한이 낙후된 하부구조건설에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된 나진·선봉지구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해보려는 정책적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3) 개인소득세

법 및 시행규정 제3장은 각각 『개인소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외국인소득세법을 이어받은 것이다.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개인소득세는 북한내에서 소득은 얻은 외국인(시행규정에서는 『180일이상 체류하면서』라는 요건을 추가규정)과 북한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북한밖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제17조, 시행규정 제36조제1문·제2문). 이 경우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기간안에 임시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체류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시키며(시행규정 제36조제3문), 외국인의 범위에 우리 국민을 포함한 재외교포가 포함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우리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무제한적 납세의무자)와 그 밖의 개인으로서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비거주자

(제한적 납세의무자)로 구분하고 있는 바, 북한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으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앞뒤가 바뀐 느낌을 준다.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①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②배당소득 ③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④이자소득 ⑤임대소득 ⑥재산판매소득 ⑦증여소득 ⑧개인기업소득(시행규정에서는 개인업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다)으로 하고 있다(제18조, 시행규정 제37조제1문). 우리 소득세법과 비교하면 우리는 종합소득세제도를 채택하여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 포함)·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과세하는 점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그 밖에 우리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증여로 인한 소득은 상속세법에서 증여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외국인소득세법에서도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였던 바, 개정 세법에서는 여기에 관하여 면세점이하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19조제1호 등)와 북한 은행에 저축성예금을 한 돈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이자의 비과세(제24조제1호제2문)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정에서는 외국인의 소득으로서 ①북한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②북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의 이자와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 ③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시행규정 제42조) 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되어 있다. 그 밖에 시행규정에서는 각 항목별로 과세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이 현물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한 때의 현지 가격으로 한다는 점과 ②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는 노임·상금·장려금·가급금과 강의·강연·투고·번역·설계·제도·설치·수예·조각·그림·창작·공연·부기·체육·의료·상담과 같은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③배당소득에는 이익배당금, 잉여금의 분배소득 같은 것이 속하고 ④공업소유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권·실용신형권·공업도안권·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하여 받은 소득이 속하며 ⑤기술비결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련기능, 경험 같은 것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고 ⑥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소설·시·미술·음악·무용·영화·연극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⑦이자소득에는 예금·채권에 의한 이자소득이 속하고 ⑧임대소득과 재산판매소득에는 건물·기계·설비·자동차·선박과 같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⑨

증여소득에는 화폐재산·현물재산·공업소유권·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을 증여받은 소득이 속하며 ⑩개인업소득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상점·음식점·수리소 같은 것을 차려놓고 자체로 상업 및 봉사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고 규정하였다(시행규정 제37조제2문 내지 제6문).

나. 세율 및 세액계산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노동보수에 대한 소득세율 : 월 노동보수액이 2천원이하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초과누진세율에 의한다(제19조제1호, 제20조, 부록1, 시행규정 제38조제1호, 부록1).

월 노동보수액	세율
2천1원 ~ 3천원	2천원 초과금액의 4%
3천1원 ~ 4천원	40원 + 3천원 초과금액의 5%
4천1원 ~ 5천원	90원 + 4천원 초과금액의 6%
5천1원 ~ 6천원	150원 + 5천원 초과금액의 7%
6천1원 ~ 7천원	220원 + 6천원 초과금액의 8%
7천1원 ~ 8천원	300원 + 7천원 초과금액의 9%
8천1원 ~ 9천원	390원 + 8천원 초과금액의 10%
9천1원 ~ 1만원	490원 + 9천원 초과금액의 15%
1만원 이상	640원 + 1만원 초과금액의 20%

종전 세법과 비교할 때 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율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종전에는 5%~30%) 종전에는 누진율 채택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주위의 계산방법에 기술적 고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자의 세후가처분소득이 고소득자의 세후가처분소득 보다 많아지는 모순이 있었던 것을 시정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②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 20%의 단일세율(제19조제2호, 시행규정 제38조제2호).

③증여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제19조제3호, 부록2, 시행규정 제38조제3호 부록2):
소득액이 1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에 의
한다.

소 득 액	세 율
1만1원 ~ 2만원	5 %
2만1원 ~ 4만원	10 %
4만1원 ~ 8만원	15 %
8만1원 ~ 20만원	20 %
20만1원 ~ 40만원	25 %
40만1원 ~ 80만원	30 %
80만1원 이상	35 %

증여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위의 노동보수에 대한 소득세율과 그 규정방식을 달리
하고 있어 경계선 주위의 소득구조에 왜곡이 생기는 불합리를 안고 있다(예컨대 증여
소득액이 2만원인 경우 세후소득은 1만9천원인데 2만1원인 경우 세후소득은 대략 1만
8천원이 된다).

④재산판매소득 · 개인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 25%의 단일세율(법 제19조제
4호, 시행규정 제38조제4호).

세액계산방법에 관하여 법에서 4개 조문(제20조 내지 제23조), 시행규정에서 1개
조문(제39조)을 두고 있으나, 그중 의미있는 내용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제22조)과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대한 개
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고정재산 처음 값의 2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금을 공제한 금
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내용(제23조:시행규정에서는 임대료의 20%를
노령비 · 포장비 ·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다고 규정하였다),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거래세를 공제한 나
머지 소득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내용(시행규정 제39조제3문) 정도이다.

우리 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공제·인적 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규정과 공제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는 법인세 계산방법에 준하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기에 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부과를 하지 않고 특히 개인기업이 전무하기 때문에 과세기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

다. 세액의 납부방법

개인소득세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시행규정 제40조).

①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달 15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한다(시행규정에는 『날마다 계산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 여기에서 북한 은행에 저축성예금을 한 돈과 자유경제 무역지대안에 있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이자(외화관리법 제19조·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3조 참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4조제1호, 시행규정 제40조제1호)).

이와 같이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월단위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등의 개념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재산판매소득·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달 10일안으로,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다음달 15일안으로 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제24조제2호). 시행규정에서는 여기에 관하여 좀 더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⑦수익인이 북한 영역밖에 있으면서 북한 영역안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은 다음 분기 첫 날 10일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⑧수익인이 북한 영역안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본인이 신고납부하고 ⑨개인업을 하며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은 다음달 15일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이다(시행규정 제40조제2호·제3호).

③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제24조제3호).

여기에 관하여서도 시행규정은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수익인이 북한 영역밖에 있으면서 북한 영역안에서 얻은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북한 영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이다(시행규정 제40조제4호). 개인소득세의 공제납부자는 공제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시행규정 제40조).

그 밖에 시행규정에서는 북한 영역안에서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한 외국인이 북한 영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날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되, 납세의무자가 북한 영역밖에서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시행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소득세액 범위안에서 세금공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문건에는 해당 국가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문건 원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시행규정 제41조).

(4) 재산세

법 및 시행규정 제4장은 각각 재산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신설된 세목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세로 규정한 것과 달리 북한은 국세의 범위에 넣고 있다.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북한내에 건물과 선박,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연기한다(제25조).

건물에는 살림집·별장·부속건물이 포함되며, 선박·비행기에는 자가용배, 자가용비행기 등이 포함된다(시행규정 제43조).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납부하며, 재산을 임대하였거나 저당잡혔을 경우에도 재산소유자가 납부한다. 재산소유자가 재산소재지에 없는 경우에도 재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시행규정 제44조).

시행규정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면세대상은 외국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구입했거나 건설한 건물이며 구입일 또는 준공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시행규정 제52조).

북한은 우리 법제와 달리 건물·선박·비행기에 대한 등기·등록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등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이 법 제47조 참조) 이들 재산에 대하여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즉, ①재산은 북한내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0일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②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안에 변경등록을 한다. ③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안에 재등록한다. ④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에 등록취소절차를 밟는다.

우리는 민법·선박등기법·항공법 등에서 건물·선박·비행기의 등기·등록제도를 채택하고 등록세법에서는 등기·등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위와 같은 등록제도에 따라 그 소유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되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건물·선박·비행기는 제외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제47조 참조).

여기에서 재산가액의 평가는 관건인 바, 최초 평가기준, 감가상각이나 재평가에 관하여서는 시행규정에서 비교적 상세히 정하고 있다. 외국인은 북한 영역안에 건물·선박·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것을 소유한 때로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재산등록신청서를 내고 재산가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넘겨 받는 자가 북한 영역밖에 있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을 등록한다. 재산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민족별·주소, 재산의 이름·단위·수량·건평(본수)·처음값·대보수비·내용년한·사용한 년한·건설(제작)년도·평가한 가격 등을 밝혀야 한다(시행규정 제45조).

등록하는 재산의 가격은 국가가격재정기관이 평가하고 공증기관이 공증한 가격으로 하며, 등록된 재산은 해마다 1월1일 현재로 평가하고 공증가격으로 2월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재등록한다(시행규정 제46조·제47조).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졌거나 재산의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와 재산을 폐기했을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0일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48조).

나.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과세대상액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한 값으로 하며(제27조, 시행규정 제49조), 세율은 건물의 경우 등록값의 1%, 선박 및 비행기의 경우 등록값의 1.4%로 하고 있다(제28조, 부록3, 시행규정 제50조, 부록3).

다. 세액계산 및 납부방법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제29조),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안으로 재산소유자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제30조, 시행규정 제51조제1문).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세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음 분기에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51조제2문).

(5) 상속세

법 및 시행규정 제5장은 각각 『상속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세법과 달리 증여세는 개인소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북한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북한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북한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시행규정 제53조1문). 상속재산에는 동산·부동산·화폐재산·유가증권·예금·저금 및 보험금, 공업소유권, 제작권·토지이용권·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시행규정 제53조제2문).

우리 상속세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무제한적 납세의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되(제한적 납세의무), 전자의 경우 외국소재 재산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한다 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에는 수유재산의 가액이 법인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가산되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상속세는 면제하고 있다.

북한도 납세의무자의 범위나 과세대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법인인 기업이 수유자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밖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함

에 따라 조총련계 북송교포들이 재일가족으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의 가격(시행규정에서는 재산이 있는 현지의 시장가격이라고 하였다)이 되며(제33조, 시행규정 제54조),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이 누진율로 되어 있고 20만원까지는 비과세대상으로 하였다(제34조, 부록4).

이 경우 상속액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지키는 자의 채무액, 상속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재산상속과 관련된 공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며, 이러한 채무액·장례비용, 보존·관리비용을 공제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55조).

상 속 액	세 율
20만1원 ~ 35만원	6 %
35만1원 ~ 60만원	8 %
60만1원 ~ 80만원	10 %
80만1원 ~ 120만원	12 %
120만1원 ~ 250만원	14 %
250만1원 ~ 400만원	16 %
400만1원 ~ 800만원	18 %
800만1원 ~ 2천만원	20 %
2천만1원 ~ 5천만원	25 %
5천만1원 이상	30 %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율은 전반적으로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보다 낮게 되어 있으며, 경계선 주위에서 세후금액구조에 왜곡이 발생하는 점은 증여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다. 세액계산 및 납부방법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제35조), 상속자가 상속받은 때로부터 3개월안에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6조).

시행규정에서는 상속세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상속자는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안으로 상속재산액·공제액·과세대상액·상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상속세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공제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상속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상속세공제신청서에는 상속자의 이름과 주소, 상속세의 공제항목과 금액을 밝히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56조). 그리고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산종류·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경우 현물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한정하였다(시행규정 제57조).

그 밖에 상속액의 분할 납부기간은 3년이며 상속액이 20만원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정 제58조).

(6) 거래세

법 및 시행규정 제6장은 각각거래세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거래세는 간접세에 해당하며 우리나라가 과거 부가가치세제도를 채택하기 전의 간접세인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통음식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과세표준)

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은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납세의무자는 생산물 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시행규정에서는『개인업을 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하였다)이며(제37조, 시행규정 제59조) 과세대상은 ①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판매에 의한 수익금 ②상업부문에서는 상품판매액 ③교통운수·금융·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봉사수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8조). 시행규정에서는 과세대상을 ①생산부문에서는 생산한 생산물과 수입한 물자를 북한 영역안에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 ②상업(무역 포함)부문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상품판매액 ③교통운수·금융·관광·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대부이자와 예금이자와의 차액, 요금 등의 봉사수입금으로 규정하여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시행규정 제59조).

북한의 거래세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각국이 채택한 부가가치세제도를 비교하면 ①거래세의 경우 각 유통단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 과세되어 유통단계가 많아질수록 조세부담이 커지고 전단계의 부과세액이 다음 단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조세에 대한 조세가 초래되며 기업의 수직적 결합을 인위적으로 촉진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②거래세의 경우 매출액이 과세표준인 반면 부가가치세제도는 부가가치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투자를 촉진시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행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③수출 기타 외화획득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제도는 원가에 포함된 간접세 부담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추정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④부가가치세제도는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필수적이어서 납세자 상호감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 부가가치세제도가 여러가지 장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도는 과세자와 납세자 쌍방에서 도입여건이 성숙되지 않을 경우 실제 운영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세제도 운영경험이 적은 북한은 이 제도를 선뜻 채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세율

거래세의 세율은 ①생산부문의 경우 생산물판매액의 1.5%~2% ②술·담배와 같은 제한하는 상품은 21%~60% ③상업부문의 경우는 상품판매액의 2% ④봉사부문의 경우는 봉사수익금의 2%~4%로 규정되어 있다(제39조, 부록5). 그리고 부문별 세율에 따른 세부항목의 세율은 재정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60조제2문).

그리고 술·담배 등에 대한 세율은 매우 고율인 바, 이들 부문의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외국투자가가 고율의 조세부담을 무릅쓰고 구매능력에 한계가 있는 북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므로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세액계산 및 납부방법

거래세의 세액계산은 ①생산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생산물판매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②상업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상품판매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③교통운수·금융·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봉사수익금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제40조).

거래세의 납부방법에 관하여서는 ①생산부문의 거래세는 월별로 판매자가 다음달 10일안에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하고 ②상업·교통운수·금융·관광을 비롯한 각종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월별로 봉사기관이 다음달 10일안에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제41조). 시행규정에서는 월중에 이루어진 수입금을 종합하여 다음달 10일안에 재정기관에 거래세납부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거래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시행규정 제61조).

이와 같은 규정내용은 당연한 사항을 굳이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표현의 중복을 초래하였으며 실제 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흡결되어 있다.

라. 조세감면

거래세의 감면내용은 ①수출상품에 대한 거래세 면제(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세 납부) ②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상업·교통운수·금융·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 50%감면으로 되어 있다(제42조).

수출제한상품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고 하였는 바, 별도의 세율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시행규정에서는 좀 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①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와 생산한 제품을 국가적 요구에 의하여 북한내에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세를 전액 면제하고 ②외국투자은행이 북한 은행이나 기업에 낮은 이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③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상업·교통운수·금융·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는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0% 덜어 준다는 것이다(시행규정 제62조 내지 제64조).

(7) 지방세

법 및 시행규정 제7장은 각각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종류는 도시경영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이용세로 하였으며(제43조, 시행규정 제65조), 그 중 도시경영세는 『공원과 도로·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것

이라 하여 목적세처럼 규정되어 있다(제44조).

가. 도시경영세

① 납세의무자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시행규정은 「180일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하였다) 외국인(제44조, 시행규정 제65조·제67조)

② 과세표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는 기업소의 월 노임총액, 외국인인 경우는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과 재산판매소득을 비롯한 월수입(제45조, 시행규정 제86조·제67조)

③ 세액계산 및 납부방법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 노임총액의 1%를 월별로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에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하며, 외국인은 월수입의 1%를 월별로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에 해당 재정기관(거주지 재정기관을 의미 : 제43조)에 본인이 신고 납부하거나 수입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제46조).

여기에서 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과 기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소 단위 노임총액과 근로자 개인의 노임에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과중한 부담이 되며, 원천징수가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남는다.

나. 등록면허세

① 납세의무자

기업이나 공업권·어업권 같은 것을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기술자격면허증 같은 증서를 받는 외국인(제47조, 시행규정 제88조). 등록면허세에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포함된다고 설명한다(시행규정 제68조제2문).

② 세액 (제52조·부록6 제1호, 시행규정 제69조)

등 록 대 상	세 액
기 업 등 록	설립등록 : 건당 500 ~ 1천원 변경등록 및 취소등록 : 건당 40원

광업권 등록	처음등록 : 광부당 1,200원 변경등록 및 취소등록 : 광부당 10원
어업권 등록	처음등록 : 건당 1천원 변경등록 및 취소등록 : 건당 10원

여기에서 기업설립등록의 경우 세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될지 의문으로 남으며, 세율이 아닌 세액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그때그때 개정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1992년초 북한에서 전면적인 임금의 대폭 인상이 있었던 바, 위에 나타난 세액은 임금인상후의 화폐가치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납부방법

등록면허세는 건당 정해진 세액을 해당 등록단위 및 면허증발급단위가 받아 소재지(당해 등록단위 등의 소재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제48조).

다. 자동차이용세

① 납세의무자

자동차를 이용(시행규정은『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제49조, 시행규정 제70조제1문)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안에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이용에 관한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제50조). 자동차이용에 관한 세무등록신청서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이름과 국적·민족별·주소, 자동차의 번호·종류·좌석수 또는 적재정량, 취득날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71조).

② 세액(제52조, 부록6 제2호)

과세대상	세액
승용차	대당 50원

버스	12석까지 대당 90원 12석~30석 대당 100원 31석이상 대당 120원
화물자동차	적재톤당 20원
특수차	대당 50원
자동차전차	대당 20원

※ 특수차: 기중기차·연유차·시멘트운반차·지게차·굴착기·불도저·트랙터 등(시행규정 제70조제3문)

③ 납부방법

자동차이용세는 해마다 2월안에 자동차이용자(소유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하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기간(시행규정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기간이 연속하여 60일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다)에는 이를 신고하여 자동차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제51조, 시행규정 제72조·제73조).

(8) 조세체납 및 포탈 등에 대한 제재와 불복절차

법 및 시행규정 제8장은 각각 『제재 및 신소청원』이라는 제명아래 조세체납 및 포탈 등에 대한 제재와 불복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조세체납에 대한 연체료 부과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제53조, 시행규정 제74조).

나. 조세범에 대한 처벌

조세범에 대한 제재는 벌금과 형사책임으로 되어 있는데(제54조 및 제55조) 벌금의 경우에 부과주체를 재정기관으로 하고 있어 형벌의 성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벌금과 형사책임을 지우는 위반대상에는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 세법이 세무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벌칙 대신 가산세라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데 그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제재를 받는 대상은 세무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포탈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과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한 공제납부자로 되어 있다.

벌금부과기준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제54조, 시행규정 제75조). 즉, ①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납부서·소득공제납부서·재정부기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 물린다. ②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린다. ③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시행규정에는『장부·전표·증빙문건을 위조·폐기했거나 원가·비용·소득액을 받는 것과 함께』라고 규정되었는 바, 그 뜻이 명확하지 못하다)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린다. 재정기관은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에게 벌금통지서를 보내며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납부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76조).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제55조, 시행규정 제77조).

여기에서 ①의 경우 소득세납부서·소득세공제납부서의 제출기관·제출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벌금액이 2천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양형의 재량폭이 너무 넓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2천원이라는 상한선이 북한의 화폐가치에 비추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화폐가치 변동시 세법의 개정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상한선을 높게 책정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공제납부자에 대한 처벌은 원천징수가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해태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은 제외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책임이란 형법에 따른 처벌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며 또한 형법 자체가 애매모호한 설정에 비추어 그 처벌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조세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조세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2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안에 신소청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신소청원은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제기하고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하도록 하였다(제

56조, 시행규정 제78조제1문). 신소청원을 받은 재정기관은 30일안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78조제2문). 그리고 재정기관은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안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7조, 시행규정 제79조).

여기에서 신소청원은 일종의 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하겠는 바, 신소청원과 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흡결되어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III. 외화관리법

1. 외화관리법의 제정의의

외화관리문제는 경제의 대외개방 내지 외국인투자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북한이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가 극심한 외환부족을 타개하는 데 있었고,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본의 유입과 생산된 제품의 수출 및 원자재의 수입과 이에 따른 자금결제 그리고 투자에서 생긴 이윤의 송금 기타 외국투자기업의 자금출납 등 경영활동은 외환거래를 수반하게 되므로 외환관리제도는 외국투자가는 물론 북한 당국에 있어서도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에서 구 합영법이 적용되던 시기에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책에 의존하여 왔으며 다만 구 합영법에서는 합영회사가 북한 또는 타국의 은행에 외화계좌를 둘 수 있다는 점과 경영자금을 타국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노임이나 이윤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는 정도의 단편적 규정을 두고(제13조·제17조·제22조 등) 구 합영법시행세칙에서는 제7장에 외화관리라는 제명을 붙여 8개 조문을 두고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①합영회사는 북한의 무역은행 등에 외화계좌와 원화계좌를 두고 합영회사의 모든 외화수입과 지출은 외화계좌를 통하여도록 하였으며(제45조) ②외화구좌의 잔고에 대하여는 무역은행이 정한 이자율이 적용되고(제46조) ③합영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을 때 타국 은행에 구좌를 둘 수 있으며(제47조) ④합영회사가 북한내에서 무역기관을 통하여 구입하는 상품대금과 여러가지 사용료는 원화로 지불하며(제48조) ⑤합영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족한 외화를 북한 또는 타국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게 하고(제49조) ⑥합영회사의 경영계획은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외화로서 할 수 있고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화결산은 무역은행이 정하는 화폐환산비율에 따르도록 하며(제50조)
⑦합영회사는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의 이익배당금을 그의 요구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송금하되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증할 근거문건을 은행에 내도록 하고(제51조) ⑧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회사에서 받은 노임액의 60%까지를 다른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제52조).

1992년 10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에서는 외화관리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른 송금보장을 규정하여(외국인투자법 제20조 및 합작법 제15조, 한편 외국인기업법 제22조에서는 『외화교환 통제법률과 규정』으로 표현) 외화관리법규의 별도 제정을 예고하였다.

1993년 1월말에 제정된 외화관리법은 북한의 외화관리제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단행법으로서 북한이 대외개방정책에 따른 관련법규의 정비에 나선 대표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외화관리법과 같이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5장에서도 통화금융이라는 제명아래 외환관리에 관한 5개 조문을 두고 있어(제30조 내지 제34조) 외화관리법규의 정비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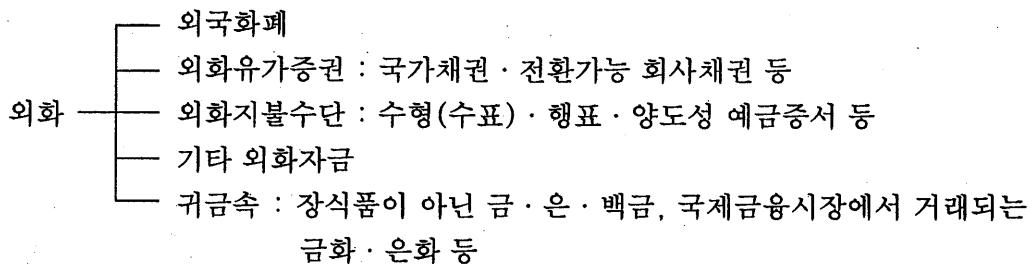
외화관리법은 4장 31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제1조 내지 제10조)은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2장(제11조 내지 제21조)은 외화의 이용, 제3장(제22조 내지 제28조)은 외화의 반출입, 제4장(제29조 내지 제31조)은 제재라는 제명을 붙이고 있다.

2. 외화관리법의 주요내용

(1) 외화관리법의 기본원칙

외화관리법의 입법목적은 외화수입을 늘리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데 있다(제1조). 이를 위하여 외화관리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고 하였다(제2조).

외화관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 『외화』의 정의는 『전환성 있는 외국화폐,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 예금증서를 비롯한 외화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은·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은화 같은 귀금속』이라고 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북한에서는 외화관리를 엄격한 국가관리체제 아래 두고 있는데 여기에 관하여『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공화국 영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관리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제4조), 무역은행을 외국환사업부(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전문은행으로 규정하고 다른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였다(제5조).

그리고 북한 영역안에서는 외화현금을 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북한 원화와 교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외화의 사고팔기(외환매매)와 저금·예금·저당도 반드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여도록 하였다(제6조). 북한 원화, 내국환자시세(환율), 북한과 타국 사이의 결제통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하되,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제통화로 지정되지 않은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제8조). 그러나 북한 영역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합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9조).

외화관리법의 적용대상은 외화를 이용하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 북한내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외국기관·외국투자기업·외국투자가·외국인, 북한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가 된다(제10조).

(2) 외화의 이용

북한은 강력한 외화집중관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반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외화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유형을 보면 ①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②무역밖의 거래 ③은행에서 북한 원화를 사거나 파는 거래 ④자본거래 등으로 규정하고(제11조)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결제방법으로 송금·대금청구·지불위탁을 규정하였다(제12조).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화사용통제규정으로는 첫째, 북한의 기관·기업소·

단체는 수입된 외화를 북한 원화로 바꾸어 자기의 계좌에 넣어야 하며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제13조) 둘째,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제14조) 셋째, 북한의 공민은 외화를 국가가 정한 기준안에서만 보유하며 그 기준이 넘는 외화는 북한의 은행에 팔거나 예금하도록 하였다(제15조).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에 대한 외화사용관계규정을 보면 첫째,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며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북한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도록 하고(제16조) 둘째, 북한내에 상주하는 외국의 대사관·영사관·무역대표부 등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계좌를 두어야 하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아래 북한의 은행에 계좌를 둘 수 있게 하였고(제17조) 셋째,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북한의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외환사용에 대하여는 대체로 통제를 완화시키고 있으나 외교사절 등 외국기관의 계좌설치를 강제한 점이 특이하며 북한 은행의 외화대출은 그들의 외환사정을 생각할 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이 어느 은행에 외화계좌를 설치할 수 있는지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1조에서『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북한 은행에 계좌를 설치하게 할 것인지 타국 은행에 계좌를 설치하게 할 것인지는 외국투자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외화관리기관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외화사용통제규정을 둔 점에 상응하여 은행은 외화예금에 대한 비밀보장 및 이자지급 의무를 지도록 하였는데 비밀보장은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에 비추어 그 실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이자율의 결정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아래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3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이러한 은행에 예금한 데 따라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동법 제24조제1호제2문).

외화이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하며, 외화를 이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는 분기·연간 외화재정상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도록 하고 있다(제21조).

(3) 외화의 반출입

북한은 외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국외반출은 엄격한 통제 아래 두고 있다.

먼저 외화반입에 관하여는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귀금속은 제한없이 북한에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2조).

반면 북한밖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첫째,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 범위안에서만 북한밖으로 내갈 수 있고(제23조) 둘째,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북한밖으로 내갈 수 있도록 하되,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제24조) 셋째,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북한밖으로 내갈 수 있도록 하여(제25조) 임의적인 외화반출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외화반출통제규정에 대한 특례로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외화반출특례와 외국투자가의 투자이익 등에 대한 송금보장규정을 두고 있다. 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외화유가증권을 해당한 문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북한밖으로 내갈 수 있도록 하고(제25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없이 북한밖으로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7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북한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제28조).

(4) 외화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

외화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벌금부과·몰수·은행거래정지 및 보상과 행정적·형사적 책임으로 되어 있다.

첫째,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리며 법에 위반하여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제29조). 둘째, 외화관리질서를 어겨 외화적 소멸을 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제30조). 셋째, 이 법을 어겨 염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기업소·단체·책임일군과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제31조).

이 법에서의 제재규정 역시 다분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되어 있어 집행당국의 자의적 운영소지를 남기고 있다.

IV. 외국투자은행법

1. 외국투자은행법의 제정의의

외국투자은행은 합영기업의 일종으로 설립될 수 있으므로(동법 제2조) 앞에서 본 외국인투자의 유형별 법제에서 살펴볼 수도 있겠으나 외환관리제도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외국인투자관련법제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은 1993.11.24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42호로 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공표하였으나 현재의 북한 경제상황이나 대외개방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외국투자가(외국은행 또는 자본가)가 북한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북한에 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동법은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외국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제2조제3문)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며, 북한의 금융시장 규모나 여건에 비추어 북한과의 합영기업설립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설립추진상의 각종 어려움을 무릅쓰고 합영기업형태의 은행을 설립할 만한 유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경제특구내외자은행·중외합작은행설치조례』(1985) 및 『상해내외자금융기구및중외금융기구의관리에관한규정』(1990) 등의 제정에 고무되었거나, 전반적인 외국인투자법제로서의 구색은 맞추어야 한다는 의도를 가졌거나, 향후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이를 금융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사전에 정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에서는 외국금융기관의 대표부·대리점·출장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자문사업·홍보활동 등과 제한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외국투자은행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2. 외국투자은행법의 주요내용

(1) 기본원칙

외국투자은행법의 입법목적은 세계 각국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

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나(제1조) 그 보다는 외국투자기업의 외화관리 등 금융업무 지원에 주된 목적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투자은행이 보유한 외화의 활용에도 관심이 있다고 보여진다.

외국투자은행은 합영은행·외국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을 지칭하는데(제2조제2문) 여기에서 합영은행은 합영법에 의한 합영기업형태의 은행, 즉 은행업이라는 업종을 영위하는 합영기업이라고 하겠으며, 외국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제2조제3문), 외국은행은 외국인기업법에 의하여 북한 영역안에 설립한 외국인기업형태의 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이 경우 외국은행은 북한의 법인이 된다 : 외국인투자법 제14조제1문) 한편 외국은행 지점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즉, 외국은행의 지점이라고 할 때의 외국은행은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은행의 북한내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고 따라서 외국의 법인인 은행을 말할 것이며 그렇다면 같은 법에서 그 의미를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북한의 영역안에 외국 국적을 갖는 순수 외국은행의 본점을 설립한다는 것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기업 형태의 은행이라고 보는 견해가 보다 타당하다고 하겠다(이와 같은 견해는 이 법 제3장에서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을 묶어 외국투자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타당성이 있다).

외국은행 지점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외국투자기업은 아니지만 외국투자은행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은행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주체를 외국투자가로 규정하였는 바(제2조제1문),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를 설립주체로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국은행 지점은 다소 설명이 곤란해지는 면이 있다(제11조에서는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외국은행 본점이 설립주체라는 식으로 규정하였다). 제7조에서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그 의미는 외국인투자법에서 본 바와 같다.

외국투자은행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제3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제3조), ②『국가는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제4조), ③『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은 북한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제5조), ④『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화관리기관이 한다』(제6조) 등이 그것이다.

첫번째 규정의 소유권 및 경영활동의 독자성 보장은 북한의 법인인 외국은행과 합영은행, 그중 특히 합영은행의 경우에 주로 의미가 있겠는 바, 북한측 당사자를 통한 간접적 제한은 가능하겠지만 합영은행 자체는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에서의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세번째 규정은 앞에서 외국인투자법 설명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네번째 규정에서 중앙은행기관이란 정무원 소속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중앙은행을 말하며, 외화관리기관은 역시 정무원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고 여겨지나 어느 부서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서는 중앙은행이 주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2)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절차는 ①설립신청 및 승인 ②설립등록 및 영업허가 ③세무등록의 단계를 거치며 그 중 설립신청에 있어서는 합영은행·외국은행·외국은행 지점 을 각각 별도로 취급하고 있으나(제9조 내지 제11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우선 북한 영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는 은행명칭, 책임자의 이름과 약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율, 업무내용 등을 밝힌 은행설립 신청서를 북한의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이 규정은 모든 유형의 외국투자은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중 출자비율은 합영은행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등록자본금은 우리 주식회사의 수권자본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합영은행·외국은행·외국은행 지점별로 설립신청절차를 보면 신청인과 첨부서류에서 차이가 있다.

구 분	합 영 은 행 (제9조)	외 국 은 행 (제10조)	외국은행 지점 (제11조)
신청인	합영당사자	외국투자가	본 점
첨부서류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u>합영계약서</u> <u>은행관리성원명단</u> <u>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u> 사본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u>은행관리성원명단</u> <u>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u> 사본	본점의 기본규약 지점의 경제타산서 <u>은행관리성원명단</u> <u>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u> 사본

투자가의 영업허가증 사본	<u>투자가의 재정상태표</u> 영업허가증 사본	<u>본점의 재정상태표</u> 본점의 영업허가증 사본 <u>본점의 연차보고서</u> <u>손익계산서</u> <u>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u> <u>대하여 책임진다는</u> <u>보증서</u>
------------------	-------------------------------	--

먼저 설립신청인을 보면 합영은행의 경우는 합영당사자가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북한측 당사자와 외국측 당사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본점이라 함은 당해 외국은행의 본사를 의미한다.

첨부서류에 있어서 기본규약·경제타산서·은행관리성원명단,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 사본·투자가의 영업허가증 사본(외국은행 지점의 경우는 본점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합영은행의 경우는 합영계약서를, 외국은행의 경우는 투자가의 재정상태표를,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는 본점의 재정상태표, 본점의 연차보고서·손익계산서·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 사본이라 함은 외화관리법 제5조후단에 규정된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하여 동법상의 외국환업무취급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투자가 또는 본점의 영업허가증 사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는 바, 우선 그것은 은행설립 신청단계에서 언급된 점에 비추어 외국투자은행법 제13조에 규정된 외국투자은행 영업허가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는 외국투자가(합영은행의 경우 외국측 당사자,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본사)의 본국에서 발행한 영업허가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모든 나라에서 그러한 영업허가증이 발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 북한당국이 이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남는다.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본점과 관련된 서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합영은행이나 외국은행은 등록자본금을 가져야 하고 일정금액의 예비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하여 외국은행 지점은 운영자금만 보유하면 되고 예비기금 적립의무도 없기

때문에(제18조·제21조 등 참조) 결국 본점의 신용이나 지불능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앙은행은 설립신청서접수일부터 50일안에 은행설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2조 : 여기에서 명문규정은 없으나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설립의 승인이 있으면 신청인은 승인일부터 30일이내에 은행 소재지의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에 은행설립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도록 하였는데(제13조 전단) 이 기간내(즉 승인일부터 30일이내)에 외국투자은행은 등록자본금의 50%이상(외국은행 지점의 경우는 운영자금 전액)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정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제19조).

여기에서 제13조 및 제19조의 관계가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양조문의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고 제13조에서는『은행설립을 신청한 자』라고 표현한 데 대하여 제19조에서는『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은행』이라고 표현하여 개념의 혼동을 보여주고 있다.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날부터 20일이내에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3조 후단).

외국투자은행이 일단 설립된 후의 변동에 관하여서는 ①해산 ②은행의 통합 ③등록 사항의 변경 ④자본의 양도 ⑤영업의 중지 내지 설립승인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해산에 관하여 보면 외국투자은행의 해산사유로 ①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②은행의 통합 ③지불능력의 부족 ④계약업무의 불이행 ⑤자연재해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들고 있으며, 해산 30일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해산승인을 받고 청산위원회 감독 밑에 청산작업이 끝나면 은행설립등록기관에 등록취소절차를 밟도록 하였다(제14조). 여기에서 지불능력의 부족, 계약업무의 불이행 등은 자진해산사유보다 뒤에 나오는 은행설립승인취소 등 강제적 정리사유로 규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본다(제31조 참조). 다음으로 영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보면 영업기간 종료 6월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승인후 변경등록여부에 관한 내용 등이 결여되어 있다(제15조).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하여서는 변경등록대상으로서 ①기본규약의 변경 ②은행의 통합·분리 ③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 ④영업장소 및 업종의 확대·축소 ⑤책임자와 부책임자의 교체를 규정하였고 30일전에 중앙은행에 승인을 받아 등록변경절차를 밟도록 하였다(제16조). 여기에서 은행의 통합·분리는 해산사유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의 통합이 있을 때 해산후 새로운 설립을 거치도록 하는 것보다는 등록의 변경으

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간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업종의 확대·축소, 영업장소 등은 당초 설립신청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등록의 대상으로 한 것은 체계상의 미숙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투자자본의 양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승인 밑에 투자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영은행의 경우는 상대편 출자가와 합의하도록 하였는데(제17조) 이 역시 등록사항의 변경인지, 별도의 설립으로 볼 것인지 등 애매한 점이 남아 있다.

영업의 중지 내지 설립승인취소는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은행업무에 있어 자본금은 예금 등의 지불을 위한 최후의 담보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외국투자기업형태로서의 은행에 있어서는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달리 책임을 추궁할만한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의 경우에는 자본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 이들은 중앙은행에 예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불준비금의 성격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등록자본금으로 북한 원화로 환산하여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를 요구하고, 그중 50%이상을 1차 불입자본금(제8조에서는 그냥『불입자본금』으로 표현)으로 갖도록 요구하였으며, 외국은행 지점은 운영자금으로 북한 원화로 환산하여 8백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여기에서 전환성 외화라 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태환가능한 외화(사실상은 북한 원화 등 사회주의국가·저개발국가의 화폐를 제외한 외화를 의미할 것이다)를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외화관리법 제3조에서 외화라 함은『전환성 있는 외국화폐·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령·행표·양도성 예금증서를 비롯한 외화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은·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은화 같은 귀금속』을 말한다고 정의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외화중에서 전환성이 있는 것이면 모두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1차 불입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은 영업허가의 요건으로서 은행설립 승인후

30일이내에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9조) 사실상 지불준비금의 성격도 갖는다.

이와 같은 점은 외국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을 채무의 보증액 또는 자기부담채무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유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볼 때 더욱 확실한 것 같다(제20조). 그리고 불입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은 처음에는 영업허가를 얻기 위하여 예치한 것이고 따라서 영업허가가 나온 후에는 인출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치된 금액의 20배의 범위안에서만 수신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내에서 은행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1차 불입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기 어려울 것이고 영업을 확장하기 위하여서는 나머지 등록자본금까지를 추가로 예치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등록자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연간 결산이 익금에서 5%를 떼어 예비기금으로 적립하고,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보상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데 쓰도록 하였는데(제21조) 이는 합영법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하다. 여기에서 외국은행 지점은 예비기금의 적립의무가 없다.

예비기금이 우리 상법상 법정준비금과 유사한 것인 반면(물론 그 용도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은행의 지불준비금과 비슷하지만) 제22조에 규정된 상금기금·문화후생기금·기술발전기금 등은 외국투자은행이 적립여부를 결정하고 그 용도도 예비기금과 상이하여 우리 상법상 임의준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합영법의 경우와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기금은 외국은행 지점도 적립할 수 있다.

(4)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외국투자은행의 업무는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외국인의 외화예금 ②외화대부, 시재돈자리 잔고초과 지불업무, 외화수형할인 ③외국환업무 ④외화투자 ⑤외화채무 및 계약의무이행에 대한 보증 ⑥외화송금 ⑦수출입물자 대금결제 ⑧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⑨외화유가증권의 매매 ⑩신탁업무 ⑪신용조사 및 상담업무 ⑫기타 업무로 되어 있으며 특정 외국투자은행은 이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우선 업무범위가 국제금융업무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며(『시재돈자리 잔고초과 지불업무』 등 생소한 용어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 등 일반적인 경우와 대응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⑫에서 기타 업무라고 하였기 때

문에 위에 규정된 것은 예시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개발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위의 업무중 특정업무를 은행의 필수적인 업무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몇몇 업무(예컨대 ⑨·⑩·⑪의 업무)만 담당하는 경우에도 은행설립승인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의 여신업무에 대한 제한으로서는 특정기업에 외국투자은행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금지한 규정(제24조)을 들 수 있다. 이는 외국투자은행이 같은 국가 또는 같은 그룹에 속하는 계열기업에 편중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에 해당한다.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지불준비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제25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입자본금이 지불준비금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금지불준비금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예금지불준비금의 예치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 입법의도를 확실히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투자은행 소재지의 중앙은행지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외국투자은행을 관할하는 중앙은행지점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하며(중앙은행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입자본금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도록 한 것과 구별된다.

외국투자은행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제26조전단). 연간 업무의 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하도록 하였으며(제26조후단)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간 업무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하고 분기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를 다음분기 첫날 15일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제27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우대조치는 ①영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의 범위안에서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고 ②북한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거래세를 면제하며 ③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게 받으며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도록 하고 ④은행경영으로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북한의 외화관리와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제28조).

기업소득세의 면세조건은 새로운 규정이 아니면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상의 규정을 반복한 것이다(동법 제15조제3호에 규정된 봉사부문에 대한 감면조건 참조).

거래세의 면제요건으로서 『유리한 조건』이란 런던금융시장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

자율 또는 거치기간 포함 10년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위 세법시행 규정 제63조 참조).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역시 기업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면제하거나 낫게』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감면을 의미하는지 애매하다.

은행경영에서 얻어진 과실 등의 해외송금에 대한 세금면제는 원래 부과하여야 할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이 조항에 규정된 조세감면외에도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상의 조세감면으로서 외국투자은행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 바, 우선 국제금융조직이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북한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제(동법 제15조제1호)는 외국투자은행중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북한의 법인이므로(외국은행은 앞에서 본대로 외국인기업의 일종으로 볼 경우를 말한다)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은행 지점은 다른 나라의 은행에 해당하므로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외국인투자법 제14조). 같은 외국투자은행인데 이처럼 조세감면에 차등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외국투자은행은 동법 제42조제2호에 따라 거래세의 50%를 면제받게 되며 그 밖에 외국인투자법 제9조제2호에 의하여 기업소득세의 감면 및 특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로 얻은 소득에 대한 예금지불준비금 면제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자체에 대한 예금지불준비금 면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예금지불준비금제도 자체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5) 제재 및 분쟁해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사후적 감독수단으로서는 벌금의 부과 및 영업중지와 승인취소를 두었다.

먼저 벌금의 부과요건을 보면 외국투자은행이 ①승인없이 책임자·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②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③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준 경우 ④정기보고문건을 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제29조).

여기에서 책임자·부책임자 교체에 대한 사전승인, 예비기금의 적립의무, 각종 업무보고의무 등은 제16조, 제21조 및 제27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소재지 변경에 대

한 사전승인 내지 업무검열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 조항에서 정한 내용이 전부이다. 그런데 별금의 성격이 형별인지 아니면 행정별적 성격의 것인지가 애매하고 별금액수·부과절차 등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의적 운영소지가 농후하다.

영업중지 및 은행설립승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두 조문을 두고 있다. 영업의 중지요건은 외국투자은행이 승인된 업종밖의 업무를 한 경우와 승인없이 기본규약을 고쳤거나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을 늘렸거나 줄인 경우로 되어 있다(제30조). 이와 같은 내용은 제16조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인데 책임자·부책임자의 교체는 별금으로 제재를 과하는 것과 비교된다. 은행설립승인의 취소는 은행설립신청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0개월내에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게 된다(제31조).

그 밖에 규정은 없으나 외국투자은행이 북한의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은행설립승인취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반적으로 보아 제재수단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상의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V.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제정의의

북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개방정책의 구체적 실적이 없는 가운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체제유지라는 정치적 요청에 비추어 외국인투자법제의 전면 보완을 통한 서방기업의 자유스러운 대북진출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합작법에서 외국투자가의 경영참가가 배제된 투자유형을 제시함과 아울러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여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일부 지역에 국한한 투자개방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수출자유지역이라든지 싱가폴·홍콩 등 자유무역항과도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으나 그 보다는 중국의 경제특구 운영경험에 북한이 자극을 받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근 자유무역항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여기에 의하면 자유무역항제도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취지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중국의 경제특구가 그려했듯이 대외개방의 전초기지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경제운용방식의 실험장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UN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참여하여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지정하였는데 새로 제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여기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서방국가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홍보에 보다 큰 목적이 있다고 여겨진다.

북한은 나진·선봉지구외에 신의주 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추가하여 지정하였다는 보도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관심의 초점이 나진·선봉지구에 모아져 있다. 나진·선봉지구는 그 입지면에 있어서 북한의 중심부에서 너무 떨어져 있고 도로·수도·통신·전기 등 사회간접자본도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며 인구희소지역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현지조달도 기대하기 어렵고 원료산지라든지 상품시장이 지척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의욕을 불러 일으킬 특별한 요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나진·선봉지구는 UNDP에서 개발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중국·러시아·북한의 3각지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UN과 당사국인 중국·러시아 등이 이 사업추진에 적극 성을 보일 경우 나진·선봉지구의 개발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최근 들어 나진·선봉지구의 관할구역을 확장함과 아울러 직할시로 승격시켰다는 보도가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도 나진·선봉지구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정 합영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설립절차를 다소 달리 함과 아울러 우대조치를 명시하였고 외국인투자법·외국인기업법 및 관련 세법과 외화관리법 등에서도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련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남포지역 등 투자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편의 내지 긴장완화라는 상징성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휴전선 일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남포지역은 평양과 근접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휴전선 일대는 북한의 군사력이 집중배치되어 있는 군사적 이유 때문에 지정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법적 성격은 그 적용대상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총 7개장 43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자유경제 무역지대법의 기본』, 제2장은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 제3장은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제4장은『관세』, 제5장은『통화금융』, 제6장은『담보 및 특혜』, 제7장은『분쟁 해결』이라는 제명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내용중 상당부분은 외국인투자법·외국인기업법·합작법·외화관리법·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의 규정내용을 반복한 것으로서 입법체계상의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대외적 개방창구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 지역으로의 출입은 자유롭게 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것은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적용될 출입국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자유경제무역지대제도에 관하여서는 이 법외에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 자유무역항규정 등 관련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각각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주요내용

(1) 총칙적 사항

이 법의 입법목적은『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에 있다(제1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념은『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금융·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으로 정의하였다(제2조제2문).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법적 지위 내지 여기에 적용되는 법규에 관하여서는 자유경제 무역지대에도 북한의 주권이 적용되나 국가가 별도로 수립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 무역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고(제2조제2문·제3문), 그 구체적 내용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북한의 법과 규정에 따르되,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북한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하도록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제6조). 여기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이라 함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및 그 하위관련규정인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자유무역항규정 등의 제반내용과 외국인투자법·외국인기업법·외화관리법·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상의 관련 조항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북한의 일반 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은 대외경제위원회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제3조) 그 구체적 내용은 제2장에 규정되어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적용대상은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법에서는『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제7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는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며(제4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는다(제5조). 투자형태에 관하여는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으로서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있는데 전자는『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 후자는『현지 집행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제8조).

대외경제위원회의 기능(사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경제관리운영과 관련한 집행
 정책의 수립

②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운영사업의 정상적 장악·지도

③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이상의 대상과 그 밖의 부문에서 총투
 자액 1천만원이상의 대상에 대한 심의·승인

④의 투자심의·승인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
고 있다.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조직·집행하며 행정
 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 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고 규
 정하고 있어(제11조) 일종의 종합행정기관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지대당국의 성격은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하려고 별도로 설치한
 기관으로서, 대외경제위원회가 중앙집행기관이고 지대당국은 현지 집행기관이라고 구
 분하고 있으나(제8조제2문), 일반지방행정기관은 아니고 일종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내
 지 중앙행정기관의 직속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지대당국은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기관·기업소 대표와 외국투자가 대표로 구성하

는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협의·협조하도록 하였다(제16조).

지대당국은 그 명칭이 북한의 일반적인 행정기관 명칭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승인 신청접수 및 승인과 기업등록 및 영업허가 등 각종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고 자문위원회 구성원에 지대당국의 대표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독립적인 행정관청이라 하겠다. 이 경우 각종 행정경제부서와 대외경제부서는 지대당국의 하부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외적인 관계에서만 지대당국의 명의를 사용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그 조직체계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남는다.

지대당국의 기능(사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제12조).

- ①주민행정·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사업
- ②사회질서유지 및 인신과 재산의 보호
- ③지대개발계획의 작성·선전·집행
- ④모든 투자신청의 접수, 총투자액이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2천만원까지의 대상과 그 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에 대한 심의·승인
- ⑤기업등록·영업허가
- ⑥투자가의 노력채용 방조
- ⑦임대 기타 형식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
- ⑧건물·구축물·작업장의 건설·재건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봉사의 제공
- ⑨기타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 밖에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양성기금을 설치하고 양성기관을 운영한다(제15조). 이를 관리기관의 업무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승인업무에 관하여는 몇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승인권한은 투자규모 및 업종에 따라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에 분담시키고 있는데 모든 투자승인신청은 지대당국에서 접수하며, 그 중 대외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은 대외경제위원회가 해당투자의 대상(업종)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재정부·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지대당국의 소관사항은 지대당국 자체가 다양한 행정경제부서와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절차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투자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

기업은 80일안에 기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데(제13조제1문) 이는 개정 합영법 제9조, 합작법 제7조와 외국인기업법 제8조에 규정된 내용을 반복한 것이며 승인신청서의 처리기한을 명시한 점에서 구 합영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였다(제13조제2문). 이는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서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를 금지 또한 제한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나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며, 외국인기업법 제3조제2문에서 『나라의 안정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투자승인에 대한 사후감독규정으로서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이 투자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북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경우에는 투자승인을 한 대외경제위원회 또는 지대당국이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제14조), 외국인기업법 제29조에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동법을 위반한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외국인투자법이나 합작법·합영법 등에서는 이와 같은 사후감독규정을 두지 않았다).

(3)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경제활동 보장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경제활동의 중점은 외국투자의 유치 및 기업운영에 있으며 따라서 이 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유로운 상품교역과 출입국보장에 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출입국 관련사항에 대하여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기까지 하였다).

외국투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제8조 제1문). 여기에서의 기업은 외국인단독투자기업은 물론 합작기업·합영기업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도 외국투자가와 합영·합작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음을 당연하며 북한측의 단독투자기업도 허용하고 있으나 북한측의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투자는 단독투자의 경우에도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조달에 관하여는 토지와 노동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아래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지대노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노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고 자유경제무역지대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북한의 기술자·고급기능공을 지대노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과 대외경제부서와의 합의 아래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제21조), 이는 이미 외국인투자법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밖의 북한 주민도 채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진·선봉지구 등의 인구분포 등 인력수급사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며 북한 주민의 취업을 위한 거주지 이동은 개방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는 바, 지대노력알선기관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밖에 있는 북한의 기업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대밖에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24조) 이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대밖에 이루어진 생산활동에 대하여서도 관세·기업소득세 등 이 법에 규정된 제반 우대조치를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지대밖에 위치한 북한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밖에 외국투자기업과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대리점·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9조), 『경제무역활동』의 개념 속에는 무역업무외에 일반적인 업무까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상품의 가공 및 중개무역기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바, 여기에 관하여서는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여오며 그것을 저장·보관·가공·조립·분해·선별·포장·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로 나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제1문). 여기에서 『모든 상품』이라고 하였으나 바로 이어서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도록 하여 제한을 두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검역법규·관세법규가 알려져 있

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상품의 반출입에 관한 표현에 애매한 점이 있는 바, 외국으로부터의 반출입, 즉 수출입만을 의미하는지 지대밖의 북한영역으로부터의 반출입까지를 포함하는지가 불분명하다(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의 상품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대중 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하도록 하였는데(제22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가격결정원리를 배제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해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대중필수품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운영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제23조) 지대내의 나진항 등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항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4) 관세

북한의 일반적인 관세관련법규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관세제도의 실제운영상황은 단편적으로 입수되어 있다(보도에 의하면 1993년 12월에 세관법을 제정하였다고 하나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관세는 무역상품이 관세경계선을 통과할 때 붙이는 조세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에서의 무역은 국가독점과 계획통제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상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여행자 소지품·국제소포 등과 같은 무환수입품에 대하여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의 종류로는 부과대상에 따라 수출관세·수입관세·통관관세가 있고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채택·적용하는데 최저세율은 협정세율로서 호혜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을 말하며 최고세율은 일반세율로서 최저세율의 2~4배가 보통이다.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에 대하여는 대개 무관세를 적용한다. 세율은 또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기계·설비류에 대한 수입세율은 극히 낮고 소비재에 대한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관세부과 방법으로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부과하며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관련기관으로는 관세관리총국·세관·세관검사국 등이 있다. 관세관리총국은 무역부 산하기구로서 관세 제기관을 직접 통할하며 관세 제기관의 조직화·관리를 비

롯하여 여러가지 관세정책의 입안 또는 관세기준에 관한 문제의 해결, 관세통계의 조직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세관은 관세관리총국의 지도 아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적법성을 검사하고 관세금액의 산정과 징수, 불법 수출입화물 단속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세관검사국은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징수를 전담한다(여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법제처간,『북한의 합영법제』p.76이하 참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관세에 관하여 5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먼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하여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제25조) 이어서 관세 면제대상과 부과대상을 열거하며 기업의 서류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혜관세제도가 무엇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의 지역에 비교하여 관세부과에 특혜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분명하나 특혜의 내용이 이 법에 규정된 관세면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밖에 적용세율을 낮추어 주는 것까지는 포함하는지 알 수 없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상품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으며 ①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여오는 상품 ②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③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④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⑤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이라고 규정하였다(제26조).

반면 ①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②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해 내가는 경우에는 위의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제27조), 제26조와 제27조의 관계를 보면 제27조 ①의 경우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가운데 제26조 ① · ③ · ④의 상품을 제외한 상품, 즉 일반소비재에 대하여는 관세를 한다는 의미이고 제27조 ②의 경우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것이 지대에서 생산된 제품이든 외국에서 수입한 완제품 또는 중간재든 간에 모두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

아울러 제28조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이 지대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문도 관세면제 제외대상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27조에 추가하여 규정하여도 무방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일종의 보세구역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볼 수도 있고 거래유형에 따라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경계선을 일종의 관세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은 세관의 검사문건과 상품의 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서류를 5년동안 보관할 의무를 진다(제29조).

(5) 통화금융

이 법 제5장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통화금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외화관리법의 규정과 중복된다.

먼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유통화폐는 북한 원화로 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북한 원화 또는 전환성(태환성) 외화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 원화와 외화의 환산비율(환율)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하도록 하였다(제30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아래 북한과 타국의 은행에 계좌를 둘 수 있게 하고(제31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북한과 타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제32조제1문) 북한 은행의 대출능력에 의문이 간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외화관리법 제18조제2문 및 제20조 각각에서는 타국의 은행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에 덧붙여 대부받은 북한 원화와 외화로 산(외화와 교환한) 북한 원화는 북한 은행에 예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제32조제2문).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은행이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아래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33조)은 외화관리법 제19조와 중복되는 규정이며 이러한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제24조제1호 제2문). 여기에서 비거주자라 함은 북한 주민이 아닌 외국인을 의미한다고 여겨지나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의 법인이라는 점에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밖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제34조)『정해진 장소』라 함은 어음교환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투자은행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합영형태의 외국투자은행외에 외국인단독투자형태 및 지점형태의 은행설립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6) 외국투자가 등에 대한 특혜

이 법 제6장은 『담보 및 특혜』라는 제명으로 되어 있는데 『담보』라 함은 우리법상

의 담보개념과 달리 송금 등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먼저 송금보장에 관하여서는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이자·배당금·임대료·봉사료·재산판매수익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제35조) 외국인투자법 제20조, 외국인기업법 제22조 및 외화관리법 제27조에 규정된 유사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지만 외화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외국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노임 등 송금보장에 관하여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어서 특혜에 관한 몇 개 조문을 두었는데 우선 세제상의 특혜를 보면 ①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소득세율을 결산이윤의 14%로 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25%보다 낮게 하였고(제36조) ②경영기간이 10년이상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총투자액이 6천만원이상인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37조) ③외국투자가가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이상일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40조). 이들 규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법 제9조제2호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2조·제15조 및 제16조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서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하부구조 건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의도에서 반복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게는 ①입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고(제38조) ②북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였다(제39). 여기에서 장려부문이란 개정 합영법 제3조, 외국인투자법 제7조, 합작법 제4조에 규정된 투자업종을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여기에서 북한금융기관의 자금대부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제41조). 그 구체적 내용은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에 나타나 있지만 북한의 일반적 출입국 및 여권관련 법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7) 분쟁해결

이 법 제7장의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은 ①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제42조) ②외국투자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고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게 한 것인데(제43조) 이는 외국인투자법 제22조, 개정 합영법 제47조, 합작법 제21조, 외국인기업법 제31조의 규정을 반복한 것으로서 입법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VI.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1.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의 제정의의

자유경제무역지대제도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부분적·제한적 개방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바,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경제활동의 범위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한 북한 당국의 유인시책과 더불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지역으로의 통로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출입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의 출입은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는데 외국으로부터 이 지역에 출입하는 것과 이 지역으로부터 북한의 다른 지역에 출입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싫어하지만 무엇보다도 외부의 사정이 북한내에 알려져 체제동요의 원인이 될까 우려하기 때문에 출입국절차는 엄청나게 까다로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사실 그들은 출입국 관련법규의 공개까지를 기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유경제무역지대에의 출입국절차는 일반적 출입국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절차의 간소화 내지 편의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이겠지만 그 내용은 북한이 허용할 수 있는 개방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제23조)과 북한당국은 이 지역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는 점(제41조)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만 가지고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의 출입을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가들에게도 출입절차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을 안겨

주어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예견되어 왔다.

북한 당국은 1993년 1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공표된 후 약 11개월이 지난 1993. 11.29 정무원결정 제75호로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을 제정·공표하였는데 그 형식면에서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를 통과한『법』이 아니라 정무원결정의『규정』을 채택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법형식 상호간에 상하위관계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는 동법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사항까지를 창설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규정은 동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일반적인 출입국관련법규가 제정되어 있다면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상 관련조항과 함께 그것에 대한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의 체제를 보면 장별 구분을 두지 않고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입국목적 등 여러가지 경우로 나누어 비교적 상세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법의도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자유경제무역지대에의 출입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일 뿐 다른 외국의 일반적 출입국절차와 비교하여 보면 여전히 폐쇄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북한내 다른 지역 상호간의 출입절차는 더욱 엄격히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의 주요내용

(1) 총칙적 사항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 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하였다(제1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의 출입국 편의외에 국가안전보장, 즉 체제개방의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도 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이며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포함되는 바(제2조), 여기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의 출입은 외국으로부터의 출입은 물론 북한 타지역으로의 출입까지를 포함하며 외국인의 범위에는 상용목적의 출입국자외에 외교관·관광객이 포함된다(그러나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3조에 규정된 선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조선동포의 의미에 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관련업무는 지대당국의 출입국 사업부서에서 관장하는데(제3조) 사증발급·초청장 발송·관광증 발급 등의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 등).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외국인의 본국 등)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지녀야 한다(제4조).

남한 주민은 여권법에 의한 여권대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북한 당국이 정한 통로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제5조), 여기에서의 통로는 항만·공항과 기차·버스터미널 등을 예상할 수 있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로의 입국절차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1조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직접』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이 규정에서는 무사증제도가 상당히 변질된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이 규정에서는 북한의『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대안의 기관·기업소·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초청한 문건을 휴대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초청기관은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도착하기 5일전까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출입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였다(제6조). 즉 사증대신 초청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출입국 절차의 자유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몇가지가 있는데 우선 관광목적의 출입국을 들 수 있다. 즉 북한의 관광증을 가진 외국 관광객은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는데 관광증은 북한의 해당기관 또는 외국주재 북한의 외교 및 영사대표부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증과 다를 바가 없다(제10조제1문 및 제2문).

무사증출입의 또 다른 사례는 자동차통행증 또는 출입증에 의한 출입이다.

여기에 관하여서는 ①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외국인은 지대에 도착하기 5일전까지 서면 또는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에 자동차통행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8조제1문) ②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을 일정한 기간에 여러번 반복하려는 외국인은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다회 출입증을 받을 수 있고(제9조) ③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북한주재 외국의 외교대표부·경제무역대표부·국

제기구대표부에 소속된 자들은 북한의 외교부에, 영사대표부에 소속된 자는 해당 도행 정경제위원회에, 그 밖의 외국인은 북한의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제11조)고 규정하였다.

한편 사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는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 때에는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외교 및 영사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휴대하도록 하였다(제7조).

(3) 자유경제무역지대로부터의 출국절차

다음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보면 ①관광목적의 경우에는 지대안의 관광봉사기관에서 관광증을 받도록 하고 (제10조제3문) ②그 밖의 경우에는 떠나기 5일전에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받도록 하였다(제14조).

그리고 자유무역항을 통하여 중계되는 무역화물을 자유경제무역지대밖의 북한 영역을 거쳐 화물자동차로 실어 나르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국경을 통과하기 5일 전에 해당지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받도록 하였는데(제15조) 여기에서 지대밖의 북한 영역을 거친다는 표현과 국경을 통과한다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애매하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다가 출국하는 절차를 보면 ①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증없이 출국할 수 있으나(제12조) ②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다가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쳐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허가 5일전에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아야 한다(제13조). 여기에서 출국허가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4) 출입국관련증서의 발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출입국관련증서에는 사증·초청문건·관광증·여행증·자동차통행증·출입증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여행증·출입증·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도록 하였고(제16조), 여행증·출입증·자동차통행증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여지는 데(자동차통행증의 경우는 제8조제2문에서 15일로 정하여져 있고 출입증 가운데 다회 출입증은 제9조에서 30일로 정하여져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전에 해당 발급부

서에 신청하여 기간연장을 승인받도록 하였으며(제17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1주일 안에 해당기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제18조).

여행증·출입증·자동차통행증을 분실하였거나 해당 기일안에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분실한 증명문건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정해진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도록 하였는데(제19조) 이처럼 각종 증명서류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징표라 하겠다.

(5) 제재조치

자유경제무역지대출입과 관련한 제재조치에는 위에서 본 각종 증명서류의 미반납·분실 등에 대한 금전적 제재 외에 국제테러범·마약중독자·마약밀수입자·전염병 환자·정신병자와 기타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의 입국금지(제20조) 그리고 증명문건의 위조 및 정해진 통로외의 통행에 대한 해당 증명문건의 회수 및 벌금부과, 행위가 엄중 할 경우의 추방 및 재입국금지조치(제21조)를 규정하고 있다.

VII.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

1.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의 제정의의

자유경제무역지대는『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금융·봉사지역으로 선포』하였기 때문에(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조) 외국투자가들은 이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규정은 1994년 2월에 정무원결정으로 제정·공표되었는데, 그 목적조항인 제1조에서『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란 외국투자법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 말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지사·대리점·대표부·출장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며(외국인투자법 제3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북한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대표부·출장소를 내울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9조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이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대리점·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법이나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법적으로

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외국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합영회사·합작회사·외국인기업처럼 북한의 법인이 아니며 다른 나라의 법인으로서 북한에 지사·대리점·대표부 등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외국인투자법 제14조제2문은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기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며(다만, 외국투자은행법은 외국은행 지점까지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도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명문화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자유경제무역지대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북한이 제한적 개방정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북한과의 합작·합영투자외에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외국기업의 지사·대리점 등의 진출을 적극 환영할 것이며, 이 규정은 바로 외국기업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활동하는데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9조에서 『외국투자기업』이라고 하였더라도 이는 외국기업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새겨도 될 것이며, 동법에서 정한 제반 특혜적 내용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 등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당국도 이점을 향후 입법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의 주요내용

이 규정은 장절 구분없이 총 3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기구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 받는 등의 위임대리업무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기업의 위임대리업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자체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다 되거리·위탁판매를 하거나 북한내에 있는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활동은 금지되며 북한 당국과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제5조 및 제6조)

이와 같은 상주대표사무소에는 대표부·대리점·출장소 등이 포함되는데(제3조제2문) 그 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북한 영역밖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 설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조제1문).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지로 제한되며 그 구성원의 수는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는데, 책임자와 대표자의 수는 여기에 포함되지만 통역원·타자수·부기수·경비원을 비롯한 행정기술요원과 운전수·정비원 등 봉사요원은 정원제한을 받지 않는다(제4조).

이와 같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업무·존속기간·구성원수 등에 제한을 둔 것은 가급적 합영기업·외국인기업 등의 형태로 직접투자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설치지역을 제한한 것은 역시 제한적 개방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변경·기간연장 등의 신청문건은 조선어(한글)와 외국어로 만들도록 하고(제7조), 상주대표사무소는 북한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의무적으로 지킬 것과 상주대표사무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9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절차를 보면 대외경제위원회 또는 중앙은행의 설치승인을 받고 난 후 지대당국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세무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지만 이는 설립요건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설치신청서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대외경제위원회(외국 금융기관의 경우는 중앙은행)에 제출하며, 여기에는 본 기업(외국기업)과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책임자의 이름, 대표성원수와 대표들의 이름, 설치장소, 활동내용, 상주기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 신청서와 함께 본 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기업등록증서 사본, 거래하는 은행이 발급한 신용확인서, 상주하려는 대표사무소 책임자 및 대표성원들의 위임장과 경력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본 기업의 최근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기본규약·이사회의 성원명단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제10조).

대외경제위원회 또는 중앙은행(심사승인기관)은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 심의한 다음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하며(제11조), 설치승인일부터 10일안에 설치승인서를 지대당국에 보내 주어야 한다(제12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설치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지대당국에 상주대표사무소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신청시에는 설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설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3조).

지대당국은 승인된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하고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발급하게 되며, 등록일이 상주대표사무소설치일로 된다(제14조). 그리고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해마다 상주대표사무소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그 유효기관이 끝나기 15일전에 지대당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제

16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주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상주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장신청서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이유를 밝히고 상주기간 동안 본 기업이 북한과의 경제거래정형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2조).

한편,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규정(이 규정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체류증 또는 상주외국인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과 관련된 규정(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을 가리킨다)에 따른 출입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다(제1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설치장소, 상주대표성원수를 변경하거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자 등의 교체시에는 변경신청서에 그의 위임장과 경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7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상주대표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이 책임자의 대리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18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위에서 언급한 각종 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거나 변경 및 등록취소수속을 하려고 할 경우, 소요되는 수수료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제27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이 끝났거나 상주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철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철수하기 30일전에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에 서면으로 알리고 세무 및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7일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지대당국에 반납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기관의 납세확인문건을 지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

다음으로 상주대표사무소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는 북한의 무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되, 필요한 경우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아래 북한안에 있는 다른 은행에 개설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제19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세금과 관련된 북한의 법과 규정(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과 그 시행규정을 가리킨다)에 따라 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제20조). 이와 관련하여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마다 1월안으로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조선어(한글)로 작성한 연간사업총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

상주대표사무소에 필요한 운수수단·사무용품·생활용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운수수단의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

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번호를 받은 다음 자동차3자책임보험에 들어야만 운수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운수수단·사무용품·생활용품을 팔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는데,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한 다음 지정된 상업(무역)기관을 통하여서만 팔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여기에서 최초 세관수속시 관세가 부과되는지 명문규정이 없으나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6조제3호의 규정 등을 유추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목적외 사용 시 추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3자보험은 북한의 보험기관이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상주대표사무소는 필요한 건물을 세내거나 인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건물관리기관 또는 인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세낸 건물, 채용한 인력의 관리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건물양도 또는 노동과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제24조). 여기에서 노동에 관련된 법규는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가리킨다고 하겠으나 건물양도에 관련된 법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못하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통신은 북한의 해당 체신기관을 통하여 보장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 아래 국제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5조).

마지막으로 상주대표사무소에 대한 감독 및 분쟁해결에 관하여 3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먼저, 십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은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정형(상황)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검열일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보여 주여야 한다(제28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이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북한 영역밖으로 추방할 수 있다(제29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고 규정한 것은 다른 법규의 경우와 같다(제30조).

VIII. 자유무역항규정

1. 자유무역항규정의 제정의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3조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자유경제무역지

대외국인출입규정 제15조에서는 『자유무역항을 통해 중계되는 무역화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유무역항이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위치한 무역항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93년 1월에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공표한 이래 출입규정 및 상주대표사무소규정 등 하위법령을 잇달아 내어 놓았으며 1994. 4. 28에는 정무원결정 제20호로 자유무역항규정을 제정·공표하였다.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계무역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하였다고 그 입법취지를 밝혔으며(제1조), 총 4장 28개조문으로서 자유무역항에의 입출항절차와 항만시설이용절차 등 주로 우리 법제상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타 관세·항만시설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자유무역항에 대한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의의를 찾으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제관례에 따른 자유무역항 개념과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세계일보 1994. 6.1). 예를 들면 자유무역항을 지정하면서 『항지역』·『항수역』 등으로 지역적 범위를 외국의 보세구역 정도로 축소한 것은 본래 의미의 자유무역항 개념과 동떨어진 것이며, 또한 국제관례로 보면 굳이 자유무역항이 아니더라도 선원수첩을 가진 사람은 보세구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외국선박들도 자유롭게 기항할 수 있다는 것이며, 측심·전파탐지·무선통신의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측심의 경우를 보면 국제관례상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측심은 항행의 목적만이 아니라 하역작업중에도 조석의 차이와 하역진행상태에 따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항이라는 것도 북한의 다른 항구에 비교하여 입출항 등의 자유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우리 개념상 『개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중국의 통과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함으로써 그 중개수수료에 의한 외화획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2. 자유무역항규정의 주요내용

(1) 총칙적 사항

자유무역항규정 제1장은 『일반규정』이란 제명으로 9개조문을 두고 있다.

먼저, 제1조 목적조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제2조에서는 나진·선봉 및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자유무역항은 항지역과 항수역을 포함하고, 항지역은 부두·등대·배수리기지·짐의 야적장·보관창고와 구내철길·구내길 등이 있는 지역을, 항수역은 배의 입출항수로·가박지·정박지 등이 있는 수역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자유무역항에의 입출항의 자유를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경제무역 활동을 하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배·선원·여객과 짐은 국적이나 출발지·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유무역항에 나들 수 있다』는 것이다(제3조). 그리고 자유무역항에 드나드는 배와 짐에는 관세·선박세·짐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제4조), 북한의 관세체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갖는 의의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제5조는 자유무역항에서의 사업활동 및 그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항에서는 배의 취급과 짐작업, 짐보관, 배수리와 같은 경제활동을 있다고 규정하고, ①배길 안내, 짐을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의 운반·재포장·가르기·섞기 같은 작업과 봉사, 배 및 설비의 수리, 항시설물 및 설비의 임대, 보관창고의 운영과 같은 사업을 항관리운영기관이 하며, ②육상출입증을 발급하거나 배의 입출항승인을 하며 항안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 항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침몰된 배와 짐을 배 또는 짐임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업은 항사업감독기관이 하고, ③항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갱신하는 사업은 항건설기관이 한다고 하여 각 행정기관의 업무분장을 규정하였다(이들 기관의 명칭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외국투자가는 자유무역항(이하『항』으로 표현)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즉 합작기업·합영기업·외국기업을 창설하여 부두·창고·배수리소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항관리운영기관(이하『항기관』으로 표현)과 합의한 다음 해당 법규에 따라 기업창설수속을 하도록 하였다(제6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치장소에 관한 규정이면서 그 설치절차에서 항기관과의 합의를 추가한 데 의의가 있다.

항에 드나드는 배·선원·여객과 짐은 국경·통행검사·세관검사·위생검역·수의검역·식물검역을 받도록 하되, 중계무역짐은 해당 검사·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검역을 하도록 하였는데(제7조), 역시 검사·검역에 관한 법규(세관법 등)가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제1장의 마지막 두조문은 그야말로 일반적 규정인 바, 항출입과 항에서의 경제무역활동은 이 규정에 따라 하고 이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북한의 해당 법과 규정에 다른다는 점(제8조)과, 이 규정은 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 다른 나라의 기관·회사·기업체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 북한 영역밖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게 적용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제9조).

(2) 항출입 절차 및 방식

제2장은 『항출입』이라는 제명으로 5개조문을 두고 있다.

항출입은 지정된 육상출입구와 입출항수로를 통하여도록 하였는데, 육상출입구를 통하여 항에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항사업감독기관이 발급한 출입증이 있어야 하고, 입출항수로를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사업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입출항하려는 배의 임자 또는 선장은 배의 기술자료, 실거나 부릴 짐명세서와 선원의 명단,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 배길안내지점의 도착 또는 출항예정시간을 밝힌 문건 등을 항사업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제10조). 제9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규정은 외국투자가 · 외국투자기업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제10조제2문에서 육상출입구를 통한 자유무역 항출입을 엄격히 규제한 것은 북한 주민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서 개방에 따른 그들 체제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입항하려는 배는 배길안내지점에 도착하여 북한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였고(제11조), 입출항하려는 배의 선장은 해당한 지점에서 검사 · 검역을 받을 때마다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제12조), 배가 입출항하거나 항 수역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배길안내(도선)를 받도록 하였다(제13조제1문). 배길안내는 항기관의 배길안내원이 하며, 배가 입항할 때는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가박지 또는 부두까지 배길안내를 받도록 하되, 항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외박 까지 배길안내를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가 출항할 때는 항 가박지 또는 부두에서부터 배길안내지점까지 배길안내를 받도록 하되, 경우에 따라 일정한 지점까지만 배길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배길안내를 받은 데에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길안내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배길안내를 받지 않은 데에서 일어나는 손해』를 잘못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제13조). 그리고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북한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선적의 선박일 경우 북한 국기의 휴대 · 게양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기름수송배 · 가스수송배와 같은 위험물질을 실은 배는 항기관이 특별히 정한 수역에만 정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조).

(3) 항이용 절차 및 방식

이 규정 제3장은 『항이용』이라는 제명으로 하역작업 기타 항만운송사업에 관하여

10개조문을 두고 있다. 먼저,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 운반·재포장·가르기·섞기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짐작업계약서에는 짐의 이름·수량, 작업의 종류,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배의 입항예정날자, 작업을 끝내는 날짜와 시간, 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밝히도록 하고, 짐실이 작업인 경우에는 짐작업계약서에 짐모으기계획을 첨부하도록 하였다(제15조).

그리고 짐을 보관하려고 할 경우에도 항기관과 계약을 맺도록 하되, 이러한 짐보관계약서에는 짐의 이름·수량,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날짜, 보관기관, 짐 보관과 관련한 주의사항 등을 밝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이러한 짐작업계약 또는 짐보관계약은 북한민법에 열거된 계약의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항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가격재정기관이 정한 요금을 물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항사용료·기름공급료·물공급료·짐보관료·짐작업료·짐운반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항에 보관하는 짐은 10일간 가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제17조). 이러한 요금은 짐작업계약 또는 짐보관계약의 경우 계약의 중요부분에 속하는데, 그 요금은 공정요금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배에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따라 하되, 부폐 또는 번질될 수 있는 짐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싣거나 부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제18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과정에 배에서 생기는 노동재해에 대한 책임은 배임자가 지도록 하였다(제19조).

한편 북한의 해당기관·기업소는 항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배임자 또는 짐임자의 대리사업을 하는 대리인기관을 설치하고 항안에 해당 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는 점(제20조)과 다른 나라 기관·기업체와 개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기관을 통하여 항안의 해당 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였는데(제21조), 이는 항만운송사업의 주체와 방법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항기관은 항의 관리운영을 위한 항연합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항연합위원회에는 항기관과 항사업 감독기관, 철도운수기관, 세관, 검사기관, 검역기관, 배 및 짐대리인기관, 항을 이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참가하며, 그 책임자는 항장(항기관의장을 의미하는 것 같다)이고, 한달에 1회이상 소집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였으나(제23조) 항연합위원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이 문제이다.

제22조에서는 항의 관리운영과 설비개조에 필요한 자금은 항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항안에서는 해당 항 및 해저에 대한 조사·연구·관측을 하거나 환경을 파

피하는 행위, 항의 출입 및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제24조), 이는 제4장 제25조의 제재대상 위반행위 유형과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법체계상 혼란을 빚고 있다.

(4) 제재 및 분쟁해결

제4장은『제재 및 분쟁해결』의 제명으로 4개조문(제재에 관하여 3개조문, 분쟁해결에 관하여 1개조문)을 두고 있다.

먼저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① 항의 구조물·시설물·설비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해를 보상시키고 정도에 따라 5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②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고, ③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④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고, ⑤피치·송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 환경오염을 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⑥배가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억류하고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고, ⑦요금을 정한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수송수단과 짐을 유치할 수 있으며, ⑧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측심·전파탐지·무선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재 또는 배를 물수한다는 것이 그 내용인 바(제25조), 선박의 억류·몰수 등 상당히 가혹한 처벌을 규정한 위반행위 유형은 순전히 행정적·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군사적·안보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항사업감독기관은 사법검찰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법검찰기관에 의하여(사법검찰기관을 통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송수단 또는 짐을 억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억류하거나 유치하는 기관에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 위험은 억류 또는 유치를 요구한 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이러한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형법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형법에서 유추적용이 허용되므로 처벌에 별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다).

항운영과 이용에서 제기되는 의견상이 등 분쟁해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와 마찬가지로 상투적인 1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제28조 참조).

IX. 토지임대법

1. 토지임대법의 제정의의

북한의 1992년 개정헌법은 종전 헌법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제20조) 이어서 국가소유권을 규정한 제21조에서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은 국가만이 소유하도록 하되, 협동단체소유를 규정한 제22조에서는 토지는 협동단체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4조에서 협동농장원들의 터발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개인소유에 속한다고 하였으나 이 경우 터밭도 토지소유 자체는 협동단체소유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서 사유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토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규로서는 1977.4.29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한 토지법이 있는데 이는 총 6장 80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방대한 토지문제를 하나의 법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허술한 부분이 많다(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체처간, 『북한법제개요』 p.436이하 참조).

북한당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에 봉착하였겠지만 토지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심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형편을 보면 자본과 기술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들이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는 값싼 토지와 노동력(그리고 조세감면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는 중국·베트남은 물론 서방의 투자유치 경쟁국들도 제시할 수 있는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이라 하겠는데 노동력은 그 숙련도 또는 채용 및 해고상의 애로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그다지 좋은 조건이 되지 못하여 따라서 공장부지 등 토지의 제공에 있어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을 끌만한 특혜를 제공하고 싶은 생각도 고려할 수 있겠는 바, 토지의 사유를 금지하는 그들의 토지정책에 비추어 토지문제는 오히려 투자의욕을 저애시킬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딜레마에 빠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984년에 나온 합영법은 토지에 관하여 『합영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만을 두고 있었는데(제21조제4문), 그후 1992년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장려부문에 투자할 경우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을 보장한다고 하여 토지를 투자유인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제8조) 외국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

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는 점과 임대해 준 토지는 임대기간내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제15조)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합영법시행세칙 등에서는 토지사용권을 출자목적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필요한 토지의 임차, 임차기간의 연장(제20조), 장려부문투자에 대한 입지상의 우대 및 임대료 감면(제38조)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법과 거의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토지의 사용에 관한 북한 당국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중국의 입법례(예컨대 1990.5.19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도시국유토지사용권양도·재양도점정조례』 등)와도 비교가 되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서인지 북한 당국은 1993.10.27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40호로 토지임대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총 6장 42개조문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갖고 있는데 이는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977년의 토지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와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권리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토지로부터 생기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토지임대법에서 북한의 토지에 대한 비록 이용권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私人에게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조치이며 더구나 50년동안 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만, 토지이용권이 물권적 보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각종 간섭과 통제가 뒤따르며,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이면서도 그 나마 토지수준의 보호조치도 없다는 점 등 서방기업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하겠다.

2. 토지임대법의 주요내용

(1) 총칙적 사항

토지임대법 제1장은 다른 대다수 법령과 같이 『토지임대법의 기본』이라는 제명 아래 주로 총칙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법의 입법목적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있다고 하였다(제1조).

토지임대법에 의하여 북한의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는 자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그리고 『공화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며 따라서 북한 주민이나 북한의 기업 등은 제외된다(제2조). 그러나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가 합영·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5조) 토지는 합영·합작에 있어 북한측 당사자가 출자지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며 외국측 당사자가 볼 때 북한측 당사자가 출자하겠다고 나선 토지에 대하여 법제상 확실한 권리의 보장이 있기를 바란다는 점이 고려되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토지임대에 관한 업무는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담당하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토지임대는 지대당국이 담당하도록 하였다(제4조). 그런데 이 법에서는 국토관리기관의 업무로서 북한측 투자당사자의 토지이용권 보유승인(제5조), 토지이용권 판매시 명의변경등록(제18조제3호),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제23조)만이 규정되어 있고(이들 조문에서 『지대당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업무는 토지를 임대하는(또는 『임대한』) 기관(이하 『토지임대기관』으로 약칭한다)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먼저 토지임대기관이란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지, 즉 국토관리기관 내지 지대당국만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밖의 기관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전자의 뜻으로 본다면 굳이 이법에서 표현을 달리할 필요가 없으며 후자의 뜻으로 본다면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토지임대기관의 권한 내지 업무와 토지법에서의 토지관리체계 등에 비추어 어떤 기관이 독자적인 토지임대권한을 갖는 기관인지를 법에 명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임대기관의 권한 내지 업무는 여러가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임차희망자에 대한 토지자료의 제공(제10조),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과 토지이용증의 발급 및 등록, 임대료의 수납(제11조 내지 제13조, 제29조) 토지의 양도 및 저당의 승인(제15조·제18조 등)의 권한은 북한의 토지관리체계상 상당히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기관 내지 지대당국 정도의 기관이 아니면 담당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토지임대기관과 국토관리기관 내지 지대당국은 같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2조제7호에서 지대당국의 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다』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뒷받침이 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북한의 토지법에 나타난 토지관리체계, 즉 토지관련업무의 내용 및 담당 기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토지법에 나타난 토지관리체계는 한마디로 매우 복잡하고 산만하게 되어 있으며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누락·흠결된 부분

이 많고 여러기관 상호간의 관계가 애매하다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특히 이 법, 즉 토지임대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토지법에 의하면 북한의 토지는 농업토지·주민지구토지·산림토지·산업토지·水域토지·특수토지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 토지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 밑에 국토관리기관이 이를 통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였으며(제7조) 국토를 개발·이용하고 정리·미화하는 국토건설의 종합적인 전망계획으로서 국토건설총계획을 30~50년을 단위로 수립하는데, 그중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은 정무원에서 작성되어 최고인민회의 또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행정기관이 작성,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제16조·제18조). 그 밖에 「토지보호」라는 별도의 장을 두어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 정치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제21조),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제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제23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토지관리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장에서 토지별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농업토지에 있어서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협동농장·기관·기업소·단체가 관리주체가 되도록 하되(제64조), 특히 농업생산외의 목적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정무원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제65조), 기관·기업소·단체가 논밭을 부업지(자체 수입원)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도 정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제67조) 협동농장은 상급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 논밭을 서로 바꾸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제68조) 농업용지의 전용에는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주민지구토지에는 시·읍·노동지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이용지와 농촌건설대지가 있는데 이는 도시경영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가 관리하며(제69조), 산림토지는 산야와 그 안의 이용지가 포함되는데 국토기관과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가 관리하도록 하였고(제70조), 산업토지는 공장·광산·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부속지로서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기업소가 관리한다고 하였으며(제72조), 수역토지는 연안·영해·강하천·호수·저수지·관개용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토지가 이에 속하며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담당하고(제74조) 특수토지는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문화유적지·보호구역·군사용 토지가 이에 속하는데 그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기업소 및 군부대가 담당하도록 하였다(제75조).

그리고 이러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 허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 토지이용허가는 개인은 신청할 수 없고 기관·기업소·단체 등이 신청하는데 주민지구 토지는 도행정위원회 또는 정무원이, 산림토지 및 수역토지는 정무원 또는 국토관리기관이 허가권자가 되고(제69조·제70조·제74조) 산업토지와 특수토지에 대하여는 이용허가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자유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도 국토관리기관은 북한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며(제77조) 농업관리기관은 개간, 기타 토지관리로 얻은 땅을 제때에 등록하도록 하며 토지를 이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 등은 토지의 면적·형질 등의 변동상황을 제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제78조)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기관 등은 토지문건을 갖추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였다(제78조).

토지법에 규정된 위의 토지관리체계에서는『토지임대』라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토지법 제정 당시에는 임대의 개념을 상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으나 토지임대가 현실적 문제로 부각된 이상 토지관리의 범주에 임대가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의 토지관리체계에서 토지임대가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토지임대법은 일반법인 토지법에 대한 특별법 내지 후법의 입장에서 토지임대에 관한 업무(즉, 토지임대법 제2조에 규정된 대상에 한하여 동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토지임대업무)에 관한 한 토지법상의 제반규정을 무시하고 토지임대법의 국토관리기관과 지대당국이 전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토지임대는 북한 당국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대당국의 관할 토지이용 및 관리권한은 포괄적인 것으로 새길 수도 있다고 본다.

그 밖에 토지임대법에서는 공증기관 등의 개념도 나타나 있는 바(제18조제1호), 헌법에 의하면 각급 재판소가 공증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55조).

토지임대법의 규정내용중 관심을 끄는 것은 토지의 임대와 임대에 의하여 발생하는(북한측 합영·합작당사자의 토지이용권은 당국의 승인으로 발생)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격이라 하겠는 바, 여기에 관하여 제1장에서는 3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토지이용권에 관한 규정은 토지법에서도 언뜻 비치는데 그것은 동법 제13조에서『협동농장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터밭이용은 당해 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서, 토지의 국가 또는 협동단체소유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토지임차자는 토지이용권을 가진다』(제3조제1문)라고 규정하고『임대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제7조)라는 점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당연

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토지이용권이 물권적 권리인지 채권적 권리인지를 규명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두지 않은 점이 미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제3조제2문)라는 규정은 토지이용권이 토지에 소재한 천연자원과 매장물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매장물외에 천연자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한 점이 있다(지표를 흐르는 수자원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목 등 인공이 가해지지 아니한 자원만을 의미하는지 조림에 의한 임산자원이나 농작물 등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또한 공장건설 등을 위하여 천연자원이나 매장물을 제거하거나 옮기고자 할 경우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

한편 토지에 소재한 건물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간다」라고 규정하였는데(제17조) 여기에서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토지의 종물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 우리 법제와 큰 차이가 있다(이 규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법제상 기부채납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권은 토지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그 내용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제14조 참조) 토지이용권의 양도(판매·재임대·증여·상속 등)는 물론 담보의 설정(저당)까지도 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제16조).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제3장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을 설명할 때 다시 보기로 한다.

토지임대기간은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0년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게 되는데(제7조) 최장임대기간을 50년까지 인정한 것은 장기간의 가동을 요하는 시설의 유치를 도모하려고 한 것이라 하겠으나 실제에 있어서 임대기간을 얼마만큼 장기로 해 줄지는 알 수 없다(과거 홍콩에 대한 조차권의 설정이 100년이라는 점, 우리 법제상 기부채납기간이 10년 내지 20년인 경우가 많은 점, 그리고 최근 투자사이클이 갈수록 단축되어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0년까지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토지임차자는 북한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

(2) 토지의 임대방법

토지의 임대방법에는 ①협상에 의한 방법 ②입찰에 의한 방법 ③경매에 의한 방법

의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②·③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된다(제9조).

위의 어떤 방법에 의하든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 임차희망자에게 일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①토지의 위치와 면적·지형도 ②토지의 용도 ③건축면적·토지개발과 관련된 계획 ④건설기간·투자의 최저한 계약 ⑤환경보호·위생방역·소방과 관련한 요구 ⑥토지임대기간 ⑦토지개발상태로 규정되어 있다(제10조).

여기에서 먼저 토지임대차계약의 중요내용이 되는 토지의 용도·토지임대기간 등은 임대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면적·토지개발계획·환경·위생·소방 등 제반요구는 우리 법제에서는 법규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북한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법규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기관이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협상에 의한 토지의 임대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임차희망자는 제공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건의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신청문건을 토지임대기관에 제출한다. ②토지임대기관은 토지이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③토지임대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용도·임대목적과 기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 ④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받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제11조).

여기에서는 계약보증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이 특이하고, 계약의 중요내용은 토지임대기관에서 사전에 자료로 이미 제공하였기 때문에『협상』이라고 불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다만, 토지임대기관의 제공자료는 우리 법제상 단순한 계약의『청약』이고 청약에 대한『승낙』대신 수정하여 역으로 다시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겠으나 북한 당국이 실제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두번째로 입찰을 통한 토지임대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토지임대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 및 개찰날짜·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②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매한다. ③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④입찰자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 ⑤토지임대기관은 경제·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인사로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⑥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조건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토지임대기관은 입찰심

사위원회가 결정한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급한다. ⑧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임대료를 지불한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을 한다. 사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토지임대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⑨낙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낙찰결정일부터 5일안에 해당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⑩낙찰자가 정한 기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제12조).

이와 같은 입찰방식에 있어서 낙찰조건은 임대료를 높게 책정한 순서만이 아니며 토지개발 및 건설계획 등 토지임대차계약의 구성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우수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절차중 ②에서 입찰문건을 판매한다는 것은 소정의 양식을 유가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 바(입찰보증금은 응찰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는 입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입찰보증금으로도 충당될 수 있는 데(입찰보증금에는 이자도 붙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경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며 ①에서 토지관련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규정한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세번째로 경매를 통한 토지임대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자료·토지경매자·장소·절차·토지의 기준가격 등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②공시한 토지의 기준가격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가격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③낙찰자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을 한다(제13조).

여기에서 토지의 기준가격이란 토지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예정최저가액을 의미한다. 경매를 통한 임대는 낙찰에 의한 임대의 경우와 달리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임대료외의 기타 임대차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규정이 없고 또 임대료 예정가격이상을 제시한 자가 없어 경매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 입찰과 경매에 의한 임대방법의 경우 국내업체 상호간에 과당경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통일원 보도자료) 협상에 의한 임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에 따른 통일원고시에 의하면 대북경제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입지가 사전에 확보되어 있고 해당 지역의 토지임대료 등이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토지임대법에 의하면 입

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하고 협상·경매에 의한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체결후 15일내에 10%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제31조 참조) 절차상 상충되는 면을 보여주므로 우리측 고시를 융통성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여야 하며, 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 용도변경의 보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14조).

여기에서 용도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당해 토지에 토지용도에 맞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시설물 등의 설치에 토지임대기관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최초 임대차계약체결시 토지임대기관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임대기간 종료후에는 토지임대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반환하거나 토지임차자의 부담으로 철거·정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제34조·제37조 참조) 토지임대차계약 내지 보충계약에서 여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가급적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토지용도의 무단변경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며(제39조),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40조) 특정용도로의 개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3)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토지이용권은 임차자에게 있으나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도 또는 저당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안에서 남은 이용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토지이용권의 양도에는 판매·재임대·증여 및 상속이 있다(제15조).

토지이용권을 양도는 물론 저당의 대상까지로 규정한 것은 토지소유권을 허용하지 못하는 그들의 사정에 비추어 토지이용권의 용도를 보다 확대시킴으로써 소유권 인정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양도 또는 저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납부하고 계약에서 정한 투자몫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제16조), 여기에서 계약에서 정한 투자몫을 선투자하도록 한 것은 당해 토지

의 개발 및 이용에는 관심이 없고 중간에서 차익만을 노려 양도 및 저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배제시키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6조에서 상속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양도유형 가운데 상속에 대하여는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들도 함께 양도되는데(제17조) 이는 토지이용권을 토지 자체에 한정된 권리로 파악하지 않고 종합적인 권리로 설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하는 등 양도절차가 복잡하고 제21조·제24조·제25조·제34조 및 제37조와 관련하여 그 권리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권의 양도중 판매와 재임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토지이용권의 판매절차를 보면 ①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으며, ②토지이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권 판매신청문건을 토지임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③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변경등록을 한다. 여기에서 토지임대기관과 국토관리기관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애매하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토지이용권의 판매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한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우선적으로 이를 구매할 권리를 갖는데(제19조) 이는 일종의 환매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토지임차자가 각종 시설투자를 한 토지를 포괄적으로 인수받으려는 북한측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즉 이와 같은 규정은 제17조·제34조 등의 건축물 등 포괄이전조항, 제40조의 토지개발강제조항 등과 함께 생각할 때 우리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을 연상케 하는데 국유재산법상의 기부채납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시설투자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즉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북한의 토지임대에서는 임대료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한 점이 서로 상이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투자시설의 소유권이 토지소유권자에게로 귀속되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최근 입법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는 민자유치사업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공공성이 강한 기본시설은 원칙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기타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되 기본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

은 우리 제도는 북한 당국이 토지임대의 결과로 어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보를 의도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더욱 유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토지의 재임대에 관하여서는 1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임대기관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임차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그런데 제20조에서는 토지를 재임대한다고 하였으나 제15조에서는 토지이용권을 제3자에게 재임대한다고 표현하여 개념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 토지의 재임대가 토지 이용권의 판매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토지이용권의 판매는 토지이용권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자체가 변하는 것이지만(제19조에 의한 환매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의 소멸을 의미한다) 토지의 재임대의 경우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자 사이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토지임차자와 재임차자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토지임대기관·임차자 및 재임차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리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재임대에 있어서도 토지의 용도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래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며(제14조 참조) 재임대 양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들도 임차자로부터 재임차자에게로 넘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제17조 참조). 그러나 원래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34조 및 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임대기관과 임차자 사이의 문제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권의 저당에 관하여 살펴보면 무려 7개 조문을 할애하여 상대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용권의 저당은 토지임차자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때 설정하는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서는 토지이용권의 저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며 최초의 토지임차자외에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은 자도 토지이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제22조 참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 자와 저당받는 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저당받는 자는 저당하는 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이용증 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제22조). 자료요구는 토지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토지이용권의 경제적 가

치를 평가하여 융자금액의 결정근거로 삼고 추후 저당권의 실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안에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을 하도록 하였는데(제23조) 역시 공동등록의무를 규정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권을 저당한 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후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중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저당받은 자는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이용권과 토지에 있는 건축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제24조). 이 규정은 토지이용권의 저당권자가 저당물 처분권 및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법제와 비교할 때 처분에 있어 경매절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지,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제25조)은 토지이용권의 판매의 경우와 같은 취지로 보여진다.

토지이용권을 저당한 자가 저당계약기간안에 저당받은 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 이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제26조).

채무상환 기타의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10일안에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제27조).

토지이용권을 승인없이 양도·저당한 경우에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제39조).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에 관한 위의 제반규정은 여리모로 미흡하고 불명확한 점이 많아 보완이 요구되지만 토지이용권의 거래를 인정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북한의 법체제에서 매우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며 북한에 진출하는 서방측 투자가에게 북한측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품목인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4)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대북투자와 관련된 토지이용관계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토지의 가치인 바, 북한에서는 토지의 소유가 금지되기 때문에 토지 자체의 가치는 처음부터 생각할 수 없고 토지이용권의 가치가 문제된다.

토지임대법에서는 북한측이 외국인투자가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북한측 투자당사자가 토지이용권을 출자의 목적물로 하였을 때 출자가액의 평가에 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고 외국인투자법(제12조)·합영법(제11조 등) 등에서 간단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다만 토지임대료 등은 출자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토지임차자가 토지임대기관에 지급한다(제28조).

그런데 토지임대료에는 토지개발비, 즉 토지임대기관이 토지개발에 들인 비용으로서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전기·통신·난방시설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한 점이 특이하다(제29조). 이는 당연한 규정으로서 북한 당국이 이 점을 명시한 것은 대부분의 토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 등 산업용지 내지 택지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가급적 외국측 투자가가 개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이는 제19조·제34조·제40조 등에 규정된 토지이용권의 우선매수권, 토지위의 부착물 등의 일괄환수, 토지개발실적 저조시 토지이용권 박탈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개발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개발비용을 충분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북한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나진·선봉지역의 경우 『도시중심구역』의 공업용토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1㎡당 4.5원(2달러)이며, 공업용토지에 대한 토지개발비는 1㎡당 110원(50달러)인 바(『황금의 삼각주』,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발간, 1993년판), 이 자료를 보면 토지개발비가 토지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토지임대료의 지급방법으로는 토지임차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안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만,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다액인 토지개발부문은 토지임대기관과의 합의 아래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소정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였다(제30조). 그리고 협상·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안에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선납하도록 하였고(제31조. 그런데 이행보증금은 토지임대료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경우에 따라 토지임대료와 이행보증금을 각각 징수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협상·경매 등에 있어 토지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즉 임대차계약일부터 90일, 이행보증금은 15일, 분할납부시 각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마다 미납금의 0.1%를 연체료로 납부하도록

록 하고 있으며, 연체료를 계속하여 50일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2조). 계약취소는 연체료미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연체료만 납부하면 토지임대료 자체는 계속 연체하더라도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이 남는다.

한편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료외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설정 당시 설정행위 그 자체에 대한 대가이고 매 기간마다의 토지이용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토지사용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하는데 이는『국가』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제33조제1문). 다만 장려부문과 자유경제 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토지사용료를 10년간 덜어 주거나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제33조제2문).

(5) 토지이용권의 반환

토지이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되며(제34조제1문), 토지임차자는 토지이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이용권등록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제35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의 6개월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이용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며 토지이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제36조)..

한편『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토지임대기관을『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안에 토지이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여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해준다.』라고 규정하였는데(제38조), 여기에서 토지이용권의 취소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자체의 취소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급적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연체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제32조) 다음에 보는 것처럼 일정기간내에 일정비율의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을 때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40조) 토지이용권은 상당히 불안정한 권리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의 종료 내지 토지이용권의 반환에 있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토

지이용권외에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는 규정이다(제34조제2문). 이는 앞에서 본 토지이용권의 양도 및 저당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토지이용권의 양도 내지 저당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내지 용자를 위한 평가가액에 건축물 등 시설투자비를 추가로 계상하면 될 것이지만(다만 저당권 실행시 건축물 등이 함께 처분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남는다) 토지이용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아무런 환수방도가 없기 때문에 토지임차자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이 되고 있다. 토지임차자는 최초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예상개발비용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수십년에 걸친 시설투자비를 미리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경매·입찰등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식공장시설 등의 경우 이를 철거하여 갈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토지이용권의 사유를 허용한 것도 자신들의 법체제에 비추어 이질적인데 토지에 투자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사유금지의 원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으나 적어도 무상으로 가져간다는 것 만큼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 법에서도 토지를 40년 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해당 잔존가치를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제34조제3문) 이와 같은 보상규정을 보다 널리 인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북한 당국의 입법의도는 제29조의 토지개발비 조항, 제40조의 토지개발강제조항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임대토지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기타 시설물의 무상취득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임대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제37조), 이는 토지임대기관이 판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설은 무상으로 가져가고 불필요한 시설은 토지임차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게 한 것으로 토지임차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토지임대차계약 또는 보충계약을 체결할 때(제14조 참조)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제재 및 분쟁해결

토지임대와 관련된 제재는 민사적 효력을 가진 것 외에 행정별적 효력을 가진 것이다. 즉, 토지이용중이 없이 토지를 이용하였거나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토지이용권을 승인없이 양도·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에 건설한 시

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당해 양도·저당계약을 무효로 한다(제40조).

그리고 토지임차자에게 적극적인 투자 및 토지개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는데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총투자액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제40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제재를 가한 기관의 최근 상급기관에 『신소청원』을 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1조).

그 밖에 토지의 임대, 임대토지의 양도 및 저당 등에 관련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제42조).

X.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1.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의 제정의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생산설비 및 기술에 대한 투자와 그 운용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노동력의 확보와 적정한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에서의 노무관리 역시 서방국가와 북한이 법제는 물론 실제 운영에 있어 판이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북한이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을 끌게 한다.

북한은 선전목적의 달성을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노동관련법규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상세한 규정을 두어 왔는데 특히 1978.4.18,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노동법을 채택하였고(이는 197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의 후속 법규정비조치라 할 수 있다) 1978.8.25 중앙인민위원회정령으로 노동규율규정을 채택하였으며 그 밖에 형법에서 노동관련범죄를 규정하고 있었다(이에 관한 상세한 연혁 및 특징과 내용은 법제처간 『북한법제개요』 p.461이하 및 『북한의 합영법제』 p.87이하 참조).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노동법규는 우리 수준에서 볼 때 미흡하거나 흡결된 부분이 많고 완고한 사회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외국투자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84년의 합영법에서는 합영회사의 노무관리에 관하여 『합영회사가 종업원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과 합영 쌍방의 계약에 따라 로력을 관리하며 이용한다』(제16조)라는 규정만을 두었는데 이는 문맥도 잘 통하지 않지만 북한 법규를 준수하되 합영계약에서 약간 보완할 수 있다는 정도의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합영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회사의 종업원수와 로임기간, 생활보장조건 등』을 포함시키고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구 합영법시행세칙 제12조) 북한의 노동법규중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영계약으로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북한 법령에서 어느 것이 임의법규 내지 훈시적 규정인지 알기 어렵고 또 사회주의 법령체계의 특성에 비추어 대부분이 강행법규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합영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폭은 넓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법령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관리체계 아래 있는 자국기업과 합영회사를 동일하게 대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한편 구 합영법시행세칙은 제6장에서 좀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었으며 1992년 개정 시행세칙은 이를 10개 조문으로 늘려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①합영회사 소요인력의 채용·해고는 북한의 노동행정기관을 통할 것과 그 소요인력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것 ②합영회사 사장은 노력관리의 중요문제를 상대방과 사전 협의할 것 ③합영회사가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채용할 경우 국가의 승인을 받을 것 ④북한의 행정기관들은 자신들의 행사에 합영회사 종업원들을 동원하지 말 것 ⑤합영회사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은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른다는 점 ⑥합영회사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능공 양성대책을 세울 것 ⑦합영회사 종업원들은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 ⑧합영회사는 임금의 7%를, 종업원들은 임금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할 것 ⑨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합영회사 임·직원의 재외출장을 적기에 보장할 것 ⑩합영회사는 회사안에 조직된 회단체들의 활동조건을 보장할 것 등이었다 (제64조 내지 제73조).

같은 시기에 나온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하되, 관리인원과 특수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노동력은 북한 노동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해고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었으며(제16조), 합작법은 외국인 기술자의 채용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만을 규정하였고(제11조), 외국인기업법은 소요 노동력을 기업소재지의 노동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북한의 노동력으로 채용·해고하여

야 하고, 외국인을 채용할 때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제20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결성하여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라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기업과 노동조건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그 이행을 감독하고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제21조)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러 법규에 노동관련조항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북한 당국의 정책의도를 충분히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보아 1993.12.30 정무원 결정 제80호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제정·공표하였다.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외국인투자법규에 규정된 노동관련조항을 구체화시키고 북한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주의노동법 등에 대한 특칙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독특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 법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은 외국인투자법 등 일반적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도 정하고 있는데 그 효력관계는 다른 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으며,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특칙이라고는 하나 동법은 선전성이 강한 법규로서 북한내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특칙이라는 말도 반드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어쨌든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폐쇄적인 북한체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극단적인 사회주의체제의 노동문제를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맞도록 어느 정도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왕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채용된 북한 근로자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후 1994년의 개정 합영법에서는 합영기업 종업원은 북한의 노동력으로 충원하되 계약에 정하여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아래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점(제26조), 합영기업은 북한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노력을 관리·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제27조, 여기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이란 바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결성할 수 있고 합영기업은 그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제32조)을 규정하고 있었다.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다른 투자관련법규에 산재된 노동조항이나 사회주의노동법에 앞서 외국투자기업의 노동문제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관련조항끼리 서로 상충될 경우에도 이 노동규정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노동규정도 다른 외국투자관련법규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1980.7)이라든지 『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규정실시규칙』(1984.1)

을 대폭 모방하고 있으나,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속성을 극명하게 드러냄과 아울러 경제적 파국상태에 직면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어떻게든 끌어 들여보려는 노력과 일단 들어온 외국투자기업에 채용된 북한 근로자들을 통하여 최대한의 외화를 벌어들여 보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점에서 중국의 입법례와 대조를 이룬다.

2.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의 주요내용

(1) 총칙적 사항

이 노동규정 제1장에서는 『일반규정』이란 제명 아래 입법목적과 적용범위·타법과의 관계외에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의 입법목적은 외국투자기업 관련법규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주고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에 있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조) 진정한 입법목적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이 당면한 경제현실과 체제방어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노동규정은 북한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 즉 외국인기업·합영기업 및 합작기업(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지칭하였다)과 외국기업(이는 북한에 둔 외국기업의 지점을 의미하는 것 같다)에 적용되는데(제3조), 외국투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알선과 채용, 노동보수의 지불, 노동생활조건의 보장은 이 노동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북한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하도록 하였다(제2조). 그리고 이 노동규정의 집행에 대한 감독 및 통제는 노동행정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제1장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북한의 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을 관리인이나 특수직종의 기술자·기능공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제4조) 이는 외국인투자법·합영법 등에 있는 규정과 같은 취지로서 입법적 낭비같이 보이지만 북한이 이를 자꾸 반복 규정한 까닭은 외국인 종업원의 대량입북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체제불안요인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어느 나라든지 내국인 우선취업을 통하여 외화획득 및 기술이전 등 투자유치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북한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투자기업이 채용한 인력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에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5조). 이는 북한의 근로자들은 『8시간 근로·8시간 학습』이라는 그들의 구호에서 보듯이 사업장내에서의 근로제공외에 여러가지로 시달림을 받으며 근로시간내에도 군사훈련·각종 군중집회 등에 수시로 동원되고 있는데 외국투자기업이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고 이를 투자장애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연재해의 복구 등에는 동원할 수 있다고 한 취지는 우리의 민방위제도와 유사한 점도 있다. 예비군훈련의 경우 북한의 병역관계법규와의 관계가 문제되지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셋째,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노동보수액은 그의 노동직종과 기술·기능수준, 노동생산성에 따라 정하되, 노동보수에는 노임·가급금·장려금·상금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제6조). 임금체계는 그 밖에도 경력·인사조직체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정해진다는 점과 노동보수의 종류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분쟁의 소지만 많아질 뿐이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는 것이다(제7조). 이는 다분히 선언적인 내용으로서 노동법규가 추구하는 기본이념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등에 지나치게 적은 조문을 할애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의 공민인 종업원들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관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이는 외국투자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보험료납부에 관하여서는 이 노동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개정 합영법시행세칙(제71조)에 관련규정을 두었으며 그 밖에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관련법규가 있으나 대부분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에 제정된 것들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여섯째,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제9조제1문) 직업동맹의 특수한 지위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의 행정기관인 인력알선기관과 외국투자기업 사이에 인력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1조) 외국투자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직접 체결되어야 할 근로계약에 북한 당국과 직업동맹이 이중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유례없는 입법례라 할 수 있다. 직업동맹과 체결한 노동계약은 외국투자기업이 기업 소재지 노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제9조제3문) 이는 직업동맹을 통하여 근로자통제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감독을 손쉽게 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노동계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제2문).

(2) 인력의 채용 · 해고

북한에서는 노동력도 중요한 국가자원으로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기업에서의 인력채용 및 해고 역시 그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사회적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나라의 労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의와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성장을 보장하는 풍요한 담보」라고 규정하고(제25조) 「국가는 나라의 労력원천과 수요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労동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할 것」을(제27조)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은 공업과 농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 사이에 노력균형을 보장하고, 노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는 생산부문 노력자수의 우선적 증대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 노력자수를 규정하는 원칙에서 노력을 배치하며 직접부문의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북한연구소 간, 「북한총람」, P.959이하 참조).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국가가 노동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나라의 노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勞力後備(예비노력)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인민경제의 노력수요를 계획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북한에서 예비노력의 육성은 직업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기업소내에 기능공을 양성하는 직공학교·직장기능학교·공장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각급 경제기관과 노동행정기관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요구에 맞게 노력보충조절계획을 세워 인민경제발전계획에 예견된 노력수요를 제때에 보장하며, 경제의 각 부문과 각 지역에 노동력을 정확히 조절·배치할 것을 규정하였고(제29조), 그러한 노동력은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별·연령·체질·희망·기술수준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0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장배치는 당성·출신성분 등 노동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노동력이 일시 남을 때에는 제때에 다른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생산적 작업에 임시 지원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남는다고 하여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제적할 수 없도록 하고(제34조),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노동력을 국가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며(제35조제1문) 각급 관리직사무원들도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생산노동에 의무적

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제36조) 국가에 의한 노동력의 통제관리를 철저히 확립하고 있다.

원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는 노사간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용시 중간착취의 배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적 근로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해고시 해고요건의 제한, 퇴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여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이 극단적인 사회주의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국가가 관리하고 개인기업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노동법의 태도는 북한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수는 자체로 정하지만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수 없으며 인력알선기관과 인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인력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제11조제1문).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권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당하는 것이지만 한편 국가에서 직접 인력의 수급을 관리하는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 오히려 그와 같은 규정을 확실한 인력조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 조항을 규제조항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혜를 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인력채용계약의 내용에는 업종별·기능별·인력수, 채용기간, 인력비, 공동 생활보장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1조제2문).

그런데 제9조에서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종업원채용의 법률관계를 어떤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즉, 외국투자기업이 인력알선기관과 체결하는 인력채용계약과 외국투자기업이 직업동맹과 체결하는 노동계약의 성격이 공법상의 계약인지 사적 계약인지 인력알선기관과 종업원과의 관계 및 직업동맹과 종업원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인력채용계약과 노동계약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등 여러가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컨대 인력채용계약은 국가기관인 인력알선기관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나 사적 성격의 계약으로 보며 그렇다면 노동계약은 당연히 사적 계약이고 종업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 채용 및 해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인력알선기관 또는 직업동맹에 포괄위임하였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따라서 계약의 효력은 종업원들에게 직접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인력채용계약은 국가기관과의 계약인 점에서 노동계약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업 소재지안에 있는 인력으로 보

장하도록 하되, 기업 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다른 지역 인력알선기관은 해당 기능공을 보장하여 주도록 하였다(제12조). 이와 같은 규정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투자기업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고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한정된 지역만을 개방하려는 자신들의 정책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겠지만 외국투자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투자기업중 합작기업과 합영기업은 북한의 기업소를 모체로 하여 창설할 수도 있는데 이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업소에 근무하던 종업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였다(제13조). 이 규정도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며 기존의 기업소와 합작·합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인력구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은 기업 소재지 인력알선기관이 인력을 공급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14조).

다음으로 종업원의 해고에 관하여 5개 조문을 두고 있다.

먼저 해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①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③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인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④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를 들고 있고, 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직업동맹조직 및 해당 인력알선기관과의 합의를 들고 있다(제15조).

여기에서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①·④가 여기에 해당)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②·③이 여기에 해당)로 나누어지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이른바 정리해고로서 ②의 경우처럼 가술혁신까지도 정리해고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③의 경영상 애로로 인한 정리해고는 파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으며, ①의 경우 근로자의 私傷 질병 및 부상에 대하여서도 손쉬운 업무로 배치전환시켜줄 것까지를 예상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④는 기업질서위반에 대한 이른바 징계해고로서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만을 언급하고 있어 실정법적으로는 북한의 입법례보다 허술하게 되어 있다. 다만 해석상 이를 합리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해고는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제15조본문 참조) 여기에서 채용기간은 인력채용계약에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인력

채용계약체결시 채용기간을 가급적 짧게 두는 것은 무방하다고 여겨진다(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계속 갱신하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정년제외에는 기한부근로계약의 개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직업동맹조직 및 인력알선기관과 합의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해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우리 근로기준법의 해석으로는 정리해고의 경우 경영상 급박한 사유가 있을 것과 해고기피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 등의 요건외에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해고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변명기회만 부여하고 사용자측이 일반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해고가 금지되는데 ①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는 경우 ②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③여성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 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제17조). ①의 경우는 이른바 公傷(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②는 私傷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간은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입법례와 차이가 있고, ③은 결혼과 수유기간까지를 금지기간으로 규정한 점이 우리와 다르게 되어 있다(결혼의 경우 결혼후 일정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으나 표현에 흡결이 있다).

이 노동규정에서는 종업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즉 사직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계약위반책임의 면제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모든 주민들은 법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국가와의 관계에서 근로의무위반에 대한 면책근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직사유는 ①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②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③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인 바(제17조), ①의 요건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사실상 사직사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없으며(다만, 이 경우에는 제18조에서 보조금, 즉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②·③은 최초 채용 자체가 근로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력알선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규정처럼 보인다. 그리고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의 사직은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의 사직을 의미하며 인력채용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시키려는 경우에는 1개월안에 기업 소재지 인력알선기관에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9조) 이 역시 노동력의 국가관리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고 또는 사직 등 퇴직이 이루어질 경우 퇴직금에 관하여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용어에 있어 『퇴직금』대신 『보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를 달리 하였다고 하여 그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퇴직금과 달리 후불 임금으로서 임금의 일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그러나 임금보호에 관한 규정을 거의 두지 않고 있어 생활보장설을 취하든 후불임금설을 취하든 실제로 큰 차이는 없다).

퇴직금의 지급사유는 종업원의 해고사유중 私傷病으로 인한 해고 및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전공 부적절 내지 진학으로 인한 사직에 해당하는 경우(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징계해고(제15조제4호) 및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제16조제1호)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어(제18조제1문) 우리 법제와 차이를 보여준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근무기간이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분의 노임을 주고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노임액과 일한 년도수에 따라 계산한 보조금』을 주도록 하였는데(제18조제2문),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우리 법제와 차이가 있고 특히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불합리하며(따라서 해석상 1년에 1개월 분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년이상인 경우 지급금액의 산정방법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해석상 우리 법제와 마찬가지로 근로년한 1년마다 3개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1년이 못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 위에서 설명한 비례계산방법으로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급휴가에 따른 임금계산에 있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개념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퇴직금계산시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우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예고 및 예고수당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3) 기능공의 양성

북한은 기술혁명을 문화혁명·사상혁명과 함께 3대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서부터 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로서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고 하였고(제27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제28조).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이러한 헌법규정을 받아 기술혁명을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기계화·반자동화·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고열노동과 유해노동을 없애며, 농촌경제의 수리화·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과학화와 종합적 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농업의 공업화·현대화를 실현하며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제47조 및 제48조).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과학자·기술자·생산자들에게 기술혁신운동을 벌일 의무를 부여하고 각 직장은 창의고안합리화운동을 적극 장려하여 그 안들을 제때에 생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였다(제49조). 여기에 관한 오래된 법규로서 『창의고안심사규정』이 있다. 아울러 국가는 공장대학·농장대학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다양한 교육체계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최신 과학기술을 체득하고 기계설비·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고(제5조) 각 직장은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현대기술을 소유하고 자기 부문의 기술에 정통하도록 하며(제51조), 이러한 기술혁신을 종합하여 국가는 『기사급수』, 『기능등급판정시험제』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향상을 도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2조).

이와 같은 사회주의노동법의 규정은 상당히 선언적이고 막연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그런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선진기술의 도입과 숙련기능공·기술자의 양성에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노동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이 노동규정에서는 3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라 그들에게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기능공 양성을 위한 양성소 또는 양성반을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1조),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이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기술인재의 양성은 종업원·재직일군 양성, 학교졸업생들의 취업전 양성의 형태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제22조).

먼저 외국투자기업이 양성소 등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 의무로 강제되어 있지 않고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구체적 내용이 없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에게 주어진 의무는 종업원들에게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의미 역시 이 규정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렵다.

지대당국의 기술인력 양성 역시 북한 당국의 내부문제이며 차라리 기술인력 양성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양성된 인력의 배정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기능공의 양성에 관한 한 헌법에서부터 거창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4) 노동시간과 휴식

북한 헌법은 근로자들의 1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하되,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그 보다 짧게 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는 노동조직을 정비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제30조).

이에 따라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노동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1일 480분의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제32조) 국가는 효율적인 노동력 관리를 위하여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학습의 원칙(3分일과제)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소 등은 노동·휴식·학습을 옳게 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3조). 이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채택하고 있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로(유해 42시간 근로)의 원칙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우리 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강요에 의한 학습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 주민들의 근로시간은 1일 16시간까지에 이르는 등 문제가 있다.

한편 북한 헌법 제71조는『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사회주의노동법에서도『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8시간 노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문화시설 등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였고(제62조), 이와 관련하여 시간외노동의 금지(제63조), 주 1회 휴식, 명절과 일요일 휴식, 代休제도(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 주일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

64조), 14일의 정기휴가와 7~21일의 보충휴가제(제65조), 산전 35일·산후 42일의 산전·산후휴가제(제66조), 정휴양소망의 확충(제6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휴식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노동시간 및 휴식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사회주의노동법과 비슷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종업원들의 노동일수는 주 6일,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하되,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사회주의노동법과 같으며 그 밖에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노동시간범위에서는 노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여기에서 노동강도 등에 따른 노동시간단축의 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있고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 대하여 광범위한 변형근로시간(특정시간에 연간 근로시간을 몰아서 사용하고 남은 기간에는 휴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 변형근로로 인한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가급금(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만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어야 함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음으로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노동을 시키지 말 것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노동을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고 월 48시간의 범위안에서 시간외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로에 대한 동의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직업동맹조직으로부터 받도록 한 점이 특이하며 시간외노동시간은 주 12시간으로서 우리 법제와 비슷하나 이 역시 변형근로시간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즉, 특정 주에 48시간을 모두 사용하여도 된다).

휴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의 법에 따라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휴가와 산전·산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명절일과 공휴일에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안으로 대체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북한내의 일반 근로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으나, 외국투자기업에 특이한 규정으로서 소속 종업원에게 관혼상제를 위한 1~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였다(제25조. 이 경우 왕복여행일수는 별도로 계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근로의 중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주 1일의 주휴일, 월 1일의 월차휴가, 연간 10일 내지 20일의 연차휴가 등 법정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밖에 관공서의 공휴일(명절 및 국가기념일)과 헌사창립기념일 등 많은 약정휴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산전·산후 휴가외에 생리휴가와 수유시간 및 육아휴직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가 우리 법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5) 노동보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앞에서 본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북한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생활비를 정확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경제계획에 의한 분배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여기에 의하면 국가는 1년간에 생산된 총사회적 생산물에서 그 생산에 소모된 생산수단의 보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국민소득의 일부분을 노동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배정하는데 근로자들이 노임의 일부를 저축할 경우 자본주의적 사상에 물들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구실로 최저생계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법은 노동에 대한 보상인 임금을『생활비』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이란 용어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상품적 성격을 띤 노동력의 대가라는 어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생활비란『근로자들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회생산물의 일부로서 근로자들의 노동의 결과에 대하여 지불하는 노동의 보수형태』를 의미하며, 사회주의노동법은 생활비지급에 있어서『근로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판단하고 노동을 척도로 하여『생활비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제38조). 생활비등급제는 1948.12.27 노동자 임금 적용에 관한 내각결정 제196호에서부터 채택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노동조건·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등급별로 정하였다.

생활비의 지급형태로는 기본형태인 도급지급제와 정액지급제, 추가적 형태인 가급금·상금·장려금제도를 두고 있는데(제39조), 정액지급제는 사무원에 대하여, 도급지급제는 생산직장 및 기업소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시되며 도급제는 시·단일도급제·누진도급제·공수도급제 등으로 구분되고 도급제 실시 이후에는 생활비의 산출기준이 종래 개인으로부터 작업반 단위로 발전하고 있다. 가급금은 근무연한·기술역량 및 학위를 참작하여 결정하는데(1954.2.28 내각결정 제32조) 이러한 가급금과 상금·장려금 등을 생활비와 달리『생산계획의 실행, 제품의 질, 설비자재의 이용 등을 평가하며』(제40조 참조) 일을 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적인 노동보수형태이다.

그리고 사회주의노동법은『생활비자금분배』에 있어서 국가는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공장·기업소들의 현물지표별 생산계획과 원가계획실행을 정확히 평가하도록 하

고(제40조) 모든 노동자·사무원들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각 근로자들의 생활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되, 공업과 농업의 발전, 노동생산능률의 제고에 기초하도록 하고 있다(제45조).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서는 노동보수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정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노동법상의 임금관련조항과 기본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특히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이 받는 최저임금을 직접 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데 북한이 설령 인플레 없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에 의한 임금인상요인은 항존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임금액수를 정하는 것은 서툰 입법방식으로 보여진다. 임금을 외화로 약정하고 북한 원화로의 환산비율로서 공정환율을 적용한다면 공정환율의 조작을 통하여 원래의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노동규정에서는 외국투자기업 종업원의 월 노임기준을 220원(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는 160원)보다 낮지 않도록 정하며, 힘들고 어려운 부문의 노임기준은 높이 정하도록 하였다(제26조제1문). 여기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생활여건도 좋지 못하여 임금이 낮을 이유가 없음에도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한 것은 그들의 제한적 개방정책의 징표이며, 힘들고 어려운 부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을 말하는지, 높게 정하는 정도는 얼마인지를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각종 직제별 노임기준, 노임의 지불형태와 방법, 가급금·장려금·상금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제26조제2문) 차등임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임금보호장치에 관하여서는 제33조에서 일정기불원칙을 정하였으나 임금의 일시불·직접불·통화불원칙에 관하여서는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점이 우리 근로기준법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급금이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등 할증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앞에서 살펴본 사회주의노동법상의 개념정의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상금은 본래적 의미의 상여금이라고 보여지나 장려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임금산정의 기초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노총 등 근로자측에서는 생계비설을 주장하고 사용자측은 생산성설을 선호하고 있는데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의 숙련정도와 노동생산능률의 제고에 따라 노임수준을 점차 높이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제27조) 생산성설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 및 휴식에 관한 규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예컨대 휴가의 부여에 있어 이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휴업시 임금지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외근로를 시킬 경우 별도의 할증임금

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여기에 관하여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4개 조문을 두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휴가기간중 임금지급여부에 관하여서는 휴가 및 보충휴가기간에 해당하는 노동보수를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금액은 휴가받기 전 3월 동안의 노동보수총액을 실제 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노동보수액(여기에는 노임·가급금·장려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제28조). 여기에서 휴가수당을 휴가기간전에 지급하도록 한 점이 특이하며, 금액계산은 우리 법제상 평균임금개념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우리 근로기준법은 연월차휴가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통상임금을 비롯한 제반임금을 지급하며,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가산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보통 연월차휴가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계산의 기초로 삼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입법취지가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임금지급에 관하여서는『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이상에 해당한 보조금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제29조) 우리 근로기준법상 휴업지불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주도록 한 것에 비교하여 그 지급수준이 낮게 되어 있고,『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애매하나 제21조의 기능공 양성조항과 관련하여 양성기간중에는 임금의 60%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를 함께 규정한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지급에 관하여서는『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체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의 연장작업, 밤일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의 5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밤일이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일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였다(제30조). 이 규정은 아른바 휴일근로·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여기에서는『가급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지급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에서 연장근로는 제23조의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시간을 말하는지 노동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시간을 말하는지가 애매하다. 할증기준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명절날과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노동시간의 연장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10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는데(제31조), 이는 연

장근로와 휴일 내지 야간근로가 겹친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따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우리 근로기준법은 이 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해석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밖에 노동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금지급에 관한 규정과 노동보수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상금에 관한 규정을 보면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상금기금을 세우고 직업동맹조직과 협의하여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모범적인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제32조) 여기에서 상금기금이란 합영법시행세칙 제88조 등에 나타난 상금기금과 같은 성격의 것이며 상금이란 우리가 말하는 상여금으로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여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점과 대조를 이룬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후 이윤이 남을 경우로 지급요건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상여금지급요구가 나올 수 없도록 한 점과 직업동맹조직과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최근에 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제도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상금의 지급대상은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모범적인 종업원』으로 한정하여 상여금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

노동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외국투자기업은 노임·가급금·장려금을 주는 날짜를 정하고 그 날에 내주어야 한다. 상금은 평가기간 다음날에 주어야 한다. 노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퇴직·해고시킨 경우에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노동보수를 주어야 한다.』(제33조)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6) 노동보호

사회주의노동법 제53조는 노동보호사업을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며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의의를 밝힌 다음 국가는 『노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직장은 노동안전 교양사업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정책과 노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켜야 하며 그 전에는 누구도 그들에게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제54조).

북한에서 말하는 노동보호란 서방국가의 노동법에서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권리보장이나 권리설정 등 적극적 의미의 노동보호가 아니라 안전위생 등 노동력 관리를 위한 소극적 노동보호를 의미한다.

사회주의노동법에 규정된 노동보호 관련규정을 보면 ①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

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직장은 노동안전시설과 고열·가스·먼지·채광·조명·통풍에 대한 산업위생조건을 갖추고, 계속 그것을 개선완비하여 노동재해와 직업성 질환을 미리 막아야 하며(제55조) ②생산 및 작업에 앞서 노동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생명과 건강에 해로운 위험한 물건들을 즉시 없애야 하며 생산과정에 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한 곳을 정비한 다음 생산을 계속하여야 하고(제56조), 특히 건설과 기계설비의 제작에서 노동보호조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하며, 신설·확장·보수한 건축물과 새로 제작한 기계설비는 해당 검열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조업할 수 없고(제57조) ③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하고(제58조) 특히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고 여성들의 유해노동이나 임산부의 야간노동을 금지하며(제59조) ④이와 같은 노동보호사업을 위하여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근로자들은 작업시 이들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제60조) ⑤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는 『생산의 표준조작법』과 『노동보호규정』을 만들어 근로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는 각 직장의 노동보호사업의 실시를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제61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노동법의 규정은 산업안전보건, 즉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것인데 이는 ILO의 권고라든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기에 관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72개조로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법과 1,000개조가 넘는 하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그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6장에서 『노동보호』란 제명 아래 두고 있는 5개조문은 대부분 위에서 살펴본 사회주의노동법과 중복되는 대동소이한 규정이며 따라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다만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업소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였지만 이 노동규정에서는 외국투자기업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투자기업은 ①노동안전시설을 갖추고 이를 개선완비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고열·가스·먼지를 막고 채광·조명·통풍과 같은 산업위생조건을 보장하여 종업원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여야 하고(제34조, 위 사회주의노동법 제55조와 유사) ②종업원에게 노동안전기술교육을 준 다음에 일을 시키도록 하되 노동안전기술교육기간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1~2주일로 하며(제35조, 동법 제54조와 유사하며 교육기간을 명시한 점

만이 차이가 있다) ③여성종업원들을 위한 노동보호위생시설을 잘 갖추어야 하고, 특히 임신 6개월이 넘는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하며, 탁아소·유치원을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제36조, 동법 제59조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 ④종업원들에게 노동보호용구·작업필수품·영양식료품 같은 노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내주도록 하되, 그 지급기준은 북한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하여 외국투자기업이 정하도록 하였다(제37조, 동법 제60조와 유사한 규정이다). 그 밖에 이 노동규정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의무로서 작업도중 종업원이 부상·중독과 같은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노동보호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관계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는데(제38조) 이는 사회주의노동법과 달리 산업재해예방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7)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사회주의노동법 또는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의 내용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들이다.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는 그들 체제의 특성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선 그들의 헌법에서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요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였다(제72조). 넓은 의미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는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헌법 제71조), 혁명투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호(헌법 제75조), 탁아제도(헌법 제76조 및 어린이보육교양법) 등이 포함되지만 핵심은 사회주의노동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제도와 인민보건법에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된 무상치료제, 국가사회보장법에 의한 연금제도 및 산재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법 제8장에 규정된 근로자 복지제도는 주택제공(제69조), 식량공급(제70조), 탁아제도(제71조), 의무교육 및 장학금지급(제72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 지급 및 노동력상실연금 지급(제73조), 연로연금 지급(제74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배려(제75조), 유급휴가 및 산전·산후휴가기간중 보조금 지급(제76조), 유가족연금 지급 및 자녀부양(제77조), 무료양로원 운영(제78조), 무상치료제(제79조) 등으로서 광범위한 복지혜택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내용이 흡결되어 있고 정치적 선전목적이 다분하여 실효성이 의문이다.

예컨대, 주택제공 내지 식량공급에 관하여서는 국가는 자신의 부담으로 문화주택을 공급하며 짠 값으로 식량을 공급한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금제도 및 산재보험 제도와 유사한 제도에 관하여는 약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노동재해·질병·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는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주도록 하며(제73조)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에 이른 근로자가 일정한 근속 노동연한을 가진 경우 연로연금을 지급하고(제74조), 노동재해·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77조). 또한 노동력을 잃은 돌불 사람이 없는 노인과 불구자들은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 주고(제78조) 노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공로자들의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의 경우 그들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한다(제75조).

위의 여러가지 사회보험의 급부를 정리하면 북한 사회보험제도상의 피보험자의 권리인 ①질병·부상·임신·해산에 관한 의료상의 방조(부조) ②질병·부상·불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보조금 ③임신·해산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보조금 ④질병·부상으로 불구 또는 폐질되었을 때의 연금 ⑤부양의 책임을 진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였을 때의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 ⑥연로한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 가지고는 국가사회보험제 내지 국가사회보장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못하다. 그 근거법규로서는 사회보험법과 사회보험료수납법, 국가사회보장에관한규정 등이 제정된 바 있는데, 국가사회보험법은 북한법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75개조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서 의료보호·실업보호·연금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46.12.19 임시인민위원회결정 제15호로 제정하고 1947.4.14 극히 일부를 개정한 후 지금까지 다른 입법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험료수납법은 1947.3.24 임시인민위원회결정 제18호로 제정된 후 개정 실적이 없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 국가사회보장에관한규정 역시 1951.8.30 내각결정 제322호로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대륙연구소 간, 『북한법령집』 제4권 참조). 이들 법규가 제정된 당시의 북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주의체제로 민심을 끌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사기업의 제한적 인정 등 제정 당시의 여건과 비교하여 그 후 철저한 사회주의화의 이행으로 입법운영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음에도 법규개정이 없다는 것은 결국 법령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제도는 법령의 내용과 관계없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조선중앙연감』등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재 북한에서 운영되는 제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

구 분	종 별	내 용
보 조 금	일시적 보조금	월 평균임금액의 50~80%를 3개월 한도로 지급
	해산보조금	월 평균임금액의 90%를 지급
	장례보조금	사망자가 10세미만인 경우 5원, 10세이상인 경우 10원
	의료보조금	무상치료원칙(사회보장비 명목으로 월급의 1% 공제, 치료약은 인민약국에서 별도 구입)
연 출 금 연 금	폐질연출금(노동능력상실연금)	직종별·질병 종류별로 최종 월 평균임금액의 23~90%를 매월 지급(1급에서 3급으로 구분)
	유가족연출금(유가족연금)	가족 수에 따라 40~90%를 매월 지급
	양로연출금(연로연금)	남 60세, 여 55세이상인 자로서 근속연한 남 15년, 여 12년(특별유해부문의 경우 남 12년, 여 10년)이상인 자에게 종신지급(지급액 불명)
실 업 보 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표준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자발적 실업 및 노동규정을 위반법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는 제외)

(자료출처 : 통일원『북한개요』 p.268)

한편 이와 같은 제도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하여서도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1%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기업소·사회협동단체에서 임금의 5~8%를 보험료로 부담하며 국고 및 지방비에서 지출되는 사회보험행정비를 추가하여 사회보험기금을 운영하는 바, 그 운영은 1958.2.10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개정 합영법시행세칙에서는 합영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노동보수의 7%를, 그 종업원들이 노동보수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였고(제71조), 합영회사로 하여금 생산활동 및 기술발전기금과 함께 종업원을 위한 상금기금·문화후생기금 등을 설치하도록 하되, 이들 기금의 종류와 규모·이용범위는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며 기금의 조성비율은 합영회사 순소득의 3%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데(제88조) 그 중 문화후생기금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제도로서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외국투자기업의 업종이라든지 산업재해의 발생비율 등에 따른 사회보험료의 차등납부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산재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보험요율을 달리 정하고 매년 산재발생비율 및 보험금지급금액에 따라 보험요율을 기업체별로 증감하여 주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7장에 나타난 사회보험·사회보장 관련조항은 이와같은 일반적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6개 조문을 두고 있는데 그 첫 조문인 제39조에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북한주민인 종업원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였으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보조금·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외국투자기업 종업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달리 정할 것이 없다. 그리고 보조금·연금 등의 경우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그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사회보험의 경우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지급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투자기업에 제출하고,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 보조금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아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정휴양소에 가고 오는데 드는 여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 문건에 의하여 먼저 지급하고 후에 청산받도록 하였다(여기에서 지급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외국투자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에 의한 연금보

조금은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어 수속을 밟은데 따라 사회보장연금지불기관에서 매달 일정한 날에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절차가 번거롭고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그 기관이 명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제출서류·처리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연금의 계산에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라 계산한다고 하였는데(제40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법규에서는 정한 것이 없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면서 사회보장기금(이는 명백히 사회보험기금의 오기인 듯하다)은 종업원들에게 받아들이는 사회보험으로 적립된다고 규정하였는데(제41조) 사회보험료는 제43조의 규정은 물론 합영법시행세칙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투자기업에서도 부담하고 있음에도(합작법·외국인기업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북한의 일반 기업소·단체와 같은 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받아들이는 사회보험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양소·요양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운영비는 사회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제42조). 이는 사회보험료 납부의무와는 별개의 것이며 의무조항은 아니고 일종의 권장사항인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43조). 사회보험료납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이라 함은 제39조에 규정된 사회보험보조금지불청구서의 제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회보험기금의 운영주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기관에서 감독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직업동맹조직에서도 감독하도록 한 것은 종업원들이 받을 혜택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받을 혜택을 일부러 줄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체제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재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지급금액이 늘어나면 보험요율이 상향조정되고 근로감독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가급적이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보험금기급액수를 줄이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도록 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를 가지고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의 향상과 군중문화체육사업·후생시설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에 대한 감독은 직업동맹조직이하도록 하였다(제44조). 문화후생기금은 제32조에 규정된 상금기금과 그 취지가 유사한 바(즉 우리 법제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한다), 상금기금이 종업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현금적 급부인데 대하여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 전체를 상대로 하는 복지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8) 제재 및 분쟁해결

북한에서는 노동과 관련된 범죄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규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와 노동조건의 보장에 관한 법적 요구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노동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독립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제반 법령은 벌칙의 구성요건이나 형량을 허술하게 규정한 것이 대부분이며 죄형법정주의 등 형벌론에 있어서 자의성이 농후하고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통한 인권의 보호 측면은 거의 도외시함을 보여준다. 물론 형법에는 각종 행정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북한의 형법은 1950년에 제정되고 1974년에 개정되었으나 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해설서 등을 통하여 단편적인 내용만이 알려졌는데 이는 우리 시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 후 비교적 최근인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형법이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 때에는 그 전문을 신속히 공표하여 상당한 의아심을 갖게 하였다.

1987년의 형법은 총 8장 161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제4장에서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제명 아래 여러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제4절 사회주의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서 5개 조문을 두었다. 그 내용을 보면 ①국가기관·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어 주지 않아 인명피해 또는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제92조) ②노동안전기술규정과 작업규율을 어겨 인명피해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제93조) ③자동차·트랙터를 운전하는 자가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어겨 인명피해 또는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로 여러명의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제94조) ④사회주의분배원칙을 고의적으로 어겨 노동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를 심히 그릇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제95조) ⑤여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직종의 노동을 시킨 자는 1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였다(제96조).

그 밖에 노동규율관련범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근로의욕저하라는 사회주의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더욱 엄하게 다스리고 그 결과 근로자 개개인은 국가관리 아래 놓인 생산수단으로 취급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제4장 제2절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제명 아래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① 기술규정 · 표준조작법 · 제품규격 ·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어겨 오작품 또는 불합격 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게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엄중한 손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제78조) ②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겨 오작시공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제79조) ③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조잡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제80조) ④집짐승을 기르는 일군이 위생방역 또는 사양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제81조) ⑤철도 · 수상 · 항공운수부문 일군이 운수규정과 노동규율을 어겨 기차 · 배 · 비행기를 전복 · 파괴 · 손상시켰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이 행위로 인하여 많은 인명에 피해를 주었거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것이다(제71조). 그러나 1974년의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른바 노력낭비죄, 즉 작업대상을 똑똑히 주지 않거나 노동조직을 되는대로 하거나 하루 노력정량을 타산함이 없이 노동력을 잘못 배치하여 노력낭비를 가져오게 한 경우 및 국가적 노동동원 등에서 노력낭비를 하여 국가에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어 중간관리자의 노동력동원 관리소홀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은 두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그 밖에 이른바 생산공급관리질서교란에 관한 범죄라고 부를 수 있는 몇가지 범죄 유형이 제4장 제2절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논거를 보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신중한 계획의 수립과 중앙통제 및 할당에 대한 절대적인 순응 내지 이행이 요구되고 따라서 여기에 위반한 행위는 당연히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규정순서대로 정리하면 ①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우거나 국가계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 보고하거나 계획 및 계약규율을 어기는 행위를 여러번 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큰 혼란을 준 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제72조) ②자재공급일군이 고의적으로 자재공급 또는 판매규율을 여러번 혹심하게

어려 경제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주게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제73조) ③많은 원료·자재·자금 또는 특히 중요한 설비 같은 것을 유용·낭비·사장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엄중한 손해를 준 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제74조) ④원료·자재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취급하여 그 것을 많이 부패·변질·유실시킨 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제75조) ⑤기업관리의 책임일군이 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규정대로 조작하지 않았거나 설비를 되는대로 다루게 하여 그것을 파손시켰거나 상당한 기간 생산을 멈추게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것 등이다(제76조).

형법 제4장 제1절은『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상금·우대제·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동탈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62조)라는 규정이 노동문제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은 사회주의노동법을 비롯한 일반적인 법규위반에 대한 범죄를 규정하고 그 처벌은 대부분 노동교화형으로 하였는데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서는 이 규정에 위반한 몇가지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즉 ①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이 노동규정을 어기고 북한의 인력을 채용 또는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며(제45조) ②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노동 안전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갖추지 않은데 대하여 그 기간을 정해주어 시정을하도록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인데(제46조), 벌금적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벌금을 적용한 기관과 상급기관에 돌려줄 것을 제기할 수 있고 벌금을 돌려줄 것을 제기받은 상급기관은 그것을 제기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제47조). 여기에서 벌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일반행정기관에서 행정 절차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상 과태료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사회주의노동법 등 일반노동법규의 경우에도 제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흡결된 경우가 많은데 이 노동규정에서도 여러가지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그 이행을 확보할 제재수단이 거의 없어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운영이 우려된다.

분쟁해결에 관하여는 이 노동규정의 집행과 관련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점과 분쟁사건은 북한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는데(제48조), 이는 다른 법규에서 정한 것을 기계적으로 옮겨 적으면서 다만 제3국에 의한 분쟁조정만을 제외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노동규정은 기본적으로 강행법규로서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위반행위의 제재와 계약관계에 대한 노동규정내용의 우선적 적용이 긴요함에도 여기에 관하여 거의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아직도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법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새 외국인투자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I. 외국인투자정책의 기본방향

북한은 199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투자관련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9개의 법률과 3개의 하위법령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그들의 대외개방 내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기본정책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국가의 대북투자를 적극 유치하되 그로 인한 북한의 체제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형태 내지 개방지역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의 구 합영법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상호이질적 체제를 결합시킨 합영회사를 구상하고 있었으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과 이익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시장경제원리 내지 자본주의적 기본운영법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함을 입증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전반적 법제수준의 낙후성 및 투자환경의 열악함과 결부되어 서방국가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실패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은 자본주의적 기업경영방식의 직수입을 의미하는 합영제도는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데 그치고 그 대신 간접투자에 가까운 합작형태를 새로 도입함과 아울러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제한된 지역을 설정하고 여기에 대하여서는 외국인단독투자기업까지를 협용하는 한편 토지임대 등에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펴는 것이었다.

그 밖에 기업활동에 있어 서방측 투자가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던 부분, 즉 토지이용, 노동력의 수급, 외환 및 조세, 출입국절차 등에 관한 개별법규들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투자유치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중국의 법제를 모방한 것이면서 오히려 중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규정한 것이 많고 또한 우리 시각에서 볼 때 규정의 산만함과 주요내용의 흡결, 구체성의 결여 등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미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의 개방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북한당국의 정책의지가 확고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과 합작형태가 새로 도입되어 직접투자보다는 미흡할지라도 서방측의 관심을 끌만한 유인을 갖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합영기업·외국인단독기업 운영으로 대북투자의 성공여부를 실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합작기업 내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통하여 북한측이 경제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와 자신감을 갖게 될 경우 합영기업의 적극유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추가지정 등 점진적인 개방확대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측이 기왕에 착수한 합작기업 내지 자유경제무역지대 중심의 개방추진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북한측과 서방측 투자가 쌍방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투자계약 내지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북한 국내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당국에 대하여서도 이미 공표한 법령을 손질함과 아울러 여러가지 관련법제를 새로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이루어 나가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 외국인투자법제의 비교분석

1. 구 합영법과 외국인투자법의 비교

종전에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합영법과 새로 제정된 법률중 기본법 내지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투자법을 대상으로 하여 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한 후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구 합영법과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차이점

구 분	구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투자유형	합영기업	합영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
투자 대상자의 범위	외국의 회사 및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외국의 회사 및 개인,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구 분	구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투자 대상분야	공업·건설·운수·과학·기술·관광 등 여러 분야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금융·과학·기술·관광·유통 등 여러 분야
투자의 장려 및 제한	명문 규정 없음	장려·제한·금지규정 신설, 자유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우대조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명문 규정 없음	국유화 금지, 불가피하게 국유화 할 경우 보상
토지의 임대·상속	비출자시 국가가격재정기관에서 정한 토지사용료 납부	최고 50년까지 임대, 임대받은 토지의 양도·상속 가능

첫째, 구 합영법에서는 자본주의식 합작투자에 해당되는 합영만을 투자유형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합영합작기업과 100% 단독투자인 외국인기업으로 투자유형을 다양화시킨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들 투자유형 상호간의 비교는 뒤에서 다룬다.

둘째, 구 합영법에서는 투자대상자의 범위를 외국회사 및 개인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로 규정한 반면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회사 및 개인, 그리고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로 규정하였는 바, 「해외에 거주하는」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의 의미 차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의 대북투자까지를 허용하겠다는 북한측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합영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 기업의 북한으로의 투자는 합작방식에 의한 북한 전역으로의 투자는 가능하나, 합영기업·외국인기업과 같은 투자유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진·선봉지구로 한정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합영기업의 허용범위는 북한의 제한적 개방정책의 운영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구 합영법의 정비여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더구나 합영법이 개정된 지금에는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구 합영법에서는 투자 대상분야를 공업·건설·운수·과학·기술·관광 등으로 규정한 반면 외국인투자법에서는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금융·과학·기술·관광·유통 등 여러 분야로 규정하여 투자 대상분야가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투자유형과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를 당국의 승인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합작법 제7조·외국인기업법 제8조·개정 합영법 제9조) 우리 법제에서 일정한 투자업종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대상으로만 규정한 것(외자도입법 제7조·제7조의2)과 차이가 있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정체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더구나 새 외국인투자법 등에서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투자제한 및 금지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분야에 관하여서는 구합영법보다 법규내용이 구체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구 합영법에서는 투자의 장려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투자의 장려나 제한 그리고 우대조치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어 정책의 법제화가 한층 진전되었다. 즉, 외국인투자법 제7조에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가 경쟁력이 높은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장려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서는 민족경제 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사업 그리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공해산업 등은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려업종에 대한 우대조치로서는 외국인투자법 제8조에서 소득세 등 조세감면, 유리한 토지사용 조건의 보장, 은행 대부의 우선적 제공 등을 규정하고 그 종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서 기업소득세율을 10%로 인하하는 등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12조, 제15조제2호 등) 다른 우대조치에 관하여서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후 제정된 시행규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려가 없다.

지 않고 있으며 그 후 세정된 자영업자에게 그 기관은 투자우대조치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우대조치인데 장려부문에 대한 우대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외국인 단독기업까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투자가 가능한 바,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수출입 물자에 대한 과세면제와 조세감면,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규정하고(제9조·제10조)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에도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자유경제 무역지대 외국인 출입 규정 등에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토지 임대 조건, 근로자의 임금 등에 있어서도 토지 임대법·외국 투자기업 노동 규정 등에 차별적 규정을 두어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피하고 있다(토지 임대법 제33조, 외국 투자기업 노동 규정 제26조 등).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가운데 장려부문에 해당하는 투자는 양자에 대한 우 대조치가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기업소득세율의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장려부문에 대한 투자는 10%, 기타 부문에 대한 투자는 14%가 적용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우대조치는 제한적 개방정책 아래에서 외국인투자를 최대한 유치하려는 북한의 정책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나진·선봉지구와 인접한 중국·러시아와의 경쟁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섯째, 구 합영법은 외국인투자보호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북한 당국의 의사에 따라 합영기업의 몰수가 가능했으며, 실제로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경우 조국에 대한 현금이라는 명목으로 합영기업이 몰수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외국인투자법 제19조에 의하면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화가 가능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구 합영법은 북한측이 토지형태로 출자할 수 있으며 비출자시 국가가격재정기관에서 정한 토지사용료를 납부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토지임대기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임대받은 토지의 양도·상속여부도 불명확하였으나,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제15조에 「국가는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해 주며, 임대된 토지는 양도·상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토지임대법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운영에서 토지의 확보와 관련된 투자기업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법은 외국투자기업의 지사·대표부·출장소 설치 및 자회사 설립과 기업연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제13조), 기업청산후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도 송금을 보장하며(제20조), 경영비밀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둔 점(제21조) 등에서 구 합영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은 구 합영법에서 규정되었던 외국투자기업의 내부조직(이사회·관리성원·재정검열원 등), 이사회의 만장일치제 운영(이는 구 합영법시행세칙 제28조에 규정되었던 사항이나 그후 개정 시행세칙 제44조에서는 일부사안의 경우 3분의 2 찬성으로 약간 완화하였다), 유한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는 투자유형을 다양하게 인정한 데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

2. 투자유형 상호간의 비교

북한의 세로운 외국인투자법제에서는 구 합영법에 의한 합영기업외에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을 추가하고 이를 규율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점에 특징이 있는데, 먼저 외국인투자법상의 개념적 측면에서 이들 세가지 투자유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투자유형의 개념적 차이

구 分	투자 방식	경영 방식	분 배 방 식	
			이 익	손 실
합영기업	공 동	공 동	공동(지분율)	공동(지분율)
합작기업	공 동	단독(북한측)	공동(계약)	단독(북한측)
외국인기업	단독(외국측)	단독(외국측)	단독(외국측)	단독(외국측)

이어서 이들 세가지 투자유형에 대한 각 개별법, 즉 개정 합영법과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에서의 법적 규율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합영기업 ·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에 대한 규율방식의 차이

구 分	합 영 기 업	합 작 기 업	외 국 인 기 업
근 거 법	합영법 · 동법시행세칙	합 작 법	외국인기업법
설 립 지 역	제한 없음	좌 동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
경 영 조 직	이사회방식, 공동	북한측이 단독경영	규정 없음
법 적 성 격	유한책임회사	법 인	법 인
출 자 비 율	당사자간 합의결정	출자지분 개념없음	외국측 100%
설 립 절 차	사전합의(북한측 당사자와 사전합의, 담당기관)→ 합영계약체결→ 기업창설 승인신청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사전협의(북한측당사자와 해당 상급기관)→ 합작계약체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승인신청→ 도행정·	정무원 자금신용확인 (외국측 당사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기업창설승인신청→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구 분	합 영 기 업	합 작 기 업	외 국 인 기 업
설립 절차	지대당국)→ 기업등록 신청(도행정경제위원회·지대당국)→ 출자 이행→ 기업등록신청 (도행정경제위원회· 지대당국)→ 세무등록 (기업 소재지 재정기 관)→ 영업허가신청 (기업창설승인기관)	경제위원회에 등록→ 세무등록	등록→ 세무등록
승인처리기간	50일내	50일내	80일내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국내거래는 합영자재 상사무역기관 등을 통 하도록 함	규정 없음	국내거래자는 해당 무 역기관을 통하여도록 합
직업동맹(노조)	직업동맹의 활동조건 보장	규정 없음	직업동맹의 활동보장
보험	보험가입은 북한의 보 험에 한정	규정 없음	보험가입은 북한의 보 험에 한정
관세	수입관세 면제	규정 없음	수출입관세 면제
자본 감소	허용 안됨	규정 없음	허용 안됨
회계·세무감독	재정겸설원의 감독, 기 업창설승인기관 및 재 정기관 등에 서류제출	재정은행기관	대외경제기관과 재정 기관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영법이 개정됨으로써 3가지 유형간의 규율방식상 차이는 많이 해소되었다.

한편 노동력의 고용과 해고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법에서 노동기관과의 계약에 의
하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력의 채용에 관하여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도록 하
였으며(제16조), 최근에 새로 제정된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서는 북한의 인력을 채
용할 때에는 인력알선기관과 인력채용계약을 맺고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맺도록 하

며 종업원의 해고에 있어서도 직업동맹 및 인력알선기관과 합의하도록 하였는 바(동규정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 이러한 규정은 투자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내국세부과에 관하여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 기업소득세의 기본세율을 25%로 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의 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을 14%, 장려부문에 대한 우대세율을 10%로 규정하며(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혜용되므로 기본세율은 적용여지가 없음), 소득세감면은 이윤발생후 3년간 전액면제하고 그 후 일정기간 50%를 감면하며(우대부문에 대하여는 특칙이 있음), 이윤재투자시 조세환급을 인정하도록 하였는데 역시 이 세법규정이 모든 투자형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투자형태에 따른 차이점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비교

(1) 전체적 비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가 갖는 제도적 미비점은 중국의 법제와 비교할 때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북한은 앞에서 살펴본 9개의 법률과 합영법시행세칙·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그리고 조세·노동·자유경제무역지대관련 하위법령 5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투자형태별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외자기업법을 제정하고 이들 각 법률의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섭외경제계약법, 다수의 세법·회계법·특허법 등 관련법률과 대만동포투자장려규정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장려법규(특히 각 지방별로 투자장려법규를 갖추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리고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조립가공 및 보상무역에 관한 법령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보완과 새로 대두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입법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령의 명확성 내지 구체성의 측면에서 북한의 법제는 중국법제와 비교하여 크게 미흡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외개방정책 담당기관을 보면 북한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으로 단일화되어 있어(사안에 따라 무역기관·재정기관·인력알선기관 등의 통제를 받으며 기업등록업무 등은 지방관서에 맡겨져 있고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의 권한도 상당하지만 자체적인 정책통제는 중앙의 대외경제기관에서 담당한다) 기동성과 통일성이 뛰어난 반면, 중국은 지방 각성에 독자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투자유치정책을 전개함

으로써 외국투자가에게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기는 하나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교섭창구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함을 나타내기도 한다(이는 중국과 북한의 중앙집권화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 투자형태별 비교

북한과 중국의 법제를 투자형태별로 비교할 때에도 북한법제의 낙후성 내지 미비점이 두드러지는 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북한의 합영기업과 중국의 합자경영기업의 비교

항 목	북 한	중 국
출자지분	당사자 합의로 결정	외국측 지분이 25% 이상일 것
화폐외의 출자평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가 평가	각 당사자가 공평합의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거나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제3자에게 평가의뢰 가능
계약기간	원칙적으로 10년(시행세칙에서 규정)	10~30년(특정부문 30년 이상 가능)
승인처리기간	접수후 50일이내	접수후 3개월이내
이사회구성	합영계약과 회사규약으로 정하되, 출자비율 고려	당사자가 정하되, 이사수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장은 중국측, 부이사장은 외국측이 지명
이사회의결 방법	대부분의 중요사안은 만장일치제, 기타는 3분의 2찬성	중요사안의 경우만 만장일치
토 지	임대기간 최고 50년, 양도 및 상속가능, 임대료와 사용료 징수	임대기간 40~70년, 양도가능, 임대료 표준화
원자재구입	국내구입 불가능시 수입, 국내구입은 국제가격 기준, 외화지급	같은 조건시 국내구입, 구입가격은 국영기업과 동일가격, 외화 또는 국내화폐지급
관 세	수입관세 면제	수출용 수입관세 면제

항 목	북 한	중 국
고용 · 해고	노동기관을 통합	노동관리부서의 동의를 얻어 직접 고용 가능(노동계약 체결)
회계제도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 및 세 칙제정	85년 회계법 제정
송금제한	외환관리법에 지정	제한규정 없음

북한의 합작기업과 중국의 합작경영기업의 비교

항 목	북 한	중 국
조직형태	북한의 법인	중국의 법인이 일반적이나 비법인 형태도 가능(융통성 부여)
승인처리기간	신청후 50일	신청후 45일
경 영	북한측 경영담당(비상설적 공동협 의기구)	경영 등 모든 주요사항은 계약에 따름(공동경영, 일방당사자 위탁경 영도 가능)
이윤분배	투자상환,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이 원칙	투자상환, 이윤분배는 계약에 따름
자산소유권	규정 없음	계약만료후 중국측으로 이양됨(만료전까지 투자상환 보장)

북한의 외국인기업과 중국의 외자기업의 비교

항 목	북 한	중 국
설립지역	자유경제무역지대	제한조항 없음
승인처리기간	신청후 80일이내	신청후 90일이내

항 목	북 한	중 국
설립요건	나라안정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 으로 뒤떨어진 기업 금지	선진기술, 신제품개발, 에너지 절약, 수입대체 또는 50%이상 수출기업
경영자율성	규정없음	경영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고용 · 해고	노동행정기관으로 통합	계약에 의함
노동조합	직업동맹조직의 활동보장	노동조합의 설립 · 활동보장
자본양도	규정 없음	일정기간후 중국측에 일부 양도

(3) 투자관련세제의 비교

조세제도는 투자유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바, 북한은 이 점에 있어서 다
분히 중국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조세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과 중국의 조세체계 비교

구 分	북 한	중 국
소 득 세	기 업 소 득 세 개 인 소 득 세	좌 동
유 통 세	거 래 세	工商統一稅
상 속 세	상 속 세	없 음
재 산 세	재 산 세	부 동 산 세
기 타	등록변호세, 도시경영세, 자동차이용세	차량 · 선박사용허가세

다음으로 기업소득세에 있어서는 세율과 조세감면제도에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

북한과 중국의 기업소득세율 비교

북한	중국
일반지역 25%	일반지역 33% (지방세 3% 포함)
지대는 14%	특구는 15%
장려부문 10%	장려부문 15%

이것만 가지고 보면 북한이 중국에 비교하여 세율면에서 외국투자가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나, 중국은 그 밖에도 특구이외의 경제기술개발구·연해경제개발구 등에 대하여 제조업은 15% 또는 24%, 비제조업은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수출기업으로 지정되거나(70% 이상 수출) 선진기술산업으로 지정되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다양한 세제상 특혜를 인정하고 있어 북한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기업소득세 감면에 있어서도 북한과 중국의 법제는 대조를 이룬다.

북한과 중국의 기업소득세 감면제도 비교

항 목	북한	중국
제조업	「지대」안은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를 감해줌	지역에 제한없이 2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50%를 감해줌
장려부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를 감해줌	2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를 감해줌
기타	하부구조 건설부문: 「지대」안의 총투자액 6천만원이상은 4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감해줌	수출기업: 2년간 면제후 계속 50% 감해줌 선진기술기업: 2년간 면제후 6년간 50% 감해줌

개인소득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북한의 경우 2천만원까지 면세이며 소득액에 따라 4%~2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월 800元까지 면세이고 소득액에 따라 5%~45%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북한이 훨씬 세금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세대상소득에 있어서 북한은 1년이상 거주자에 대하여 국외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나 중국은 1년이상 5년미만 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중 중국으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4) 외화관리제도의 비교

북한의 외화관리제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한 집중관리 및 외국환업무 전문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은 무역은행 또는 외화관리기관이 승인한 은행에 외화구좌를 설치하고 모든 외화거래는 이 구좌를 통하여도록 하였으며 외화이용기관·기업소·단체는 분기·연간 외화제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북한의 외화관리제도는 결국 외국투자기업이 소요외화를 수출이나 해외차입 등을 통하여 자체 조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내수시장에 판매하여 북한 원화를 이윤으로 얻는 경우 교환성통화로의 태환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외화관리법 제27조는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을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외화로 받는 이윤이나 기타 소득이 아니고는 외화로 송금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합법적 소득 또는 자기 자본의 송금에 대해서는 북한 원화의 교환성통화로의 교환을 보장한다는 것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종업원은 임금 등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합법적 수입의 50%까지 송금할 수 있으며 국가외환관리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 자유경제무역지대제도의 비교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한 취지는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높이면서도 개방으로 인한 체제동요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는데 중국의 경제특구전략은 개방의 창구로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경제적 목적외에 특구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융합시켜서 이를바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를 구축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한다는 체제개혁적 목적을 갖고 있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그들의 경제활동 중심지에서 떨어진 나진·선봉지구에 설정한 반면 중국은 기존의 상공업지대와 연결된 지역 또는 홍콩·마카오 등 서방경제권의 중심지와 인접한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물론 북한은 UNDP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할 수도 있으나 남포·원산·휴전선일대 등 입지조건이 보다 유리한 여타 지역에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폐쇄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격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형성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나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하도록 하여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중국은 경제특구내의 생산과 유통 등 자원배분은 주로 시장조절기능에 맡기고 있어 체제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차이를 느낄수 있다.

(6) 토지임대제도의 비교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생산수단의 국유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토지이용권을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하고 판매·재임대·증여 등을 허용한 것은 경제개방으로 향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는 바, 이는 다른 분야의 법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국의 관련법규를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도 국가마다 토지공유제의 유형이 달랐던 바, 크게 나누어 개인의 토지소유를 일체 금지한 소련형과 토지사유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헝가리·루마니아형이 있었다.

중국은 경제개혁이전에는 엄격한 소련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개혁이후에는 토지 사용권을 토지소유권과 구분하여 새로운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되, 여기에 대하여 국가가 규제하는 유형을 개발하였는 바, 북한도 중국의 이러한 모델을 답습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국투자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외에도 중국측 협영당사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 중국측 당사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북한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는 국토관리기관(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이 통일적으로 담당하되(제4조),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가 합영·합작기업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5조) 북한에서는 토지이용권도

개인소득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북한의 경우 2천만원까지 면세이며 소득액에 따라 4%~2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월 800元까지 면세이고 소득액에 따라 5%~45%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북한이 훨씬 세금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세대상소득에 있어서 북한은 1년이상 거주자에 대하여 국외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나 중국은 1년이상 5년미만 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중 중국으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4) 외화관리제도의 비교

북한의 외화관리제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한 집중관리 및 외국환업무 전문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은 무역은행 또는 외화관리기관이 승인한 은행에 외화구좌를 설치하고 모든 외화거래는 이 구좌를 통하여 하였으며 외화이용기관·기업소·단체는 분기·연간 외화제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북한의 외화관리제도는 결국 외국투자기업이 소요외화를 수출이나 해외차입 등을 통하여 자체 조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내수시장에 판매하여 북한 원화를 이윤으로 얻는 경우 교환성통화로의 태환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외화관리법 제27조는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을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외화로 받는 이윤이나 기타 소득이 아니고는 외화로 송금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합법적 소득 또는 자기 자본의 송금에 대해서는 북한 원화의 교환성통화로의 교환을 보장한다는 것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종업원은 임금 등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합법적 수입의 50%까지 송금할 수 있으며 국가외환관리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 자유경제무역지대제도의 비교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한 취지는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높이면서도 개방으로 인한 체제동요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는데 중국의 경제특구전략은 개방의 창구로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경제적 목적외에 특구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융합시켜서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를 구축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한다는 체제개혁적 목적을 갖고 있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그들의 경제활동 중심지에서 떨어진 나진·선봉지구에 설정한 반면 중국은 기존의 상공업지대와 연결된 지역 또는 홍콩·마카오 등 서방경제권의 중심지와 인접한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물론 북한은 UNDP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할 수도 있으나 남포·원산·휴전선일대 등 입지조건이 보다 유리한 여타 지역에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폐쇄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격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형성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나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하도록 하여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중국은 경제특구내의 생산과 유통 등 자원배분은 주로 시장조절기능에 맡기고 있어 체제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다.

(6) 토지임대제도의 비교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생산수단의 국유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토지이용권을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하고 판매·재임대·증여 등을 허용한 것은 경제개방으로 향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는 바, 이는 다른 분야의 법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국의 관련법규를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도 국가마다 토지공유제의 유형이 달랐던 바, 크게 나누어 개인의 토지소유를 일체 금지한 소련형과 토지사유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형가리·루마니아형이 있었다.

중국은 경제개혁이전에는 엄격한 소련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개혁이후에는 토지사용권을 토지소유권과 구분하여 새로운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되, 여기에 대하여 국가가 규제하는 유형을 개발하였는 바, 북한도 중국의 이러한 모델을 답습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국투자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외에도 중국측 합영당사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 중국측 당사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북한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는 국토관리기관(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이 통일적으로 담당하되(제4조),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가 합영·합작기업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5조) 북한에서는 토지이용권도

주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한 점에서 양국 제도의 차이가 있다.

중국의 토지법제의 예를 들면 1987년의 「상해시토지사용권유상양도辦法」, 1988년 4월에 개정된 헌법규정, 그리고 1990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도시국유토지사용권양도·재양도·점정조례」 등이 있는데, 이들 법제에서는 토지의 국유를 전제로 하여 토지사용권의 상속 또는 양도를 허용하되, 상속 또는 양도에는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즉 토지의 양도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어 등기하도록 하며, 토지상속의 경우에도 등기전에 국가기관으로부터 피상속인의 당해 토지사용권의 용도에 대하여 심사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위 1990년 조례에 의하면 토지사용권의 양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縣인 민정부가 선매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중국의 법제와 비교하여 외국투자가에게 불리한 것이 많은데
①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양도할 경우 북한 당국이 무조건적 우선구매권을 갖는다는 점(제9조) ②전기·통신·도로 등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비를 토지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임대료에 포함시킴으로써(제29조) 임대료가 중국의 경우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한 점(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진·선봉지역의 경우 「도시중심구역」의 공업용토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m^2 당 4.5원(약 2달러)인데 대하여, ②두 지역의 토지개발비는 m^2 당 110원(약 50달러)인 점을 보면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③계약상의 임대기간이 끝남으로써 토지에 대한 권리가 북한당국에 귀속될 경우 투자가가 투자한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을 무상으로 반환하도록 한 점(제34조) 등을 들 수 있다.

(7) 노동관련 법제의 비교

대중국투자에 있어서 종업원의 채용·해고·임금·노동보험·노동규칙·생활복지·장해·징계 등 제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1980년 7월의 「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규정」과 1984년 1월의 「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규정실시규칙」에 의하되, 각 지역별로 노동관리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법규의 적용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용과 해고에 관한 운영현실을 보면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종업원은 현지 노동부문에서 추천할 수 있고 노동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합영기업에서 공개채용하며 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여 채용하는 것도 허용되고, 해고처분된 종업원에 대하여는 노동주관부문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종업원은 일정기간의 실습과정을 거쳐 선발채용하는데 관리인 및 간부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고 생산인원은 기능·학력·경력·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공개시험을 통하여 최고의 성적을 얻은 자 중에서 6개월의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만을 채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고용된 상근 종업원은 다른 기업 또는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합영계약서에 두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노동기관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합영기업에서 중국인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채용 또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서는 북한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인력알선기관과 인력채용계약을,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각각 체결하도록 하였으며(제9조·제11조), 해고의 경우에도 정계해고든 정리해고든 간에 직업동맹 및 인력알선기관과의 합의를 요구하는 등(제15조) 중국의 경우보다 외국투자가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임금은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합영기업의 구체적인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노동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중국의 임금체계는 여러가지 함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 함정의 예를 들면 ①투자상담시 기본급만 제시하는데 합작계약 체결후에 보면 기본급에다 여러가지 보조금과 수당을 합하여 실질임금이 기본급의 2~3배에 이른다는 점(통상적인 실질임금구성비를 보면 기본급은 실질임금의 30~40%이며, 보험료·연금·주택보조금이 실질임금의 25~30%를 차지하고, 성과급·시간외수당·통근보조금·식대보조금 등이 실질임금의 30~45%를 차지한다). ②임금상승율이 도매물가상승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 ③고급기술인력의 고용이 어렵고 따라서 그 임금이 매우 높다는 점(중국에서 대부분의 공대는 중화학공업에 치우쳐 있고 이를 공대정규졸업 고급기술인력은 국가에서 근무처를 지정한다) ④중국의 취업알선기관(외국기업복무공사:FESCO)이 피고용자 임금의 일부를 수취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FESCO 혹은 중국인 피고용자 월급여액의 최고 67%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대납명목으로 중간 수취하며 그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인 피고용자의 실질임금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급여 자체를 50%이상 높게 책정하고 그 밖에 식대 등 각종 명목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⑤중국내에서 대정부 로비 등을 담당해 줄 고급경영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급여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종업원의 최저임금을 월 220원(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월 160원)으로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였는데 인플레가 생길 경우 법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을 외화로 약정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인플레가 생기더라도 북한의 공정환율(1\$: 1.01원)에 따라 임금을 환산하게 될 것이고 공정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결국 월 150~220\$의 임금을 규정한 셈이 된다. 이는 중국의 경우 최저임금인 월 50~150\$보다 높은 수준이며(실제임금수준은 위에서 본 것처럼 차이가 있다) 북한의 노동력이 중국의 노동력에 비교하여 특별히 우수하다고 보지 않는다면 대북투자가 대중국투자보다 노임면에서 불리하고 북한당국이 그만큼 임금을 통한 외화획득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밖의 노동관련법규에 있어서도 북한은 중국의 법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외개방경험이 부족하다는 탓도 있지만 근로자보호에 관한 관념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노동문제에 상당한 양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III.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

북한의 새 외국인투자법제는 구 합영법체제와 비교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여겨지나 전반적인 법령체계에 있어서는 물론 그 내용에 있어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많고 특히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개방의 폭 내지 법령정비면에서 부족한 면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얻는데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정치·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에 관심을 쏟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외국인투자법제로 나타난 9개 법률을 보면 이들 상호간의 관계, 특히 총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과 각 개별법인 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의 관계가 애매하고 규정내용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거나 흡결된 부분이 많은 반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법률에서 중복 규정하는 정도가 지나침을 보여주는데(외국인투자법·합영법·외국인기업법 상호간의 중복은 물론 세법·외화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토지임대법·외국투자은행법과의 중복도 상당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입법경험의 부족과 그로 인한 입법기술상의 미숙함, 즉 법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무엇을 법규로 규정하여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외국투자가가 북한에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법률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특히 사회주의체제의 낯선 풍토하에서 안정적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규에 의한 제도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 정부나

기업은 이점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 민법(상사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소송법 등 기본법과 노동법·환경법·토지법 등 부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특히 파산법·중재법·등기관계법 등 민사관련 특별법이라든지 인·허가 등 영업규제, 정부기업운영, 예산·회계제도·행정쟁송 등에 관한 행정법의 분야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형사법규의 경우에도 형법 자체가 구성요건의 애매모호성 등 죄형법정주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노동·환경·조세분야 등 각 개별법규에서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지 않고 형법에 의한 제재를 유추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등 북한의 법제상황은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새로 내놓은 외국인투자법제에 따라 대북투자를 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법제 그 자체로서도 많은 미비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엄격한 사회주의체제와 당면한 경제적 침체상황, 그리고 국제정치·외교적 투자환경, 북한 당국의 행정행태 등 여러가지 측면에 걸쳐 장애요인이 산적해 있다.

먼저 법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제한적 개방정책의 채택과 관련하여 종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던 합영법을 정비하면서 그 주요쟁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태도를 고수하였고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만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영기업이나 외국인기업에 의한 투자를 제한하고 합작기업 위주의 투자유치정책을 평고 있는 점이다. 합작기업은 중국의 합작경영기업과 달리 외국투자가는 자본을 제공하고 이윤만을 분배받도록 하며 경영은 북한측이 전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투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으며 이윤분배도 경영성과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관방식에 의한 간접투자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다. 합작기업은 북한측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심끝에 창안한 제도로서 외국투자가도 직접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면도 있으나 ①북한측이 경영을 전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의 평가에도 외국투자가측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외국투자가는 북한측이 방만한 경영으로 이윤확보에 무관심하더라도 이를 시정시킬 방법이 없고 경영성과의 평가 및 이윤분배에 허위가 개입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고 ②이윤분배는 물론 투자상환까지도 제품으로 합을 원칙으로 하여 투자가측은 이를 판매하는데 따르는 리스크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북한측이 제품의 품질·수량·납기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에도 북한측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는 북한 정부의 승인아래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불이 행사실을 인정받는 것부터가 문제될 수 있으며 ③외국기자재 수입,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매월 단위로 경영결산을 보고하게 한 것 등 당국의 통제가 과도하고 승인절차·요건 등에 관하여서도 명시된 바가 없어 자의적 집행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관계의 미묘함 때문에 우리기업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음이 북한의 법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측에 대한 별도의 투자장려규정 제정 등 우대조치에 관하여서는 생각조차 않고 있는 점도 중국의 대만동포우대정책에 비교하여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셋째, 세부적인 측면에서 ①기술도입 및 지적소유권 보호관련법령으로서 과학기술법·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과학기술성과의심의등록및도입에관한규정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서방국가의 선진기술이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렵고 ②토지임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불명확하여 합영기업의 경우 출자지분의 과대계산, 외국인기업의 경우 토지임차료 과다부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③재정부기계산규범 등 북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제도가 불명확하여 경영성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세납부·이윤분배에서 외국투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④환경보호법 등에 규정된 환경규제기준이 불명확하여 투자업종의 선정 및 기업활동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며 ⑤보험가입에 있어서도 북한의 보험기제도가 미비하고 보험관리기법이나 자불능력 등에 의문이 있음에도 북한의 보험기관에만 가입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⑥분쟁해결에 관하여 북한의 중재·재판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쟁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북한의 관련법규가 미비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다음으로 법제와적 요소로서 북한의 체제상 특징과 당면한 경제현실 및 국제정치상황 등에 비추어 투자장려요인으로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는 자원의 배분이 국가의 계획경제구조 아래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북한내에서의 원자재 기타 물자구입과 제품판매는 북한의 무역기관을 통하여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독자적 경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둘째,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노동행정기관의 노동력배분계획에 따라 채용·해고하도록 하고 있어 자율적 인력관리가 불가능하고 노동조합 대신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직업동맹이 법제상 또는 정책적으로 강제되어 경영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차라리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빚을 것으로 본다.

셋째, 북한이 겪고 있는 극심한 외환부족현상을 들 수 있는데 북한 당국은 외환의 집중관리와 사용통제, 특히 해외유출금지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제품수출에 의하지 않고 북한 내수판매에 의하여 얻어진 이윤을 외화로 교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외화에 의한 이윤송금에도 여러가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수출상의 애로요인을 보면 우선 외채지불연기로 인하여 EC로부터 파산국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유럽수출이 봉쇄되고 미국의 경우에도 적성국 내지 인권문제를 이유로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의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정치·외교적 문제로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곤란한 우리나라나(우리나라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수교상태의 미국·일본 등은 북한과 각종 투자관련협정, 예컨대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무역협정·상사증재협정 등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대북투자가 국제법적 보장을 받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북한 당국의 행정형태에서 비롯된 제약을 보면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의 전형으로서 법규 자체가 추상적이고 각종 승인요건·절차라든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체재수단의 행사 측면에서 법규의 흡결현상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법보다 정책당국의 방침이라든지 실무자의 재량에 의한 집행이 일반화되어 있고 관료조직 역시 정치성이 높후하거나 경직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경제원칙이나 법규에 입각한 기업활동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우에 따라 외국투자가의 친분 관계라든지 기타 로비능력에 의하여 융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기업활동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결국 최근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제정·개정·재정비 등 일련의 조치가 경제현실과 국제환경 및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현실적 자각과 자성이 뒤따를 때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제5장 결 어 - 대북투자진출을 위한 대책

대북투자는 단순한 물자교역과 달리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다는 점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당국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당국에 대하여 앞서 지적한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 미비점의 정비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는 규정(제1조제11항)에 따라 북한측에 관련 법제 및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법제·출입국관련법규·전기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용관계법규·회계관련규정·토지관련법제·중재관련법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이유 및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제시하고, 기존의 법령의 미비점과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측으로 하여금 이를 참고로 관련법제를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 법제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북한외국인투자법의 개선방안 (예시)

항 목	현 행 제 도	개 선 방 안
외국투자가의 범위	우리나라에 관한 규정 애매	우리나라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별도의 투자장려규정 제정
투자지역 제한	외국인기업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	지역제한 완화 또는 철폐, 자유경제무역지대 확대지정
기술도입 및 지적 소유권 보호	관련규정 불명확	국제적 수준의 법제마련, 국제협약에 가입
물자구입 및 제품 판매	무역기관을 통하여도록 하며 국가통제가격 적용	직거래 허용, 시장가격 인정

토지평가	관련규정 불명확	출자지분으로 할 경우 객관적 평가방법 도입, 임대형식으로 할 경우 임대료의 표준화
노무관리	고용 · 해고 노동행정기관을 통하도록 함,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규정미비, 직업동맹 활동보장 의무	직접적인 고용 · 해고 허용, 노동관련법규 정비 노동조합 허용으로 대체
보험가입	가입시 북한 보험기관으로 한정 관련규정 불명확	제3자보험 · 제3국보험 인정, 보험관계법제 정비
분쟁처리	북한의 중재 · 재판기관에 제기 관련규정 불명확	제3국중재기관 활용인정, 중재 · 재판법규의 정비
기업회계제도	관련규정 불명확	회계관련법규 정비
투자이익 등 송금	외국인 근로자의 노임 60% 까지만 송금허용 외화로의 교환가능여부 불명확	제한규정 철폐, 외화교환보장 명시
환경보호관련사항	환경저해업종 투자금지 환경법규 규제기준 불명확	환경관련법규정비 (세부기준 마련)
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적 · 형사적 제재로 막연하게 규정(외국인기업법 · 외화관리법 · 세법 · 노동관계법 · 환경관계법 등 관련법규 전반)	행정처분의 내용 · 요건, 형벌구 성요건 및 벌칙의 명확화
합작기업 관련사항	원칙적으로 제품에 의하도록 함 계약불이행 여부에 대한 당국의 승인	경화결제 허용 중재 · 재판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북한측 단독평가로 객관성 보장 곤란	경영과 평가에 대한 외국측의 관여 인정
	외국기자재 수입,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 매월단위 경영결산 보고의무	승인절차 · 요건 등 명시, 반기 단위 · 연단위로 완화

여기에서 예시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정비·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법령의 종류 및 법령상호간의 관계(상위법과 하위법, 신법과 구법, 일반법과 특별법 등), 법령제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령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집행절차, 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계획경제구조에 따른 제약요소를 완화하여 시장경제원리를 대폭 도입(이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등 지역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등 단계적 도입방안을 채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하는 등 정책의 기본방향을 재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민사·형사·행정 등 전분야에 걸쳐 자본주의적 사법질서와 근대적 형사제도 내지 법치행정의 구현을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대북투자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정부 당국의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한 당국간에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 관하여서도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남북사이에 필요한 세부합의서의 체결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측의 대북투자관련 법제를 보완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진출은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추진될 수 없고 안보적·통일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기업체 상호간의 과도한 경쟁도 예상되고 투자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따라서 정부의 조정통제와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상대하여야 할 투자파트너는 북한의 기관·기업소 단위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 당국이라는 점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내지 협상력제고를 위한 후견적 기능수행을 필요로 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교류협력기금법의 규정만을 보완하여 대북투자승인절차를 개선하고 향후 세제지원과 투자손실의 보전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기구상의 뒷받침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정부는 북한이 당면한 투자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 교역 및 투자에 부수되는 거래가 WTO체제 출범시 내국간거래로 간주되어 무관세가 적용되도록 하고(이는 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1조제10항에서 규정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미국이나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 즉 미국의 적성국조항 내지 인권조항, EC의 파산국조항의 적용을 뚫고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제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 기업체 상호간에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정보의 수집·분석과 공동활용을 기하고 투

자업종 및 투자기업체의 선정, 투자규모 및 방법의 결정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 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북한측과의 교섭 및 투자계약체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추출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투자유형별 표준계약서를 공동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북한은 합영계약서표준양식을 만들어 활용한 바 있다) 특히 초기단계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대북교섭 및 계약체결 결과가 뒤따르는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준거 내지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경험을 대북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력 기타 에너지사정, 외환사정, 북한 내수시장의 구매력, 노동력의 질과 공급규모는 중국 보다 훨씬 뒤떨어지며 미국 등의 해외시장에의 수출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그 밖에 주체사상에 입각한 경제논리의 무시 등 관료·경영담당자들의 의식구조와 낙후성, 법제의 모호함, 실효성 결여 등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도한 임금지급 기타 불리한 투자조건의 감수 등 편법을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당해 기업에게도 손실이 돌아올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진출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여건의 조성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남북경협 내지 대북투자정책은 목전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통일 여건의 조성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개개의 기업들의 북한진출에 대하여 정부의 세심한 계획에 의거한 조정과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제협력을 통하여 북한체제의 개방과 이질감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막연 한 정치적 구호로서의 통일주장에서 벗어나 통일이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부 록 :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36
- 외국인투자법 261
- 합영법 264
- 합영법시행세칙 269
-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세칙 280
- 합작법 307
- 외국인기업법 309
-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313
-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324
-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 334
-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346
- 외화관리법 352
- 외국투자은행법 355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359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364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
 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 366
- 자유무역항규정 370
- 토지임대법 3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2. 4.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 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 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 to be honored 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발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郡)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재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 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넓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

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 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 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 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당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우에서 전민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 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6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턱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78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7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제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3조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률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제88조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행사한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돋는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 한 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 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상
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04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
표한다.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
을 공포한다.
4. 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를 공포한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0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10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돋는다.

제3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

고군사지도기관이다.

제1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1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기관 사업을 지도한다.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령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나오거나 없앤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13. 행정구역을 새로 나오거나 고친다.

제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돋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5절 정무원

제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나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6.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29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회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 총리는 정무원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앞에 선서를 한다.

제132조 정무원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립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립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9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제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제14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8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50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상급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제152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3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4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5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현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6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57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59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62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63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4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65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제166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중앙검찰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1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

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2이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구 헌법의 주요조문대비표

신 헌 법 (1992.4.9. 개정 / 총 7장 171조)	구 헌 법 (1972.12.27. 개정 / 총 11장 149조)
제3조(공화국의 활동지침) -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제4조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
제4조(주권의 소재) -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근로인민	제7조 -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
제9조(투쟁목표) -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	제5조 -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
제11조(로동당의 영도) - 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신설)
제14조(대중운동)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벌여 사회주의 건설 촉진	제13조 - 천리마운동을 심화,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 촉진
(대외관계규정)	
제16조 - 공화국은 영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	(신설)
제17조 - 자주, 평화, 친선은 공화국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활동원칙	(신설)
제37조 -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협작을 장려	(신설)

신 헌 법 (1992.4.9. 개정 / 총 7장 171조)	구 헌 법 (1972.12.27. 개정 / 총 11장 149조)
<p>(법률에 의한 통제)</p> <p>제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의 법은 국가관리의 기본무기 -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 <p>제120조 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에 국가기관들 의 법준수집행을 지도,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처리를 추가 <p>제136조 제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에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추가 <p>제153조, 제16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판소 소장,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를 각 5년으로 법정 <p>제160조, 제16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판소 및 중앙검찰소는 중앙인민 위원회의 지도에 따라야 함을 강조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기술혁명 강조)</p> <p>제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 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해 투쟁 <p>제2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 -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 	<p>(신설)</p> <p>(신설)</p>

신 헌 법 (1992.4.9. 개정 / 총 7장 171조)	구 헌 법 (1972.12.27. 개정 / 총 11장 149조)
<p>제2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p>제5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철저히 수행하고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며 나라의 과학 기술발전을 촉진 	(신설)
<p>(인민복지향상 도모)</p> <p>제2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p>제4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p>제4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 	(신설)
<p>제5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p>제5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劳动조건을 마련한다. 	(신설)

신 헌 법 (1992.4.9. 개정 / 총 7장 171조)	구 헌 법 (1972.12.27. 개정 / 총 11장 149조)
<p>(국방관련규정 강화)</p> <p>제5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p>제5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력의 사명은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p>제6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 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p>제6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군대 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종 규률을 강화한다.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68조(신앙의 자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앙의 자유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 - 단, 외세를 끌여 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려는데 이용할 수 없다. 	(신설)
<p>(주요기관의 임기 5년으로 통일)</p> <p>제90조(최고인민회의)</p> <p>제100조(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p> <p>제106조(주석)</p> <p>제112조(국방위원회)</p> <p>제119조(중앙인민위원회)</p> <p>제125조(정무원)</p> <p>제153조(중앙재판소 소장)</p> <p>제163조(중앙검찰소 소장)</p>	<p>제75조(4년)</p> <p>(신설)</p> <p>제90조(4년)</p> <p>(신설)</p> <p>제120조(4년)</p> <p>(신설)</p> <p>(신설)</p> <p>(신설)</p>

신 헌 법 (1992.4.9. 개정 / 총 7장 171조)	구 헌 법 (1972.12.27. 개정 / 총 11장 149조)
제88조(립법권) -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제87조 - 최고인민회의
제91조(최고인민회의의 권한) - 제 5호 : 주석 소환권 - 제 7호 : 국방위원회 위원장 선거 · 소환권 - 제10호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서기장 선거 · 소환권 - 제11호 :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위원 회 위원장 등 선거 · 소환권 - 제15호 : 조약의 비준 · 폐기	(신설)
제93조(의사정족수) -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2/3이상 참석 으로 성립	제78조 - 대의원 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
제107조(주석의 권한) : (삭제)	제93조 - 주석은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 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국가 의 일체적 무력을 지휘 · 통솔
(용어의 순화) 제12조 : 인민민주주의 독재 제54조 :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정책	제10조 : 프롤레타리아 독재 제46조 :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정책
(국방위원회 관련규정 별도신설) 제112조 -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	(신설)
제113조 -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 통솔	
제114조(권한) -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신 헌 법 (1992.4.9. 개정 / 총 7장 171조)	구 헌 법 (1972.12.27. 개정 / 총 11장 1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군사간부 임명 · 해임 - 군사칭호제정, 수여 -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신설)
<p>제120조(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 (삭제)</p> <p>(삭제)</p>	<p>제10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호 : 국방 및 국가정치 보위사업 지도 - 제9호 : 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 해임 및 군사칭호 부여
제168조(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장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삽입	(신설)
제170조(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신설)

외국인투자법

〈1992.10.5.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조 이 법은 외국투자가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외국투자가란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는 공화국 영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경제 무역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5조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제6조 외국투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8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

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 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10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 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민족경제 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 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4조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 안에 해당 기관의 승인 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로력은 로동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소득세, 기업운영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 안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 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의 합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합영법

〈1994.1.20.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 영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서의 합영기업창설은 이 법에 준하지 않는다.

제3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 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제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 만 책임진다.

제5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6조 합영기업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7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제8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9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자는 관계기관들과 합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합영기업창설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영기업창설일로 된다.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뜻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이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것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상속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울 수 있다.

제14조 합영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5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 내지 70% 이상이 돼야 한다. 등록자본을 늘리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16조 합영기업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17조 이사회는 합영기업의 기본규약을 수정 보충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

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18조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영기업은 기본규약,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투자 규모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조업일로 된다.

제23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 영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 안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계획을 해당기관에 내야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승인만을 받는다.

제25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나라 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노력을 관리, 이용해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9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0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세울 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4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간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이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리는 데만 쓸 수 있다.

제36조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 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37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이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이윤을 분배해야 한다. 이윤분배는 결산이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 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제39조 합영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이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은 연속하여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40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 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42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4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제44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계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 안에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해야 한다.

제45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합영기업존속기간 연장신청서를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내야 한다. 존속기간의 계산은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46조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옷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 처리해야 한다.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합영법시행세칙

〈1992.10.16. 정무원 결정〉

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이 세칙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서기가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을 잘할 데 대하여 주신 방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우리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소, 협동단체는 일정한 재산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는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체, 개인 및 경제 조직들과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할 수 있다.
-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금속공업, 체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업, 건설, 운수, 관광업을 비롯 인민경제의 여러분야에서 할 수 있다.
- 제4조 합영회사는 현대적 설비와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원료, 자재, 동력을 최소한 적게 들이면서 세계적 수준의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늘리며 최단기간 안에 투자의 효과성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 제6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과 합영법시행세칙,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계약, 회사규약, 리사회 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조직된 합영회사는 회사재산의 소유권과 기업 경영권을 가지는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 제8조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한 대상에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경영활동결과에서 얻은 순소득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기업형태이다. 합영회사는 경영활동과정에서 생기는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자기의 출자몫 안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이다.
- 제9조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법과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국가에서 승인받은 업종 밖의 다른 업무활동(무역거래 포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1조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세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소, 협동단체와 합영할 수 있다.

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과 등록

제12조 합영회사를 조직하려는 당사자들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계약을 맺기 전에 자기 기관의 성격과 임무, 직능에 맞는 적합한 업종을 선정한 다음 필요한 문건을 해당기관(예비기술과제는 국가계획위원회, 발명권기술문현 등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자이운경제타산서를 비롯 경제관계문현은 재정부, 건물의 시행설계는 국가건설위원회, 경제타산자료·계약서·합영회사규약초안은 합영공업총국)에 제기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기관은 문현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으로 합의여부 또는 의견을 당사자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는 합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2. 합영당사자의 이름과 법적 주소
3. 합영회사의 존속기간, 등록자금, 출자총액, 출자비율, 출자기간, 출자금 양도조건
4. 리사회의 구성과 합영회사의 관리기구
5.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6. 합영당사자들의 임무
7. 재정관리, 로력관리, 자재보장질서 및 방법
8. 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법
9. 결산과 리윤분배 방법
10. 합영회사의 해산 및 청산조건
11. 법적적용과 분쟁처리방법
12. 계약효력발생조건

제14조 합영회사는 규약을 가져야 한다. 회사규약에는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합영당사자들의 이름과 법적 주소, 합영회사의 등록자금과 출자총액, 출자비율, 출자금의 양

도조건, 결산과 리윤분배 방법, 리사회 구성, 리사회 구성원들의 임무, 리사회규칙, 회사관리 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절차, 재정외화관리절차와 방법, 합영회사의 해산과 청산 절차, 합영회사규약의 수정보충절차 등 합영회사의 사업내용과 활동원칙 및 질서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제15조 합영회사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계약을 맺는 차제로 합영공업총국(이 아래부터 합영주관기관이라 한다)에 합영회사조직승인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조선문과 외국문으로 된 계약서와 경제타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6조 합영주관기관은 합영회사조직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한달 안으로 심의하고 국가승인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7조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합영계약과 합영회사규약은 합영회사조직이 승인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합영당사자들이 합영계약서와 회사규약 내용을 고치려고 할 때에는 합영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영당사자들은 합영회사조직이 비준된 날로부터 60일 안으로 자기 출자몫의 5%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19조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회사조직이 비준되면 합영회사조직승인통지문건을 첨부한 합영회사등록신청서를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회사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제20조 회사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안으로 회사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합영회사는 등록된 날부터 법인으로 한다.

제21조 합영회사의 당사자들은 회사조직을 비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으로 다음과 같이 출자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1. 출자총액이 300만달러까지는 70%
2. 출자총액이 301만달러~1,000만달러까지는 60%
3. 출자총액이 1,001만달러~2,000만달러까지는 50%
4. 출자총액이 2,000만달러이상은 40%

제22조 합영회사는 이 세칙 제21조에 규정된 대로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은행기관의 증빙문건과 생산시설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해당기관의 확인문건이 첨부된 영업허가신청서를 합영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제23조 합영주관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합영회사에 영업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4조 합영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조건에서 경영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25조 합영회사가 회사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에는 리사회에

서 토의 결정하고 합영주관기관에 변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합영주관기관은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정무원의 비준을 받아 해당 합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합영회사는 7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제기하여 회사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변경된 내용 대로 고쳐야 한다.

제3장 출자

제26조 합영당사자들의 출자비율은 량측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7조 합영당사자들은 화폐,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토지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출자목으로 넣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28조 합영당사자들은 출자하는 화폐를 호상 합의하여 정한다.

제29조 우리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조선원을 외국화폐로 환산하거나 상대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화폐를 조선원으로 환산할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 공포하는 환율에 따라 한다.

제30조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으로 출자할 때 그 값은 국가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영주관기관이 평가한 데 따라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31조 상대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설비, 기술문헌, 발명권, 기술비결, 물자 등은 합영회사의 창설과 운영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여야 한다.

제32조 합영회사는 당사자들이 출자한 건물,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을 합영주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 합영회사의 기본건설은 국가건설위원회와 합의한 시공설계에 기초하여 우리측 당사자기관이 국가계획에 맞물려 진행한다.

제34조 상대측 당사자가 기술특허로 출자할 때에는 특허등록문헌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허권으로 출자할 때에는 특허권 이전등록이 끝났을 때에 출자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5조 합영당사자들은 계약서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몫을 전부 출자하여야 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로부터 초래된 손해를 다른 당사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36조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이 자기 출자몫을 다 출자하면 리사회에서 그것을 확정

하고 합영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다.

제37조 합영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을 줄일 수 없다.

제38조 합영회사는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합영회사 상대편 당사자는 출자몫을 양도받는 데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4장 리사회와 관리성원

제39조 합영회사는 최고결의기관으로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3명이상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합영당사자들이 선출하는 리사수와 리사장, 부리사장은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계약과 회사규약에서 정한다.

제40조 리사회 성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필요한 경우 합영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리사회 성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성원들의 임기는 선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1조 리사회는 해마다 한번 이상 리사장이 소집하며 리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부리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리사회 성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리사회에 참가하지 못할 때에는 그가 위임한 다른 사람이 결의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 날짜와 장소, 토의안건은 미리 리사회 성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2조 합영회사는 리사회의 소집과 관련한 비용을 재정예산에 예견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리사회에서는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합영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합영회사존속기간의 연장,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등 합영회사 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44조 리사회에서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리사장, 부리사장, 리사, 합영회사 사장, 부사장, 재정검열원, 청산인의 임명 및 해임, 결산과 분배문제 등은 리사회에 참가한 리사 성원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그 밖의 문제들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리사회에서 토의하는 문제들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 합영회사에는 사장, 부사장을 비롯한 필요한 수의 관리성원을 둔다.

제46조 합영회사의 사장은 계약과 회사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리사업 전반을 조직지도하며 자기 사업에 대해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47조 합영회사의 리사장과 사장은 각각 다른 당사자측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리사회 성원들은 필요한 경우 합영회사의 관리성원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합영회사의 사장은 리社会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당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일꾼들과 반드시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제48조 합영회사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반제품, 설비, 경영용 물자(이 아래부터는 물자라 한다)를 우리나라에서 사쓰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쓴다.

제49조 합영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쓰는 물자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보장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물자,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사쓰는 것이 불리하거나 불가능한 물자는 우리나라의 무역기관들과 다른 합영, 합작회사 및 그 밖에 국가적으로 승인된 자재공급기관 또는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사쓸 수 있다.

제50조 합영회사가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물자를 사쓰려고 할 때에는 그 소요량을 전해 3·4분기까지 합영상사에 제기하여 국가계획(합영수출계획)에 맞물린 다음 합영자재상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때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합영수출계획에 예견된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합영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사쓸수 없는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직접 사쓰거나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52조 합영회사는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 앞선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울 수 있다.

제53조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직접하거나 우리나라의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때에 수출허가는 받지 않고 반출승인만 받는다.

제55조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판매하려 할 때에는 무역기관, 다른 합영, 합작회사를 대상으로 실현해야 하며 국가승인을 받아 자재공급기관, 상업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 기업소에도 넘겨줄 수 있다.

제56조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질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는 합영주관기관의 승인 밑에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 이때 판매가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외화가격에 기초하여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57조 합영회사는 이 세칙 제56조에 의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받은 상품대금을 국가의 승인 밑에 우리나라에서 사쓰는 물자값과 종업원들의 로임, 각종 사용료, 국가납부금을 지출하는 데 쓸 수 있다.

제58조 합영회사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넘기려고 할 때는 합영주관기관의 승인(대당 값이 5만달러이상되는 설비와 운전기재는 국가승인)을 받은 다음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9조 합영회사가 상대측 당사자의 투자몫으로 들어오는 물자와 회사경영용으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수입허가는 받지 않고 반입승인만 받으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제60조 합영회사가 국가승인을 받지 않고 생산 및 경영과 관련없는 물자를 수입하거나 자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이 그 물자를 억류 또는 몰수하거나 관세나 벌금을 물리는 등 해당한 제재를 준다.

제61조 합영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는 합영회사가 스스로 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품질감독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합영회사가 국가품질감독기관에 위탁해 제품검사를 행할 때는 검사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62조 합영회사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물, 전기, 난방, 통신수단들의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63조 합영회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에 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6장 로력 관리

제64조 합영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로력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로동행정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로동행정기관은 합영회사 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5조 합영회사 사장은 회사의 로력을 받아들이거나 내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로력관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상대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미리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 합영회사는 국가의 승인 밑에 다른 나라 사람을 종업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67조 해당 기관들은 합영사업과 관련없는 일에 합영회사의 종업원들을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68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의 로동시간, 휴식, 로동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동법규에 따라 보장된다.

제69조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필요한 기능공들을 양성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70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법규법과 규정에 따르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제71조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로동보수의 7%, 종업원들은 받는 로동보수의 1%에 해당한 사회보험료를 바쳐야 한다.

제72조 해당 제기관은 회사활동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합영회사 성원들의 재외출장수속을 제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73조 합영회사는 회사 안에 조직된 사회단체들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7장 재정 관리

제74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또는 국가가 정한 다른 대외결제은행에 외화 돈자리와 조선원 돈자리를 둔다.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나라의 은행에 외화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합영회사의 모든 외화수입과 수출은 은행에 있는 돈자리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75조 합영회사는 은행의 예금 돈자리에 있는 외화잔고에 대하여 리자를 받는다.

제76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서 모자라는 외화를 우리나라 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금은 합영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7조 합영회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무역기관과 다른 합영, 합작회사를 통하여 사고 파는 상품대금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는 한 외화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78조 합영회사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외화로도 할 수 있다.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선원의 환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화폐환산비율에 따라 한다.

제79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리의배당금을 비롯하여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문건을 은행에 내야 한다.

제80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회사에서 받은 로임액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다른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

제81조 합영회사에 대한 재정검열은 리사회가 임명한 재정검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합영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성원들도 재정검열을 할 수 있다.

제8장 결산과 분배

제82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정형을 해마다 결산하여야 한다. 합영회사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합영을 시작한 첫해는 회사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합영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해는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를 결산 기간으로 한다.

제83조 합영회사의 결산은 년간 총 수입금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순소득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4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서를 재정검열원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 안으로 합영주관기관과 재정부에 내야 한다.

제85조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86조 합영회사의 리익금 분배는 해마다 회사가 얻은 순소득에서 소득세와 납부금, 각종 기금을 공제한 다음 남은 나머지를 합영당사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분배는 리자소득에서 소득세와 납부금, 각종 기금을 공제한 다음 남은 나머지를 합영당사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분배는 리사회에서 결산 문건을 비준한 다음에 할 수 있다.

제87조 합영회사는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회사등록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소득 가운데 5%씩 적립한다. 예비기금은 리사회결정에 따라 합영회사의 결손금을 보충하는 데 쓸 수 있다.

제88조 합영회사는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등을 가진다. 이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하며 기금의 조성 비율은 합영회사 순소득의 3%미만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 합영회사는 전년도의 손실을 매꾸기 전에 순소득을 분배하지 말아야 하며 전년도에 분배하지 못한 순소득은 당해 연도 순소득에 포함시켜 분배하여야 한다. 합영당사자들은 분배받은 돈을 재투자할 수 있다.

제9장 합영회사의 존속기간과 해산

제90조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합영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다. 우리나라 영역 안에 조직하는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까지로 하며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상 등을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합영회사를 등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91조 합영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영회사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는 기간만기 6개월 전에 리사회에서 결정한 다음 합영회사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합영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합영주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합영회사에 회답을 주어야 한다. 합영회사는 존속기간연장이 승인되면 10일 안으로 회사등록기관에 제기하여 기간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2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리사회에서 결정하고 합영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1. 합영회사가 5년이상 연속 결손을 냈을 때
2.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영활동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합영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93조 합영주관기관은 합영회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과 규정을 란폭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기업을 중지시키거나 국가의 승인을 받아 해산시킬 수 있다.

제94조 합영회사가 해산될 때 리사회는 청산위원회를 조직하고 청산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사장은 자기 사업을 청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5조 청산인은 리사회 성원들 가운데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기관에서 일하는 성원들을 선발할 수 있다. 합영주관기관은 청산위원회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청산위원회의 성원들의 청산사업에 동원되는 기간 그들의 로동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합영회사자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제96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면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리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영회사는 리사회에서 청산문건을 비준한 날부터 7일 안으로 회사해산에 대한 문건을 합영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합영주관기관은 해당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

으로 합영당사자들의 재정부를 비롯한 해당기관들에 합영회사의 해산을 증명하는 문건들을 보내야 한다.

제97조 합영회사는 해산이 선포된 날부터 5일 안으로 회사등록기관에 제기하여 등록문건에서 제적하여야 하며 합영당사자기관은 합영회사가 해산된 날부터 3년 동안 합영회사의 등록과 청산문건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10장 분쟁해결

제98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생기는 의견 상이와 분쟁문제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

제99조 합영당사자들은 제기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심의 해결받으려 할 때에는 소송문건을 해당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내야 한다.

제100조 재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한다. 합영당사자들은 민사소송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101조 중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재사건심의절차에 따라 한다. 중재 원고와 피고는 중재원 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102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103조 합영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간동안 분쟁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들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04조 상대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합영회사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해줄 데 대한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세칙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서 채택된 「외국인기업법」 제19조는 외국인기업의 경영계산에 대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세칙은 원본을 입수하지 못하여 일본어판을 번역한 것이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본 규정세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가, 경제합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시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외국과의 경제기술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산체계를 올바로 세우며, 재정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규정세칙은 공화국의 영역내에서 자국의 회사와 외국회사(이하 합영회사라 칭함)간에 평등호혜의 원칙으로 합영하는 회사에 적용한다.

제3조 합영회사의 부기계산은 본 규정세칙에 의거하여 합영회사재정부기부서가 담당한다.

제4조 부기계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해야 한다.

1. 부기계산은 자국법과 합영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 합영회사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2. 부기계산은 계산의 통일성과 객관성, 과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부기계산에서 금액의 단위는 전(1/100원)으로 하고, 합영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외국통화로도 할 수 있다.
-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선화폐와의 환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환산비율에 의거하여 행한다.

제2장 재정부기계산 조직과 방법

제5조 부기계산은 부기일기장식 부기계산형태로 해야 한다.

- 簿記日記帳式 부기계산에서 종합계산은 分岐(이하:분개)日記帳과 종합계정과목장에서 하고, 분석계산은 분석계산장에서 해야 한다.
 - 분개일기장에서의 계산은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 분개일기장식 부기계산에 의한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경영거래가 발생하면 초기(始初)서류의 분개란에 직접 분개한다.
초기서류에 분개란이 없을 때에는, 그 서류를 분기표(분개표)의 뒷면에 첨부하여 분개해야 한다.
 - 분개일기장에는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를 건수별로 채택하여 기재한다.
1장의 증표에 여러 건의 거래내용이 기재되었을 때에는 종합하여 기재해야 한다.
 - 분개일기장에 기입한 후에는 최초의 증표에 의해 분석계산장에 제때에 정리하여, 經常計算을 보장해야 한다.
 - 분개일기장에 기재한 계정과목별 금액은 매일 또는 5일마다 종합하여 종합계정과목장에 기재해야 한다.
 - 월말에는 분석계산장에 계산한 자료에 따라 계정과목별로 유동고일람표, 또는 계정과목잔고명세표를 작성하여, 분석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고, 종합계정과목장 당해과목의 월말에 있어서의 차변, 대변의 유동고와 잔고가 합치해야 한다.
 - 매 4분기말에는 종합계정과목장에서 조합확인된 계정과목별 잔고에 따라 재정상태표를 작성하여, 분석계산장에서 계산된 자료에 근거하여 부표 등을 작성한다.
- ※ 분개일기장식 부기계산의 일반적 절차의 도해 (<표 2>를 참조).

제6조 합영회사에서는 경상계산체계를 확립하고, 재산과 자금원의 변동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규율을 엄정히 지키며, 경영활동의 모든 결과가 부기계산에서 종합적으로 계산되고 분석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종합계산은 분개일기장과 종합계정과목장에 의하여 행한다.

- 분개일기장의 기입방법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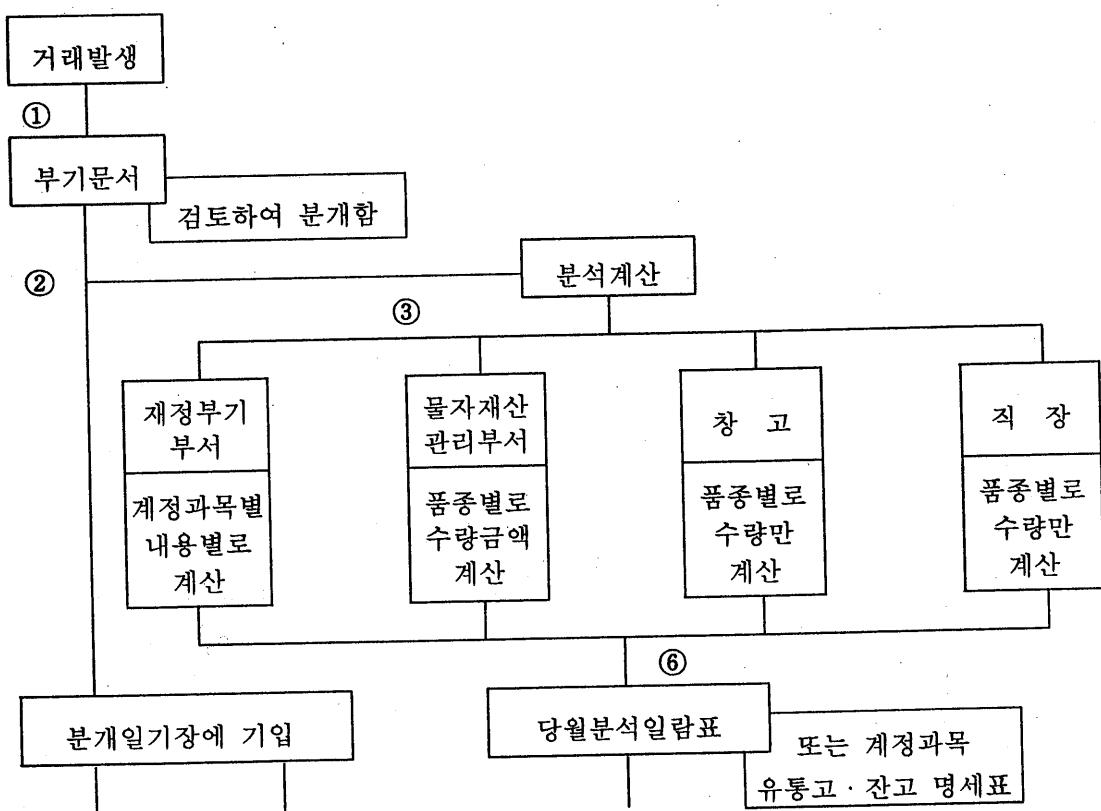
분 개 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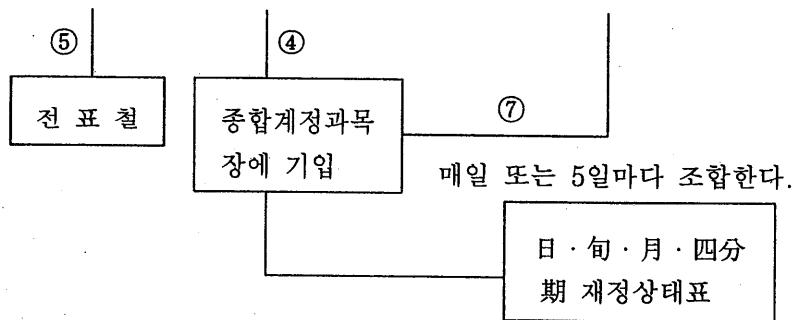
등 록 번 호	날 짜		차 변				대 변			
			96	97					97	96

- 분개 ① 등록번호는 거래의 발생순으로 매월 1번부터 빠짐없이 기입한다.
- ② 날짜는 거래가 발생한 날을 기재하고, 거래순서대로 전별로 기입한다.
단, 1장의 서류에서 여러건의 거래가 발생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1장의 전표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를 종합하여 기입할 수 있다.
- ③ 거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기입한다.
- ④ 계정과목번호의 차변의 기입은 분개일기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변의 기입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기입하고, 「현금」계정, 「은행예금」계정은 분개일기장의 차변의 첫번째, 두번째 난과 대변의 첫번째, 두번째 난에 고정시킨다.
- ⑤ 분개일기장에 기입한 거래금액은 매월 계정과목별로 합계하고, 차변계정과목의 합계와 대변계정과목의 합계액이 일치해야 한다.
- ⑥ 분개일기장에 기입한 계정과목별유동고는 매일 또는 5일마다 계산하고, 종합계정과목장에 기입하여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표 2〉

분 개 일 기 장 식 부 기 계 산





〈표 3〉

綜合計定科目帳

			~ 일까지				...	유통고 합계	잔 고	
			유통고		잔 고				차 변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 ① 종합계정과목장은 재정상태표의 항목순위에 따라 자산과 자금원천으로 분류하여 계정과목을 기입한다.
 - ② 종합계정과목장의 期首잔고, 유통고, 기말잔고의 차변, 대변의 합계액은 일치 해야한다.
 - ③ 자산과목의 기말잔고합계액과 자금원천과목의 기말합계잔고는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 (자산과목기말잔고합계 = 기수잔고합계 + 차변유통고합계 - 대변유통고합계) =
 (자금원천과목기말잔고합계 = 기수잔고합계 + 대변유통고합계 - 차변유통고합계)

〈표 4〉

공업합영회사에서 적용되는 계정과정

NO	계정과목	번호	과목번호		과목성질	
			甲측	乙측	자산	원천
1	고정자산 1. 건물 2. 구축물	01	~10 ~11 ~12	~20 ~21 ~22	△	

NO	계정과목	번호	과목번호		과목성질	
			甲측	乙측	자산	원천
	3. 전도장치 4. 설비 5. 공구·기구 6. 용재 7. 비품 8. 기술문현 및 도서		~13 ~14 ~15 ~16 ~17 ~18	~23 ~24 ~25 ~26 ~27 ~28		
2	조립용설비 및 비품	20			△	
3	원료 및 기본자재	21			△	
4	보조자재	22			△	
5	연료	24			△	
6	용기 및 포장재	25			△	
7	소공기구·비품	26			△	
8	예비부속품	27			△	
9	노동보호물자	29			△	
10	경영용물자	30			△	
11	미입하자재	34			△	
12	가공용자재	35			△	
13	물자구입경비	37			△	
14	기본생산비	52			△	
15	반제품	53			△	
16	건설·조립공사비	54			△	
17	직장비	67			△	
18	회사관리비	68			△	

NO	계정과목	번호	과목번호		과목성질	
			甲측	乙측	자산	원천
19	차기이월사업비	71			△	
20	완성품	76			△	
21	발송제품	77			△	
22	가격·원가차액	80				△
23	판매비	86			△	
24	현금	96			△	
	1) 내국통화(원) 2) 외화 및 태환권 3) 외국통화		~1 ~2 ~3			
25	은행예금	97			△	
	1) 内資(원) 구좌 2) 외국통화·태환권 구좌 3) 엔 구좌 4) 달러 구좌 5) 기타		~1 ~2 ~3 ~4 ~5			
26	기타 화폐자산	105			△	
27	지불임금	106				△
28	여비先지불금	107			△	
29	물자거래취득금	108			△	
	1) 국내 2) 국외		~1 ~2			
30	기타 취득금	124			△	
	1) 국내 2) 국외		~1 ~2			

NO	계정과목	번호	과목번호		과목성질	
			甲측	乙측	자산	원천
31	물자거래지불금	125				△
	1) 국내		~1			
	2) 국외		~2			
32	기타 지불금	136				△
33	국가예산 결제	137				△
	1) 소득세		~1			
	2) 당사 이익금		~2			
	3) 기타		~3			
34	사회보험기관결제	138				△
35	내부결제	146			△	△
36	이윤분배	148			△	
	1) 소득세		~1			
	2) 예비기금		~2			
	3) 각종기금		~3			
	4) 갑측 이익금		~4			
	5) 을측 이익금		~5			
37	등록자금	152				△
	1) 갑측		~1			
	2) 을측		~2			
38	고정자산감가상각	153				△
39	합영회사기금	154				△
	1) 예비기금		~1			
	2) 각종기금		~2			
	① 생산확대 및 기술 발전기금					
	② 상금기금		~3			
	③ 문화후생기금		~4			

NO	계정과목	번호	과목번호		과목성질	
			甲측	乙측	자산	원천
40	은행대부금	171				△
41	손익	176				△
	1) 판매이익 2) 기타이익			~1 ~2		
42	재산보험보상금수입	177				△
43	이자손익	178			△	△

2. 분석계산은 장부 또는 계산표에 따라서 한다.

- 1) 고정자산과 상품(제품), 물자 분석계산은 형태별, 소유자별로 하고, 종류별, 품종별, 규격별, 개별적 대상별, 보관장소별, 물자관리별로 수량, 금액을 빠르고 분석 계산을 해야 한다.
- 2) 입금과 출금의 분석계산은 거래기관별, 기업소별 또는 개인별로 정확히 분류하여 분석계산해야 한다.
- 3) 자금원천을 계산하는 과목의 분석계산은 당해자금의 지정된 용도별로 분석계산 해야 한다.
- 4) 원가계산과목의 분석계산은 원가항목별로 분석계산해야 한다.

제3장 재정부기계산 문서 및 장부

제7조 부기계산은 경영거래를 반영한 법적 문서에 근거하여 행해야 한다.

1. 부기계산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정확해야 하고, 문서에는 회사의 책임자, 재정부기부서의 책임자 도장이 있어야 한다.
2. 지시적 성격을 가진 문서는 거래발생전에 작성해야 하고, 거래가 집행된 결과를 위한 문서는 거래발생 후 바로 작성해야 한다.
3. 회사관리부서, 직장, 작업반의 책임자는 부기계산초기계산자료의 과학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시간내에 부기계산초기문

- 서를 재정부기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4. 문서는 지워지지 않는 먹과 잉크로 기재해야 하고, 금액은 숫자로 기록해야 한다.
 5. 재정부기부서는 당해 부서로부터 부기계산의 초기문서를 수취했을 때, 제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거래내용이 제정법 규범의 요구에 일치하고 수량, 단가, 금액 등의 계산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당해 단위의 책임자의 비준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분개를 해야 한다.
 6. 분개는 초기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分岐(분개)란에 분개하고, 초기문서에 분개란이 없을 때에는 별도 분개표에 분개를 해야 한다.
 7. 부기문서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정해야 한다.
 - 1) 분개일기장에 기입하기 전, 당해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정을 요하는 곳에 나중에라도 알 수 있도록 빨간잉크로 2줄을 그은 후, 정정해야 할 사항을 기입하고 정정한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2) 분개일기장에 기입한 후에 알게된 오류에 대해서는 장부상에 오류가 생긴 곳을 1)과 같은 방법으로 정정하고, 문서에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별도 분개표를 작성하여, 추가 또는 삭제해서 분개해야 한다.
 - 3) 상부기관에 재정부기결산서를 제출한 후에 알게 된 오류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처리방법의 지시를 받아 정정해야 한다.
 - 4) 현금과 은행거래서류는 정정할 수 없다.
 8. 부기계산문서는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입한 후, 거래의 발생순으로 번호를 매겨, 1개 월씩 가지런히 정리하여 보기 쉽도록 철하고, 철한 문서철의 표지에는 연도 및 월, 문서철의 번호, 문서명칭, 문서철의 처음과 맨끝 번호, 회사명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9. 부기계산에 사용되는 장부는 재정부가 일괄적으로 제정·합의한 양식에 의한 장부에만 기입해야 한다.
 - 1) 부기장부에 기입한 내용은 법적 근거없이 함부로 정정할 수 없으며, 회사책임자와 재정부기부서책임자는 규정된 장부의 보존연한까지 책임지고 정확하게 보관해야 한다.
 - 2) 모든 부기장부에는 기입을 시작하기 전에 1장마다 머리번호를 붙여야 하고, 마지막 머리에는 「이 장부는 전부 00머리이다」라고 기재하고, 재정부기부서책임자가 도장을 찍어야 하며, 최초의 머리에는 목차와 머리수를 기재해야 한다.
 - 3) 부기장부 머리의 가로면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① 연도

- ② 장부의 명칭과 계정과목번호
 - ③ 회사명
- 4) 장부에 기입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켜야 한다.
- ① 장부에 기입할 때 문서의 날짜, 번호, 간단한 거래내용, 입금, 출금, 잔고와 월계, 누계를 계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 ② 장부의 각머리의 마지막행에는 거래금액의 합계잔고를 기입하고, 「다음 머리로」, 새로 기입하는 첫행에는 「앞머리로부터」라는 문자를 기재하고, 앞머리의 합계잔고를 기입하여야 한다.
 - ③ 장부는 매월말에 당월 발생한 거래의 유동고합계와 잔고를 낸 후, 마감해야 한다.
- 5) 장부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정해야 한다.
- ① 장부에 誤記한 내용이 월계를 내기 전에 발견되어 분개를 정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경우에는 誤記한 문자위에 빨간잉크로 2줄을 긋고 정정해야 한다.
 - ② 장부를 마감한 후 오류가 발견되어 분개를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誤記한 분개를 취소하는 분개를 한 후, 올바른 분개를 새로 해야 한다.
 - ③ 분개할 때에 바르게 계정과목을 적용했지만, 금액을 장부에 誤記했을 경우에는 고쳐서 바르게 분개하고, 장부에 바르게 기록해야 한다.
- 6) 서류와 장부의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연도말 재정부기결산서와 고정자산장부는 영구보존(1종)
 - ② 종합계정과목장, 분개일기장, 은행계정부, 현금출납부, 금전출납을 계산하는 장부는 10년보존(2종)
 - ③ 기타 각종 분석장부 및 계정과목의 근거가 되는 업무계산문서는 5년보존(3종)

제4장 재정부기계정과목계산방법

제8조 부기계정과목은 자산과목과 자금원천과목으로 나누고, 증감변동하는 거래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자산과목에서 증감변동의 거래계산은 증가는 차면에, 감소는 대면에 계산해서 넣어야 하고, 잔고는 항상 차면에 넣어야 한다
2. 자금원천과목의 증감변동의 거래계산은 증가는 대면에, 감소는 차면에 계산해 넣어야 하고, 잔고는 항상 대면에 넣어야 한다.

3. 자산과목과 자금원천과목의 증감변동거래의 월말잔고는 항상 일치해야 한다.

제9조 합영회사의 부기계정과목은 재정부가 인민경제부문별로 제정한 원칙에 따르고, 합영회사의 실정에 맞추어 규정된 계정과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정자산과 관련된 계산은 「고정자산」 계정과목, 「등록자금」 계정과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정과목으로 해야 한다.

1. 「고정자산」 계정과목

1) 고정자산을 등록하는 가격은 고정자산을 구입한 가격으로 하고, 건설조립에 의해 완성시킨 고정자산은 합영계약에 의한 가격으로 하고, 합영회사가 외화로 이룩한 고정자산은 당시의 외화교환률로 환산한 국내통화가격으로 해야 한다.

고정자산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다음 연도결산에 계산해 넣은 비용으로서 계산해야 한다.

2) 고정자산의 계산에서, 합영회사의 특성과 관련하여 甲측의 고정자산, 乙측의 고정자산, 각각의 세분계정과목을 가져야 한다.

3) 고정자산의 종합계산은 고정자산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하여야 한다.

① 고정자산을 합영회사의 투자로 등록할 때

차변: 「고정자산」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대변: 「등록자금」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4) 고정자산의 분석계산은 재정관리부서, 고정자산관리부서단위로, 고정자산의 소유형태별, 세분형태별로 처리된 재정관리부서의 계산자료와 조합할 수 있도록 분석계산하여야 한다.

2. 「등록자금」 계정과목

1) 등록자금에 관한 종합계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변동을 자금원천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고정자산으로 투자했을 때

차변: 「고정자산」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대변: 「등록자금」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② 유동자산을 만들기 위해 유동자금을 도입했을 때

차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대변: 「등록자금」 계정과목

2) 등록자금의 분석계산은 고정기금과 유통자산으로 분석계산해야 한다.

3. 「고정자산감가상각비」 계정과목

1)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은 당해고정자산의 당초 가치에 세분형태별 고정자산감가상각률을 곱하여 산출해야 한다.

年고정자산감가상각비

= 형태별고정자산의 당초가치 × 형태별고정자산의 연감가상각률

月고정자산감가상각비

= 형태별고정자산의 당초가치 × 형태별고정자산의 연감가상각률의 1/12

2) 고정자산감가상각비의 종합계산은 감가상각비의 변동을 자금원천계정과목계산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하여야 한다.

① 고정자산감가상각비를 적립했을 때

차변: 「당해생산비」 계정과목

대변: 「고정자산감가상각비」 계정과목

② 고정자산에 대보수자금을 지출했을 때

차변: 「고정자산감가상각비」 계정과목

대변: 「당해계정과목」

3) 합영회사의 고정자산감가상각비는 국가에 납입하지 않고 회사자체에서 처리, 이용해야 한다.

제11조 자산계산에 관련된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에서 해야 한다.

1. 「조립용 설비 및 비품」 계정과목

2. 「원료 및 기본자재」 계정과목

3. 「보조자재」 계정과목

4. 「연료」 계정과목

5. 「용기 및 포장재」 계정과목

6. 「小工具具비품」 계정과목

7. 「예비부속품」 계정과목

8. 「노동보호물자」 계정과목

9. 「경영용물자」 계정과목

10. 「미입하자재」 계정과목

11. 「가공용자재」 계정과목

12. 「물자구입경비」 계정과목

1) 「조립용 설비 및 비품」 계정과목

(1) 조립용 설비 및 비품에 대한 종합계산은 조립용 설비 및 비품의 변동을 자산 계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대금을 지불했지만, 조립용 설비 및 비품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차변: 「미도착자재」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② 미도착 조립용 설비 및 비품이 도착했을 경우

차변: 「조립용 설비 및 비품」 계정과목

대변: 「미도착자재」 계정과목

③ 조립용 설비 및 비품이 대금결제전에 입하되었을 경우

차변: 「조립용 설비 및 비품」 계정과목

대변: 「물자거래지불금」 계정과목

④ 조립용 설비 및 비품을 출하했을 경우

차변: 「건설 및 조립공사비」 계정과목

대변: 「조립용 설비 및 비품」 계정과목

(2) 조립용 설비 및 비품의 분석계산은 자재공급부서와 창고에서 품종별, 규격별로 해야 한다.

2) 「원료 및 기본자재」 계정과목

(1) 원료 및 기본자재의 종합계산은 원료 및 기본자재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하여야 한다.

① 원료 및 기본자재가 창고에 입하되었지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차변: 「원료 및 기본자재」 계정과목

대변: 「물자거래지불금」 계정과목

② 미지불된 원료 및 기본자재의 대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차변: 「물자거래지불금」 계정과목

「물자구입경비」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③ 원료 및 기본자재 대금을 지불했지만, 자재가 미입하되었을 경우

차변: 「미입하자재」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④ 미입하된 원료 및 기본자재가 입하되었을 경우

차변: 「원료 및 기본자재」 계정과목

「물자구입경비」 계정과목

대변: 「미입하자재」 계정과목

⑤ 생산물생산을 위해 원료 및 기본자재가 출하되었을 경우

차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대변: 「원료 및 기본자재」 계정과목

(2) 원료 및 기본자재의 분석계산은 자재공급부서와 창고에서 품종별, 규격별로 행해져야 한다.

3) 「보조자재」, 「연료」, 「용기 및 포장재」, 「예비부속품」, 「경영용물자」 등의 각 계정과목의 종합계산과 분석계산은 원료 및 기본자재의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행해져야 한다.

4) 「소공기구비품」 계정과목, 「노동보호물자」 계정과목

(1) 소공기구비품은 일정기간 이용한 본체와 관련하여,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채로 소멸되었을 경우, 원가로 이월할 수 있고, 창고에서 현장으로 출고할 때는 가격의 50%만 원가로 이월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원가로 이월할 수 있다. 이것들을 합산했을 때 창고에 있는 소공기구비품과 현장에 있는 소공기구비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세분계정과목이 있어야 한다.

(2) 소공기구비품에 대한 종합계산은 소공기구비품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소공기구비품을 현장에 출고했을 경우

차변: 「현장사용중의 소공기구비품」 세분계정과목

대변: 「창고안의 소공기구비품」 세분계정과목

② 소공기구비품을 장기간 사용하여 소멸되었을 경우

차변: 「직장비」 계정과목

「회사관리비」 계정과목

대변: 「현장사용중의 소공기구비품」 세분계정과목

③ 소공기구비품을 출고할 때, 50%의 가격을 원가에 計上할 경우

차변: 「직장비」 또는 「회사관리비」 계정과목 (50%의 가격)

「현장사용중의 소공기구비품」 세분계정과목 (50%의 가격)

대변: 「창고안의 소공기구비품」 세분계정과목

④ 나머지 소공기구비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소멸했을 경우

차변: 「직장비」 또는 「회사관리비」 계정과목 (50%의 가격)

대변: 「현장사용중의 소공기구비품」 세분계정과목

(3) 소공기구비품의 분석계산은 자재공급부서, 창고, 직장, 현장 등에서 품종별로 해야 한다.

(4) 노동보호물자의 종합계산과 분석계산은 소공기구비품의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5) 「미입하자재」 계정과목

(1) 미입하자재의 종합계산은 미입하자재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자재 대금을 지불했지만, 자재가 미입하되었을 경우

차변: 「미입하자재」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② 미입하자재가 입하되었을 경우

차변: 「당해자재」 계정과목

「물자구입경비」 계정과목

대변: 「미입하자재」 계정과목

(2) 미입하자재의 분석계산은 재정관리부서와 자재공급부서에서 당해기관별, 기업소별로 해야 한다.

6) 「위탁가공자재」 계정과목

위탁가공자재의 종합계산은 가공자재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위탁가공자재가 출고되었을 경우

차변: 「위탁가공출고자재」 계정과목

대변: 「당해자재」 계정과목

② 가공비를 지불했을 경우

차변: 「위탁가공자재」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③ 가공이 끝난 당해 자재가 창고에 입하되었을 경우

차변: 「당해자재」 계정과목

대변: 「위탁가공자재」 계정과목

7) 「물자구입경비」 계정과목

(1) 물자구입경비에는 자재상사에 지불할 부가금, 물자수송비(철도, 선박, 자동차, 기타 운임) 팩리프트크레인車 및 선박비용, 수송도중의 물자의 마모와 손실(기준법위내)비용 등을 계산해야 한다.

(2) 물자구입경비의 종합계산은 물자구입경비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물자구입경비가 지출되었을 경우

차변: 「물자구입경비」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 ② 매월말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물자구입경비분배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에 따른 물자구입경비를 계산했을 경우

차변: 「당해생산비」 계정과목

대변: 「물자구입경비」 계정과목

$$\frac{\text{물자구입경비}}{\text{계산배분비율}} = \frac{\text{월초물자구입경비잔고} + \text{월중물자구입경비발생고} \times 100}{\text{월초당해자재계정과목잔고} + \text{월중당해자재입고액}}$$

당해 생산비에 계상해야 할 물자구입경비 = 출고자재의 대금 × 배분비율

제12조 생산비계산과 관련된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에서 해야 한다.

1.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2. 「반제품」 계정과목
3. 「건설 및 조립공사비」 계정과목
4. 「직장비」 계정과목
5. 「회사관리비」 계정과목
6. 「차기이월사업비」 계정과목
7. 「판매비」 계정과목

1)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1) 기본생산비의 종합계산은 기본생산비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 ① 생산물생산을 위해 자재가 출고되었을 경우

차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대변: 「당해자재」 계정과목

- ② 종업원의 임금을 계산했을 경우

차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대변: 「지불임금」 계정과목

- ③ 직장비와 회사관리비를 월말기본생산비로 간주했을 경우

차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대변: 「직장비」 계정과목

「회사관리비」 계정과목

④ 월말생산물의 실적가격이 확정되었을 경우

차변: 「가격원가차액」 계정과목

대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2) 「반제품」 계정과목

(1) 반제품의 종합계산은 반제품의 변동을 자산계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기본생산직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이 반제품창고에 입고되었을 때 실적원가에 따라

차변: 「반제품」 계정과목

대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② 반제품이 그 다음 공정으로 가공되기 위해 출고될 경우

차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대변: 「반제품」 계정과목

(2) 반제품의 분석계산은 창고와 직장에서 반제품의 품종별, 규격별로 해야 한다.

3) 「건설 및 조립공사비」 계정과목

(1) 건설 및 조립공사비의 종합계산은 건설 및 조립공사비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 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건설 및 조립공사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경우

차변: 「건설 및 조립공사비」 계정과목

대변: 「당해비용」 계정과목(임금 또는 자재)

② 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

차변: 「고정자산」 계정과목

대변: 「건설 및 조립공사비」 계정과목

(2) 건설 및 조립공사비의 분석계산은 대상별, 항목별로 해야 한다.

4) 「직장비」 계정과목

(1) 직장비의 종합계산은 직장비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직장비를 지출했을 경우

차변: 「직장비」 계정과목

대변: 「당해비용」 계정과목

② 월말직장비지출실적을 기본생산비로 대체 계정할 경우

차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대변: 「직장비」 계정과목

(2) 직장비의 분석계산은 직장비 항목별로 해야 한다.

5) 「회사관리비」 계정과목

(1) 회사관리비의 종합계산은 회사관리비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회사관리비를 지출했을 경우

차변: 「회사관리비」 계정과목

대변: 「당해비용」 계정과목

② 월말회사관리비 지출실적을 기본생산비로 대체 계정할 경우

차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대변: 「회사관리비」 계정과목

(2) 회사관리비의 분석계산은 회사관리비 항목별로 해야 한다.

6) 「차기이월사업비」 계정과목

(1) 차기이월사업비에는 조업개시전에 지출한 비용(지출에서 수입을 공제한 지출잔액), 신제품생산비, 고정자산설치비를 계산해야 한다.

(2) 차기이월사업비의 종합계산은 차기이월사업비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조업개시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차변: 「차기이월사업비」 계정과목

대변: 「당해비용」 계정과목

② 신제품생산비가 지출되었을 경우

차변: 「차기이월사업비」 계정과목

대변: 「당해비용」 계정과목

③ 고정자산의 설치비가 지불되었을 경우

차변: 「차기이월사업비」 계정과목

대변: 「당해비용」 계정과목

④ 연도말 결산에서 차기이월사업비를 소득세를 공제한 이익금에서 충당할 것을 이사회가 결의한 비용에 대해서는

차변: 「이익분배」 계정과목

대변: 「차기이월사업비」 계정과목

7) 「판매비」 계정과목

(1) 판매비용의 종합계산은 판매비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이 분개해야 한다.

① 비반환용기 및 포장자재 또는 1회용 용기 및 포장자재가 출고되었을 경우

차변: 「판매비」 계정과목

대변: 「용기 및 포장자재」 계정과목

② 월말에 지출된 판매비를 생산비의 원가에 이월했을 때

차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대변: 「판매비」 계정과목

제13조 완성품과 관련된 계산은 「완성품」, 「발송제품」, 「가격원가차액」 등의 계정과목에
서 각각 해야 한다.

1) 「완성품」 계정과목

(1) 합영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격은 합영계약에 의해 국제시장가격으로 계산
해야 한다.

(2) 완성품의 종합계산은 완성품의 변동과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완성품이 생산되어 입고되었을 경우

차변: 「완성품」 계정과목

대변: 「가격원가차액」 계정과목

② 완성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할 경우

차변: 「발송제품」 계정과목

대변: 「완성품」 계정과목

(3) 완성품의 분석계산은 판매부서(영업부서)와 당해 창고에서 품종별, 규격별로
해야 한다.

2) 「발송제품」 계정과목

(1) 발송제품의 종합계산은 발송제품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완성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할 경우

차변: 「발송제품」 계정과목

대변: 「완성품」 계정과목

② 발송제품의 판매대금이 은행구좌에 입금되었을 경우

차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대변: 「발송제품」 계정과목

(2) 발송제품의 분석계산은 재정관리부서에서 회사별, 품종별, 규격별로 해야 한다.

3) 「가격원가차액」 계정과목

(1) 가격과 원가와의 차액에 관한 종합계산은 가격과 원가와의 차액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제품이 생산되어 창고에 입고되었을 경우

차변: 「완성품」 계정과목

대변: 「가격원가차액」 계정과목

② 월말실적 원가가 확정되었을 경우

차변: 「가격원가차액」 계정과목

대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③ 월말에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가격과 원가와의 차액에 관한 분배비율을 산출하여 그 비율에 따라서 판매이익금을 계산했을 경우

차변: 「가격원가차액」 계정과목

대변: 「손익」 계정과목 / 판매이익금 세분계정과목

* 판매이익의 계산

$$\text{배분비율} = \frac{\text{월초의 가격} \cdot \text{원가차액잔고} + \text{월중의 가격} \cdot \text{원가차액발생고} \times 100}{\text{국제시장가격에서의 월초완성품과 발송제품의 재고고} + \text{국제시장가격에서의 월중완성품의 생산액}}$$

판매된 제품에 해당되는 판매이익금

= 국제시장가격에서의 제품판매액(발송제품 대변변동고 합계) × 분배비율

제14조 화폐재산과 관련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화폐재산에 관련된 계산은 「현금」, 「은행예금」, 「기타 화폐재산」 등의 계정과목에서 각각 해야 한다.

1) 「현금」 계정과목

(1) 현금에는 국내통화(內資)현금과 외국통화(外資)현금을 계산하는 세분계정과목이 있어야 한다.

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했을 경우

차변: 「현금」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② 旅費를 미리 지불했을 경우

차변: 「여비선지불」 계정과목

대변: 「현금」 계정과목

2) 「은행예금」 계정과목

(1) 은행예금에서는 국내통화예금과 외화별(외국통화와 태환권, 엔, 달러) 예금을 계산하는 세분계정과목이 있어야 한다.

(2) 은행예금의 종합계산은 은행예금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제품대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차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대변: 「발송제품」 계정과목

② 합영회사계약에 의해서 유동자금의 공급을 받았을 경우

차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대변: 「동록자금」 계정과목

③ 은행대부금을 받았을 경우

차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대변: 「은행대부금」 계정과목

④ 국가예산에 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차변: 「국가예산결재」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3) 「기타 화폐재산」 계정과목

(1) 기타 화폐재산에서는 어음(우표), 엽서, 수입인지, 티켓 등을 계산해야 한다.

(2) 기타 화폐재산의 종합계산은 기타 화폐재산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기타 화폐재산을 구입했을 경우

차변: 「기타 화폐재산」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② 기타 화폐재산을 사용했을 경우

차변: 「회사관리비」 계정과목

대변: 「기타 화폐재산」 계정과목

제15조 취득금과 지불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에서 해야 한다.

「지불임금」, 「여비선지불금」, 「물자거래취득금」, 「기타 취득금」, 「물자거래지불금」, 「기타 지불금」, 「사회보험기관과의 결제」 등의 계정과목

1) 「지불임금」 계정과목

(1) 지불임금의 종합계산은 지불임금의 변동을 자금원천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종업원의 노동임금을 계산했을 경우

차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

대변: 「지불임금」 계정과목

② 종업원의 노동임금을 지불했을 때

차변: 「지불임금」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2) 지불임금의 분석계산은 임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개인별로 해야 한다.

2) 「旅費선불금액」 계정과목

(1) 여비선불금액의 종합계산은 여비선불금액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출장여비를 선불했을 경우

차변: 「여비선불금액」 계정과목

대변: 「현금」 계정과목

② 출장여비를 정산했을 경우

a. 선불금보다 많이 지불했을 경우

차변: 「회사관리비」 계정과목

대변: 「여비선불금액」 계정과목

「현금」 계정과목

b. 선불금보다 적게 지불했을 경우

차변: 「회사관리비」 계정과목

「현금」 계정과목

대변: 「여비선불금」 계정과목

(2) 여비선불금의 분석계산은 여비의 수취인별로 해야 한다.

3) 「물자거래이익금」 및 「기타 이익금」 계정과목

(1) 물자거래이익금의 종합계산은 물자거래이익금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불필요한 자재를 판매했을 경우

차변: 「물자거래이익금」 계정과목

대변: 「당해자재」 계정과목

② 이익금을 수취했을 경우

차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대변: 「물자거래이익금」 계정과목

(2) 물자거래이익금의 분석계산은 대상 회사별로 해야 한다.

(3) 기타 이익금의 분석계산은 물자거래이익금의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4) 「물자거래지불금」 및 「기타 지불금」 계정과목

(1) 물자거래지불금의 종합계산은 물자거래지불금의 변동을 자산원천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자재는 입하되었지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차변: 「당해자재」 계정과목

대변: 「물자거래지불금」 계정과목

② 미지불자재대금을 지불했을 경우

차변: 「물자거래지불금」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2) 물자거래지불금의 분석계산은 대상 회사별로 해야 한다.

(3) 기타 지불금의 계산은 물자거래지불금의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5) 「사회보험기관과의 결제」 계정과목

(1) 사회보험기관과의 결제계정과목에서는 사회보험보조금,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회사부담 사회보험료를 계산해야 한다.

(2) 사회보험기관과의 결제에 있어서 종합계산은 사회보험기관과의 결제의 변동을 자산원천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회사부담, 본인부담 사회보험료를 계산할 경우

차변: 「기본생산비」 계정과목(회사부담)

「지불임금」 계정과목(본인부담)

대변: 「사회보험기관과의 결제」 계정과목

②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차변: 「사회보험기관과의 결제」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제16조 순이익과 그 분배의 계산은 「순익」, 「이윤분배」, 「이자손익」, 「국가예산과의 결제」, 「합영회사기금」 등의 계정과목에서 각각 해야 한다.

1) 「순익」 계정과목

(1) 순익의 종합계산은 순이익의 변동을 자금원천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

이 분개해야 한다.

① 월판매이익금을 계산했을 경우

차변: 「판매원가차액」 계정과목

대변: 「손익」 계정과목

② 기타 수입이 있었을 경우

차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대변: 「손익」 계정과목

③ 월판매손실금을 계산했을 경우

차변: 「손익」 계정과목

대변: 「판매원가차액」 계정과목

④ 기타 손실이 있었을 경우

차변: 「손익」 계정과목

대변: 「당해」 계정과목

⑤ 연도말 결산에서 순이익을 다음 연도초에 「이윤분배」 계정과목과 조합해서 소멸시켰을 경우

차변: 「손익」 계정과목

대변: 「이윤분배」 계정과목

⑥ 연도말 결산에서 순손실을 확정해서 다음 연도초에 「차기이월사업비」 계정과목으로 대체 계정했을 경우

차변: 「차기이월사업비」 계정과목

대변: 「손익」 계정과목

(2) 손익의 분석계산은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윤항목별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실항목별로 해야 한다.

2) 「이윤분배」 계정과목

(1) 이윤분배계산은 연도말 이윤이 발생했을 때에 그 분배항목에 따라 세분계정과목을 가지고 계산해야 한다.

이윤분배항목 1. 소득세

2. 갑축 이익금

3. 을축 이익금

4. 예비기금

5. 각종기금

(2) 이윤분배의 종합계산은 이윤분배의 변동을 자산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연도말 결산에서 이윤이 확정되어, 분배할 이윤을 계산했을 경우

차변: 「이윤분배」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대변: 「당해」 계정과목

② 다음 연도초에 분배될 이윤이 분배되는 경우

차변: 「손익」 계정과목

대변: 「이윤분배」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3) 이윤분배의 분석계산은 이윤분배항목별로 해야 한다.

3) 「이자손익」 계정과목

(1) 이자손익은 외화예금을 전환할 때 전환률과 현재의 이자교환률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이자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2) 이자손익의 종합계산은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전환률보다 현재의 이자교환률이 높을 경우

차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 엔 세분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 달러 세분계정과목

「이자손익」 계정과목

② 전환률보다 현재의 이자교환률이 낮을 경우

차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 엔 세분계정과목

「이자손익」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 달러 세분계정과목

4) 「국가예산과의 결제」 계정과목

(1) 국가예산과의 결제계산에서는 소득세, 갑축이익금, 기타로 계산해야 한다.

(2) 국가예산과의 결제에서의 종합계산은 자금원천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① 국가예산에 납부할 소득세와 갑축이익금이 계상되었을 경우

차변: 「이윤분배」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대변: 「국가예산과의 결제」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② 소득세와 갑축이익금을 국가예산에 납부했을 경우

차변: 「국가예산과의 결제」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3) 국가예산과의 결제에 있어서의 분석계산은 국가예산납부항목별로 해야 한다.

5) 「합영회사기금」 계정과목

- (1) 합영회사기금계산서에는 예비기금, 각종기금(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을 계산해야 한다.
- (2) 합영회사기금의 종합계산은 자금원천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 ① 연도말 이윤이 확정되고 합영회사기금을 적립했을 경우
 차변: 「이윤분배」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대변: 「합영회사기금」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 ② 합영회사기금을 지출했을 경우
 차변: 「합영회사기금」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대변: 「당해」 계정과목

제17조 경영자금의 계산은 「등록자금」, 「은행대부금」, 「재산보험보상금수입」 등의 계정과목에서 각각 처리해야 한다.

- 1) 「등록자금」 계정과목
 고정자산계산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 2) 「은행대부금」 계정과목
 - (1) 은행대부금의 종합계산은 은행대부금의 변동을 자금원천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 ① 은행대부금을 받았을 경우
 차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대변: 「은행대부금」 계정과목
 - ② 대부자금을 반환했을 경우
 차변: 「은행대부금」 계정과목
 대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 당해 세분계정과목
 - 3) 「재산보험보상금수입」 계정과목
 - (1) 재산보험보상금수입의 종합계산은 재산보험보상금수입의 변동을 자금원천계정과목계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한다.
 - ① 보험기관에서 보상금을 수취했을 경우
 차변: 「은행예금」 계정과목
 대변: 「재산보험보상금수입」 계정과목
 - ②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경우
 차변: 「재산보험보상금수입」 계정과목
 대변: 「당해」 계정과목

제5장 재산부기결산

제18조 합영회사는 정해진 결산기간내에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부기계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대조확인된 부기계산자료와 재산심사자료를 위해 매월 종합계정과목유동고일람표를 작성하고, 4분기와 연도에는 재정부기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9조 합영회사는 합영회사재정부기결산서를 재정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월, 사분기, 연도별로 작성해야 한다.

1. 재정부기결산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재정부와 합영공업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2. 재정부기결산서에는 합영회사책임자와 재정부기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합영회사는 재정부기결산을 통해서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회사운영의 개선을 위한 대처을 세워야 한다.

제6장 부기계산에 대한 지도와 통제

제20조 합영회사는 부기계산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 통제해야 하고, 부기계산에 필요한 계산기기와 장부 및 양식 등을 비롯한 물질적인 조건을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기계산을 하지 않고, 부기계산규칙을 위반해서, 국가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거나,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책임자에게 물질적,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

합작법

〈1992.10.5.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부문에도 조직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5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통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을 할 수 있다.

제6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한 해당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으로 그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 안에 해당 기업 소재지의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날이 합작기업창설일로 된다.

제9조 합작기업은 승인된 합작업종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승인된 업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가측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다.

제12조 합작기업은 국가가 승인한 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다.

제15조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 기타 수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 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 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9조 합작당사자들 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제20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 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이 정한 데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외국인기업법

〈1992.10.5.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2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제4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저애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7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서, 투자가의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 비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에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이 승인되면 30일 안에 기업 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창설일로 된다.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새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협합할 수도 있다.

제11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나라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가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 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투자가가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14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 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다.

제17조 외국인기업이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도 있다.

제1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 소재지 안에 부기장부를 두어야 하며,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 관련한 로력을 기업 소재지의 로동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한 로력을 해고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다른 나라 기술자, 기능공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울 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 로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로동조건 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 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 할 때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릴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등록자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정형을 검열 감독 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8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30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해산 또는 파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제31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1994.3.27. 정무원 결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 한다.

제2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투자가가 자본을 단독으로 투자하여 창설하며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며 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4조 외국인기업의 창설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의 규제내용에 넣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외국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6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 문건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내는 문건을 조선어로 써야 하며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7조 투자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1. 전자공업, 자동차공업, 기계제작공업, 동력공업부문
2.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부문
3.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부문
4. 건설운수 및 봉사부문

5. 이 밖에 필요한 부문

제8조 외국인기업은 다음의 조건 가운데서 한가지라도 만족시키는 경우에라야 창설할 수 있다.

1.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되어야 한다.
2.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1. 공화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4.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5.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10조 다음과 같은 부문에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없다.

1. 출판, 보도, 방송부문
2. 체신부문
3. 이 밖에 국가가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경우

제11조 투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위한 수속을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도행정경제위원회에 내야 한다.(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 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직무, 외국인기업의 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업종, 생산품종 및 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거래은행, 투자방식과 기간, 주요생산 기술공정자료, 생산제품의 실현대상시장과 실현방식, 기업의 기구, 종업원수 및 노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건설부지 면적과 희망하는 위치, 용수, 동력 및 원자재 소요량, 연도별 생산계획, 경영기간, 이 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투자가에 대한 국명 문건,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과 그에 대한 설명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 이 밖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기업의 창설목적, 경영범위, 생산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방식과 기간, 기업의 기구 및 그 직능, 이사장, 사장, 부기장, 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경영기간, 해산 및 청산, 기본규약의 수정절차, 이 밖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은 기업창설을 심사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의 경제타산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계획, 생산 계획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산공정설비의 기술 및 유익성 분석자료,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 주요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종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원 양성계획, 단계별 수익성 타산자료, 이 밖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에는 기계설비 및 자재이름, 규격, 단위, 수량, 용도, 단가, 총액, 생산공장 및 회사명, 이름 이 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계설비와 관련한 상품관리책을 첨부해야 한다.

제17조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설명서에는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 같은 것을 밝히고 기술문현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 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공업소유권증서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 창설을 위한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포함된다.(이 아래부터는 '대외경제기관'이라 한다)

대외경제기관은 총 투자액 2천만원이상의 하부구조 건설대상과 하부구조 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천만원이상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총투자액 2천만원까지의 하부구조 건설대상과 하부구조 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투자규모가 적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할 수 있다.

제19조 지대당국은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하는 대상에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접수 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제20조 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 외국인기업 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2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 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계획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주소, 외국인기업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조업날자 이 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외국인기업 창설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창설일로 되며 이 날부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은 지대 또는 다른 나라에 자기의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두거나 새끼회사를 내울 수 있으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 것을 내오거나 기업을 연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건설을 공화국의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3장 투자절차와 방법

제25조 외국인기업은 총투자액의 규모에 따라 정한 등록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의 총액이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 가운데에서 지대당국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이다.

제26조 등록자본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1. 총투자액 6백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이상
2. 총투자액 6백만원이상부터 2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45%이상(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9백만원까지는 410만원)
3. 총투자액 2천만원이상부터 6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이상(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2천7백만원까지는 950만원)
4. 총투자액 6천만원이상은 총투자액의 30%이상(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3천7백만원까지는 2천6백만원)

제27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데 따라 지대당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8조 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의 가격은 투자가가 해당시기에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투자하는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것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투자가의 소유권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2. 경쟁력이 강한 수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평가액이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외국인기업은 투자로 들여오는 기계설비를 대외상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외상품검사기관은 검사의뢰서에 따라 기계설비를 검사하고 검사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대외상품검사기관이 기계설비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31조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다음의 기간 안에 해야 한다.

1.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2. 투자를 여러번에 나누어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 첫번째 투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자본의 15%이상되게 하여야 하며 첫번째 투자가 끝난 다음 다음번의 투자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지정된 기간 안으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기간 안으로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거나 첫번째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와 다음번의 투자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투자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기업 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외국인기업은 지대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확인서와 기업등록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기업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경우 심사승인기관에 제기하여 투자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부구조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 전액을, 그 밖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재투자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았던 소득세액을 다시 바쳐야 한다.

제34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투자할 때마다 투자검증보고서를 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투자검증보고서는 부기검증사무소가 발급한다.

제4장 생산 및 유통

제35조 외국인기업은 영업허가증을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은 기업등록신청서에 밝힌 조업 예전날자 안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지대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영업허가증신청서를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투자를 확인한 부기검증사무소에 투자검증보고서,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과 환경보호를 담보하는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 생산한 시제품의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대당국은 영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36조 경영활동은 승인받은 기본규약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자체로 만들어 지대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 영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으며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할 수도 있다.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해야 한다.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는 생산한 물자를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무용품과 경영용비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제38조 외국인기업이 투자로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 및 경영활동에 쓰기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 자체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제39조 외국인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을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에 의탁하여 할 수 있다.

제40조 외국인기업의 수출입상품가격은 해당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기술봉사요금 포함). 지대 안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대 밖의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과 지대 안에 판매하는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외국인기업은 탈세를 목적으로 수출입상품의 가격을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실현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 외국인기업은 수입한 물자의 보관 및 이용, 생산한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사항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부기

제42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해야 한다.

제43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계산을 조선원으로 하여야 한다. 재정부기계산을 외화로 할 경우에는 해당거래시기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율로 계산된 조선원을 겹수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조선원 돈자리와 외화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공화국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들 수 있다. 외화거래와 결제는 거래은행에 있는 자기 돈자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두었을 경우에는 분기마다 수불정형과 거래은행의 계산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45조 외국인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이다.

외국인기업을 창설한 해의 결산년도는 기업창설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외국인기업을 동결하는 해의 결산년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동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46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47조 외국인기업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과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및 문화후생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놓아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씩 적립한다. 적립된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 데만 쓸 수 있다. 예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적립하는 한도는 외국인기업이 자체로 정한다.

제48조 외국인기업은 분기 및 년간 재정부기결산을 하여야 한다.

분기의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분기 다음달 15일 안으로, 년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날부터 2개월 안으로 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분기 및 년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계산표, 이윤 및 분배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 감가상각 등 계산표 같은 것이 포함된다. 년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4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정에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소득 및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50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은행 또는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

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제51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재정부기결산서, 고정재산문건은 기업의 경영기간이 끝날때까지).

제52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화국의 재정부기 일군, 또는 다른 나라 재정부기 일군의 도움을 받아 재정부기문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된 비용은 투자가가 부담한다.

제6장 노력관리

제53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4조 외국인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 소재지의 노력알선기관과 노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5조 채용한 공화국의 노력을 계약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노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계약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6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 노임기준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노동규정에 따른다.

제58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은 직업동맹조직 안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다.
2. 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과 과학지식 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3. 외국인기업과 노동조직, 노동보수, 노동보호와 관련한 단체계약을 맺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4. 외국인기업과 종업원들 사이에 발생되는 노동분쟁을 조정한다.
5. 종업원들의 권리, 이익과 관련한 문제 토의에 참가하여 돈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 한다.

제60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직업동맹 대표와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 조직의 사업조건과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62조 외국인기업은 월마다 직업동맹조직에 다음과 같은 활동자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1. 종업원 5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2%에 해당한 자금
2. 종업원 500명이상부터 1,0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1.5%에 해당한 자금
3. 종업원 1,000명이상은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1%에 해당한 자금

제7장 경영기간과 해산

제63조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등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64조 경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영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심사승인기관에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은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승인해 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65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기간을 연장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경영기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외국인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2.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가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4. 외국인기업 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5.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되었을 경우

제67조 외국인기업을 해산하려 할 경우에는 기업해산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지대당국은 접수한 기업해산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기가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직접 해산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날이 기업해산일로 된다.

제68조 외국인기업은 해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해산을 공개하고 채권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해산을 공개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청산위원회 위원명단을 심사승인기관에 내어 합의를 받아야 한다. 상설위원회는 합의받은 날부터 1주일 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0조 청산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기업의 책임자
2. 채권자의 대표
3. 심사승인기관의 대표
4. 부기검증원
5. 변호사

제71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 회의를 소집한다.
2.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할한다.
3. 채권 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5. 청산안을 작성한다.
6. 세금을 바치고 채권과 채무를 청산한다.
7.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 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72조 청산과 관련한 비용은 해산되는 외국인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73조 외국인기업은 청산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투자한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심사승인기관에 낸 다음 지대당국에 기업등록증과 경영허가증을 바치고 기업 및 채무취소 등록수속을 하며 해당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8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75조 심사승인기관은 외국인기업의 장부와 현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76조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시키거나 정도에 따라 외국인기업에는 1만원까지, 외국인에게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1. 등록질서를 어기었을 경우
2.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3. 투자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4. 수출입 법무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77조 탈세행위를 하였거나 세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르는 연체료와 벌금을 물린다.

제78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다.

제79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거래에서 생기는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제80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1993.1.31.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장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제3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 규범에 따라 한다.

재정부기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제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정형에 대한 감독 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제6조 이 법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 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

제2장 기업소득세

제8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우리나라 안에서 얻은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 지사,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 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9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0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분기소득세 예정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며,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안으로 년간 소득세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야 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년간 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에 하며, 년간 종합계산은 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납부한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청산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10%로 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이 공화국 영역 안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 사용료를 비롯한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4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와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10년 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4.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천만원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16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수 있으며,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소득세액을 바친다.

제3장 개인소득세

제17조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8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배당소득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4. 리자소득
5. 임대소득
6. 재산판매소득

7. 중여소득

8. 개인기업소득

제19조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 로동보수액이 2천원 아래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 대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소득세률은 20%로 한다.
3. 중여소득세에 의한 소득세률은 이 법 부록 2에서 정한 대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의한 소득세률은 25%로 한다.

제20조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 초과루진세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중여에 의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고정재산 처음 값의 20%에 해당한 감가상각금을 제공한 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한다.
공화국 은행에 저축성예금을 한 돈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재산판매소득, 중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 달 10일 안으로,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다음 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3.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4장 재산세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 령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다.

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 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등록취소 수속을 한다.

제27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세의 세률은 이 법 부록 3에서 정한 대로 한다.

제29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 달부터 거주지의 재정기간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0조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0일 안으로 재산소유자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5장 상속세

제31조 공화국 령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령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제32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제34조 상속세의 세률은 이 법 부록 4에서 정한 대로 한다.

제35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해당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6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5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6장 거래세

제37조 생산물 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8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판매에 의한 수입금
2. 상업부문에서는 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봉사수입금

제39조 거래세의 세률은 이 법 부록 5에서 정한 대로 한다.

제40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생산물판매액에 해당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상업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상품판매액에 해당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봉사수입금에 해당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1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판매자가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각종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봉사기관이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2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멍면한다.

1.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 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50%로 한다.

제7장 지방세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차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바쳐야 한다.

제45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소로 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 수입으로 한다.

제46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로 임총액에 1%의 세율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거주한 외국인이 바치는 도시경영세는 월 수입에 1%의 세율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4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기업이나 광업권, 어업권 같은 것을 등록할 경우와 기술자격면허증 같은 증서를 받을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바쳐야 한다.

제48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정해진 세액을 해당 등록단위와 면허증 발급단위가 받아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9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바쳐야 한다.

제5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자동차리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한 데 따라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52조 등록면허세와 자동차리용세의 세액은 이 법 부록 6에서 정한 대로 한다.

제8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53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5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납부서, 소득세공제납부서, 재정부기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린다.

제55조 이 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6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소청원은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부록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률표>

월 로동보수액 2천 1원부터 3천원까지 세율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월 로동보수액 3천 1원부터 4천원까지 세율 40원 더하기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월 로동보수액 4천 1원부터 5천원까지 세율 90원 더하기 4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월 로동보수액 5천 1원부터 6천원까지 세율 150원 더하기 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월 로동보수액 6천 1원부터 7천원까지 세율 220원 더하기 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월 로동보수액 7천 1원부터 8천원까지 세율 300원 더하기 7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

월 로동보수액 8천 1원부터 9천원까지 세율 390원 더하기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월 로동보수액 9천 1원부터 1만원까지 세율 490원 더하기 9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월 로동보수액 1만 1원이상은 세율 640원 더하기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부록 2. <증여에 의한 소득세률표>

증여소득액 1만 1원부터 2만원까지 세율 5%

증여소득액 2만 1원부터 4만원까지 세율 10%

증여소득액 4만 1원부터 8만원까지 세율 15%

증여소득액 8만 1원부터 20만원까지 세율 20%

증여소득액 20만 1원부터 40만원까지 세율 25%

증여소득액 40만 1원부터 80만원까지 세율 30%

증여소득액 80만 1원이상은 세율 35%

부록 3. <재산세의 세률표>

건물의 세률은 등록값의 1%

선박의 세률은 등록값의 1.4%

비행기의 세률은 등록값의 1.4%

부록 4. <상속세의 세률표>

상속액 20만 1원부터 35만원까지 세률 6%
상속액 35만 1원부터 60만원까지 세률 8%
상속액 60만 1원부터 80만원까지 세률 10%
상속액 80만 1원부터 120만원까지 세률 12%
상속액 120만 1원부터 250만원까지 세률 14%
상속액 250만 1원부터 400만원까지 세률 16%
상속액 400만 1원부터 800만원까지 세률 18%
상속액 800만 1원부터 2천만원까지 세률 20%
상속액 2천만 1원부터 5천만원까지 세률 25%
상속액 5천만 1원이상은 세률 30%

부록 5. <거래세의 세률표>

생산부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의 1.5%부터 20%까지
술 · 담배와 같은 제한하는 상품은 21%부터 60%까지
상업부문의 세률은 상품판매액의 2%
봉사부문의 세률은 봉사수익금의 2%부터 4%까지

부록 6. <지방세액표>

1. 등록면허세

- 1) 기업등록
 - 설립등록 세액 건당 500원부터 1천원까지
 - 변경등록 세액 건당 40원
 - 취소등록 세액 건당 40원
- 2) 광업권 등록
 - 처음등록 세액 광구당 1,200원
 - 변경등록 광구당 10원

취소등록 광구당 10원

3) 어업권 등록

처음등록 세액 건당 1천원

변경등록 건당 10원

취소등록 건당 10원

4) 기술자격 면허증 발급

세액 건당 20원부터 1천원까지

2. 자동차 리용세

승용차 세액 대당 50원, 버스 12석까지 세액 대당 90원, 13~30석 세액 대당 100원, 31석이상 세액 대당 120원, 화물자동차 세액 적재톤당 20원, 특수차 세액 대당 50원, 자동자전차 세액 대당 20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

〈1994. 2. 21. 정무원 결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동포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외국기업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화국 영역 안에서 리자, 배당금, 임대료와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

제3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과와 징수, 세금납부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재정기관에는 재정부와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가 포함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무정형을 검열하는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제때에 보여줘야 한다.

제4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기업의 소재지가 변동되였거나 통합, 분리되였을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업종과 같은 것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변경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어야 한다.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취소 수속을 하기 20일 전에 해

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5조 세무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등록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 세무등록신청서에 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1) 기업의 명칭과 주소
- 2) 기업 등록날자, 등록번호
- 3) 기업의 경영방식과 업종
- 4) 경영기간
- 5) 종업원 총수(그중 외국인수)
- 6) 부지면적
- 7)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
- 8) 기업의 책임자와 재정부기책임자의 이름

외국인은 세무등록신청서에 이름과 국적, 주소, 여권번호, 체류증 발급날자, 체류기간을 밝혀야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거나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세무등록취소신청서에 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 및 취소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6조 세무에 이용되는 문서양식은 재정부가 정한다. 세무문서는 조선글로 써야 한다. 다른 나라 글로 쓴 경우에는 그 밑에 조선글로 번역해서 써야 한다. 세무문서에는 기업의 도장과 기업책임자 및 재정부가 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7조 세무와 관련되는 문서(전자계산기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테프와 원판)는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편철하여 문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5년(재정부기결산서, 고정재산 문서는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8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해 납부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의 외화환율에 따라 한다.

제9조 세금은 수익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한다.

제10조 세금은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세금납부서를 내는 것과 함께 해당 은행에 납부한다. 세금을 받은 은행은 신고납부자 또는 공제납부자(이 아래부터는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세금납부증을, 재정기관에는 세금납부통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귀국(임시출국은 제외)하려는 외국인은 미납한 세금을 납부해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규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했을 경우에는 그 협정

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이 포함된다.

제2장 기업소득세

제13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별부문의 소득, 상업(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매소득, 금융부문의 리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수, 체신, 급양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 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기타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속한다.

- 1) 리자소득
- 2) 리의 배당소득
- 3) 재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
- 4)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 5) 기술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방식을 하여 얻은 소득
- 6) 폐설물 및 부산물 처리에 의한 소득
- 7) 이 밖의 소득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14조 기업소득세의 납세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세년도 안에 영업을 시작한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해산되는 1월 1일부터 그 해 해산을 선포한 날까지로 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리윤에 부과한다.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1) 공업부문에서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물자구입경비, 새 제품 생산비, 로임,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직장 및 회사 관리비, 판매비, 보험료
- 2) 상업부문에서는 상품비와 류통비(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용기 손모 및 수리비, 상품자연감모비, 영업용 연료 및 전력비, 로임, 대외판매, 수속비, 비품비, 난방비, 조명비, 수도사용료, 사무비, 통신비, 연비, 선전비, 대외사업비, 로동보호비, 문화사

업비, 대부리자, 보험료, 이 밖의 유통비

- 3) 봉사부문에서는 급양원자재비와 류통비, 교통운수운영비, 체신운영비 기타 지출에
는 환자시세의 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공, 재포장하는데 든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16조 작업기간이 1년이상 걸리는 건설 및 조립, 설치공사, 대형기계설비의 가공, 제작
같은 것을 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납세년도마다 그 해에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제17조 기업소득세률은 다음과 같다.

- 1)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14%
- 2)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25%
- 3)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공학연구 및 기술개
발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10%
- 4)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10%, 자유경제무
역지대 밖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20%.

제18조 기업소득세는 결산리윤 또는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년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분기결산
리윤은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1/4을 예정납부
한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기 재정부기결산서를 기업소득세 납부에 앞서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납세년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 안으로 년간 기업소득세납부서
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년간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년
간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 결산리윤, 세률,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재정부기결산서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
득 계산표, 리익 및 분배 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감가상각금 계산
표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23조 공제납부장은 수익금을 지불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공제납부서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
호, 지불항목, 지불금액, 세률,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끝났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와 자
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납세담보금으로 세우고 청산안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담보금은 기업소득세로 돌릴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해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 통합, 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미납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채무의 이행에 앞서 납부해야 한다.

제25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본사가 종합하여 납부하며 외국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지사가 신고 납부한다. 공화국령역 안에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와 지사의 기업소득세률이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각각 해당한 세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화국령역 밖에 지사를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나라에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이 이 규정에 밝힌 세률로 계산한 기업소득세액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소득세액 만큼 공제하여 주며 초과한 부문에 대한 기업소득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27조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 또는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 또는 기업에 낮은 리자를(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리자를 보다 낮은 리자를)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28조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장려하는 부문에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이 포함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준다. 금융기업이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제30조 총투자액이 6천만원이상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31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기간은 리윤이 난 해로부터 연속 계산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의 결산리윤에서 메꿀 수 있으며 다음년도에는 메꾸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속하여 해마다 메꿀 수 있으나 4년을 넘을 수 없다.

제33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업종, 리윤이 생긴 년도, 총투자액,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를 밝히고 해당 기업설립심사승인기관이 증명하는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제34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 및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 되기 전에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을 공화국 령역 안에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하부 구조 건설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다른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되돌려 받거나 다음에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신청서와 함께 재투자액과 경영기간을 증명하는 기업설립심사승인기관의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3장 개인소득세

제36조 공화국 령역 안에 180일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령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기간 안에 임시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체류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7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에는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중여소득, 개인기업소득(개인업소득에 한함)이 포함된다.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이 현물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한 때의 현지 가격으로 한다.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에는 로임, 상금, 장려금, 가급금과 강의, 강연, 투고, 번역, 설계, 제도, 설치, 수예, 조각, 그림, 창작, 공연, 부기, 제육, 의료, 상담과 같은 일을 해 얻은 소득이 속하며 배당소득에는 리의배당금, 잉여금의 분배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공업소유권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해 받은 소득이 속하며 기술비결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련기능, 경험같은 것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소설, 시,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극과 같은 문화예술작품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리자소득에는 예금, 채권에 의한 리자소득이, 임대소득과 재산판매소득에는 건물, 기계, 설비, 자동차, 선박과 같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증여소득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을 증여받은 소득이 속하며 개인업소득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상점, 음식점, 수리소 같은 것을 차려놓고 자체로 상업 및 봉사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제38조 개인소득세률은 다음과 같다.

- 1)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이 2천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률은 이 규정 부록1에 정한 초과누진세률로 한다.
-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률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 3)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이 1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률은 이 규정 부록 2에 정한 세률로 한다.
- 4) 재산판매소득, 개인업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률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제39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고정재산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의 20%(로력비, 포장비, 수수료와 같은 비용)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인업을 해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0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달 15일 안으로 공제납부한다.
- 2) 수익인이 공화국 령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령역 안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은 다음 분기 첫날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령역 안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 3)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은 다음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4) 수익인이 공화국령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령역 안에서 얻은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달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령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공제납부자는 공제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1조 공화국령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공화국령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날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납세의무자가 공화국령역 밖에서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소득세액 범위 안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문건에는 해당 나라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문건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2조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 1)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 2)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리자와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
- 3)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

제4장 재산세

제43조 외국인은 공화국령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에는 살림집, 별장, 부속건물이 포함되며 선박, 비행기에는 자가용배, 자가용비행기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44조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재산을 임대했거나 저당잡혔을 경우에도 재산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소유자가 재산소재지에 없을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된다.

제45조 외국인은 공화국령역 안에 건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것을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재산등록신청서를 내고 재산가격을 등록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넘겨 받은 자가 공화국령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을 등록한다. 재산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재산의 이름, 단위, 수량, 건평(톤수), 처음값, 대보수비, 내용년한, 사용한 년한, 건설(제작)년도, 평가한 가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46조 등록하는 재산의 가격은 국가가격재정기관이 평가하고 공증기관이 공증한 가격으로 한다.

제47조 등록된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 평가하고 공증가격으로 2월 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재등록한다.

제48조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졌거나 재산의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와 재산을 폐기했을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20일 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4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한 재산가격으로 한다.

제50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에 이 규정 부록3의 세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제51조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를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 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세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음 분기에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구입했거나 건설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입했거나 준공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장 상속세

제53조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화폐재산, 유가증권, 예금, 저금 및 보험금, 공업소유권, 저작권, 토지리용권, 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제54조 상속재산의 가격은 상속받은 때의 재산이 있는 현지 시장가격으로 한다.

제55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액, 상속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4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시키는자의 채무액, 장례비용, 재산의 보존관리에 든 비용을 공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상속자는 상속을 받은 때부터 3개월 안으로 상속재산액, 공제액, 과세대상액, 상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상속세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공제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세공제신청서에는 상속자의 이름과 주소, 상속세의 공제항목과 금액을 밝힌다.

제57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리유와 재산종류,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제58조 상속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3년 안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상속액이 20만원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6장 거래세

제59조 외국투자기업과 개인업을 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에 대해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한 생산물과 수입한 물자를 공화국 령역 안에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
- 2) 상업(무역 포함)부문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상품판매액
- 3) 교통운수, 금융, 관광, 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 대부리자와 예금리자와의 차액,료금과 같은 봉사수입금.

제60조 거래세는 생산, 상업, 봉사부문의 수입금에 부록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문별 세률에 따르는 전개된 항목의 세률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1조 납세의무자는 월중에 이루어진 수입금을 종합하여 다음달 10일 안으로 재정기관에 거래세납부서를 내여 확인을 받은 다음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62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와 생산한 제품을 국가적 요구에 의해 공화국 령역 안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제63조 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에 낮은 리자를(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리자를보다 낮은 리자를)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했을 경우에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6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0%덜어 준다.

제7장 지방세

제6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 면허세, 자동차리용세가 포함된다.

제66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의 월로임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으로 한다.

제67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한다.

-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로임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날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신고납부한다.
- 2) 180일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및 재산판매소득을 비롯한 월수입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날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68조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 어업권을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면허증,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에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포함된다.

제69조 등록면허세는 전당 이 규정 부록6에 정한 세액에 따라 납부한다.

제70조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차전차, 특수차가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연유차, 시멘트운반차, 지개차, 굴착기, 불도저, 끄락또르 같은 것이 속한다.

제71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해당재정기관에 내어 자동차리용에 대한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리용에 대한 세무등록신청서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자동차의 번호, 종류, 좌석수 또는 적재정량, 취득날자를 밝혀야 한다.

제72조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이 규정 부록7에 정한 세액에 따라 신고 납부 한다.

제73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하여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재정기관에 신고하여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8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7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달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매일 0.3%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제75조 재정기관은 세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 1) 정한 기일 안에 세무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납부서, 소득세공제납부서, 재정부 기결산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했거나 공제한 세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 3) 장부, 전표, 증빙문건을 위조, 폐기했거나 원가, 비용, 소득액을 받는것과 함께 탈세액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제76조 재정기관은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에게 벌금통지서를 보내며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물어야 한다.

제7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78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웃기판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재정기관은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을 처리해야 한다.

제79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그것을 처리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동 규정 「부록1」~「부록7」은 미입수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1993.12.30. 정무원 결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알선과 채용, 노동보수의 지불, 노동생활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노동과 관련한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한다.

제3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회사,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4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나라 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을 관리인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투자기업이 받아들인 인력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하지 않는다.

제6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노동보수액은 그의 노동직종과 기술·기능수준, 노동생산성에 따라 정한다. 노동보수에는 노임·가급금·장려금·상금이 속한다.

제7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8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공민인 종업원들이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계약을 맺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노동계약 문건을 기업소재지 노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이 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 통제는 노동행정기관이 한다.

제2장 인력의 채용·해고

제11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인력알선기관과 인력 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시에는 업종별·기능별·인력수·채용기간·인력비·노동생활보장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인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 인력알선기관은 해당 기능공을 보장 해 주어야 한다.

제13조 우리나라 기업소를 모체로 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인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업동맹조직, 해당 인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채용기관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

1.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3.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인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4.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

제16조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직을 제기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2.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1.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는 경우
2.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여성 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

제18조 외국투자기업은 이 규정 제15조 1, 2, 3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제16조 2,

3에 따라 사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일한 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일한 연한이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며 1년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노임액과 일한 연도수에 따라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시키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기업소재지 인력알선기관에 명단을 내야 한다.

제3장 기능공의 양성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그들에게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기능공 양성을 위한 양성소 또는 양성반을 조직·운영 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외국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기술인재 양성은 종업원·재직일군 양성·학교졸업생들의 취업전 양성의 형태로 한다.

제4장 노동시간과 휴식

제23조 종업원들의 노동일수는 주 6일,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노동시간 범위에서는 노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노동을 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고 시간외노동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의 법에 따라 해당한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 휴가와 산전·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 안으로 대체휴가를 주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해마다 해당한 종업원에게 관혼상제를 위한 1~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왕복 여행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5장 노동보수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 월 노임기준은 2백20원(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1백6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힘들고 어려운 부문의 노임기준은 높이 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정한 노임기준에 따라 각종 직제별 노임기준, 노임지불형태와 방법, 가급금·장려금·상금기준을 자체로 정한다.

제27조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 숙련정도와 노동생산능률의 제고에 따라 노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은 휴가 및 보충휴가 기간에 해당한 노동보수를 휴가를 들어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휴가기간에 해당한 노동보수는 휴가받기 전 3개월 동안의 노동보수총액을 실제 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노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휴가기간의 노동보수액 계산에는 노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된다.

제29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 이상에 해당한 보조금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제30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체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의 연장작업, 밤일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의 5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밤일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일한 것이 포함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명절날과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노동시간의 연장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1백%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상금, 기금을 세우고 직업동맹조직과 협의하여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모범적인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제33조 외국투자기업은 노임, 가급금, 장려금을 주는 날짜를 정하고 그 날에 내주어야 한다. 상금은 평가기간 다음 날에 주어야 한다.

노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퇴직, 해고시킨 경우에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노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6장 노동보호

제34조 외국투자기업은 노동안전시설을 갖추고 그를 개선·완비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고열, 가스, 먼지를 막고 채광, 조명, 통풍과 같은 산업위생조건을 보장하여 종업원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노동안전기술교육을 준 다음에 일을 시켜야 한다. 노동안전기술교육기간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1~2주일로 한다.

제36조 외국투자기업은 여성 종업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임신 6개월이 넘는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탁아소, 유치원을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노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 같은 노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내주는 노동보호물자의 기준은 공화국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하여 외국투자기업이 정한다.

제38조 외국투자기업은 작업도중 종업원이 부상, 중독과 같은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노동보호 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관계기관의 사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사회보험·사회보장

제39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 공민인 종업원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보조금·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속한다.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보조금과 연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투자기업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 보조금 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해당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아 노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정휴양소에 가고 오는 데 드는 여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 문건에 의하여 먼저 내주고 후에 청산받아야 한다.

사회보장에 의한 연금·보조금은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어 수속한 데 따라 사회보장 연금지불기관에서 달마다 정한 날에 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0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연금은 공화국의 노동법규에 따라 계산한다.

제41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보장 기금은 종업원에게 받아들이는 사회보험으로 적립된다.

제42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양소, 요양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정양소, 요양소의 운영비는 사회보험기금에서 낸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의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는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를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세우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들이 문화·기술수준의 향상과 군중문화 체육사업·후생시설 운영 같은 데 쓴다. 문화후생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은 직업동맹조직이 한다.

제8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5조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나라 인력을 채용 또는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46조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노동안전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기간을 정해주어 시정을 하도록 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47조 벌금적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적용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돌려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 벌금을 돌려줄 것을 제기받은 상급기관은 그것을 제기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 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외화관리법

〈1993.1.31.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수입을 늘이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이 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3조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국화폐,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 예금증서를 비롯한 외화 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 같은 귀금속이 속한다.

제4조 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공화국 영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관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원과 바꾸어야만 쓸 수 있다.

외화의 사고 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은 외국환자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7조 조선원의 내국환자시세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제8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결제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외화가 아닌 다른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할 수 있다.

제10조 이 법은 외화를 리용하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외화의 리용

제11조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1.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무역 밖의 거래
3.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자본거래

제12조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되는 외화를 조선원으로 바꾸어 자기의 돈 자리에 넣어야 한다.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만 써야 한다.

제14조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화국 국민은 외화를 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보유하며, 그 기준이 넘는 외화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팔거나 예금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우리나라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다.

제17조 은행은 외화예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해당한 리자를 계산하여 준다.

제18조 공화국 령역 안에 상주하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 령사관, 무역대표부 같은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우리나라의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화리용에 대한 감독 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연간 외화재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3장 외화의 반출입

제22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다.

제23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 범위 안에서만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

제2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한 문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6조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들여왔던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 안에서만 내갈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령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
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
지를 공화국 령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4장 제재

제29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외
화와 물건을 몰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30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겨 외화적 손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

제31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과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외국투자은행법

〈1993.11.24.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장 외국투자은행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영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속한다. 외국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다.

제3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제4조 국가는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5조 외국투자은행의 관리 운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 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화관리기관이 한다.

제7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제8조 공화국 영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 명칭, 책임자의 이름과 약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율,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힌 은행 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9조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합영당사자가 한다. 합영당사자는 은행설립 신청시에 기본 규약, 경제타산서, 합영계약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투자가의 영업허가증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외국투자가는 은행설립신청서에 기본

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투자가의 재정상태표, 영업허가증 사본, 외국환 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은행 지점의 설립신청은 본점이 한다. 외국은행 본점은 은행설립신청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연차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본점의 영업허가증 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해 책임진다는 보증서, 지점의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은행은 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안에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13조 은행설립을 신청한 자는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에 은행설립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며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능력의 부족, 계약업무의 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된다. 이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해산승인을 받으면 정산위원회 감독 밑에 정산사업이 끝나면 은행설립등록기관에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은행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 끝나기 6개월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은행은 기본규약을 고치거나 은행을 통합, 분리하고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며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바꾸려고 할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승인 밑에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합영은행의 한편 출자가는 상대편 출자가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18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등록자본금을 조선원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화성 외화로 하고, 1차 불입자본금을 등록자본금의 50%이상 가져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은 운영자금을 조선원 8백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전화성 외화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1차 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을 채무의 보증에, 또는 자기부담 채무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21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예비기금으로 등록자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연간 결산이익금에서 5%를 떼어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보상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데만 쓴다.

제22조 외국투자은행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적립비율은 외국투자은행이 정한다.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23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의 외화예금
2. 외화대부, 시재 돈자리 잔고초과 지불업무, 외화수형할인
3. 외국환자업무
4. 외화투자
5.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
6. 외화송금
7. 수출입물자 대금결제
8.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9.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10. 신탁업무
11. 신용조사 및 상담업무
12. 기타 업무

제24조 외국투자은행은 하나의 기업에 자기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 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어야 한다.

제26조 외국투자은행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간 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간 업무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으로, 분기 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를 다음
분기 첫날 15일 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영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2.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거래
세를 면제한다.
3.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
게 받으며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4. 은행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
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9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문다.

1. 승인없이 책임자,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2.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3. 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준 경우
4. 정기보고 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한 경우

제30조 외국투자은행이 승인된 업종 밖의 업무를 한 경우와 승인없이 기본규약을 고쳤거
나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을 늘렸거나 줄인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1조 은행설립신청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
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
여 해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1.31.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한다.

제3조 국가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자도한다.

제4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제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7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2장 관리기관의 권한과 의무

제8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속한다. 대외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 지대당국은 현지 집행기관이다.

제9조 대외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3.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이상의 대상과 그 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이상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10조 대외경제위원회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투자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투자의 대상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준다.

제11조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

제12조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주민행정, 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사업을 한다.
2.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인신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지대의 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4. 모든 투자신청을 접수하며 총투자액이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2천만원까지의 대상과 그 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5.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6. 투자가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7.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다.
8.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재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제공한다.
9. 이 밖에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13조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투자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 안에 기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한다.

제16조 지대당국은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기관, 기업소 대표와 외국투자가 대표로 구성되며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협의 협조한다.

제3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여오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의 승인 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과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 대리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지대 로역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로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자, 고급 기능공을 지대 로역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 대외경제부서와의 합의 밑에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다.

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2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 밖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지대 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

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 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4장 관세

제25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2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 안에 들여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제2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위해 내가는 경우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5장 통화, 금융

제30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류통화폐는 조선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 외화로 할 수 있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 자리를 둘 수 있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산 조선원은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33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3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제6장 담보 및 특혜

제35조 외국투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3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37조 경영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투자액이 6천만원이상 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38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에게는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다.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40조 외국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41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

제7장 분쟁해결

제42조 자유경제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1993.11.29. 정무원 결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3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 사업부서가 한다.

제4조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한다.

제6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지대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초청한 문건을 가지고 사증없이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초청기관은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지대당국 출입국 사업부서에 출입자들의 명단을 내야 한다.

제7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가져야 한다.

제8조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외국인은 지대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지대당국의 출입국 사업부서에 자동차통행증 발급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한다.

제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을 일정한 기간에 여러번 반복하려는 외국인은 지대당국 출입국 사업부서에 신청하여 30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다회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가진 다른 나라 관광객은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관광하려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대표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관광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 안의 관광봉사기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우리나라 주재 다른 나라 외교대표부, 경제무역대표부,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은 외교부에, 영사대표부 성원은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이 밖의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에 제기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 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출국할 수 있다.

제1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들어 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허가 5일 전에 지대당국 출입국 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떠나기 5일 전에 지대당국 출입국 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자유무역항을 통해 중계되는 무역화물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공화국 영역을 거쳐 화물자동차로 실어 나르려는 외국인은 자동차가 국경을 통과하기 5일 전에 해당 지역 출입국 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17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에 해당 발급부서에 신청하여 기간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8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은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주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분실했거나 해당 기일 안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분실한 증명문건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값의 10배에 해당한 수수료를 물린다.

제20조 국제테러범, 마약중독자, 마약밀수입자, 전염병환자, 정신병자와 이 밖에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올 수 없다.

제21조 증명문건을 위조하였거나 정해진 통로로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명문건을 회수하고 벌금을 물리며 그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

〈1994.1.21. 정무원 결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치할수 있다. 상주대표사무소에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4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지로 하며 그 성원수는 5명을 넘을수 없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에는 책임자와 대표들이 포함된다. 통역원, 타자수, 부기원, 경리원을 비롯한 행정기술성원과 운전수, 정비원과 같은 봉사성원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에 속하지 않는다.

제5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본 기업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 기업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위임대리업무활동을 할수 있다.

제6조 상주대표사무소는 본 기업의 위임대리업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자체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다 되거리, 위탁판매를 하거나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활동을 할 수 없다. 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7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변경, 기간연장과 같은 신청문건은 조선어와 외국어로 만들어야 한다.

제8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9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0조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지대당국을 통하여 대외경제위원회(외국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는 본 기업과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책임자의 이름, 대표성원수와 대표들의 이름, 설치장소, 활동내용, 상주기관 같은 것을 밝히고 본 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기업등록증서 사본, 거래하는 은행기관이 발급한 신용확인서, 상주하려는 대표사무소 책임자, 대표성원들의 위임장, 경력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시에는 본 기업의 최근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기본규약, 이사회의 성원명단 같은 것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외경제위원회, 중앙은행(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은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 심의한 다음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승인기관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설치 승인서를 지대당국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3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를 내여 등록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시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의 내용을 밝히고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대당국은 승인된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하고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한 날이 상주대표사무소설치일로 된다.

제1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체류증 또는 상주외국인증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 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는 출입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6조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해마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 전에 지대당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7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설치장소, 상주대표성원수를 변경시키거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변경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의 위임장과 경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이상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상주대표 가운데에서 어느 한 상주대표가 책임자의 대리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당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

- 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다른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 제20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해당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 제21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마다 1월 안으로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연간사업 총화자료를 내야 한다.
연간사업 총화자료는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22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주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상주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기간연장신청서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이유를 밝히고 상주기간 본 기업이 우리나라와의 경제거래정형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3조 상주대표사무소에 필요한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은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번호를 받은 다음 자동차 3자책임보험에 들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은 팔거나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물 다음 지정된 상업(무역)기관을 통해서만 팔 수 있다
- 제24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필요한 건물을 세내거나 인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건물관리 기관 또는 인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세낸 건물, 채용한 인력의 관리는 외국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건물양도 또는 노동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2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통신은 공화국의 해당 체신기관을 통하여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아래 국제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제26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이 끝났거나 상주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철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철수하기 30일 전에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에 서면으로 알리고 세무 및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기관의 납세확인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 제27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거나 변경 및 등록취소 수속을 하려는 경우에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해당기관에 내야 한다.
- 제28조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은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

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검열일군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보여주여야 한다.

제29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이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공화국 영역 밖으로 추방할 수 있다.

제30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

자유무역항규정

〈1994.4.28. 정무원 결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계무역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자유무역항은 라진항, 선봉항, 청진항이다. 자유무역항에는 항지역과 항수역이 포함된다. 항지역에는 부두, 등대, 배수리기지, 짐의 야적장, 보관창고와 구내철길, 구내길 같은 것이 있는 지역이 속하며 항수역에는 배의 입출항수로, 가박지, 정박지 같은 것 이 있는 수역이 속한다.

제3조 경제무역활동을 하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배, 선원, 여객과 짐은 국적이나 출발지, 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유무역항에 나들 수 있다.

제4조 자유무역항(이 아래부터는 항이라 한다)에 나드는 배와 짐에는 관세·선박세·짐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5조 항에서는 배의 취급과 짐작업, 짐보관, 배수리와 같은 경제활동을 한다. 배길 안내, 짐을 실거나 부리는 작업, 짐의 운반, 재포장, 가르기, 섞기 같은 작업과 봉사, 배 및 설비의 수리, 항시설물 및 설비의 임대, 보관창고의 운영과 같은 사업을 항관리운영기관(이 아래부터는 항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육상출입증을 발급하거나 배의 입출항 승인을 하며 항 안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 항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침몰된 배와 짐을 배 또는 짐임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업을 항사업감독기관이 한다.

항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 간신하는 사업은 항건설기관이 한다.

제6조 외국투자가는 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창설하여 부두, 창고, 배수리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한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창설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항에 나드는 배, 선원, 여객과 짐은 국경, 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수의검역,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중계무역점은 해당 검사, 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거나 검역을 한다.

제8조 항출입, 항에서의 경제무역활동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한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이 규정은 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라 한다)의 공민,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조직(이 아래부터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체라 한다) 및 개인,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 적용한다.

제2장 항 출입

제10조 항 출입은 지정된 육상출입구와 입출항수로를 통하여야 한다.

육상출입구를 통하여 항에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항사업감독기관이 발급한 출입증이 있어야 하며 입출항수로를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사업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출항하려는 배의 임자 또는 선장은 배의 기술자료, 신거나 부릴 짐명세서와 선원의 명단,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 배길안내지점의 도착 또는 출항예정시간을 밝힌 문건 같은 것을 항사업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11조 입항하려는 배는 배길안내지점에 도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출항하려는 배의 선장은 해당한 지점에서 검사 검역을 받을 때마다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내야 한다.

제13조 배가 입출항하거나 항수역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길안내는 항기관의 배길안내원이 된다. 배가 입항할 때는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가박지 또는 부두까지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항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외박까지 배길안내를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 배가 출항할 때는 항가박지 또는 부두에서부터 배길 안내지점까지 배길안내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 일정한 지점까지만 배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길안내를 받은 데에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길안내원이 지지 않는다.

제14조 기름수송배, 가스수송배와 같은 위험물질을 실은 배는 항기관이 특별히 정한 수역에만 정박할 수 있다.

제3장 항 이용

제15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 운반, 재포장, 가르기, 섞기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작업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작업의 종류,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배의 입항예정날자, 작업을 끝내는 날자와 시간, 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밝혀야 한다. 짐실이 작업인 경우에는 짐작업계약서에 짐모으기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제16조 짐을 보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 보관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날짜, 보관기관, 짐 보관과 관련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항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에는 항사용료, 기름공급료, 물공급료, 짐보관료, 짐작업료, 짐운반료 같은 것이 포함된다. 항에 보관하는 짐은 10일간 가격을 받지 않는다.

제18조 배에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따라 한다.

부페 변질될 수 있는 짐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싣거나 부릴 수 있다.

제19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과정에 배에서 생기는 로동재해에 대한 책임은 배임자가 진다.

제20조 공화국의 해당기관, 기업소는 항을 리용하는 다른 나라의 배임자 또는 짐임자의 대리사업을 하는 대리인기관을 설치하고 항안에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기관을 통하여 항안의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제22조 항의 관리운영과 설비개조에 필요한 자금은 항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보장한다.

제23조 항기관은 항관리운영을 위한 항련합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항련합위원회에는 항기관과 항사업 감독기관, 철도운수기관, 세관, 검사기관, 검역기관, 배 및 짐대리인기관, 항을 이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참가한다. 항련합위원회 책임자는 항장이다. 항련합위원회는 한달에 1회이상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항 안에서는 해당 항 및 해저에 대한 조사, 연구, 관측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항의 출입 및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5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적용한다.

- 1) 항의 구조물, 시설물, 설비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해를 보상시키고 정도에 따라 5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2) 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3)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4)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5)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 환경오염을 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6) 배가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억류하고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7) 료금을 정한기간 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수송수단과 짐을 류치할 수 있다.
- 8) 해당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무선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기체 또는 배를 몰수한다.

제26조 항사업감독기관은 사법검찰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법검찰기관에 의해 당 문건에 의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송수단 또는 짐을 억류하거나 류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억류하거나 류치하는 기관에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 위험은 억류 또는 류치를 요구한 자가 진다.

제2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항 운영과 리용에서 제기되는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토지임대법

〈1993.10.27.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공화국의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이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 이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4조 토지임대는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는 지대당국이 한다.

제5조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다.

제6조 토지임대기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 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임대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

제8조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 이용한다.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9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 계약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11조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희망자는 제공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
본을 첨부한 토지이용 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이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자에게 승
인여부를 알려준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목적과 기간, 총투자
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
4.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받은 다음 토지이용증
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제12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 및 개찰 날자,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
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4.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
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
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6.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 조건을 고려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급한
다.
8. 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한 임대료를 지불한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해 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토지를 임
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9. 낙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안에 해당사유를 통지 하여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10. 낙찰자가 정한 기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13조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불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3. 낙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 받고 등록한다.

제14조 토지임대차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장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1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한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토지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서 남은 이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16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금을 투자해야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들도 함께 넘어간다.

제18조 토지이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
2. 토지이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권 판매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는다.
3.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명의변경 등록을 한다.

- 제19조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2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해 토지이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 제22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 자와 저당받은 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받는 자는 저당하는 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이용증 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을 해야 한다.
- 제24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는 저당한 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 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
- 제25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중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 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 제26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기간 안에 저당받은 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이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10일 안으로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4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 제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값이다.
- 제29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
- 제30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많은 토지개발부문은 임차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의 합의 밑에 5년 안에 분할해 물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대해서는 해당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제31조 협상, 경매를 통해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한 이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토지임대료에 충당 할 수 있다.

제32조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1%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연속 50일간 물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임차한 토지의 이용자는 해마다 국가가 정한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덜어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제5장 토지이용권의 반환

제34조 토지이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토지를 40년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 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해 줄 수 있다.

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이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이용권 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36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이 6개월 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이용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이용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물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해야 한다.

제38조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안에 토지이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여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해준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9조 토지이용증이 없이 토지를 이용했거나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켰거나 토지이용권을 양도, 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에 건설한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및 저당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40조 임차자가 토지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총투자액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41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한급 높은 기관에 신소청원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저당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북한법제분석 94-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1994년 7월 15일 印刷

1994년 7월 20일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 韓國컴퓨터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5,800 원

